

KiRi 리포트 포커스 모음집 2016

1

거시금융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전용식 채원영	3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변혜원 정인영	9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 정원석	15
타겟데이트 펀드의 역할과 의미	전성주	20
브렉시트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박선영 이선주	28

2

보험제도 및 정책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정원석	37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김석영 김세중	44
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정원석	53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	58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조용운	66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74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된 정성희	82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 이성은	88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Solvency II 개정의 시사점	변혜원 조영현	97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이기형	104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	112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122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준	130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	138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DCDS 운영사례	송윤아 마지혜	145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김석영 이선주	155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전용식 채원영	163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	170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정원석	178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이기형	184

포커스 _Contents

3

고령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	최장훈 강성호	195
연금해지 시 세금 부과, 과도한가?	정원석	201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오승연	206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 및 시사점	전성주 조영현	211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평가와 시사점: 반·추납 및 임의가입을 중심으로	강성호 최장훈	217
일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재휴전락과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224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강성호 류건식	234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정원석	245

4

보험경영

MetLife 분사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257
저금리 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조재민 이해은	264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268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272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희	280
전속설계사 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김석영 이선주	296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조영현 이해은	304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	312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조영현 이해은	320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송윤아	33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송윤아	339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	348
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이용	임 준	356
미 대선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임준환 조영현 황인창	363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 이선주	372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임태준 이규성	38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388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 동향	송윤아 권오경 마지혜	397

1. 거시금융

1.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전용식 채원영
2.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변혜원 정인영
3.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 정원석
4. 타겟데이트 펀드의 역할과 의미	전성주
5. 브렉시트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박선영 이선주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2016년 초부터 국내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국내 경제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들과 각 요인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고 주가는 1,880선으로, 유가 급락은 저물가 우려를 확대시킴.
 - 국내 경제 불안요인은 원유가격 급락,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가계부채 및 기업채산성 악화 등임.
- 원유가격 하락은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수출입 단가 조정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나 저유가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중국경제 둔화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15년 8월 -5.5%로 감소하였는데, 중국의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5년 26%로 2000년 10.7%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고, 수입비중은 2000년 8%에서 2015년 20.7%로 상승함.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신흥국 경제 불안, 원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중국경제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심화시킬 수 있음.
 - 2013년 6월 이후 신흥국 경제 불안의 정도는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원유가격 하락,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가 국내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 기업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9월 약 170%이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은 2010년 12.9%에서 2014년 15.2%로 증가함.
- 따라서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2016년 초부터 국내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평균 2,000선에서 1,800선으로 하락함.

■ 2016년 국내 경제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각 요인들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보험연구원은 2015년 10월 국내 경제의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제시하였음.¹⁾

■ 최근 원유가격 급락은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10달러 내외이던 두바이 유가는 최근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함.

● 2015년 1월 이후 유가 하락세가 본격화되어 두바이 유가는 2015년 12월 31일 배럴당 32.1달러를 기록함.

■ 본고에서는 원유가격 하락,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보험연구원(2015),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5-2.

2. 국내 경제 불안요인



가. 유가 급락

■ 유가 급락은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임.

- 2015년 평균 유가는 전년에 비해 47.5% 하락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04억 달러로 2009년 405억 달러의 두 배를 상회함.
 - 수출금액이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 4,84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은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 4,013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6.7% 감소함.
-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폭이 수출단가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이고, 중국에 대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2000년 이후 증가했기 때문임.
-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우리 경제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 있음.
 - 유동성 함정이란,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나 통화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민간의 소비, 투자가 진작되지 않는 상황으로 1990년 자산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부진에 빠진 경우가 그 사례임.²⁾

나. 중국경제 둔화

■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며 2014년 이후 순수출물량³⁾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지속은 어려울 것임.⁴⁾

- 2013년부터 유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유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5%, 수입비중이 17%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세는 둔화될 것임.

2) 임준환(2002), 「유동성 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용식 외(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4-6 재인용.

3) 순수출은 “수출 규모-수입 규모”로 정의함.

4) 중국경제 성장률은 2007년 14.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7.4%, 2015년 3분기에는 6.9%로 하락하였는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13년 19.8%에서 2015년 7월 11.2%로 둔화되었고 수출증가율은 6.5%에서 2015년 8월 -5.5%를 기록함.

- 국내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0년 전년동기대비 2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3%로 크게 감소
- 수입물량 증가율은 2009년 12.1% 감소한 후 2014년 4.6%, 2015년 3.8%로 상승하여 수출물량 증가율을 상회함(〈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수출	중국	10.7	21.8	25.1	25.4
	ASEAN	11.5	9.6	11.4	14.8
	미국	21.8	14.5	10.7	12.3
	EU	14.3	15.4	11.5	9.0
	중남미	5.4	5.3	7.8	6.3
	중동	4.4	4.3	6.1	6.1
	일본	11.9	8.4	6.0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수입	중동	16.1	18.1	19.0	22.7
	중국	8.0	14.8	16.8	17.1
	동남아	17.6	13.8	14.0	13.5
	EU	10.1	10.4	9.1	11.9
	일본	19.8	18.5	15.1	10.2
	미국	18.2	11.7	9.5	8.6
	호주	3.7	3.8	4.8	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복합적으로 유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던 중동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폭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유가 하락의 시발점이었으며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구매력 약화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를 확대시켜 유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유가 하락세가 다른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확대시킬 경우 원자재 수출국 경기 둔화세는 심화될 것임.

다. 미국 금리인상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여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임.

- 2015년 12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정책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인상
-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1,182.9원에서 1월 13일 1,208.5원으로 2.16% 상승하였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75%에서 1.63%로 소폭 하락함.

■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경제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흥국과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음.

- 중국 위안화 환율은 2008년 1월 달러당 7.3위안에서 2015년 말 6.49위안으로 11% 하락하였고 태국 바트화, 싱가포르 달러화, 필리핀 페소화 등 아시아 통화가치가 하락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2일 위안화를 1.86% 평가절하함.
- 최근의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이 중국경제 둔화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어 신흥국 경제불안이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2013년 6월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이후 자본유출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하락하였고,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자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음.⁵⁾

■ 미국의 정책금리가 2016년에도 점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위안화 가치하락과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결론 및 시사점



■ 요약하면, 원유가격 하락과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들은 수출 부진과 더불어 가계의 부채 부담 가중,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장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경기 부진,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원화약세와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보험연구원(2014. 2. 17),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KIRI Weekly』, 제271호.

-
- 수출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은 가계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9월 현재 약 170% 수준으로 미국의 114.1%, 일본의 129.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12.9%에서 2014년 15.2%로 증가함.⁶⁾

■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체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부문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구조개혁 과정에서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kiri](#)

6)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되어 행동적 편향현상을 초래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정책수단이 마련되고 있음.
- 행태편향현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은 크게 정보제공 개선, 선택환경 설계, 상품설계나 판매에 대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음.
 - 통합형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의 핵심정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는 정보제공 개선을 통해 편향으로 인한 소비자 실수를 완화시키는 방식에 해당됨.
 - 선택환경 설계를 통해 소비자 편향 문제를 개선하는 개입수단의 사례로는 연금저축 자동가입 방식이나 연금저축비율 자동증가 방식 등이 있음.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주 상품에 추가되어 판매되는 손해보험상품(GIAO)에 대해 추가구매를 기본옵션으로 하는 판매방식을 금지한 조치는 상품판매 규제사례로 볼 수 있음.
- 국내 금융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실험과 충분한 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기본옵션을 통한 개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성적 경제주체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비자정책에 소비자의 편향(Bias)을 반영하는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5년 9월 런던에서 있었던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Task Force) 회의에서도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금융정책 현황이 논의된 바 있음.

■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¹⁾에서 말하는 편향현상은 소비자가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서 예측하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함.

- 전통적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주체(Homo Economicus)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감정적 요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편향현상에는 잘못된 신념, 비논리적인 해석과 같은 인지편향(Cognitive Bias), 쓸림현상과 같은 사회적 편향(Social Bias), 과신이나 손실회피와 같은 감정적 편향(Emotional Bias) 현상이 있음.

■ 금융상품은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편향현상이 특히 자주 발생함²⁾(〈표 1 참조〉).

- 사람들은 현재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현재편향을 보이므로, 현재와 미래 간의 상충관계를 내포하는 금융상품 관련 의사결정에서 이성적인 판단과는 벗어난 행태를 자주 보임.
- 소비자가 올바른 재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확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사람들은 재무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택의 비용편익 분석보다는 스트레스, 걱정, 손실에 대한 두려움, 후회 등과 같은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 함.³⁾

1) 행태경제학은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실에서 사람들(Humans)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왜 못하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2) FCA(2013), "Applying Behavioural Economics a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ccasional Paper*, No. 1.

3) 퇴직연금 가입, 생명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 선택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금융소비자 편향현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당국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수단에 행태경제학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함.⁴⁾

〈표 1〉 소매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편향현상

구분	관련 질문	편향현상
선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편향, 준거점 의존성 및 손실회피, 후회 및 감정개입
신념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 옵션들에 대한 사실이 어떠하다고 믿는가?	과신, 과외삽(Over-extrapolation), ¹⁾ 추정편이
의사결정	주어진 자신의 신념하에서 어떠한 옵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틀짜기(Framing), 부각효과, 제한적 관심(Limited Attention), 심적회계, 좁은 범주화, ²⁾ 주먹구구식 의사결정(Rules of Thumb), 설득 및 사회적 영향

주: 1) 과외삽(또는 소수의 법칙)이란 몇 개의 관찰을 한 후, 동 사례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제의 추이나 현상을 제시한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좁은 범주화(Narrow Bracketing)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전체 부(wealth)나 리스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결정을 단독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이룸.

자료: FCA(2013).

- 본고는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보험 및 연금 관련 소비자정책 사례들을 검토하고, 동 사례들이 국내 보험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행태경제학적 금융소비자정책 사례: 보험 및 연금



- 편향현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유형은 크게 정보제공의 개선, 선택환경의 설계,⁵⁾ 상품설계나 판매에 대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음.⁶⁾

4) 영국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136개국이 공공정책에 행태경제학을 적용한 바 있으며, 51개국이 새로운 행태경제학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Thaler(2015), “Misbehaving”, Norton).

5) Thaler와 Sunstein이 고안한 용어인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는 소비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6) FCA(2013).

■ 정보제공의 개선을 통한 가입 사례로 EU의 통합형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⁷⁾에 대한 핵심정보자료(KID: Key Information Document) 규제를 들 수 있음(2016년 12월 시행예정).⁸⁾

- 2010년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한 소비자의 투자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 결과는 PRIIPs 판매 규제안에 반영됨.
 - 동 실험 결과는 소비자가 편향이나 틀짜기 효과에 취약하여 최적의 투자선택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KID는 상품의 주요 특성, 해당 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료하고 평이하게 서술하도록 함.
- 또한 KID의 구조, 내용, 표현과 관련하여 공통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동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함.
- KID와 관련해서 소비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규제표준(RTC: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단계의 소비자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리스크 지표, 성과 시나리오, 비용 등 제시방법의 효과를 테스트한 바 있음.

■ 연금저축 자동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Opt-out)은 선택환경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편향 문제를 개선하는 가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저축의 자동가입방식은 넛지(쿡 찌르기, Nudge)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이용하여 은퇴저축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임.⁹⁾
 - 덴마크 은퇴저축 유도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저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은퇴저축계좌 자동가입정책은 저축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임.¹⁰⁾
- 은퇴저축 부족현상이 심각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소극적인 투자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가입을 기본옵션으로 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7) PRIIPs는 Packaged Retail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의 줄임말임.

8) 유럽금융감독기관(ESAs: EBA, EIOPA, ESMA)이 동 자료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음. 동 규제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논의보고서(Discussion Paper)를 출간하고 다음 해 2월까지 이해당사자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제안사항을 받았으며, 기술적 규제표준(RTC)에 대한 기술적 논의보고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출간함.

9) 넛지란 다른 옵션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심각하게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함. Thaler and Sunstein(2008) “Nudge: Improving Decision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 Press.

10) Chetty et al.(2014)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pp. 1141~1219.

■ 유사한 맥락에서 근로자의 미래 급여 중 연금저축에 배분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미리 약속하는 SMarT(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 또한 선택설계를 통해 은퇴저축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임.

- SMarT 프로그램은 1998년 미국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결과 SMarT 프로그램 가입자의 평균 저축률은 40개월 동안 3.5%에서 1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¹⁾
 - 동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제의받은 사람의 78%가 가입하였으며, 이 중 80%가 네 차례의 급여 인상 동안 동 프로그램에 남아있었음.
- 한편 2011년까지 미국 대형기업의 56%가 자동가입 시스템을, 51%의 기업이 SMarT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¹²⁾
 - 이는 2006년에 통과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의 영향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상품설계나 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한 개입 사례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주 상품에 추가되어(Add-ons) 판매되는 손해보험상품(GIAO)¹³⁾ 관련 규제를 들 수 있음.¹⁴⁾

- FCA는 GIAO에 대해 추가구매를 기본옵션으로 하는 판매방식(Opt-out Selling)을 금지하였으며, 소비자를 위한 GIAO 상품 제공방식도 개선함.
- 동 규제는 GIAO 거래방식이 시장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에 바탕을 둔 것임.¹⁵⁾
- 실험 결과, 주 상품 판매시점에 제시되는 방식의 GIAO는 상품 비교, 지급 보험료, 소비자 결정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자행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함.¹⁶⁾
 -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시점에 추가구입상품 대신 구매할 수 있는 단일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일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었음.¹⁷⁾

11) Thaler and Benartzi(2004), "Save More Tomorrow: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1), pp. S164~S187.

12) Aon Hewitt의 조사를 Thaler(2015)에서 재인용. Pension Protection Act는 <http://www.dol.gov/EBSA/pensionreform.html>를 참조.

13) GIAO(General Insurance Products Commonly Sold as Add-ons)는 여행상품에 추가되어 판매되는 여행자보험과 같이 주 상품에 추가(Add-ons)되어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14) 201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www.fca.org.uk/news/ps15-22-general-insurance-add-ons-market-study-remedies>.

15) FCA(2014), "How Does Selling Insurance as an Add-on Affect Consumer Decision?", *Occasional Paper*, No. 3.

16) 실험에서는 i) 주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 ii) 판매 시에 주 상품과 관련 보험상품을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Up-front Add-on), iii) 소비자가 주 상품을 선택한 후에 관련 보험상품과 보험상품 가격이 제시되는 방식(Add-on Revealed at the Point of Sale)을 비교함.

17) 그러나 단일상품 접근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현저히 감소됨.

3. 국내 금융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



-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로서 EU의 PRIIPs 핵심정보자료 규제, 연금저축 자동가입과 같은 선택설계, 영국 FCA의 GIAO 규제를 각각 살펴보았음.
- 위의 사례들이 국내 금융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소비자의 행태변화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 편향현상을 감안한 금융소비자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나 SMarT 프로그램과 같이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뿐 아니라, 기존 정책수단에 행태경제학적 고려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상품공시에 있어서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달방식이나 내용구성을 정교화하는 작업은 기존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에 해당될 것임.
- 아울러 시장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비자의 편향이 무엇인지를 실험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도입 전 사전 실험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함.¹⁸⁾
 - 금융감독자나 정책입안자의 경우에도 과신이나 비일관적 시간선호와 같은 인지편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 및 조사를 통한 사전 효과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kiri](#)

18) 영국 FCA의 경우에도 비정기보고서(Occasional Paper)를 통해 감독당국, 학계, 산업전문가 간의 논의를 장려하고 있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신축 인허가 및 미분양 재고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남.
- 주택공급물량이 소화되기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과잉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확산됨.

■ 이 같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주택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임.

- 정부는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 강화”로 정부 정책기조가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됨.
 -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조건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함.

■ 주택 정책이 경기 활성화나 금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부동산 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시장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어 장·단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단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증가뿐 아니라 주택 멸실, 지역별 주택 수요 편차 등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차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미시적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함.
-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평가절하에 따른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최근 인허가 물량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 여부는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택 수요와 정책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요구한다. 최근 주택공급 과잉론의 대두는 공급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확대된 데 따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속에서 공급 과잉론을 둘러싼 쟁점을 점검하고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급 불균형 현상 및 원인 진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인허가 물량이 76만 5천여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인허가 물량은 2014년 51만 5,251호에서 2015년 76만 5,328호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0~2015년 평균이 51만 호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¹⁾ 또한 분양물량 증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주택수요 심리가 위축되면서 2015년 하반기 미분양 물량이 11월(1만 7,503호)과 12월(1만 1,788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단기적으로 현 주택시장은 초과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기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택수요 및 소비심리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이 많아 이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 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감소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 빚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OECD가 집계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07년 가처분 소득의 143%에서 2012년에는 115% 수준으로 감소했고, 일본 역시 지난 2005년 138%에서 2012년에는 129%로 떨어졌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04년 가처분 소득의 122%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2년에는 164%까지 급증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 신규 주택 수요는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

1) 노희순(2016, 2, 16), “주택 공급과잉 허와 실”,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 자료.

화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과 같이 부동산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되어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수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 효과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주택수요 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쪽으로 정책 노선을 급선회하였다.

현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4.1 서민 주거안정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으로 이어졌고, 2014년에는 「9.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 및 청약제도 간소화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주택 실수요 창출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To-Value Ratio)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 Debt-To-Income Ratio) 완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금융권역별·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던 LTV-DTI 비율을 단일화해 은행과 보험업권은 LTV 비율이 50~70%에

서 70%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 진작 효과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급선회하는 전기를 맞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지속 점검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가 진행되면서 2015년 10월부터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가 크게 강화되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하였다. 이 같은 가계부채 점검의 여파로 올 들어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1%가 축소된 6만 2,365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 소비심리가 냉각되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르면 저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받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었고 대출 시 소득심사가 강화되었다. 수도권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도 감소했다. 이 같은 급격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면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 과잉론이 불거진 것으로 분석된다.

4. 정책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앞서 언급한 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권 초기 “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 주도에서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 강화”로

선화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주택수요 및 소비심리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특히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급등 역시 주택수요 소비심리 위축을 대변해주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²⁾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매매가격은 자산 시장의 가격균형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³⁾ 부동산 소유에 따른 매기의 수익을 임대료와 자본이득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일정한 비율의 전·월세 전환율을 가정하면 부동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대한 기댓값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위축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다.⁴⁾

더군다나 정책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균형결정에 장ைய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결정 모형(DiPasquale-Wheaton의 4분면 모형)에 따르면 통상 부동산 주택재고(공급)

가 주어지면 수요가 이에 일치하도록 임대료가 결정되고 임대료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해 자산가격이 결정되며, 자산가격과 공급자들의 생산함수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후 신규 공급량과 기존 공간재고의 멸실률에 따라 공간재고가 조정되는 주택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이 같은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균형가격 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결론

작년 한 해 동안 예년에 비해 주택공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시장의 주택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확대된 측면이 더욱 크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취급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독자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급 증가뿐 아니라 수요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그간의 공급량, 주택 멸실, 수도권 주택의 수요 및 지역적 편차 또한 감안해야 한다. 중·장

2) 손재영(2001),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대책」, 『주택도시』, 제70호, 주택도시연구원.

3) 박선영(2014, 3. 10),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KiRi Weekly』, 제274호, 보험연구원.

4) 임정호(2006),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및 월세시장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1호, pp. 165~193.

거적으로는 미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차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대출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지속, 경제활동인구 축소 등으로 인해 주택의 자산가격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kiri**



타겟데이트 펀드의 역할과 의미

전성주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대표상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연금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타겟데이트 펀드(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개인에게 특화된 연금자산 운용전략을 시행해주는 대표상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자동투자옵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대표상품의 하나로 지정될 TDF는 연금가입자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의 편입비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줌.
- TDF는 개인의 은퇴시점에 맞춰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 등의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동적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시행해줌.
 - 특히, TDF의 자산배분은 초기에 위험자산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를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전략을 구사함.
 - 많은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TDF의 자산배분전략은 노후소득을 위한 은퇴자산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적격디폴트 투자상품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TDF를 통해 운영되는 자산규모가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5년 약 7조 6,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
 - TDF 운용자산의 절반이 은퇴를 앞둔 51~65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나, 개인 자산 내 TDF 활용도는 20대의 젊은 근로자들이 자산의 35%를 TDF로 운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음.
 - 그러나 디폴트 상품인 TDF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손해를 입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0년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에 대표상품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적의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TDF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들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잘 인지하도록 공시제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대표상품에 대해 투자전략, 수익률, 위험지수, 수수료 등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TDF에 관한 연금운용지침서를 마련하여 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1. 검토 배경



■ 최근 대표상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연금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타겟데이트 펀드(TDF: Target-Date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표상품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자동투자옵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대표상품이란 개인의 경제상황과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하여 연금자산 운용전략이 내재된 상품이나 펀드를 의미함.
 - 대표상품이 자동투자옵션에 포함될 경우 연금가입자가 별도로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된 대표상품을 통해 연금자산이 자동적으로 운용됨.
-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표상품의 하나로 지정될 TDF는 연금가입자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의 편입비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줌.

■ 미국은 2000년 중반 미국의 대표상품제도인 적격디폴트 투자상품제도(QDIA)¹⁾ 도입을 통해 최적의 연금자산 운용수단으로 TDF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TDF는 1993년 바클레이즈 글로벌(Barclays Global Investors)과 웰스파고(Wells Fargo), 피델리티(Fidelity)에 의해 최초로 도입됨.
- 미국에서는 2007년 QDIA 도입 이후 근로자 은퇴자산 운용수단으로 TDF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음.
 - 미국의 DC형 퇴직연금 플랜인 401(k) 자산운용에서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말 5%에서 2013년 말 15%로 증가함.
- 2014년 말 현재 약 7,03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TDF를 통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89%가 IRA나 DC형 퇴직연금 등 퇴직계좌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²⁾

■ 본고에서는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대표상품으로서의 TDF 도입이 근로자의 은퇴자산 운용 최적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QDIA(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란 원금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펀드 혹은 포트폴리오 모델을 의미하며 미국의 노동부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는 펀드를 의미함.

2) 2015 Investment Company Fact Book(ICI) 참조.

2. 타겟데이트 펀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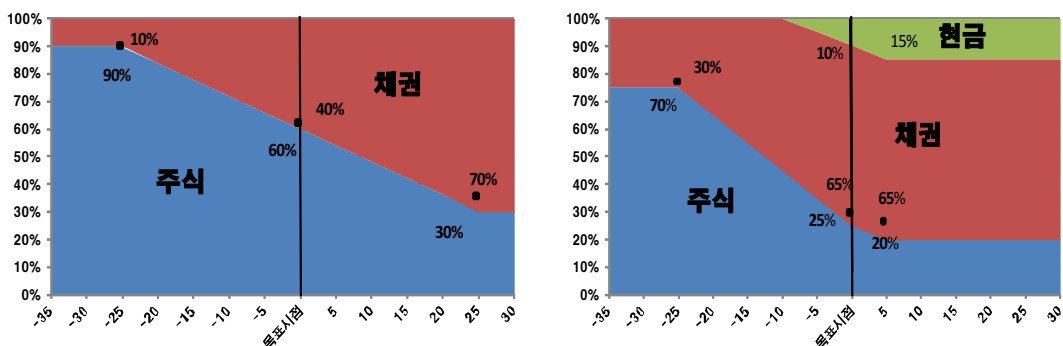
■ TDF는 개인의 은퇴시점에 맞춰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동적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수행해줌.

- TDF는 설정된 미래 예상퇴직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연령의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자산배분을 자동적으로 제공해주는 펀드임.
- TDF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특정 은퇴시점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자를 위해 자동적으로 자산비중을 재조정해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특히, TDF의 자산배분은 초기에는 위험자산에 높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이를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전략을 구사함.

- 글라이드 패스란 TDF의 자산배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시점의 가장 보수적인 자산배분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산배분 패턴을 의미함.
- <그림 1>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연금자산의 70~90%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목표시점을 지나면 채권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70~80%까지 늘리게 됨.

〈그림 1〉 타겟데이트 펀드의 글라이드 패스 전략 사례



자료: 미국 SEC(2010).

- 이러한 자산배분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³⁾
 - 인적자본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초기 근로기에는 만기가 장기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함.
 - 따라서, 최적의 자산배분을 위해서는 보유한 인적자본에 상응하도록 위험자산의 보유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많은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TDF의 자산배분전략은 노후소득을 위한 은퇴자산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Holmer(2009)는 모의실험을 통해 20대에 75~80%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다가 65세에 30~35%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기록함을 보임.⁴⁾
- Pang and Warshawsky(2011)는 TDF와 밸런스 펀드(Balanced Funds)의 기대수익과 위험을 비교하였는데,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TDF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어짐을 발견함.⁵⁾
 - 밸런스 펀드란 투자자의 연령이나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을 지키도록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펀드를 의미함(예: 주식/채권 비율이 6/4인 펀드).
 - 특히, 이들은 TDF의 자산배분 전략인 글라이드 패스의 구체적인 디자인이 은퇴자산의 수준과 변동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발견함.
- Yoon(2010)은 TDF의 글라이드 패스 설정 시, 가입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기대수익률 및 기대위험이 변화함에 따라 글라이드 패스 전략에 대해 동적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보임.⁶⁾

3) Viceira(2001), "Optimal Portfolio Choice for Long-Horizon Investors with Nontradable Labor Income", *Journal of Finance*, Vol. 56, No.2, pp. 433~470.

4) Holmer, M.(2009), "Estimating the Accumulation Risks of Life-Cycle Funds", *Policy Simulation Group Working Paper*.

5) Pang, G. and M. Warshawsky(2011), "Target-date and balanced funds: Latest market offerings and risk-return analysis", *Financial Services Review*, No. 20, pp. 21~34.

6) Yoon, Y.(2010), "Glide path and dynamic asset allocation of target date funds", *Journal of Asset Management*, Vol. 11, No. 5, pp. 346~360.

3. 타겟데이트 펀드의 미국 사례



■ 장기로 운용되는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2007년 적격디폴트 투자상품제도(QDIA)를 도입함.

- 법정퇴직금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계좌를 설정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연금자산을 운용할 때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일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함.
- 이와 함께 자신의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주가 이들에게 알맞은 최적의 자산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함.

■ 2007년 도입된 QDIA는 디폴트 옵션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다음의 4가지로 제한함.⁷⁾

- 근로자의 연령과 은퇴시점을 고려해 자산배분을 하는 투자상품(예: Target-Date Funds)
- 근로자의 연령과 은퇴시점을 고려한 자산배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투자옵션에 자산배분을 실행해주는 자산배분서비스(예: Investment Service, Managed Accounts)
- 근로자 그룹의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투자상품(예: Balanced Funds)
-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첫 120일 동안 원금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품(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서 탈퇴(opt-out)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위해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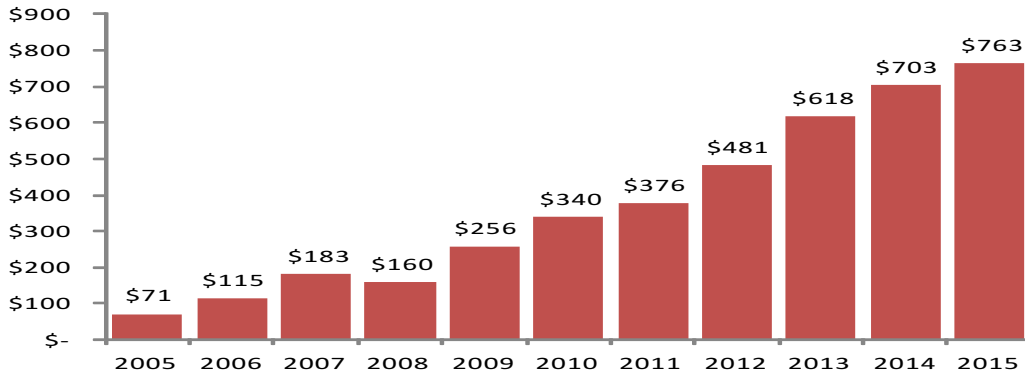
■ TDF를 통해 운영되는 자산규모는 2005년 약 710억 달러에서 2015년 약 7조 6,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와 함께 2015년에는 TDF 펀드자산의 순유입액이 사상 최대인 690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2015년 TDF의 평균 수익률이 유형별로 -1.2%에서 -2.0%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DF에 대한 순유입액이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임.
- TDF의 성장세는 2006년 연금보험법 제정과 TDF의 QDIA 상품 지정에 따라 사용주들이 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으로 TDF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임.

7) U.S. Department of Labor(2008), "Regulation Relating to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 in Participant-Directed Individual Account Plans", Fact Sheet 참조.

〈그림 2〉 타겟데이트 펀드의 자산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미국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통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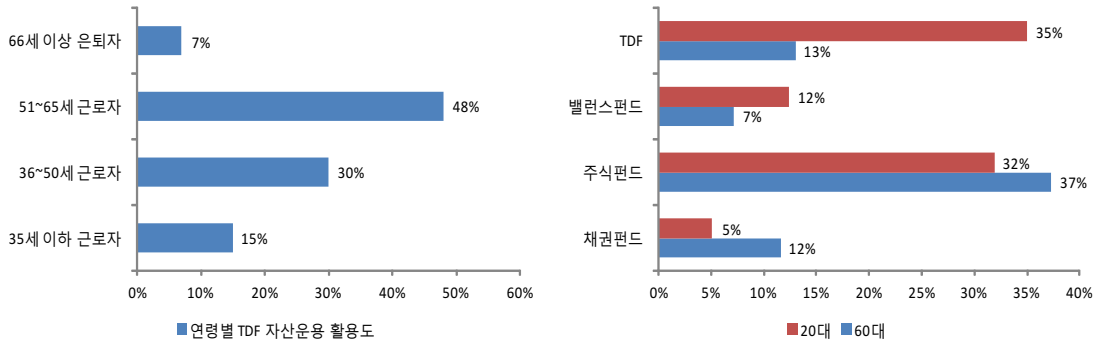
■ TDF 운용자산의 절반이 51~65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 자산 내 TDF 활용도는 은퇴를 앞둔 6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자산운용 리서치 회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TDF 자산의 48%가 2020년, 2025년, 2030년을 목표시점으로 정한 TDF 펀드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 펀드는 약 15년 이내 은퇴를 앞둔 연금자산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가 대부분임.
 - 이들 투자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저축액이 상당하거나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이 절정에 달해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총액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개인은퇴자산 내에서 TDF를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20대와 같은 젊은 퇴직연금가입자들임.
 - 20대의 경우 운용자산의 35%를 TDF로 운용하는 반면 60대의 경우 운용자산의 13%를 TDF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은퇴연령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TDF는 연금자산운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TDF가 퇴직연금 디폴트 상품으로 지정되어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으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손해를 입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2008년 대부분의 펀드가 손실을 입은 가운데 TDF의 손실이 평균 -22.5%에서 -28%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S&P 500 인덱스 펀드의 손실(-3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림 3〉 연령별 TDF 자산운용 활용도



자료: Morningstar(2016), “2016 Target-Date Fund Landscap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5), “2015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 이에 따라 TDF의 투자원칙에 대한 일관성 부족, 펀드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됨.
 - 똑같은 목표시점을 설정한 TDF들 사이에도 주식편입비율이 적게는 25%, 많게는 75%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던 TDF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음.⁸⁾
 - 이 과정에서 TDF 펀드의 구성과 관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연금자산의 손실 위험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 노동부는 TDF의 특징과 내재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2010년 적격디폴트 투자상품제도(QDIA)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구체적으로 QDIA로 지정된 펀드의 목적과 전략, 과거 성과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QDIA로 지정된 상품이 TDF인 경우 TDF의 자산배분전략, 특히 글라이드 패스에 대해 기술하고 TDF가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의 연령대와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8) Arnerich Massena(2011), “Target-Date Funds: Are they hitting the target?”.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에도 대표상품제도와 자동투자옵션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직접 자산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에서 최적의 연금자산운용을 위한 TDF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이 과도하게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2014년 76.5%)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구조하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에서 기인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대표상품이 지정될 경우 합리적인 은퇴자산 운용을 위해 TDF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TDF가 위험자산의 편입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대표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연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사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⁹⁾
 - 현행법하에서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가입자로부터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감독기관에서 적격성을 심사받은 소수의 디폴트 상품이 먼저 가입자에게 제시되는 방법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TDF를 포함한 대표상품에 대해 투자전략, 수익률, 위험지수, 수수료 등 대표상품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자는 TDF 자산 운용에 관한 철학, 원칙, 자산배분방식, 의사결정방식 등을 포함한 연금운용지침서를 마련하여 TDF가 이와 일관되게 운용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kiri](#)

9) 박희진(2015), 『국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방안』, 2015년 「퇴직연금 연구센터」 퇴직연금 정책연구 보고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브렉시트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부동산 펀드 환매 중단 조치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영국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브렉시트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개방형 펀드의 단기 유동성 부족 사태와 영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문제가 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펀드별 현금 유동성 보유 비중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수 있음.
- 2008년 금융위기와 2016년 브렉시트의 시장 충격은 근본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첫째, 영국 부동산 시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 위주여서 미국과는 달리 부동산 담보 구조화 상품에서 비롯되는 투자위험 확대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
 - 둘째, 영국 런던 시장의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거점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관련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은 고수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핵심 부동산 위주의 투자 전략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부동산 펀드 환매¹⁾ 중단 조치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영국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 주요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 조치가 있었음.
 - 푸르텐셜 산하 M&G 인베스트먼트는 44억 파운드(6조 6,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 거래를 중단했고, 스탠더드 라이트 인베스트먼트도 18억 파운드(2조 7,000억 원) 규모의 펀드 거래를 중단한 바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최근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어²⁾ 브렉시트 여파가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삼성생명 은 부동산 전문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각종 부동산 펀드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화생명·한화손보는 지난 2012년 런던 오피스 빌딩 등에 약 5,500억 원을 투자함.
- 동양생명도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와 함께 미국 휴스턴의 오피스 빌딩을 인수했으며, 현대해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시카고 건물 등에 약 840억 원 가량을 투입함.

■ 본고에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위험요인을 점검해 보고 향후 부동산 투자 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1) 펀드 환매 조치란 펀드 만기 도래 이전에 펀드의 수익률이나 현금 유동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중도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함.

2) 전자신문(2016. 8. 24), “부동산 큰 손, 보험사들, 보험보다 낫다”.

2. 부동산 투자의 종류 및 특성



■ 부동산 관련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브렉시트 사태로 환매조치가 일부 중단된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로 일컬어짐.

- 부동산 직접 투자는 투자자들이 직접 실물 자산인 건물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매매각에 따른 평가 차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로 정의함.
- 부동산 간접 투자는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에 따른 평가 차익보다는 부동산 자산 연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배당을 받는 투자 행위를 일컫음.
 - 부동산 펀드, 리츠(REITs),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됨.

■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금모집방식과 적용방식에서 다소 상이함.³⁾

-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며,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실물투자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 등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사업에도 투자함.

〈표 1〉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비교

구분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부동산 펀드	
	자기관리	위탁관리	CR(기업구조조정)	회사형	신탁형
근거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최저 자본금	7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해당 없음
자산관리	직접관리	외부위탁(자산관리회사)		외부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부동산 (총자산의 50% 이상 70% 미만)	부동산 (운용비율 제한 없음)
	총자산의 80% 이상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또는 현금			부동산 PF 대출, 부동산 신탁 수익권	

자료: 코람코(<http://www.koramco.co.kr>) 재구성.

3)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말하는 부동산 펀드는 리츠와 부동산집 합투자기구, 그리고 외국계 투자펀드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 리츠는 공개시장에서 자본(equity) 투자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함.
 - 최소 설립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됨.
 -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안정적 임대수익을 발생시키는 오피스와 상업시설 등에 장기투자하는 임대형 위주로 발전함.

3. 영국 부동산 펀드 환매 중단 조치 및 영향



■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속에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수익률 저하가 초래되었음(표 2) 참조).

-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투자안정보고서」⁴⁾에 따르면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지난 2016년 1분기에 60억 파운드가 급감해 지난 분기 대비 34% 하락세를 보임.
- 지난 20년간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평균 수익률은 5.4%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으나,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6년 1분기에는 3%대로 떨어졌음.

〈표 2〉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수익률

(단위: %)

구분	1987~2006 평균수익률	2006년	1987년 이후 최저수익률	1987년 이후 최고수익률	2015년 1분기	2016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수익률	5.4	4.0	3.8	7.3	4.1	3.9

자료: Bank of England(2016).

■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개방형 부동산 펀드⁵⁾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유자산 기준(Asset Under Management) 350억 파운드 규모로 영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7%를 차지함.

-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주식과는 달리 단기간에 현금화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환매 대응을 위한 현금보유 비중이 투자지표로서 관건임.

4) Bank of England(2016, 7),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 39.

5)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임.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펀드 만기도래 이전에 펀드의 수익률이나 현금 유동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중도에 자금을 회수하는 환매 조치가 가능함.

-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3대 상업용 부동산 펀드인 Standard Life(현금보유 비중 13%), M&G(7%), Aviva(9%) 등은 한꺼번에 쏟아진 환매요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현금보유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영국 부동산 펀드들은 자금 인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대다수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번 영국 부동산 펀드 환매 사태의 주원인은 개방형 펀드의 단기 유동성 부족과 영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인 것으로 보임.

-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라 지분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임.
 -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지분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매를 요청해 펀드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
- 영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런던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고평가된 시장으로 간주되어 왔음.
 - 브렉시트 여파로 대형 금융기관들의 본사 철수가 이어질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가세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 브렉시트는 시스템적인 위기 발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⁶⁾

-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 부동산 시장 구조의 차이점, 유럽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편차 등을 꼽을 수 있음.
 - 영국 부동산 시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 위주여서 부동산 담보 구조화 상품에서 비롯되는 투자위험의 확대 재생산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부증권이 결합된 파생상품(CDO) 위주의 시장으로 구조화 상품의 특성상 위험이 연쇄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 바 있음.
 - 이번 브렉시트 사태로 영국 런던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거점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런던 시장을 이탈한 상업용 부동산 수요를 흡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6) 김위대(2016. 7. 15), 「영국 부동산 시장 불안의 현황 및 전망」, 『마켓브리프』, 국제금융센터.

■ 이에 따라 이번 브렉시트 사태가 영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인 거래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 등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내다 봄.

-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Flight-To-Quality)이 강화되면서 영국이나 유럽 부동산 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핵심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진정되고 나면 유럽의 핵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가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4.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지역별로 제한적인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국내 보험회사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지역별 위험요인 등을 종합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영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지역의 투자자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주요 거점 지역의 핵심 자산에 대한 가치 투자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을 조언함.

■ 국내외적으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이전까지 국내 보험회사는 고수의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선진국 거점 도시의 안정적인 핵심 부동산 위주의 투자 전략이 요구됨.

-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개방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에 따라 환매 시점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의 시장 충격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들의 대체투자 일환인 부동산 투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선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안정적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핵심 부

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위험계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핵심 부동산 자산(Core Asset),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Value-Added Asset) 등 부동산 투자 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⁷⁾
 - 정부의 재무건전성 규제 제도 개선안⁸⁾에 따르면 상당수 부동산 관련 투자 위험계수가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경우 리스크 측정 기준의 세분화가 요구됨.
 -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6%, 투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9%를 적용기로 함.
- 추가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위험 측정 시 차주의 신용도뿐 아니라 담보대출 상환일정에 따른 현금흐름 및 부채상환가능비율(DSC) 등을 통해 리스크 측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개별 모기지 채권의 상환 스케줄 및 현금흐름 등을 상세하게 반영한 세분화된 위험계수 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kiri](#)

7) 박선영·이선주(2015),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험동향』, 2015년 겨울호(제76호), 보험연구원.

8) 2015년 5월 발표된 재무건전성 규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증권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12%의 일괄적인 위험계수를 적용했던 방식을 수정해 자산별(채권, 주식 등)로 위험계수를 구분하여 적용기로 하였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5. 8),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2. 보험제도 및 정책

1.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정원석
2.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김석영 김세중
3. 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정원석
4.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
5.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조용운
6.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7.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린 정성희
8.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 이정은
9.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Solvency II 개정의 시사점	변혜원 조영현
10.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이기형
11.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
12.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13.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준
14.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
15.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DCDS 운영사례	송윤아 마지혜
16.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김석영 이선주
17.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전용식 채원영
18.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
19.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정원석
20.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이기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정부는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 세제혜택 방식 전환은 연금저축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강화에 목적이 있음.
 - 소득공제방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연금납입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연금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므로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증가함.
-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세제혜택 변화가 연금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
 -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했음에도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금액이 변화하지 않은 반면, 저축여력이 크지 않으면서 세제혜택이 줄어든 중·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과 납입금액 모두 감소함.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
 - 이러한 결과는 세제혜택 방식 전환의 목표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제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금저축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 따라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이후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이 15%로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공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음.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정부가 2014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2%)로 전환하였음.

- 세제혜택 방식의 전환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¹⁾(이하 “연금저축”)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저소득층의 가입유인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세제혜택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세액공제율에 비해 낮은 한계세율²⁾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증가할 것임.
- 반면에 한계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감소할 것임.

■ 기존연구에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의 효과가 계층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었음.³⁾

- 저축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중산층은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함.

■ 본고에서는 2015년 국세통계연보⁴⁾를 이용해 세액공제 전환 이후 실제로 연금저축 행태가 어떻게 변

1)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업계에서 판매하며 신탁, 보험 그리고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

2) 소득세 한계세율표.

과세표준	한계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3)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2호.

4)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는 2014년 귀속분(출간연도의 전년도 귀속분) 국세통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세제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함.

- 국제통계연보 자료 중 소득형태가 비교적 동일하고 소득정보가 투명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이용하여 연금저축행태를 살펴보고자 함.
-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에는 GDP성장률, 가처분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세제혜택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세제혜택이 개인의 연금저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 학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음.

2. 연금저축 가입현황 및 특징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⁵⁾한데 반해 연금저축 가입자⁶⁾와 연금저축 납입 총액은 2014년 감소하였음(표 1) 참조).

- 소득공제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수는 2011년 1,554만 명에서 2014년 1,669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였음.
- 반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2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명, 비율로는 2.5% 감소함.
-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역시 감소세로 돌아서 2014년에 전년 대비 3,482억, 비율로는 5.4% 감소하였음.

5) 근로소득자 수와 더불어 연도별 GDP성장률(¹³년 2.9% → ¹⁴년 3.3%), 개인 가처분 소득(¹³년 1,495만 원 → ¹⁴년 1,524만 원) 등의 경제환경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부액 상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성장함.

6) 국제통계연보의 분류상 '연금저축 납입자'의 정확한 의미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저축을 납입한 자이나, 1년에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은 연금저축 가입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자'로 통칭함.

〈표 1〉 연도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총액

(단위: 만 명, 억 원)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자 중 연금저축 납입자			근로자의 총 연금저축 납입액		
	인원 수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수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 납입액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2011	1,554	-	-	218	-	-	54,224	-	-
2012	1,577	23	1.5%	237	19	9.0%	61,059	6,835	12%
2013	1,636	59	3.8%	241	4	1.3%	63,880	2,821	4.6%
2014	1,669	33	2.0%	235	-6	-2.5%	60,398	-3,482	-5.4%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연금저축 가입률 및 가입자의 평균납입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에서 선형적 예측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감소하였음.
 -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연소득 4,000~8,000만 원 소득계층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2014년 소폭 감소함.
 - 6,000~8,0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2013년까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가입률은 2.5% 포인트 하락하였음.
 - 4,000~6,0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3년 소폭(1.7% 포인트)하락한 이후 2014년 비교적 큰 폭(2.6% 포인트)으로 하락하였음.
- 특히, 연소득 2,000~4,000만 원 소득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2013년 2.5% 포인트, 2014년 4.5% 포인트씩 2년 연속 감소하였음.

〈표 2〉 근로자 소득수준 및 연도별 연금저축 가입현황

(단위: 이상~미만, 만 원)

구분	~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10,000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1	2.8%	158	25.0%	221	47.4%	270	60.8%	291	68.8%	315
2012	3.1%	164	24.5%	226	47.6%	278	61.9%	299	70.6%	321
2013	2.8%	181	22.0%	229	45.9%	279	61.1%	303	70.4%	324
2014	1.9%	102	17.5%	208	43.3%	275	58.6%	301	69.0%	320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연금저축행태에 대한 분석



■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 전환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음.

● 이는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 방식 전환으로 인한 가입유인의 변화와 함께, 저축여력에 따른 소비이연으로 인한 한계효용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여력이 충분하므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이 존재함.

●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세제혜택으로 얻는 수익률이 해당 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인 24% 이상에서 12%로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여타 금융상품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기존연구에서 예측한대로 큰 변화가 없음.

■ 연소득 4,000~6,000만 원의 소득구간에 있는 중산층의 경우 저축여력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줄어듦.

● 해당 소득수준에 있는 근로자는 저축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큼.

–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해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衣食住)관련 비용을 줄여야 할 정도로 현재 포기해야 하는 소비의 중요성이 클 수 있음.

● 또한, 이들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 적용 시 한계세율이 15% 수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2%로 세액공제혜택이 줄어든 것이 연금저축 감소의 원인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는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함.

■ 연소득 2,000~4,000만 원 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인해 세제상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증가하였으나 저축여력이 매우 적은 계층임.

● 동 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2014년에도 가입률 및 납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해당 소득계층

의 저축여력에 비해 세제상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음.

- 특히, 해당 소득계층에서도 한계세율 15%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소득 4,000만 원에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 유인이 감소함.
 - 연소득 2,000~4,000만 원 소득계층에서 2,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음.
 - 반면 4,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한계세율 15%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같은 소득구간에 있지만 세제혜택에 대한 반응은 상이할 수 있음.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경우 면세자의 비율이 높아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유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소득계층은 노후에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

4. 결론 및 제언



■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유인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늘어나지 않았음.

- 중산층의 경우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가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가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 도입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및 납입금액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 작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향후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면세자로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세제혜택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장은 세액공제 도입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추후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한 후 세제혜택과 연금저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탄력성 추정 등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kiri](#)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김석영 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함.
 -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점차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가격규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함.
-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률이 회사별로 차별화됨.
 - 또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금융개혁 초창기에 나타나는 보험료 변동은 금융개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금융당국은 제도적 안전장치로 소비자 편익 훼손 우려를 차단할 것임.
 - 금변 금융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임.
 - 보험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덤핑으로 인한 미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같이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는 것은 공정거래 및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로 차단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보험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가격규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함.

- 금융규제 개혁의 목적은 가격,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균형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성장·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보험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격규제는 완화되고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 초창기에는 경험 및 역량 부족과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체계 미흡으로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과 재무건전성까지 확보함.
- 보험산업 성숙기에는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시장 효율성과 혁신이 저해되고, 강화된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와도 균형이 훼손되어 규제 부담만 가중됨.

■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상품·가격 출현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여 온 명시적·비명시적 가격규제가 사라지고 보험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됨.
- 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작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적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이므로 가격규제 자율화는 소비자 보호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본고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를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 상품 및 가격규제 폐지의 영향



가. 금융개혁 이전의 상황

■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통제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가격 및 형태를 규제하여 왔음.

-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그림자 규제를, 예정위험률에 대해서는 안전할증 한도규정을 통해 보험료를 통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부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률차손실이 발생하여도 충분한 안전할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험회사들은 갱신했던 상품 위주로 판매함.
- 해약환급금, 부담보기간 등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이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와 같은 보험상품 규제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각 회사만의 강점을 살린 전문 보험회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모형을 가진 백화점식 보험회사로 성장해 왔음.

- 보험회사들은 가격 규제로 개별 상품 종목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특정 종목에 전문화하기보다는 모든 종목을 취급하는 전략을 추구함.
 - 종신보험의 이익으로 건강보험 상품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함.
- 자산규모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나는 회사들이 연금저축,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변액, 종신상품 등 동일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지 못하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손실보전을 위해 종신보험의 이익을 축소하지 못함.

- 실손의료보험은 값비싼 도수 치료와 비급여비 확대 등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2011년 이후 손해율이 120% 이상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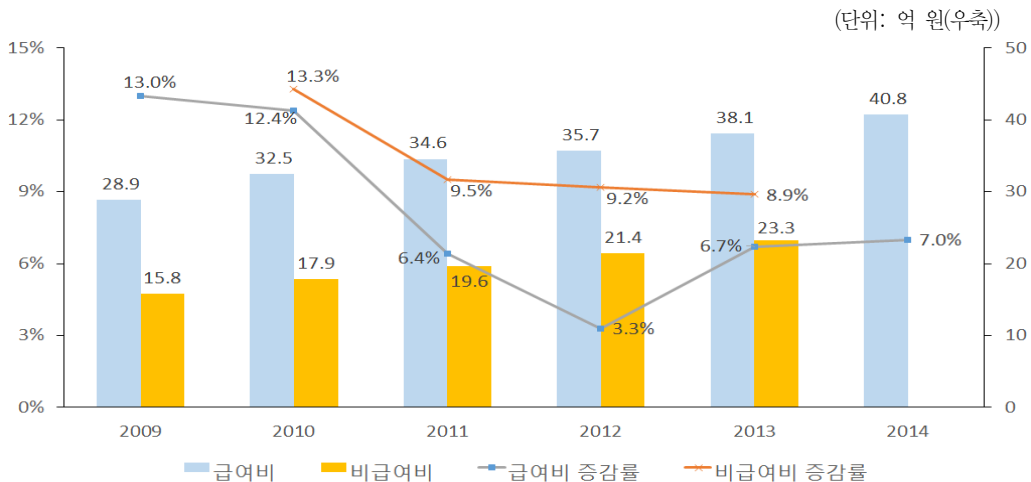
〈표 1〉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손해율	121.6%	126.3%	130.6%	137.6%
(보험금)	25,053억 원	29,938억 원	34,997억 원	41,149억 원

주: 손해보험 8개사 실적을 취합하여 작성함.

-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대상인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비가 급여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이후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다가, 2015년에야 비로소 인상함.
 - 2015년 주요 회사별로 보험료를 12~21% 인상하였으나 이는 급여비 누적증가율(2009~ 2014년) 41.1%, 비급여비 누적증가율(2009~2013년) 47.5%에 크게 미치지 못함.
 - 2015년까지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가격규제와 보험회사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적정보험료 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함.
-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보험 등의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 통합보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판매중지 혹은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았음.
- 종신보험 이익으로 건강보험 손실을 보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참조위험률 개정 시에만 종신보험 위험률을 하향조정하였음.

〈그림 1〉 급여비 및 비급여비 증감률 추이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 지속적인 손실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공급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 2000년 중반 보험회사들은 가격규제로 암보험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자 암보험 판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음.

나. 금융개혁 이후의 변화

■ 보험회사는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상품들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본격화됨.

-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러한 가격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출범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함.
- 보험다모아 등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기능 제고로 보험회사들은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인하를 통해서 시장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가격경쟁은 전 보험종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험다모아를 통해서 가격비교가 수월해진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가격이 15.4~17.6% 인하된 상품들이 출시되었으며, 이에 다른 회사들도 가격이 인하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어 가격자유화가 추구하는 가격경쟁이 본격화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가격을 인하한 온라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도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음.

〈표 2〉 A 생보사 단독실손의료보험 금융개혁 전후 가격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이전	이후	이후/이전	이전	이후	이후/이전
단독실손의료보험	12,470	10,300	82.6%	16,040	13,240	82.5%

주: 40세, 표준형, 전체담보, 비위험.

- 일부 보험회사들은 무(저)해약환급금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종신보험을 제공한다.

〈표 3〉 B 생보사 상품 가격 비교(종신보험, 40세, 납기 20년, 가입금액 1억)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기존상품	저해약환급금상품	비율	기존상품	저해약환급금상품	비율
종신보험	224,000	194,000	86.6%	186,000	161,000	86.6%

- 또한 해지환급금 산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 폐지상품을 개발하여 종신보험 가격인하를 유도함.

〈표 4〉 C 생보사 해지환급금 보증/미보증 상품 보험료 비교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보증	미보증	미보증/보증	보증	미보증	미보증/보증
UL종신	246,000	209,000	85.0%	209,000	174,000	83.3%
CI종신	328,000	288,000	87.8%	279,000	240,000	86.0%

주: 1) 가입금액 1억, 40세, 20년납.

2) UL종신은 통합유니버설/유니버설프라임종신보험 기준임.

■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인상은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회사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은 최대 30%¹⁾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자사 손해율과 시장경쟁을 고려해서 18~27% 인상함.
 - 2015년 보험료 인상 때 충분히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지속되었고, 이에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실손의료보험 가격인상은 지금까지 통제되어 온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들은 가격차별화를 통해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1)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혁조치에서도 점진적으로 위험률을 조정하기로 함.

■ 규제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인상하는 정상화 과정과 더불어 역으로 높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낮게 조정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개혁조치로 보험상품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됨.

- 청약, 약침, 추나요법 등 한의학 치료비를 정액 보장하는 한방보험이 개발되었으며, 결혼식 취소, 의상·예물 손상, 신혼여행 취소로 인한 각종 위약금 등 결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웨딩보험도 출시됨.
- 또한 노인이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상품도 개발이 활성화됨.
- 가격규제로 개발하지 못하던 위험도가 높은 상품들도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신상품이 소개될 것으로 전망됨.

〈표 5〉 금융개혁 이후 신상품 개발 및 가격 변화

구분		상품종류	비고
신상품 개발		한방보험, 웨딩보험, 유병자보험 등	규제 완화
가격	인상	의료실손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누적손실 현실화
	인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상품 규제 완화 및 시장경쟁 본격화

3. 금융개혁의 의미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임.

-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
- 시장경쟁을 통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약속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함.

-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고 해당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받음으로써,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금융개혁 초창기에 나타나는 보험료 변동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문화된 상품과 적정 가격을 통한 보험회사의 질적 경쟁은 양적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은 규제로 통제되어 온 보험료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는 시장경쟁이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될 것이 기대됨.
 - 보험종목별로 이익 실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의 강점을 살려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전문회사가 출현하여 보다 전문화된 상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질적 경쟁의 확대는 매출위주의 양적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축소로 나타날 것임.
- 금번 금융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임.
 - 기존의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서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로 규제의 틀이 전환됨.
 - 일부 상품에서 나타난 가격의 큰 변동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임.
- 보험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덤핑으로 인한 미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같이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는 것은 공정거래 및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로 차단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보험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에 의해서 보험회사들은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요구받고 있어 가격덤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기 어려움.
-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 금융개혁으로 소비자 보호의 방법이 금융당국의 가격규제에서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으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방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짐.
 - 보험회사들은 규제의 온실 안에서 양적 성장 중심으로 경쟁하다가 이제는 비바람이 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역량이 요구되어짐. [kiri](#)



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는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의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금융상품과 괴리 때문임.
 -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저해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올해 도입된 ISA에 대한 과세제도는 손실 시 기간통산, 투자상품 간 통산 그리고 비과세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등을 통해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함.
 - 수익과 손실의 통산 및 과세대상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는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납세자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하고 과세방식을 단순화하였음.
 - 미국 역시 금융투자에 대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득 과세의 합리화가 꼭 필요함.

1. 검토 배경

소득세 과세에 있어 기준이 되는 큰 원칙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같은 규모의 소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결산·분배 규정에 따라 해당 펀드를 환매하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듬해 펀드 환매 시점에 해외주식이 폭락하여 원금 이하의 자금을 수령한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 과세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이며,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는 일반인의 금융투자 참여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의 문제는 과거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금융상품 과세에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느끼는 ‘상식적인’ 과세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

그런데, 올해 정부가 ‘서민의 금융투자 활성화

를 통한 자산증식’을 위해 도입한 ISA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과세는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온 금융 과세상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ISA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과세방식이 우리 금융소득 과세 방식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방식과 문제점

우리나라 국세청은 금융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³⁾ 여기서 이자소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타인에게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⁴⁾, 배당소득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⁵⁾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주식거래차익 등 자본이득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국내주식투자 혹은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생상품 투자이익은 소득세법상 정의(혹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해왔으나 개인투자자에 한해 2016년부터는 KOSPI 200 선물·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세율 5%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⁶⁾

1) 오윤·문성훈(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1-1, p. 77~116.

2) 정운오·전병욱(2010),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6-2, p. 261~307.

3) 국세청(2015),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4) 소득세법 제16조.

5) 소득세법 제17조.

6) 소득세법 104조 제1항.

두 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⁷⁾의 경우 국내주식투자자⁸⁾로 인한 매매차익을 제외한 모든 투자이익(이자, 배당, 파생상품 및 채권 매매차익, 해외주식 매매차익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이상 결산한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⁸⁾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주식 직접투자⁹⁾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그리고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올해부터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제도로 인해 한 사람당 투자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이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⁹⁾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기구는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여 설령 투자자가 이를 환매하지 않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독립된 실체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기투자 시 첫해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에는 매매차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각 연도별 이익과 손실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펀드에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¹⁰⁾을 개정하여 이자·배당소득은 매해 결산·분배하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유보하였다가 환매 시 일괄과세가 가능하도록 과세방식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하에서도 환매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매해 결산을 통해 납세한 이자·배당소득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합리한 과세의 또 다른 예로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A, B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기구 A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집합투자기구 B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모두 고려하면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세 시에는 손실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 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불인정은 비단 집합투자기구 간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와 예·적금 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방식은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 논리상으로는 개인 혹은 법인 과세 시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

7)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8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17.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할 때 금융소득이라는 동일한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는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이한 과세방식과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비롯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한 과세방식 등으로 인해 납세당사자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득 과세의 복잡성은 일반 국민의 금융투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 ISA 투자 시 금융소득 과세

정부는 올해부터 서민의 자산증식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의 기능상 특징은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눈에 띄는 금융소득 과세상의 특징은 5년 이후 만기수령 시 최대 25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기간 간 그리고 서로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통산은 물론 예·적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역시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금융소득에 관한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ISA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은 앞서 언급한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해외의 금융소득 과세방식

우리나라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투자상품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일본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루었다. 2004년부터 추진된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단순화, 균등화, 금융소득 간 손익통산범위 확대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골자로 추진되었다.

과세방식의 단순화 및 균등화는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차익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 세율을 20%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손익은 물론 주식과 채권 간, 주식과 배당 및 채권 이자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해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금융소득과세일체화는 지난 10년간 점진적 이지만 치밀하게 추진되어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20% 단일세율과세 등 목표했던 개혁의 대부분을 이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합리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같은 해에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하며, 당해 순손실이 발생한 다음 해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최장 8년까지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투자 시 금융상품 간 그리고 투자기간 간 손실과 이익의 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손실 시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ISA에 대한 과세 형태는 앞서 언급한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ISA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금융소득 과세 개선은 세수 감소, 투자자 간 납세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데, ISA도입은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금융소득 과세가 담아야 할 많은 부분을 반영한 ISA 과세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kiri](#)

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형태와 특징을 불문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 인해 과세 시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이전인 이자·배당 위주의 금융상품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구축해 놓은 과거의 금융과세체계가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2011년 한국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도입했으나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을 경우 조정이 진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최근 여야가 사망·중증 상해 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사망·중증 상해 사고 이외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한국이 과실책임의 근간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국가들은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후에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호주 등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함.
 - 노폴트 PCI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의료인·의료기관의 명성 보호, 의료분쟁 관련 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
- 1975년 노폴트 PCI를 도입한 스웨덴은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음.
 - 노폴트 PCI 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의 인구당 보험료 부담은 13,959원(2014년 기준)임.
 - 월드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노폴트 제도에 따른 비용은 미국 과실책임 제도의 1/10 수준임.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스웨덴 노폴트 PCI 사례를 고려해 아래와 같은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폴트 PCI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 노폴트 PCI 상품 개발
 -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PCI 보험 가입 독려
 -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 보험회사들의 노폴트 PCI 공동인수 방안 검토

1. 검토 배경

현재 한국의 의료사고 보상은 과실책임 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실책임 제도는 피해를 야기한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¹⁾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의료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어 2011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도입되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의료소송 대신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에는 분쟁조정 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진행될 수 있고,²⁾ 개인이 의료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³⁾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4년 피신청인의 의료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⁴⁾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여야는故신해철씨 사고를 계기로 2015년 재발의된 개정안⁵⁾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⁶⁾ 그러나 동 개정안은 사망 및 중증 상해에 대해서만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를 강제화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료사고 관련 제도개선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과실책임 제도하에서 의료인·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과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재정적 손해와 명예실추를 감수해야 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피하기 어려운 대립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 Patient Compensation Insurance)⁷⁾을

1) 의료과오 사고에서 과실의 본질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인데, 여기서 주의의무란 ① 위법한 결과발생의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견의무와 ②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음. 감용빈(2008),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오의 의미와 판단기준」, 『의료법학』, 9(1), p. 64 참조.

2)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8항 참조.

3) 2015년 접수된 1,311건 중 43.8%인 550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1617597669322> 참조).

4) 의안번호 9931(2014. 3. 28) 오세재 의원 대표발의.

5) 의안번호 17562(2015. 11. 3)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6) 중앙일보(2016. 4. 22), “신해철법·기술이전법·의료법, 맘만 먹으면 당장 처리 가능”.

7) 최근 출산 사고에 대해 노폴트(무과실) 책임이 강제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으나, 해외 국가들의 의료사고 노폴트 제도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이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노폴트 PCI란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의료인·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고는 의료사고 노폴트 PCI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과 과실 책임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체계 및 관련 보험시장을 비교해 노폴트 PCI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현행 국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폴트 PCI를 제안한다.

2. 스웨덴, 미국, 한국의 의료소송 현황

가.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노폴트 PCI 도입 이후 의료과오 소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Danzon(1994)에 따르면 스웨덴이 노폴트 PCI를 도입한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7년 동안 스웨덴에서는 단 33건의 의료과오소송이 진행됐다. 또한 최근 발행된 스웨덴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통계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⁸⁾

스웨덴에서 의료소송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료시설의 과실 여부에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8) Danzon(1994), "The Swedish Patient Compensation System: Myths and Realiti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4, p. 457; 스웨덴 법원 홈페이지 (<http://www.domstol.se/>) 참조.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 PCI로부터 보상받은 피해자들이 굳이 소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나. 미국

미국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의료소송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학계에서 노폴트 PCI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나 2005년 기준으로 노폴트 PCI 제도를 도입한 주는 없다.⁹⁾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과도한 의료소송으로 인해 의료인·의료기관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진료(위험 시술 기피, 고위험군 환자 기피, 고위험군 전공 기피), 과도한 보험료 부담, 사고 위험이 높은 과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 의료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인·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가격을 폭등시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도 미국 의료과오 손해배상책임 관련 비용은 556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1인당 20만 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¹⁰⁾

9) Budetti and Waters(2005), "Medical Malpractic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Report*, p. 15 참조. 미국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일부 자동차보험에 노폴트 제도가 도입된 사례가 존재함. Studdert and Brennan(2001), "No-Fault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ies", *Health Law and Ethics*, 286 (2) 참조.

10) 1 USD = 1,140원(bloomberg 2016. 4. 28), 2010년 미국 인구는 3억 천만 명(미국 센서스 자료 이용), Mello, Chandra, Gawande and Studdert(2010. 9),

미국 법원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 만 명당 의료 소송 건수는 2005년 현재 2.7건, 전체 의료과오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한 비율은 22.7%, 손해배상액 중위수는 40만 달러였다.¹¹⁾

World Bank(200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과실책임주의 시스템에 수반되는 비용은 스웨덴 노폴트 시스템 운영비용의 10배 수준이다.¹²⁾

미국은 이와 같이 과도한 의료소송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별로 대체적 분쟁해결(ADR¹³⁾) 제도를 도입했고¹⁴⁾ 의료분쟁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서영(2012)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ADR을 법으로 제정해 도입했고, 일부 주들은 소송에 앞서 ADR 제도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시도 절차를 의무화해 과도한 소송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한국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의 의료소송 환경은 미국과 매우 달라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의료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조정 제도가 강제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료기관들이 중재에 참여해야 할 유인동기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소송 및 의료과오 손해배상액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 현재 중재원의 합의·성립 건수는 551건, 총 금액은 46억 원이었다. 따라서 평균 합의금액은 843만 원이다.¹⁵⁾ 국내 민사소송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민사소송 통계연보는 소송 건수, 원고승, 원고일부승¹⁶⁾ 등의 건수정보를 제공하고 소송가액은 전체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년 동안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이고 이 중 원고승이 14건(1.45%), 원고일부승이 287건(29.9%)이었다. 이는 전체 민사소송(1심)에서 원고승이 49.9%, 원고일부승이 7.5%¹⁷⁾라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과오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민사소송에 비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도에 원고승, 원고일부승 건수의 손해배상액이 평균 834만 원이라 가정하면 의료과오 소송을 통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2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¹⁸⁾

“National Costs Of The Medical Liability System”, *NIH Public Access*, 29(9), pp. 1569~1577 참조.

11) 미국 법원 통계를 근거로 추정. <http://www.bjs.gov/> 참조.

12) World Bank(2004), “Medical Malpractice Systems around the Globe”, *World Bank HNP Report*, p. 19 참조.

13)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4) 이서영(2012),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비교법제연구』, 12-20-②, 법제연구원.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5), 『2014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참조.

16)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건.

17) 2014년 민사 1심 처리 건수는 329,385건이고, 이 중 원고승과 원고일부승은 각각 164,470건, 24,698건임.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1심임(『2014 법원통계연보』 참조).

18) 동 금액은 추정값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법원통계연보의 소송가액 평균 추정값은 300만 원 내외이므로 동 값이 사용될 경우 추정값이 더 작아짐. 소송가액에 소송비용 등이 추가되면 실제 배상액은 300만 원보다 더 커질 수 있음. 평균 합의·성립금액은 소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소송비용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음.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금이 중재원의 조정·중재에 대한 배상액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되므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중재원의 조정·중재 금액, 민사 의료과오소송의 손해배상액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 관련 비용의 최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보면 연간 872억 원이고 이는 국민 1인 당 853원 수준이다.¹⁹⁾

3. 스웨덴, 미국, 한국의 관련 보험시장 비교

가. 스웨덴²⁰⁾

1975년 이전까지 의료사고 과실책임 체계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제도를 운영하던 스웨덴은 동 체계가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75년 노폴트 체계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노폴트 환자보상보험(PCI)을 도입했다.

초창기 스웨덴 PCI는 지방 의회들이 보험회사 컨소시엄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공적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사적

의료기관들이 유사한 형태의 노폴트 보험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²¹⁾

스웨덴의 의료사고 피해자는 회피 가능했던 손해, 의료기기 고장 또는 의료기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해, 진단 지연 또는 오진에 의한 손해, 치료 시 발생한 감염에 인한 손해, 실수로 인한 상해, 투약 오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료인이 가입한 PCI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스웨덴 PCI는 보험금 청구가 사고발생 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이루어지는 경우, 손해가 공제 등 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 치료 시 합병증 기왕증 등으로 인해 피해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 원인이 환자에게 있는 경우, 의약품이 적절하게 처방되었으나 의약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²²⁾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PCI의 장점은 의사·의료기관의 과실 입증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의료소송을 줄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nzon(1994)에 따르면 1992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의료과오 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40%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60%는 사업비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데 비해, 스웨덴 PCI의 경우에는 18%가 사업비로 지출되고 나머

19) 1인당 의료사고 관련 배상액 = [보험료(371억 원) + 중재원 조정·중재(46억 원) + 민사소송 손해배상(13억 2,772만 원)] / 50,424(천 명) = 853원

20) World Bank(2004), "Medical Malpractice Systems around the Globe", *World Bank HNP Report*; Bogdan(2011), "Medical Malpractice in Sweden and New Zealand", *Center for Justice Democracy White Paper* 참조.

21) Danzon(1994), "The Swedish Patient Compensation System: Myths and Realiti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4, pp. 453~466.

22) <http://lof.se/patient/om-forsakringen/> 참고.

지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2014년 현재 스웨덴 PCI의 1인당 보험료는 98SEK (13,959원) 수준이다.²³⁾

Studdert 외(1997)²⁴⁾가 콜로라도 주와 유타 주 1992년도 소송 자료에 스웨덴 노폴트 PCI를 적용한 결과 기존 과실책임주의 체계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30~60%의 추가적 비용을 들여 6배 이상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PCI의 장점은 의료과오소송으로 인해 의사·병원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손해, 명성 실추, 소송 관련 업무 증가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PCI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 과실책임 체계에 따른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PCI를 통한 의료사고 보상에 불만이 있는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의료인·의료기관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징계 심사는 의료책임위원회(medical responsibility bo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나. 미국²⁵⁾

몇몇 국가들이 노폴트 PCI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의료인·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²⁶⁾

한국·미국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의료과오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3년 현재 미국 의료과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85억 달러였고²⁷⁾ 이를 1인당 보험료로 계산하면 30,623원 수준이다.²⁸⁾ 이처럼 미국의 의료과오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큰 이유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한국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사소송 및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과오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인·의료기관은 민간 보험회사 또는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²⁹⁾에 가입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국내

23) 1SEK = 142원(bloomberg 2016. 4. 28). <http://lof.se>. 연차보고서 참조.

24) Studdert 외(1997), "Can the United States afford a "no fault" system of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0.

25) World Bank(2004); Bogdan(2011) 참조.

26) <http://malpractice.laws.com/burden-of-proof/burden-of-proof-overview> 참조.

27) III, The Insurance Fact Book 2015 참조.

28) 1USD = 1140원(bloomberg 2016. 4. 28), 2013년 미국 인구 31,757만 명.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371억 원 수준인데, 이를 2014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보험료는 736원으로 미국의 1/40 수준이다.³⁰⁾

4. 시사점

가. 국내 소송 환경하에서 피해자 구제의 한계점

한국에서 의료소송 진행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진료기록 관리 부실, 전문가 의견 확보의 어려움,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기재에 대해 면허 취소, 형사입건과 같이 강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국내에서 진료기록이 허위 기재되거나 조작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³¹⁾

미국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경제주체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기재와 같은 고의적인 범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³²⁾

한국과 미국의 의료소송 관련 환경 중 또 다른 차이점은 전문가 의견 확보의 어려움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이 의료사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개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에 비해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³³⁾

마지막으로 의료소송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필요로 해, 소송 진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 비용 처리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이다.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판결 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

29) 미국은 의료과오 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 한국은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국가별로 용어에 차이가 있음.

30) 2014년 한국 인구 5,042만 명(통계청) 이용. 보험료는 보험개발원, 2015 손해보험통계연보 참조.

31) YTN(2016. 2. 26),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 챙긴 간호조무사 일당 검거”; 연합뉴스(2015. 9. 17),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 수령”; 서울신문(2015. 6. 29), “낙태 중국인 유학생 뇌사 빠뜨리고 진료기록 조작·CCTV 삭제한 의사”; MBN뉴스(2016. 2. 25), “고3 수험생 낙태수술 중 사망...기록 조작한 비양심 의사” 등 참조.

32) 징벌적손해배상은 미국·영국과 같이 관습법 체계의 손해배상 항목 중 하나로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전보적손해배상액¹⁾을 넘어서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Casamassima(1994), “Spoilation of Evidence and Medical Malpractice”, *Pace Law Review*, 14(1) 참조.

33) 일요신문(2016. 3. 18), “의료소송은 백전백패? 희귀병 앓던 소녀, 그날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등 대중매체 자료 참조.

소송에서 이러한 비용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³⁴⁾

또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적인 변호사 수입료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수입료는 실제 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에도 실제 변호사 비용이 승소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변호사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전부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적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고용해 장기간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의료소송을 수행하기 수월한 환경에 있어 피해자 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노폴트 PCI 도입 관련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의료분쟁 조정 제도 도입은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의료인·의료기관의 과도한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소송 환경이 피해자에게 불리

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분쟁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최근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사망·중증 상해 사고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도의 사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한 수준의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는 반면, 관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방어 진료와 의료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도입한 노폴트 PCI 제도는 피해자 구제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해외 노폴트 PCI 사례를 고려해 스웨덴 “환자부상법”³⁵⁾과 같은 형태의 노폴트 PCI 관련 법제 마련, 해외 노폴트 PCI 상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한 보험상품 개발, 노폴트 PCI 보험 정착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노폴트 PCI 가입 독려, 노폴트 PCI 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의료인·의료기관에의 보험료 일부 지원, 노폴트 PCI 보험회사 공동인수와 같은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ri**

34) 법원행정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p. 17 참조.

35) 스웨덴 “Patient Injury Act” 참조(<https://sv.wikipedia.org/wiki/Patientskadlagen>).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조용운 연구위원

요약

-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이 있었음(법 제45조의 2).
 -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기초로 가격 및 양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자료 확보 및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
 - 동 개정법은 환자의 알권리 확대 및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주요 목적임.
- 요양기관이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실제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그 가격이 요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소비자는 비급여진료비용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음.
 - 소비자는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가격이 높더라도 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치료를 하려할 것이므로, 요양기관은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그 내역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특히, 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임.
 - 경증질병 소비자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참고 지내거나 자가 치료를 하고, 낮으면 의료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나 이제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 과잉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됨과 동시에 과다의료이용 및 공급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봄.
 -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실손의료보험은 중대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 사전 심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경증질병 치료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요양기관별 가격자료가 확보되고 코드가 표준화되면 소비자의 과잉이용을 유인하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비급여진료행위 코드표준화가 병행되고, 중대질병은 물론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도 공시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이 있었음(법 제45조의 2).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2009년 「의료법」 개정)를 도입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 요양기관이 비급여서비스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였으나 고지내용 및 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았음.
- 그 후 표준화, 요양기관 내 책자 비치 장소 지정 및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2015년 12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시행)이 있었음.
- 이에 요양기관이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한 것을 보완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조사·분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된 자료를 기초로 가격 및 양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자료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논리임.
- 의료소비자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많은 정보를 기초로 급여서비스 가격을 정해 놓고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도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시장 가격의 왜곡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 비급여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의 왜곡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및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 본고는 개정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함.

- 공·사건강보험이 의료수급에 주는 영향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개정법의 중증도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함.

2.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서비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¹⁾



가. 중대질병

■ 일반적으로 중대질병 치료서비스 가격은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²⁾

- 소비자는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더라도 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치료하고자 할 것임.
- 따라서 중대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수요 수준은 주로 질병발생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가격이 수요 측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비급여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의료수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중대질병이 발생한 소비자는 가격에 관계없이 의료이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으로 치료비용이 적어진다고 해서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중대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은 주로 공급 측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요양기관은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을 실제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중대질병 치료서비스 수요량은 가격에 따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수요량을 의식하지 않고 비급여의료서비스 공급가격을 높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요양기관은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요양기관은 비급여서비스 진료비용의 지급자가 소비자가 아니고 실손의료보험자일 경우 그 가격을 더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요양기관은 급여서비스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자가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격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로 치료할 가능성이 있음.

1)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 부분은 가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비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함.

2) 중대질병치료서비스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경증질병에 비해 적다고 알려져 있음. 본고는 편의상 중대질병의 치료가격에 의해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상황을 가정함. 경증질병의 경우는 탄력적 상황을 가정함(박윤형·정우진 역(2010), 『보건의료경제학』, 의료정책연구소).

■ 그러나 비급여서비스 가격이 공급 측에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 않아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음.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요양기관은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높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자는 그 실태의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

나. 경증질환

■ 경증질환 치료서비스 수요량은 공급가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의료서비스의 공급가격이 높으면 개인은 경증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참고 지내거나 자가 치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낮으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수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질병당 기대의료비지출액³⁾을 초과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경증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의 가격과 양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중증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은 경증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을 실제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음.
 - 다만, 경증질환의 경우 요양기관은 수요량이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량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함.
- 보험가입자의 초과수요에 대해 요양기관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증질환의 경우에 소비자는 합리적 수요를 위해 사전적으로 가격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할 가능성이 있었음.

- 한편, 보험가입자는 초과수요를 하여 초과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자는 그 양과 비급여진료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음.

3)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actuarially fair rates)는 질병당 기대의료비지출액에 발생률을 곱하여 산출함.

3.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별 지급보험금 추이



■ 이론적으로 비급여서비스의 공급가격과 수급량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비급여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비급여의료비가 2009년 15.8조 원이던 것이 2013년 23.3조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2% 증가하였음.
- 이는 급여서비스 진료비가 동 기간 동안 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⁴⁾

■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급증하고 있으며 위험보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표 1〉 참조).

- 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전년 대비 17.0% 증가한 5조 3천억 원을 지급하였음.
-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액이 위험보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22.3%, 2014년에는 7.8% 만큼 상회하였음.

〈표 1〉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별 지급보험금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

연도	위험보험료	총지급보험금	입원비중	외래비중	처방약비중
2011	3.1	3.5(-)	72.4	25.8	1.7
2012	3.6	4.0(14.5)	70.4	27.8	1.8
2013	4.0	4.5(13.3)	68.4	29.7	1.9
2014	4.9	5.3(17.0)	66.0	31.9	2.1

주: 괄호 안은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중 입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비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함.

- 지급보험금의 구성비를 보면 입원비가 2014년 66.0%를 차지하고 있음.
- 요양기관이 산정한 중대질병에 대한 비급여서비스 가격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4)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왔으나 보장률이 62% 선에서 머물러 있게 됨.

■ 실손의료보험의 외래 지급보험금 구성비가 증가추세에 있어 외래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11년 외래 지급보험금 구성비가 25.8%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1.9%를 기록함.
- 최근 경증질병에 대한 외래비급여서비스 진료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요양기관마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공 · 사건강보험자의 대응 및 한계



■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서비스 부분에서 중대질병과 경증질병의 수요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는 소비자 본인부담률을 산정하고 있음.

- 중대질병의 경우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하므로 일부본인부담률을 낮게 부과하고, 경증질병의 경우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높게 부과하고 있음.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대질병 입원에 대한 일부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5%이고, 경증질병입원은 20%임.
- 외래의 경우 일부본인부담률을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⁵⁾하고 있지만 중대질병인 희귀난치질환(10%), 암(5%), 중증화상환자(5%) 등에 대해서는 낮게 책정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⁶⁾

- 보험가입자와 실손의료보험자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 가격 및 공급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청구된 의료비를 무조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⁷⁾

5) 지역에 따라 종합병원 45~50%, 병원급 35~40%.

6) 비급여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이에 대한 가격 및 양의 관리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자료의 집적을 하고 있지 못함.

7) 상환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불편과 실손의료보험자의 과다관리비용을 유발하는 체계임. ①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면, ② 피보험자가 진료비 전액을 마련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③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환 받는 방식임. ④ 보험회사는 수작업으로 면부책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함. 실손의료보험은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진료행위 적정성 평가의 기회조차 없어 과잉공급 및 부당청구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임(조용운·김경환·김미화(2014),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협력 방안』, 보험연구원).

- 실손의료보험자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자료 확보와 동시에 비급여서비스의 의료비 심사 및 진료 행위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은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함.

- 실손의료보험은 자료 부족으로 과잉의료이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표준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중증질병과 경증질병의 구분 없이 비례본인부담률(coinsurance)과 건당 공제액(deductible) 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고 있음.
 - 입원에 대해서는 질병 혹은 상해당 비례본인부담률⁸⁾ 제도를 적용하고, 외래와 처방약에 대해서는 건당 비례본인부담률 및 건당 공제액 제도를 적용함.
-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이용을 유발하는 경증질병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보장제한 등이 필요할 것임.

5. 시사점



■ 첫째,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비급여진료비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임.

- 그 동안 각각의 요양기관이 주요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일괄적으로 비교공시를 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소비자가 비급여서비스 전체에 대해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요양기관 간 경쟁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둘째,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

8) 입원: 질병/상해당 20%(20% 해당액이 200만 원 이하에만 적용).
 외래: 병의원 종별로 건당 1만 원, 1.5만 원,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처방약: 건당 0.8만 원과 20% 중 큰 금액.

- 소비자는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셋째, 요양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그 동안에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에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실질적 심사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음.
- 중대질병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가격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사전적 심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넷째, 실손의료보험은 경증질병 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초과수요 관리를 위한 상품 운영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향후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요양기관별 가격자료가 확보되고 코드가 표준화되면, 소비자의 초과수요를 유인하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⁹⁾

■ 마지막으로, 비급여대상과 임의비급여대상¹⁰⁾의 구별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그 동안 급여대상과 그 외의 의료서비스 간의 구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¹¹⁾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비급여대상과 임의비급여대상의 구별은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비 내역을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았음.
- 임의비급여대상은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은 임의비급여대상에 대해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 앞으로는 구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임의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비급여진료행위 코드표준화가 병행되고, 중대질병은 물론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도 공시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kiri](#)

9) 이것은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의 표준화를 전제로 함.

10) 대체로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서비스, 별도 진료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 식약청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심사·평가에 따라 반려된 신 의료기술 등 미등재 의료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됨. 주로 효과가 입증된 의료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

11)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전액본인부담대상과 요양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당한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기초를 반영하여 보험, 금융투자,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 강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하여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고된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1. 검토배경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령까지 제정을 마치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2010년 3월¹⁾부터 시작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논의가 대장정을 마치고 작년 7월 법률로 제정됨.
-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8일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제정절차가 마무리 됨.²⁾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뿐 아니라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며, 장기간의 논의과정이 말해 주듯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고는 기존 보험업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함.
- 특히, 이사회 기능 강화, 업무집행책임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을 위주로 살펴봄.

1) 금융위원회는 2010년 3월 금융권역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음.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3.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의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³⁾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그 동안 개별 금융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의 법적 일관성을 제고함(표 1) 참조).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보험, 금융투자,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 강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를 들어, 기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에까지 적용하여 규제수준을 격상시킴.
-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변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임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도입 등으로 이루어짐.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지배구조 관련 조항인 제3장 제1절(보험회사 임직원) 및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삭제되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대체됨.⁴⁾

〈표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의 겸직
제3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의장의 선임, 운영(지배구조내부규범),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관리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5장 대주주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자격심사, 시정명령, 의결권 제한
제6장 소수주주 권리행사 특례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행 강제금
제8장 보직		권한의 위탁, 공시
제9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3)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자산 3천억 원 이상)과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에 적용됨. 단, 자산 2조 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라도 운용자산이 20조가 넘는 경우에는 적용됨(시행령 제6조 제3항).

4) 보험업법에서 지배구조 관련 조항인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4조(임원의 겸직 제한),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16조(감사위원회),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각 삭제됨.

가. 이사회와 권한과 독립성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금융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 수⁵⁾가 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함.⁶⁾
-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3년⁷⁾이 지나야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늘려 자격요건을 강화함.
 - 또한 사외이사의 최대임기를 해당 금융회사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함.
- 강화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 인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축소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⁸⁾을 확대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금융회사가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그 내용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점도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임.

- 지배구조내부규범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아야 함.
-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⁹⁾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여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였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¹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며, 운영도 사외이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함.

5) 현행 보험업법은 1/2 이상.

6)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7) 현행 보험업법은 2년임.

8)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시행령 제8조 제4항).

9)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 변경, 예·결산,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CEO 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10) 단, 보수위원회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함.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 중 한 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때 추천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
 -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¹¹⁾로 제한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임원의 범위에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¹²⁾를 명시하였음.
- 업무집행책임자 중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¹³⁾를 집행하는 사람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별도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권한에 비례한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1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못하며,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12)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13)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업무, 자산운용 등 위험관리업무(시행령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하였음.

-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함.
- 위험관리기준은 자산운용이나 업무 수행 및 각종 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하여,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¹⁴⁾하도록 하여 직무에 따르는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산운용 등 주요 업무는 겸직을 금지하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이들의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며, 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이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14) 자산 5천억 미만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와 자산 1천억 미만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 또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직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하나(법 제25조 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 2항), 이때에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선임이 불가함(시행령 제25조 5항).

-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¹⁵⁾에 대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2년마다(필요 시 수시로) 심사함.
- 적격성 유지를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및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현행 보험업법은 진입 시에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조치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기타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법령 위반 정도가 과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금융관계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고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2008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배구조 기본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음.

15)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며, 순환출자의 경우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시행령 제27조).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¹⁶⁾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¹⁷⁾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감독에서 금융안정성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함.

● 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금융규제를 받아 왔으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낮은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권한이 확대되고 대주주에 대한 유지요건이 도입되는 등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도 주주와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야 함.

● 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 보험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여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키고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kiri](#)

16) BCBS(2010),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17)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법 중 은행법에만 금융시장의 안정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음.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린 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 본고는 보험부채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 보험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함.
 - 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 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
 -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함.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함.
- 이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짐.
 -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검토 배경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4 2단계 시행과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경영상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IFRS는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IFRS4 2단계로의 이행을 요구함.
 - 보험회사의 예상 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지급 능력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화가 추진될 예정임.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보험부채평가의 적정성을 보고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보험부채시가평가 시 미래 현금흐름 산출을 위한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 산출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
 - 이에 선임계리사의 보험부채 적정성 검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이에 본고는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험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의 변화



-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함.
 - 현행 국내 재무회계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함.
 - 보험부채원가평가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계약 당시의 가정¹⁾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

1)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함.

- 시가평가는 계약 당시의 가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한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²⁾는 보험부채원가평가에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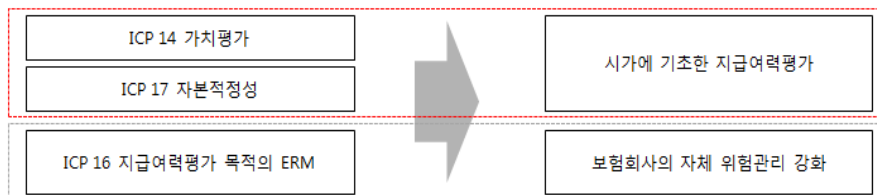
● 반면 국제보험감독자기구³⁾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함(〈그림 1〉참고).

● 국제보험감독자기구는 2014년부터 국제적 보험그룹⁴⁾에 적용하기 위한 보험자본기준⁵⁾을 개발 중임.

- 보험자본기준은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2017년 초안을 발표하고 2019년 최종기준을 발표할 계획임.

■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금융안정위원회⁶⁾와 국제통화기금⁷⁾을 통해 각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임.

〈그림 1〉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



■ 보험부채시가평가로의 전환은 보험부채 변동성의 확대를 의미함.

● 보험부채원가평가는 계약 당시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보험부채 크기가 정해짐.

2)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RBC 비율을 기초로 이루어짐. 이때 가용자본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재무 회계제도인 IFRS4 1단계에 기초하여 계산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함.

3)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4) 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5)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6)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7)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시가평가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평가 시점의 환경변화가 보험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3.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



-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 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
 - (검증 업무)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따른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기초서류 검증
 - 준비금, 잉여금의 배분·처분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 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보증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의 적정성을 검증
 - (검증의견서 제출) 검증의견서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선임계리사의 객관적 검증과 의견제시를 위해서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에는 다음과 같이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음.
 - 선임계리사의 의견서를 받은 이사회 등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 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함.

- 현재는 계약 시 보험부채의 크기가 확정되므로 선임계리사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 향후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보험부채시가평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가정들을 설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부채가치를 평가해야 함.
 -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해약률, 무위험 수익률, 유동성 프리미엄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이때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함.

4. 시사점



■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짐.

- 보험부채 가치의 변화는 부서별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서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보고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아울러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현재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 계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무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선임계리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시가평가는 산출가정과 평가방법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선임계리사는 감독당국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 준수 및 관리 여부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야 함.
 - 가정 결정 및 준비금 산출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 요구 시 제출
 - 준비금 평가와 관련한 가정 관리의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가 감독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iri](#)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요약

-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을,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음.
 -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4.6%(2013년), 민영보험 5%(2014년)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하여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음.
 -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함.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행소송을 허용
-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공·사보험의 부당청구¹⁾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2013년 기준 3,838억 원임.
 -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기준 6,415억 원임.
-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점차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의 특성상 관련 기관의 규제 및 감시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사보험은 부당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보조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공·사보험 신고포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공·사 구분 없이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2.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²⁾

1)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허위·부정청구, 민영보험에서는 보험사기로 표현하며, 본고에서는 편의상 부당청구라 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시행령 제75조.

- 국민건강보험의 신고제도는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제도와 요양기관 관련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있음.
 - 수진자 등이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2001년,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는 2005년에 도입됨.
- 수진자 및 그 외 일반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함.³⁾
- 요양기관 관련자⁴⁾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10~30%까지의 금액⁵⁾을 최고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최고한도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⁶⁾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지급,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⁷⁾

■ 그러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3년 기준 3,838억 원이며 이 중 신고에 의한 환수결정액이 3.6%(138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표 1〉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 내역

(단위: 천,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449	548	1241	1,239	2,522	53.9
가입자 환수결정액	1,186	1,122	1,201	1,167	1,263	1.6
무자격 가입자 진료 환수결정액	33	28	54	113	53	12.6
환수결정액	1,668	1,698	2,496	2,519	3,838	23.2

자료: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4. 7. 2),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3) 상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참조.

4)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5)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함.

6)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2011년 9월 제정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2013년 기준 4.6%에 불과함.
 - 신고로 인해 확인된 부당청구금액은 2013년 기준 138억 원이고, 포상금은 6.4억 원임.
-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2013년 기준 982만 원으로,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전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2,878만 원, 일반의 1억 186만 원, 약사 4,924만 원, 간호사 3,751만 원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조직의 화합과 충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내부신고자의 적극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수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 평균은 2013년 기준 2만 5천 원으로,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표 2〉 국민건강보험 신고포상금 내역

(단위: 건, 천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진자 신고	신고 건수/포상 건수	5,689/1,277	6,873/1,171	6,233/1,074	8,235/1,099	7,768/968
	1인당 포상액	24	26	21	21	25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건수/포상 건수	159/62	149/73	190/81	169/77	159/63
	1인당 포상액	3,477	5,018	9,378	8,241	9,820

자료: 윤종철·권오성·임성근·김성근(201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나. 민영보험

■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포상기준은 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에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적발금액(보험사기 관련 환수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발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함.

- 포상금은 회원사별 적발금액의 비율에 따라 회원사가 부담하여 협회에 납입함(생명보험 기준 제11조, 손해보험 지침 제9조).
- 신고인이 내부신고자 또는 모집종사자인 경우, 손해보험은 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1.5배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생명보험협회는 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 원)에 불과함.

- 2009~2015년 기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6,125건,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 원임.
- 지난 6년 동안 건당 포상금액은 56만 원에 불과한데, 이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민영보험 부정청구 신고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도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금전적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신고에 의한 부정청구 적발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2014년 기준 5%, 포상금액은 건당 48만 원에 불과함.

■ 더불어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별도 법규가 없어 공익 신고자로서의 지위 인정이나 신분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음.

- 보험업계 자체 지침을 통해 신고자 신상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생명보험 기준 제3조, 손해보험 지침 제3조).

〈표 3〉 민영보험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내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포상금(억 원)	1.4	3.1	7.6	17.2	23.2	18.7	19.8
포상 대상 건	166	334	1,171	2,802	4,080	3,852	3,720
건당 지급금액(만 원)	82	93	65	61	57	48	53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억 원)	—	—	—	—	345	376	—
보험사기 적발금액(억 원)	3,367	3,747	4,237	4,533	5,190	5,997	6,54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 미국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 미국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가 부정청구 적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하에서는 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를 권장·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대신해 일반인이 부당청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환수금의 15~35%를 받을 수 있도록 함.⁸⁾
 - 부당청구금지법⁹⁾은 민간부문이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당청구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또는 당사자적격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31 U.S.C. § 3730(b)).
 - 연방정부를 대신해 일반인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대행소송(qui tam action)이라 함.¹⁰⁾
 - 이해관계 없는 일반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환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음.
 - 원고인 개인은 소송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당해 소송에 관한 수익 또는 배상청구에 관한 화해금의 15~35% 이상의 액수를 받을 수 있음(31 U.S.C. § 3730(d)).
 -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환수금 총액의 15~25%를,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환수금 총액의 25~35%를 포상금으로 받음.
 - 동법은 부당청구금지법을 위반한 고용주가 공익신고자를 해고, 강등, 정직, 협박, 모욕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호함(31 U.S.C. § 3730(h)).
-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가 심각해지자, 오바마정부는 2010년 3월,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PACA)¹¹⁾을 입법하면서 소송대행자의 소송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부당청구금지법을 개정함.
 - PPACA 이후 대행소송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부당청구금지법의 대행소송 조항에서 ‘직접적인 지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원천정보기준을 완화하였음.¹²⁾

8) 31 U.S.C. § § 3729~3733.

9) False Claim Act.

10) Qui tam은 라틴어로 영국에서 유래했으며, 라틴어 원문은 “qui tam pro domino rege quam pro se ipso in hac arte sequitur”로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임(https://en.wikipedia.org/wiki/Qui_tam).

11)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12) 31 U.S.C. § 3730(e)(4)(B) an individual who has knowledge that is independent of and materially adds to the publicly disclosed allegations or transactions.

- PPACA 이전에는 부당청구금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주장할 경우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원천정보¹³⁾를 가지고 입증하여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¹⁴⁾

■ 대항소송이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와 손해배상액 환수를 촉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987~2015년 기간 동안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포상금 비율은 15.6%에 이름.
-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311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 81%인 251억 달러가 일반인의 신고 및 대항소송을 통해 환수된 것임.
 - 2010년 부당청구금지법의 대항소송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항소송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함.

〈표 4〉 미국 공적건강보험 부당청구 적발 통계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Non-Qui tam		Qui tam		환수금액	포상금	건당 포상금	포상비율	Qui tam 비율
	건수	환수금액	건수	환수금액					
2009	34	238	279	1,395	1,633	164	0,588	11.8	85.4
2010	42	539	385	1,969	2,508	339	0,881	17.2	78.5
2011	38	178	417	2,271	2,449	471	1,129	20.7	92.7
2012	26	557	415	2,541	3,098	291	0,701	11.5	82.0
2013	27	61	503	2,643	2,704	325	0,646	12.3	97.7
2014	31	88	470	2,314	2,402	356	0,757	15.4	96.3
2015	25	134	423	1,831	1,966	330	0,780	18.0	93.2
계	223	1,796	2,892	14,963	16,760	2,276	0,787	15.2	89.3
누적계	837	6,001	6179	25,136	31,137	3,913	0,633	15.6	80.7

주: 누적계는 1987~2015년 기간의 누적 값을 의미함.

자료: DOJ, Fraud Statistics-Health and Human Services.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항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부당청구에 대한 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보험회사 또는 일반인이 본인 또는 주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¹⁵⁾

13)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지식.

14) 31 U.S.C. § 3730(e)(4)(B) an individual who has direct and independent knowledge of the information on which the allegations are based.

15) Cal. Ins. Code § 1871.7(e)(1) Any interested persons, including an insurer, may bring a civil action for a

- 소송에 참여한 일반인은 승소 시 환수금의 30~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또한 내부신고자에 대한 차별과 보복적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4. 시사점



- 전문화 · 지능화 · 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의 특성상 관련 기관의 규제 및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감시기능을 권장 ·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 · 사보험 공히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내부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 이외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차별적 · 보복적 인사조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차별적 · 보복적 인사조치에 부수되는 집단적 따돌림 등 기업내부적, 사회적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없음.
 -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당청구금지법」과 주법인 「보험사기금지법」 모두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대한 차별적 · 보복적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만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

violation of this section for the person and for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ction shall be brought in the name of the state. The action may be dismissed only if the court and the district attorney or the commissioner, whichever is participating, give written consent to the dismissal and their reasons for consenting. Illinois Insurance Claims Fraud Prevention Act, 740 ILCS 92/1.

-
- 2016년 3월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벌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방지하고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
 - 동 법은 부당청구 적발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미흡함이 있음.

■ 셋째, 장기적으로는 홍보 등을 통해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조직의 화합과 충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내부신고자의 적극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kiri](#)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 Solvency II 개정의 시사점

변해원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장기투자 자원조달 역할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장기투자란 다년간의 개발과 회수기간을 가진 자본집약적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며, 장기투자자는 장기 또는 만기일까지 자산을 보유할 능력, 의향,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함.
- 장기부채에 대해 장기자산으로 매칭해야 하는 보험회사에게 사회기반시설은 적합한 투자대상 중 하나임.
 -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최근 EU집행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기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Solvency II를 개정하였음.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요구자본(capital charge)을 완화시킨 것이 개정안의 골자임.
 -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의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OECD 지역의 프로젝트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도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경감시켜주고 있으나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저금리 환경 극복을 위해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금융당국은 특정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위험계수를 경감시키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논의배경



■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장기투자 자원조달 역할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기관투자자¹⁾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²⁾

- 대표적 장기투자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으로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어짐.
- 그러나 재정적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감소됨.³⁾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본 및 유동성 여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경향이 보임.⁴⁾
- OECD 재무국도 2012년부터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자료집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장기부채와 매칭할 수 있는 장기자산 투자가 필요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만기가 장기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은 저금리 환경에 처한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과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감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금리리스크 관리와 투자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⁵⁾

1)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란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이르는데,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이 이에 해당됨.

2) 우리 정부도 작년 4월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인프라 부문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15. 4. 8)”을 발표한 바 있음.

3) OECD(2015), *Infrastructure Financing Instruments and Incentives*.

4) OECD(2015).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⁶⁾

2. 장기투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 장기투자란 다년간의 개발과 회수기간을 가진 자본집약적인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⁷⁾

- 장기투자형태는 유동성 정도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형태를 띌 수 있음.
 - 예컨대, 회사채와 같이 만기일이 고정된 유동자산, 상장주식과 같이 특정한 만기일이 없는 유동자산일 수도 있고, 사회기반시설이나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매우 비유동적인 자산일 수도 있음.
- 장기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10년 이상 동안 보유함.⁸⁾
 - 한편 장기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평균적으로 60년에서 99년까지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비유동성 리스크를 동반하게 됨.⁹⁾

- 장기투자자란 장기 또는 만기일까지 자산을 보유할 능력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함.

- 다시 말해서, 장기투자자는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함.
 - 단기적으로 투자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를 보유할 수 있는 의향 또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¹⁰⁾

5) 연합인포맥스(2016. 8), “보험사 CIO 투자전략”에 따르면 국내 대형보험회사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6) 본고의 내용은 2016년 6월 22일과 23일 사이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OECD/ADB Roundtable on Insurance and Retirement Saving”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7) Insurance Europe and Oliver Wyman(2013),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as Institutional Investors” 참조.

8) World Economic Forum and Oliver Wyman(2011), *The Future of Long-term Investing*.

9) Gatzert and Kosub(2014), “Insurer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verview and Treatment under Solvency II,”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39, pp. 351~372.

10) Insurance Europe and Oliver Wyman(2013) 참조.

■ 장기투자는 인내자본으로서 금융안정성에 기여하고, 참여자본으로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본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¹¹⁾

-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은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고,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율(turnover)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이 낮아 금융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음.
- 참여자본(engaged capital)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돕는 역할을 함.
- 생산적 자본(productive capital)은 사회기반시설 개발, 녹색성장 계획, 중소기업 재원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

■ 장기투자 대상으로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도로, 송전선, 공공건물 등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투자는 장기채무(debt capital) 투자나 주식자본(equity capital) 투자를 통해 이루어짐.

- 예컨대, 공개시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비공개된 시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직접대출이나 직접대출을 하는 사모투자를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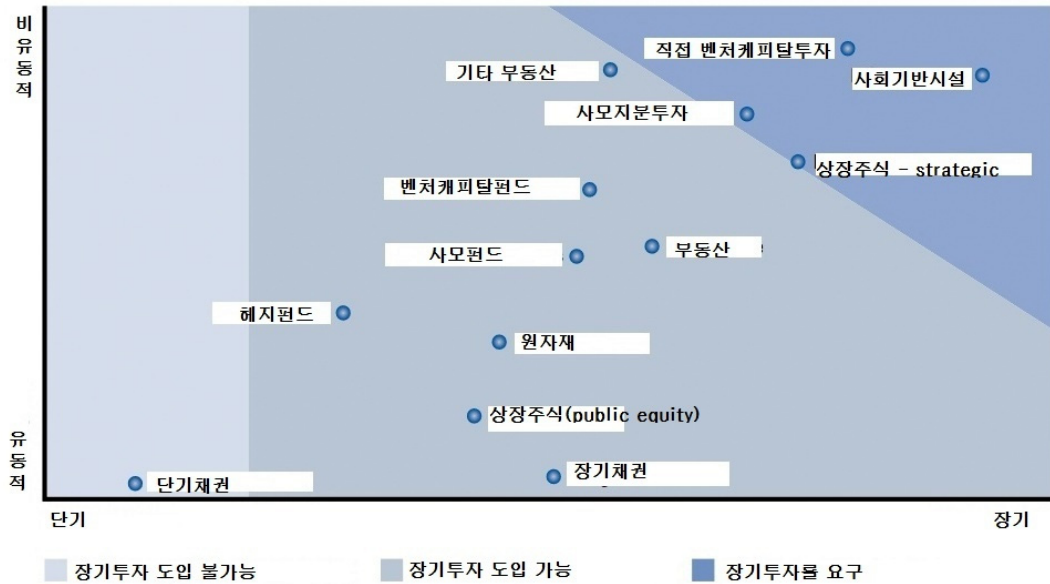
■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다른 자산들과 구별되는 특성으로는 자본집약도 및 지속기간, 규모의 경제 및 외부효과, 다양성 및 복잡성,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음(그림 1) 참조.¹²⁾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자본집약적이고, 높은 초기비용이 소요되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가짐.
- 프로젝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된 만큼 수익 및 위험 배분을 위해 복잡한 법적 처리방식을 필요로 함.
- 아울러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 시장 및 리스크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음.
-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수익성 변동이 적다는 특성과 함께, 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수요탄력성도 낮다는 장점을 지님.

11) OECD(2015).

12) OECD(2015).

〈그림 1〉 자산종류별 유동성 및 기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and Oliver Wyman(2011).

3.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Solvency II 개정

■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규제변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기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olvency II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임.¹³⁾

- 전문가들은 시장가치평가 도입과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체계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자산가치 변동성이 장기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리스크에 기초한 체계는 매칭, 거래상대방, 파생상품, 또는 규제자본의 집중도 요건 등을 통해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같은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계산식을 수정하거나, 감독상 재량을 통해 지급여력규제에 장기투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음.

13) OECD(2015).

■ EU집행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기투자에 대한 요구자본(capital charge)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Solvency II 개정을 실행하였음.¹⁴⁾

- 자본금 완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투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현금흐름 및 수익의 예측가능성, 재무구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¹⁵⁾
 - 정해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경제지역이나 OECD 지역의 여타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한정함.
- 개정된 Solvency II는 기존의 타입1, 타입2 주식 이외에 적격 사회기반시설 주식을 추가했으며, 적격 사회기반시설 지분투자에 대한 요구자본을 완화시킴.¹⁶⁾
 - 비상장 사회기반시설 지분투자에 대해 개정 전에는 타입2로 구분되어 49%와 조정분¹⁷⁾의 합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부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와 조정분의 요구자본을 부과함.¹⁸⁾

4. 사회기반시설 투자관련 국내 지급여력제도 개선 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Solvency II 개정안과 유사하게 RBC제도에서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해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부여하고 있음.

- RBC제도에서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금융(social overhead capital finance)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는 여타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보다 낮음(<표 1> 참조).¹⁹⁾
 - 예를 들어, AAA등급 일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1%이나, 특수금융에 해당하는 사회기

14)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6/467.

15) 자세한 요건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6/467의 제164a조와 EIOPA(2016, 6, 30), *Final Report on Consultation Paper No. 16/004 on the Request of EIOPA for Further Technical Advice on the Identification and Calibration of Other Infrastructure Investment Risk Categories, i.e. Infrastructure Corporates*를 참조.

16) 타입1 주식은 유럽경제지역이나 OECD지역에 상장된 주식, 타입2 주식은 타입1외의 주식, 원자재 및 기타 대체투자 등을 포함함. 개정 전에는 자본리스크 관련 세부구분으로 타입1 주식과 타입2 주식으로만 구분했으나, 적격 사회기반시설 주식을 추가하기 위해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5/35의 제168조를 개정함.

17) 조정분(symmetric adjustmen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5/35의 제172조 참조.

1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5/35의 제169조 개정.

19) 금융감독원(2012. 10),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참고.

반시설금융 관련 AAA등급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0.5%임.

- RBC제도에서 사회기반시설금융과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은 특수금융으로 분류됨.
- 사회기반시설금융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을 의미함.

〈표 1〉 특수금융 위험계수: 사회기반시설금융

(단위: %)

신용등급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주식
	AAA	AA+~AA-	A+~BBB-	BBB- 미만	무등급		
위험계수	0.5	1.25	2.5	3.75	2.5	3.75	6

주: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는 위험계수를 0%로 함.

2)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위험계수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용위험계수 부과 대상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만 한정됨.

- 국내 RBC에서 적용하는 특수금융 위험계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만 적용됨.

■ 금융당국은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회기반시설금융 투자와 동일한 위험계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한정적이어서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²⁰⁾
- 단, 모든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은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위험계수 경감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OECD 국가의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경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됨. [kiri](#)

20) Gatzert and Kosub(2014)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기반시설 펀드 수익률을 보고했는데, Global Infrastructure Report는 1993년에서 1999년 사이 사회기반시설 펀드들의 중위 순내부수익률(net internal return rates)은 9%였으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펀드들의 중위 순내부수익률은 21.1%였다고 보고함.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애는 1.7배나 큼.
-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제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 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하여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사고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¹⁾
- 이러한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자 자신만의 사상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사람들을 사상케 함으로써 행복했던 가정이 파괴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후유장해를 남겨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을 야기함.
 -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를 강화하였음.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의 책임부담을 통한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등에 의한 민사책임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음주운전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본고는 음주운전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 법규와 보험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음주운전사고의 사전적 방지와 손해경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1) 도로교통공단(2015), 『2014년 도로교통사고의 비용추계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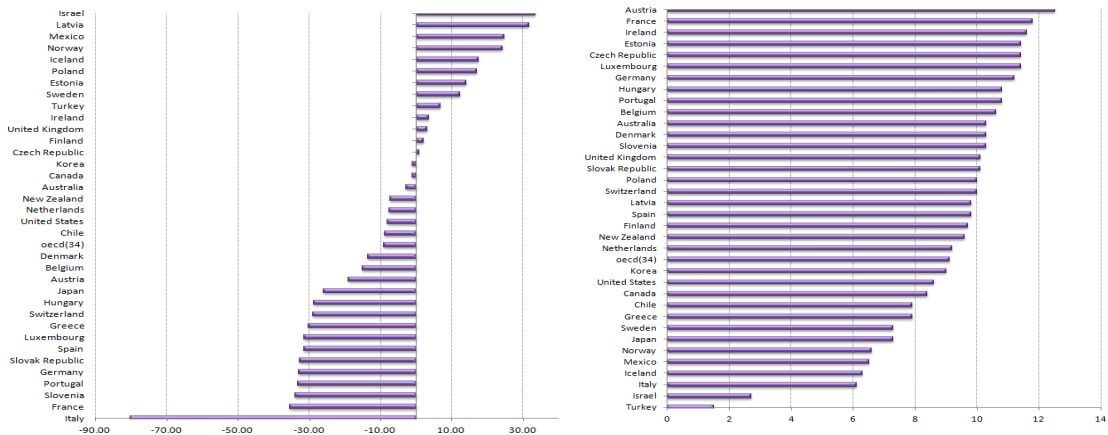
2. 음주운전사고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 9.1리터로 OECD 34개국 평균 9.0리터와 유사하지만, 음주자의 음주량 변화에서 큰 차이가 있음(〈그림 1〉 참조).

- 음주소비량 상위 20% 이상자들이 전체 소비량의 70%를 마시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함.
- OECD 국가의 1990년 대비 2010년 음주소비량 변화를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21개국은 감소하였지만,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증가하여 34개국 평균적으로 9.1%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는 OECD 평균감소율(9.1%)보다 훨씬 낮은 1.1% 감소에 그쳐 10년 동안 감소폭이 미미한 국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1〉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ℓ) 및 증감률(%)



주: 증감률은 1990년 대비 2010년의 증가 비율임.

자료: OECD, 2015 Health Statistics.

■ 우리나라의 2014년 음주운전사고는 26,135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2.3%에 불과하지만 592명이 사망하고 46,114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며, 이를 1일 평균으로 보면 사망자 1.6명, 부상자 126명임(〈표 1〉 참조).

- 음주운전사고 건수 비중은 전체 사고에 비해 낮지만 음주운전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0%를

넘어서고 관련 사회적 비용도 1조 원 내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표 1〉 음주운전사고 추이 및 증감률

(단위: 건, 명,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CAGR(3)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	1,133,145	1,119,280	1,129,374	-0.2
	사망	5,392	5,092	4,762	-6.0
	부상	1,777,604	1,782,594	1,792,235	0.4
음주운전사고	건수	31,118	28,558	26,135	-8.4
	사망	815	727	592	-14.8
	부상	55,519	51,080	46,114	-8.9
1일 평균 음주운전사고	건수	85.3	78.2	71.6	-8.4
	사망	2.2	2.0	1.6	-14.8
	부상	152.1	139.9	126.3	-8.9
음주운전사고 비중	건수	2.7	2.6	2.3	-8.2
	사망	15.1	14.3	12.4	-9.3
	부상	3.1	2.9	2.6	-9.2
음주운전사고 비용		11,467	10,284	9,419	-9.3

자료: 도로교통공단(연도별), 『도로교통사고의 비용추계와 평가』.

■ 자동차의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원인 성격, 사고심도의 크기, 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wilful negligence)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등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자의 차량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고 시 손실경감이나 회피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심도가 매우 큼.

– 이는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매우 위중한 사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통계에 따르면 건당 비음주운전사고의 사망보험금은 1.05억 원이

2)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는 고의의 지적·의지적 요소가 가장 위축된 형태의 약한 고의로서,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를 말함. 예컨대,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임(현암사(2015), 『법률용어사전』, pp. 1062~1063).

지만 음주운전사고의 사망보험금은 1.6억 원으로 1.5배나 높으며, 음주운전사고의 부상과 후유장애보험금은 비음주사고의 1.7배를 넘고 있음(<표 2> 참조).

- 음주운전사고는 선의의 피해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사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표 2〉 음주운전사고의 보험금 특성(대인배상)

(단위: 억 원)

구분		사망		부상		후유장애		계	
		보험금	건당	보험금	건당	보험금	건당	보험금	건당
음주운전사고	주취	395	1,606	821	0,026	519	0,422	1,735	0,053
	음주	46	1,586	69	0,026	33	0,388	148	0,053
	계	441	1,604	890	0,026	552	0,419	1,883	0,053
전체 사고		3,342	1,049	23,842	0,015	4,011	0,242	31,195	0,020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2(CY2014)』, pp. 82~83 참조 작성.

3. 음주운전 사고방지 대책 현황



- 음주운전사고의 인명 및 재산손실로 인한 사고비용이 1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의 사전적 방지를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약관조항에서 면·부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 2(벌칙)는 음주운전금지를 3번 이상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³⁾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인사사고나 0.1% 이상 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0.05% 이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1% 이상~0.2% 미만은 6개월 이상 징역(또는 3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불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음.
 - 2007년 12월 27일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과 인적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다르게 보상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는 보상하지만 자기차량담보를 면책으로 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 유발자는 배상책임담보에 대해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인배상 I·II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임.⁴⁾

■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에 반영됨.

- 경력요율은 비음주운전사고와 무관하게 과거 2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1회 음주운전은 10%, 2회 이상 음주운전은 20%를 할증함.⁵⁾
- 개별할인·할증률은 음주운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사고결과를 기초로 점수화하여 할인·할증함.

4. 보험제도의 음주운전 사고방지 방안



- 보험제도는 계약자로부터 리스크를 전가받아 약정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손해를 보전해주는 본질적인 손실보상 기능 외에도 사회전반의 근심을 없애거나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4)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제도는 2004년 8월 22일에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1사고당 대인배상 I·II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이었으나 2015년 4월 9일부터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되었음.

5) 2007년 9월 1일 이전에는 1회 이상 음주운전하는 경우 10% 할증하였음.

- 현재의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과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부과방식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거나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했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억제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음주운전사고 보상범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관용적인 담보범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됨.
 -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운전자와 무관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나, 음주 운전자의 자기신체상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면책함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자배책, 대인 및 대물배상)은 보상해 주지만, 음주운전자 본인과 관련된 자기신체와 자차담보는 보상해 주지 않고 있음.⁶⁾
-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부담금⁷⁾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유인이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요율 적용 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서 음주운전 할증요율(과거 2년 동안 1회 음주운전 시 10% 할증, 2회 이상 시 20% 할증)을 높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유인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심도는 전체 사고에 비해 사망 1.5배, 부상 및 후유장애가 1.7배나 높은 상황이고 음주운전이 반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1회 20%, 2회 이상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개별할인·할증요율은 사고원인과 무관하게 1년간의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별 사고내용에 따라 건당 점수를 부과하여 최대 200%까지 할증을 부과하고 있어 음주운전과 비음주운전의 차등이 없으므로 차등화가 필요함.
 - 현재의 사고내용별 점수에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일정률(예: 20%)을 추가 적용하여 음주운전사고에

6) 日本損害保險協會(2016), 『飲酒運転防止マニュアル』, p. 28.

7) 대인배상 I·II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음주운전자에게 가중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보험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 11)를 적용하는 경우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음주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음.
 - 그러나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리스크라는 인식약화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태임.⁸⁾
- 일본은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유사한 법률인 『자동차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⁹⁾을 제정하여 국내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¹⁰⁾는 음주운전사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3주간 징역이지만 5년 이내 재범인 경우 평생 동안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며,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는 사형까지 구형하고 있음.¹¹⁾ **kiri**

8)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사람은 10만 1,769명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6,374명이었지만 2015년에 11,376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4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KBS 뉴스(2018. 8. 10), “이렇게 많더니 음주운전 삼진 11년 새 10만 명”).

9) 동법은 형법에서 음주 및 약물중독 운전 처벌 등 5개 조항에 도로교통법의 통행금지도로 운행행위를 추가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음(<http://law.e-gov.go.jp/htmlldata/H25/H25HO086.html>).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상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함. 또한 음주의 영향을 받아 주행 중 정상적인 운전이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부상한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함.

10) 이탈리아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형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1.5g/ℓ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1인 사망 시 8년에서 12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11) 世界の交通事故状況(2016. 8. 3), http://jiko.good7num.com/drunken_driving.html.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함.
 -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함.

1. 검토배경



- 2016년 5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개정됨.
 - 현행 「정신보건법」은 장애¹⁾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모두 정신보건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증질환자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됨.
 -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
 - 2017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정의함.
 - 법률의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로 변경됨.
- 지난 10년 동안 보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어져, 「보험업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함.
 - 2005년 경북 칠곡 소재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²⁾
 - 상기 화재사고로 장애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이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고 전에 단체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1) 본고에서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은 장애의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함.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의 개념이 모든 정신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국가인권위원회(200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12),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13),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특히, 2017년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함.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하였음.³⁾

■ 본고에서는 정신질환 유병 실태, 정신질환자 보험소외의 문제점과 보험차별금지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2. 정신질환 유병 실태



■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의 27.6%로 성인 10명 중에 3명꼴임.⁵⁾

-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14.4%로, 2006년에 대비 1.8%p 증가함.
 - 동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 사고(思考)를 경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자살 시도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됨.
-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유럽 평균인 25.0%와 유사하며, 미국(46.4%)이나 뉴질랜드(39.5%)보다는 낮으나 중국(13.2%)보다는 높음.⁶⁾
 - 각 질환별로 보면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의 평생유병률은 서구보다 낮으나 중국이나 나이지리아보다는 높음.

3)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21. 13진정0388500.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5) 정신질환 역학조사는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처음 실시 후 2011년에 전국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세 번째로 실시함.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2. 15), “’11년 성인 6명 중 1명 정신건강문제 경험”. 평생유병률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표 1〉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단위: %)

구분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 제외 모든 정신장애	정신병적 장애 ¹⁾	기분장애 ²⁾	불안장애 ³⁾	섭식장애 ⁴⁾	신체형장애 ⁵⁾
2006년	30.2	12.6	0.5	6.2	6.9	0.1	1.2
2011년	27.6	14.4	0.6	7.5	8.7	0.2	1.4
증감(%p)	-2.6	1.8	0.1	1.3	1.8	0.1	0.2

주: 1) 정신병적장애: 정신분열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2) 기분장애: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3)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4) 섭식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대식증.

5) 신체형장애: 신체화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 경쟁·불평등·소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 환경 심화와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신질환 의약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460억 미국 달러(2010년 항정신병 치료제 및 항우울제 합산 기준)로 항암제 다음으로 큼.⁷⁾
-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등 행위중독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많이 노출됨.
 - 2015년 기준 만 3~59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과의존위험군은 6.8%이며, 대상별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동 5%, 청소년 13.1%, 성인 5.8%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심각함.⁸⁾
 - 2015년 기준 만 3~5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16.2%이며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31.6%로 전년대비 2.3%p 증가함.

7) 권오연(2013), 『정신질환분야 R&D 동향 및 시사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3. 정신질환자 사회적 차별, 왜 문제인가?



■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이 정신과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⁹⁾

- 조사대상의 79.5%가 정신과 방문을 주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1.2%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정신과 방문을 주저하였음.
 - 이 설문조사는 2011년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경증 정신질환을 앓는 정신과 진료 환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또한 조사대상의 35.4%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나 구직·보험가입 제한 등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0.5%가 치료비 지원 확대를, 35.8%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을 선택함.

〈표 2〉 정신과 방문 주저 이유(n=737, 중복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주저한적 없음	정신질환임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치료비용이 부담되어서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서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을 것 같아서	직장을 구하는데 제한을 받을 것 같아서
비율	20.5	36.7	14.3	35.2	6.8	9.2

주: 이 설문조사는 2011년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경증 정신질환을 앓는 정신과 환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함.

자료: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2012),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 중 실제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찾는 비율은 평생 동안 15.3%에 불과함.¹⁰⁾

-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 서비스를 음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할 때까지 참는 경향이 있음.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2006년 11.4% 대비 증가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환자 대부분이 진료를 기피하다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9)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2012),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1).

- 미국 39.2%(’10년), 호주 34.9%(’09년), 뉴질랜드 38.9%(’06년)
- 미국 등 선진국의 수치는 최근 1년 사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치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서비스 이용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격차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기분장애를 겪은 사람들 중 평생 정신의료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37.7%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미국에서는 우울증 경험자 중 최근 1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68.2%(2010년)에 달함.

■ 2011~2015년 기간 동안 Z코드(상세불명 상담) 사용이 89% 증가하였는데¹¹⁾, 이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데도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됨.¹²⁾

- 보건복지부는 2013년 4월부터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은 기존 정신과 질환 청구코드(F)를 보건일반상담 청구코드(Z)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
- 이전까지 정신과 환자 기록은 경증도 및 약물처방과 관계없이 모두 F코드로 표시됨.¹³⁾
- Z코드 사용 시 질환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으나, 약물처방 등 본격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은 ‘차별’ 자체로도 문제지만, 질환은폐 및 진료기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킴.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2년 기준 8조 2,695억 원이며,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의 7%를 차지함.¹⁴⁾
-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총액은 2014년 2조 8,340억 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4배 증가함.¹⁵⁾
-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5대 만성질환인 정신질환, 심장질환, 암,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4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정신질환의 경제적 부담은 16조 3천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함.¹⁶⁾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상담을 위해 보건서비스를 이용한 환자(Z코드) 수는 2010년 45,699명에서 2015년 90,402명으로 늘어남.

12)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에서 가장 높으나, 항우울제 소비량은 28개 조사대상국 중 칠레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OECD(2015. 11. 4), *Health at a glance 2015*.

13) 통상적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발병하는 행태 및 정서장애(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품행장애, 소아기 이별 불안장애, 소아기 사회성 불안장애, 소아기 반응성 애착장애, 틱장애, 비기질성 유뇨증, 말더듬 등)도 F코드로 기록됨(F90-F98).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5. 2. 9), “2012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한해 120조 6,532억 원 ... 4년간 24.2% 증가, 국내총생산(GDP)의 8.8%”.

1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4. 정신질환자 보험차별금지 법제 발전과정



가.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 감독을 권고하였음.

- 구체적으로, 먼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권고함.
 - － 「상법」 제732조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조항에 의해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가 포괄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비판받아 왔음.
- 둘째,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을 권고함.
 - － 「보험업법」에 보험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할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차별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셋째,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과 보험회사의 인수기준, 보험상품약관 등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 감독을 권고함.

■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차별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2012년 국민인권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에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의학적 · 통계적 연구를 권고하였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권고함.
- 보험회사가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 · 통계적 연구실시를 권고함.

■ 나아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 제한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였음.

16) WEF-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2011), *The Global Economic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특정질병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함.

나. 정신질환자 보험차별금지 법제 제·개정

■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함.

- 동법은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함.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¹⁷⁾, 이는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음.

■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함.¹⁸⁾

-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¹⁹⁾
 -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14년 신의진 의원은 경증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²⁰⁾, 회기만료로 폐기됨.

■ 2014년 「상법」 제732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함.²¹⁾

17)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7조(보험상품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이하 “차별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18)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19)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실손의료보험 약관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정신질환이라 할지라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함.²²⁾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경성·스트레스 장애, 정서장애 등 F코드 일부가 보장됨.

5. 결론



■ 2005년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진행되어 왔음.

■ 관련 법 개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 함양, 그리고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등은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보험인수 여부가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을 요구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²³⁾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상태 등 제반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함.

■ 특히, 보험회사는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수거절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차별의 위험성 및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음.

21)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참조.

23)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7.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 장애의 정도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10호의 보호를 받음.

■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함.

-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함.
 - 2016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정신질환 치료비를 보상함에 따라 관련 통계가 집적되면 향후 정신질환자의 질병·재해 발생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통해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kiri](#)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규모가 큰 상공업 물건은 화재, 지진 등 다수 위험을 포괄담보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 등 개인물건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경로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함.
 -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이 임의이며 주택(공동주택 포함), 온실 등만을 보험목적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진 리스크가 큰 국가들의 경우 정부보험이나 보험폴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재보험도 제공하며, 일부 국가는 지진보험을 의무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민영 보험상품 운영의 한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은 지진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성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의 종합적인 지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리스크평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1978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진관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음.¹⁾
-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액이 8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손해의 80%를 지원 하는 방안을 발표했음.²⁾
-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³⁾

■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1989년 10월 17일 미국 북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해 63명의 사망자, 3,757명의 부상자, 미화 6조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힌 규모 6.9의 지진은 83년 만에 발생한 대형 지진이었음.⁴⁾
- 한국의 경우 과거 문헌을 토대로 1978년 이전 발생한 지진 규모를 추정해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진도 7~9(규모로 5~6.9) 수준의 지진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⁵⁾
- 또한, 일부 지진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최대 7.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음.⁶⁾

■ 본고는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진보험 현황을 진단하고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제고 방안을 제시함.

1) 기상청 지진기록 홈페이지(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list.jsp) 참조.

2) news1(2016. 9. 22), “정부, 경주지진 피해액 85억 추산…최대 80% 국고지원”.

3) 매일경제 MBN(2016. 9. 22), “한반도 지진에 일부 손보사 지진특약 판매 중단”.

4)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1989_Loma_Prieta_earthquake; https://en.wikipedia.org/wiki/1906_San_Francisco_earthquake).

5) 기상청(2012),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6) news1(2016. 5. 17), “한반도 동남부 활성단층 많아…신고리 原電 5·6호기 재고해야”.

2. 한국의 지진보험 시장



■ 손해보험회사가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민영보험과 정책성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⁷⁾은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 인해 주택, 온실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손해를 보상함.
- 민영보험의 지진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규모가 큰 상업시설물이나 제조업체 등이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 있음.
 - 대부분의 중견·대기업들은 재물손해, 배상책임, 기업휴지 등 위험을 포괄담보하는 패키지보험에 가입하여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본고는 개인·중소기업이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관리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지진 관련 보험시장을 분석함.

■ 개인이 가입해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함.

-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 건 중 0.14%인 2,187건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고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8,492만 원 수준에 불과했음(〈표 1〉 참조).

〈표 1〉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가입 현황(2014년)

(단위: 건수, 천 원, %)

구분	화재보험계약		지진담보특약가입		지진담보 가입률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주택	102,036	15,411,570	620	12,365	0.61	0.08
상업용	1,368,982	91,414,400	1,311	66,349	0.1	0.07
공장	54,755	118,357,878	256	6,204	0.47	0.01
계	1,525,773	225,183,848	2,187	84,918	0.14	0.04

자료: 보험개발원(2016), 『2015 손해보험통계연보』.

7) 동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총괄 관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일반인이 보험금액 70%에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 최대 50%, 사업비 90%,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수준에 상관없이 위험보험료 85%, 사업비 90%)를 지원하고, 보험판매, 보험금 지급 등 업무전반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손이 생긴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4년 현재 수입보험료가 205억 원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황임.

- 2014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I, II, III의 보험료(계약건수)는 각각 115억 원(12,036건), 84억 원(269,529건), 3억 416만 원(192건)이었음.

■ 국내의 가계성 지진담보 보험료는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0.0014%로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별로 지진 리스크와 보험수요⁸⁾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은 보험가입을 통한 사후복구대책이 미약한 것으로 보임.

〈표 2〉 한국, 미국, 일본, 터키의 지진보험 밀도 비교(2014)

국가	보험	보험료	GDP	보험료/GDP
한국	지진담보특약(A)	8천 5백만 원	1,485조 원	0.000006%
	풍수해보험(B)	204억 원		0.001379%
	A+B	205억 원		0.001384%
미국	지진보험	16억 4천만 달러	17조 3,400억 달러	0.009458%
일본	지진보험	2,264억 엔	510조 엔	0.044381%
터키	지진보험	2억 5천 리라	2조 5천억 리라	0.010345%

주: 한국의 경우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가 지진보험료이므로 지진보험료만을 집계한 타 국가들에 비해 보험밀도가 과대 산정되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험개발원; 통계청), 미국(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act book; US Census Bureau), 일본(일본손해보험 요율산출기구; 일본총무성), 터키(터키 지진보험 TCIP; 월드뱅크).

8) 국가별 지진보험 수요는 경제상황과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빈도·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외국의 지진보험 관련 제도



■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부록 표 1) 참조).

- 대부분 국가들은 사고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 리스크의 특성을 감안해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국은 지진 리스크 인수기관으로 공공보험회사 또는 보험폴을 구성하거나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해 정책성 지진보험을 지진피해 사후복구에 활용하고 있음.
- 국가별 지진보험제도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보험목적물, 담보위험, 의무·임의 가입, 가입자별 보험요율 차등화·균일요율 적용, 보험가입 한도액 등에 차이가 있음.

■ 비교적 지진 리스크가 큰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터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보험제도의 사후 복구기능을 활용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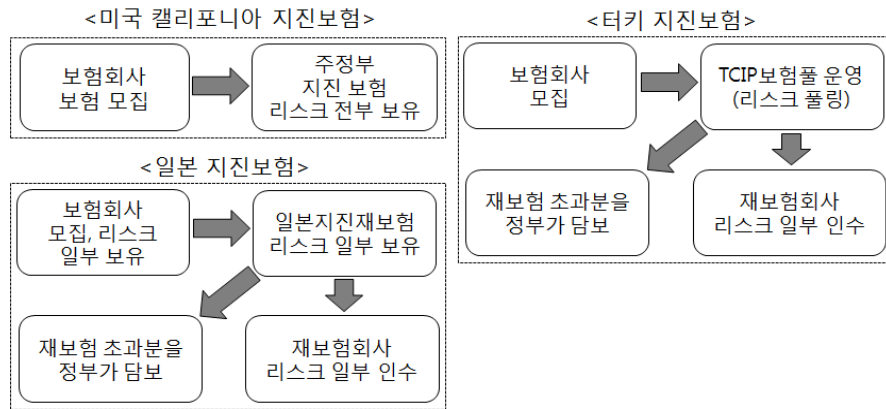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보험회사가 모집하는 지진 리스크를 지진보험기구가 전부 보유하는 형태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함.⁹⁾
- 일본은 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인수한 후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본 지진재보험에 출재하고 일본지진재보험은 수재받은 지진보험 리스크를 일부 보유, 일부 출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함.¹⁰⁾
- 터키의 주택보유자는 민영보험회사의 지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풀인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를 이용해 보험회사 간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¹¹⁾
 - TCIP는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고, 보험폴과 재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보상함.

9)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2.earthquakeauthority.com/Pages/default.aspx>).

10) 日本地震再保險株式會社(2015), 『日本の地震再保險の現状』.

11) TCIP 홈페이지(<http://www.tcip.gov.tr/>).

〈그림 1〉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터키의 지진보험 운영 체계



자료: 각주 14), 15), 16) 참조.

4.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한국의 지진보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최근까지 보험회사들은 국내에 지진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지진담보를 제공했으나,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음.
- 국내 풍수해보험제도를 주요국의 정책성 지진보험제도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국가들의 지진보험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재보험을 제공하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풍수해보험은 보험료보조 및 손실 보전을 제공하므로 타 국가의 지진보험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한 정책성 보험임.
-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주택, 공동주택, 온실 등만을 보험목적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는 패키지보험을 통해 이미 지진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향후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목적물이 주택과 온실 등 일부 시설물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보험목적물을 소상공인, 공공시설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위험으로 추가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공식적 지진관측 역사가 길지 않으나 과거 문헌 조사와 지질학적 특성 연구 등을 통해 지역별 지진 사고의 빈도·심도를 추정하고 지역별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CAT(catastroph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kiri](#)

〈부록 표 1〉 주요국 지진보험 운영 현황

구분	일본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캘리포니아
도입	1964년 지진보험법	2002년	1980년	1944년 지진수해법	1954년	1996년
보험 목적물	주택, 가재	주택	건축물, 농원, 주택, 정원, 가구 등 명기물건	주택, 가재,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건물 및 수용동산 · 사망상해, 휴업손실	주택, 가재
담보위험	지진, 분화, 쓰나미, 화재, 매몰, 유실	지진의 직·간접손해	지반침하, 홍수, 폭풍우, 지진, 분화	지진, 분화, 지열활동, 쓰나미, 폭풍/홍수(택지), 잔존물처리비용	지진, 홍수, 폭풍, 쓰나미, 분화, 온석낙하, 테러폭동 등 사회적 혼란	지진(지진에 의한 화재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화재보험에 추가)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자동차약)	강제가입 (화재, 상해, 생명보험)	임의가입
보험 운영주체	보험회사 (사업대행, 재보험) 지진재보사: 재보험 제공	보험회사 판매대행 재보험 제공 (대만주택지진보험기금)	보험회사 판매대행	보험회사 판매대행	보험회사 판매대행	보험회사 사업대행
보험료	지역별차등화 (0.65~3.26%)	지역 건물구조별 차등요율	단일요율(0.07%)	단일요율(1.5%)	주택, 콘도(0.08%), 사무실(0.12%)	지역별차등화 (0.36~9.0%)
보험가입 한도액	건물 5,000만 엔 동산 1,000만 엔	150만 대만달러	한도 없음	주택: 10만 뉴질랜드달러 가재: 2만 뉴질랜드달러 택지: 보험가액	한도 없음	건물: 보험가액 가재: 10만 달러 임시비용: 15,000달러
보험금 제한	1회 사고액 7조 엔 초과 시 삭감지급	1회 사고액 700억 대만달러 초과 시 삭감지급	-	제조당가액 기준 실손보상	상한액 제한 없음	1회 사고액 102억 달러인 경우 삭감지급

자료: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16), 『日本の地震保険』, pp. 97~105; 이기형(2016), 「주요국 지진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지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에서 재인용.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소프트랜딩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 만들어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에는 일부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임계치 및 기준점수 설정방식과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을 바꾸었으며, 1등급과 3등급의 상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음.
-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차등평가모형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함께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차등평가모형 도입 당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평가모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
 - 특히, 보험권역의 경우 회계제도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지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차등평가모형 변경도 이러한 제도 및 규제 변화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음.
- 평가지표의 변경과 임계치의 설정에 있어 보험권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고 차등평가모형 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가지표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생명보험의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차등평가모형 제도변경 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소프트랜딩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의 차등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음.
-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규제환경 변화와 모형 구축 이후의 재무실적을 반영하여 모형을 적시성 있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 만들어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시행¹⁾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표 1〉 참조).

- 2012년 구축된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금융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음.

〈표 1〉 등급별 적용 요율(업권별 표준보험요율 대비)

등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주)})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주: 은행 0.08%, 보험·금투 0.15%, 저축은행 0.40%.
 자료: 예금보험공사(2016. 9), 「차등평가모형 개선(안)」.

■ 201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모형은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및 보험료 수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KDI)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히고 있음.

- 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임계치 및 기준점수 설정방식과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을 변경하며, 1등급과 3등급의 상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음.

1) 이승준(2012. 1. 2), 「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KiRi Weekly』, 제163호.

■ 보고는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예금보험 요율의 차등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유도라는 차등요율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적함.
- 보험권역의 경우 재무건전성 강화와 IFRS4 2단계 도입의 영향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후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야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의 변경이나 임계치의 상향이 보험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평가모형 변경 과정의 투명성 결여 문제도 지적함.

2.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 주요 내용



가. 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도록 평가지표 변경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현행 모형의 평가지표인 유동성비율과 매출이익률을 유동성리스크비율과 사업비율로 각각 변경하였음(〈표 2〉 참조).

- 기존 보완평가부문 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중 사업비율을 기본평가부문 평가지표로 이동시키고 이를 영업이익률로 대체함.

〈표 2〉 평가지표 변경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비율	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여 모형 검증 후 유의성이 높은 지표로 대체
부실자산비율	금리리스크비율/자본대비보험위험액	
매출이익률	사업비율	

주: 금리리스크비율은 생명보험, 자본대비보험위험액은 손해보험에 각각 사용되는 평가지표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16. 9), 「차등평가모형 개선(안)」.

■ 현행 모형의 평가지표인 부실자산비율 대신 생명보험은 금리리스크비율로, 손해보험은 자본대비보험위험액으로 각각 지표를 변경하였음.

나. 임계치 설정방식 변경과 최대 임계치 상향 설정

■ 평가지표별로 만점과 0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최대임계치와 최소임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상위 그룹과 하위그룹 금융회사의 실적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표 3〉 참조).

-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부보회사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임계치를 설정하고 평가지표의 부실 변별력 및 등급 판정 변별력을 제고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최대임계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급여력비율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높아짐.

〈표 3〉 임계치와 기준점수 설정방식 변경

구분	현행	변경안
임계치	평가지표별로 전체 실적치 중 〈리스크와 부의 상관관계인 지표〉 70 percentile 값 → 최대임계치(만점) 20 percentile 값 → 최소임계치(0점)	〈리스크와 부의 상관관계인 지표〉 상위그룹회사 실적치 상위 30% 값 → 최대임계치(만점) 하위그룹회사 실적치 하위 25% 값 → 최소임계치(0점)
	〈리스크와 정의 상관관계인 지표〉 30 percentile 값 → 최소임계치(만점) 80 percentile 값 → 최대임계치(0점)	〈리스크와 정의 상관관계인 지표〉 상위그룹회사 실적치 상위 30% 값 → 최소임계치(0점) 하위그룹회사 실적치 하위 25% 값 → 최대임계치(만점)
기준점수	1:2:3등급의 비율이 “3:4:3”이 되도록 설정	1·2등급 기준점수: 상위그룹회사의 평균 값 2·3등급 기준점수: 하위그룹회사의 최대 값

주: 상위 및 하위그룹회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 평가결과 및 실제 부실사례를 고려하여 구분함.
자료: 예금보험공사(2016. 9), 「차등평가모형 개선(안)」.

다.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 변경

■ 보완평가부문에서 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리는 대신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재무위험관리능력평가의 기본점수 5점을 폐지함(〈표 4〉 참조).

- 재무위험관리능력은 영업이익률과 부실자산비율이 각각 7.5점씩,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은 금융당국 제재현황 등과 예금자보험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이 각각 2점과 3점을 차지함.

〈표 4〉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 변경

구분	현행	변경안
배점 조정	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10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10점	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15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5점
평가방법 변경	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시 10점 중 5점을 기본점수로 부여	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시 기본점수 부여방식 폐지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변경

자료: 예금보험공사(2016. 9), 「차등평가모형 개선(안)」.

-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평가와 이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평가부문의 평가방식도 변경하였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히고 있음.

라. 1등급 및 3등급 상한비율 설정으로 상대평가로 전환

- 새로운 예금보험 평가모형에서는 1등급과 3등급의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함.
- 기존 평가모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3등급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부모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음.

〈표 5〉 1등급 및 3등급 상한비율 설정

현행	변경안
3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1·3등급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자료: 예금보험공사(2016. 9), 「차등평가모형 개선(안)」.

3.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차등평가모형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함께 특히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차등평가모형 도입 당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평가모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
- 보험권역의 경우 회계제도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지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차등평가모형 변경도 이러한 제도 및 규제 변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향후 IFRS4 2단계의 시행과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로 지급여력비율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 평가모형의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주요 평가지표의 변경과 임계치의 설정에 있어 보험권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변경 과정에서 소통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평가지표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생명보험의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차등평가모형 제도변경 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가. 상대평가 전환에 따른 제도의 취지 및 일관성 훼손

■ 차등요율제도 도입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1등급 금융회사의 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절대평가는 건전경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회사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어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함.
- 미국과 캐나다 등 차등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한 주요국에서도 절대평가를 통해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특히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경우 등급편중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함.

■ 변경안에 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상한을 40%로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려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3등급을 받는 금융회사도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다른 회사의 리스크관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높더라도 할증을 안 받는 경우도 가능함.

■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비례한 차등적 보험료 부과를 통하여 부보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수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주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차등요율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나. 보험권역 제도변화로 인한 차등요율제도 안정성 저해

■ 보험권역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같은 지급여력비율 등 차등평가모형 평가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제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되어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²⁾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실질적 건전성 하락보다는 제도변화에 기인함.

■ 이처럼 보험산업 전반에 예정된 각종 제도변화로 인해 차등모형 평가지표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둘러서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

-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후에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차등요율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함.

다. 평가지표 변경 및 임계치 상황에 대한 문제점

■ 평가지표의 변경 중 매출이익률 대신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사업비율과 손실회복능력 사이의 연관성은 의문시됨.

- 일반적으로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영전략과 손실회복능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의문임.
 -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 위주의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 보험회사의 손실회복능력이 특별히 낮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 생명보험에서 건전성 관리능력의 평가지표로 부실자산비율 대신 금리리스크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은 평가지표에서 금리리스크에 따른 위험을 중복적으로 계상할 우려가 있음.
 -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급여력비율 및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을 낮추므로 이미 다른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상대평가의 도입 및 임계치의 상향조정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및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급여력비율 또는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비율을 넘는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이상이 없으므로 이들 평가지표 최대임계치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

라. 차등모형 변경 과정의 문제점

- 금번 차등평가모형 변경은 보험권역 전문가 등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져 제도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보험권역 차등보험요율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권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모형의 변경 등에 있어서 보험권역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kiri](#)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 II는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책임(과실)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서는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부상 보험금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을 경우 에도 대인배상 I · II 에서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함.
-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과실)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이라는 불공정성을 초래함.
 -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름.
 -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음.
-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에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할 때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고,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 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대인배상 II)에 대해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른 방안으로 중과실 경상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치료관계비 지급에 사고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가 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고책임 부담은 사고발생 가능성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 II는 피해자들의 사고책임(과실)에 따라 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하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교통사고 부상자의 원활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 정도와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음.²⁾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I · II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상제한 후의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자동차사고 차량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책임을 반영한 과실상계 후 지급됨.

■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고책임(과실)이 큰 운전자의 과잉치료를 초래하고 사고책임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함.

-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들은 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유인이 있는데,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함.
 - 사고책임이 큰 가해 운전자임에도 장기 입원 및 과잉 치료가 가능함.
 - 특히, 상해등급 13~14급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관계비가 증가하고 있음.
- 차대차 사고의 경우 사고책임이 적은 교통사고 부상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함.
 - 사고책임이 적은 경상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는 반면 사고책임이 큰 운전자가 과잉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책임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피해자임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치료관계비 지급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부상 보험금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로 구성되는데, 치료관계비는 입원료(식대포함),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와 치아보철비의 합계임. 치료관계비 지급에는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자료와 휴업손해 지급에는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책임보험 상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2016년 기준 1급의 치료관계비 한도금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14급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됨.

2.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의 부작용



■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이 커지고 있음.

- 경상환자인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름.³⁾

〈표 1〉 상해등급별 사고건당 치료관계비와 한도금액 대비 치료관계비 비중

구분		중상해 사고	경상 사고			전체
		상해등급 1~7급	상해등급 8~14급	상해등급 13급	상해등급 14급	
1인당 치료관계비 ³⁾ (A, 만 원)	2010	1,076.7	76.1	45.3	29.3	104.8
	2011	1,096.7	77.2	49.4	32.4	105.6
	2012	1,107.8	78.6	52.8	35.8	105.7
	2013	1,099.6	78.6	57.2	37.7	104.2
	2014 ¹⁾	1,248.0	79.9	61.8	41.0	108.1
	CAGR ¹⁾	3.8%	1.3%	8.1%	8.8%	0.8%
	2014 ²⁾	—	91.2	78.0	58.2	118.2
	CAGR ²⁾	—	4.6%	14.5%	18.7%	3.1%
가중평균 상해한도 (B, 만 원)	2010	951.7	164.2	80.0	80.0	186.8
	2011	942.8	158.8	80.0	80.0	180.6
	2012	939.3	154.1	80.0	80.0	174.8
	2013	936.2	143.5	80.0	80.0	163.3
	2014 ¹⁾	877.6	136.8	80.0	80.0	149.7
	2014 ²⁾	877.6	97.5	80.0	80.0	115.7
한도금액 대비 치료관계비 비중 (A/B, 배)	2010	1.13	0.46	0.57	0.37	0.56
	2011	1.16	0.49	0.62	0.41	0.58
	2012	1.18	0.51	0.66	0.45	0.60
	2013	1.17	0.55	0.72	0.47	0.64
	2014 ¹⁾	1.42	0.58	0.77	0.51	0.72
	2014 ²⁾	1.42	0.94	0.98	0.73	1.02

주: 1) 2014년 2월 척추 염좌가 상해등급 8급(한도금액 240만 원)에서 12급(한도금액 8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표 1〉의 결과는 상해등급 변화로 인한 등급별 환자 수 분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등급별 환자 수와 치료관계비 증가율이 2014년에도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상해등급 변경이 반영된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3) 대인배상 I, II에서 지급된 치료관계비임.

자료: 각 연도별 「상해등급별 부상보험금 현황」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가 계산함.

- 3) 13급의 경우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혹은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리고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임. 14급은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임.

- 상해등급 13급, 14급인 정상환자 가중평균 상해 한도금액 대비 부상자 1인당 치료관계비 비중이 2010년 0.57, 0.37에서 2014년에는 0.77, 0.51로 상승하여 정상사고 환자들의 과잉치료 유인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됨.⁴⁾
 - 상해등급 13급, 14급의 2014년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는 상해 한도금액 80만 원의 77%, 51%에 불과하지만 2010년의 57%, 37%에 비해 20%p, 14%p 상승함.
 - 3일,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임에도 치료관계비 비중이 한도금액의 77%, 51%에 이룸.
 - 중상해 환자의 경우 한도금액 대비 치료관계비 비중이 2010년 1.13에서 2014년 1.42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치료관계비의 42%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에서 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였고 초과금액은 책임보험이 아닌 임의보험, 즉 대인배상 II에서 지급됨을 의미함.

〈표 2〉 대인배상 I 상해급수별 사고 건수

(단위: 천 건)

연도	전체	중상해 1~7급	정상	
			8~14급	13~14급
2010	1,094.6	37.6	1,056.9	431.9
2011	1,064.8	36.5	1,028.3	465.2
2012	1,120.0	36.8	1,083.2	520.4
2013	1,136.4	36.2	1,100.2	613.2
2014	1,111.0	29.7	1,081.2	712.1
2015	1,129.1	30.1	1,099.1	740.1

자료: 보험개발원.

■ 대인배상 사고의 경우 사고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고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인배상 I의 상해한도를 초과하는 치료관계비도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대인배상 II에서 지급함.
 - 사고책임이 적은 운전자가 대인배상 II를 한도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책임이 큰 운전자에게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책임이 큰 운전자임에도 장기 입원 및 과잉 치료가 가능함.
- 따라서 사고책임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증가하고, 사고책임이 적은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책임이 큰 운전자보다 차년도 보험료 인상폭이 더 클 수 있음.

4) 〈표 1〉의 가중평균 상해 한도금액은 한도금액을 상해등급별 사고발생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인데, 중상해 사고의 경우 상해급수별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한도금액이 줄어들고 있음(〈표 2〉 참조). 반면 13~14급 정상사고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 일본의 중과실감액제도



■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의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치료관계비 지급에도 과실비율을 반영하고 있음.⁵⁾

-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책임보험에서는 중과실감액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책임을 부담하게 함.
-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손해액은 임의보험(우리나라의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22조 제2항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험금이 지급됨.

■ 일본의 중과실감액제도는 책임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제도인데, 1962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됨.

- 책임보험에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중과실감액제도를 도입함.
 - 손해배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기행위가 사회적으로 넓게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⁶⁾

■ 중과실감액제도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70% 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감액됨.

- 사망, 후유장애, 상해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가 3,000만 엔, 4,000만 엔, 그리고 120만 엔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상해 한도금액은 20%, 사망과 후유장애 한도금액은 20%부터 50%까지 줄어들게 됨.
 -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70% 이상일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치료관계비의 한도금액은 120만 엔에서 96만 엔으로 감소하고, 치료관계비가 96만 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치료관계비는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부담함.

5)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0%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함.

6)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보장제도 참서관실(2011. 9. 30), “제2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무과실보상제도 등에 관한 검토회의”, 발표자료 참조.

〈표 3〉 일본의 책임보험 중과실감액제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사망(한도 3,000만 엔), 후유장애(한도 4,000만 엔)	상해(한도 120만 엔)
70% 미만	감액 없음	
70% 이상 80% 미만	20% 감액	20% 감액
80% 이상 90% 미만	30% 감액	
90% 이상 100% 미만	50% 감액	

자료: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の 保険金等 및 自動車損害賠償責任共済의 共済金等の 支払基準(<http://www.mlit.go.jp/jid-osh-a/anzen/04relief/resource/data/kijyun.pdf>).

■ 일본의 중과실감액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손해배상 원칙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액(과실상계)되지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도에 있어서는 중과실감액제도가 채택되어 감액(상계) 범위가 대폭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임의보험의 대인배상에서는 엄격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4. 시사점



■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사고책임(과실) 반영보다는 피해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치료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보장적 취지임.⁷⁾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책임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자배법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⁸⁾

7)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8) 정우혁(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보험자들 사이의 보험자대위」, 『재판실무연구』, 광주 지방법원, p. 21.

- 그러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경미사고임에도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관계비 지급 시 사고책임(과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넓게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도 손해배상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상해 환자에게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되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대인배상 II)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 중과실감액제도와 유사하게 중과실 경상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할 경우 공정성 제고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상환자들의 장기 입원 및 과잉 치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과실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고책임 부담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
 - Carvell, Currie, and MacLeod(2012)는 과실제도의 변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Heaton(2015)은 과실제도 변화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점을 실증 분석함.⁹⁾
- 한편, 제도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kiri](#)

9) Carvell, Currie, and MacLeod(2012), "Accident Death and the Ru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AND Journal of Economics*; Heaton, Paul(2015), "How Does Tort Law Affect Consumer Auto Insurance Cos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송윤아 연구위원, 마지혜 연구원

요약

- 지난 6월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신규판매를 중단함.
 -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임.
 - 2005년부터 국내에서는 전업 신용카드회사에만 DCDS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신용카드회사의 DCDS 취급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DCD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요율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보험과 달리, DCDS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가 문제로 지적됨.
 - 특히, 2005~2016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계약상 책임보험(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임.
- 우리나라 DCDS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로 인해 DCDS 공급자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 회계조사원(GAO)은 DCDS와 대체상품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해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익이 수입수수료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DCDS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한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DCDS 운영사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줌.
-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및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DCDS 운영사례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제시함.

1. 검토 배경



■ 지난 6월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신규 판매를 중단함.¹⁾

- 신용카드회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취급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DCDS는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설계, 수수료율, 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됨.
-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실태점검(2015. 8. 31~10. 26) 결과, DCDS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함.²⁾
 - 신용카드회사의 DCDS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DCDS 등 부가서비스 판매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됨.³⁾
 - 또한 DCDS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함.⁴⁾

■ DCDS처럼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함.

■ 이에 보고는 우리나라와 미국 신용카드회사의 DCDS 운영경험으로부터 보험유사 부가서비스⁵⁾의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조선비즈(2016. 6. 20), “하나·BC카드, 내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규 판매 중단”.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7),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3) 2016년 9월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6(설명 의무 등)이 신설되어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방법이 규정됨.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회사의 DCDS가 부가서비스로서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됨.

4) 이에 앞서 DCDS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DCDS와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을 감안하여 DCDS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 상세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회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개선 및 미지급 보상금 환급 추진”.

5) 본고에서 ‘보험유사 부가서비스’란 DCDS처럼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함.

- 신용카드회사의 DCDS 운영경험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제 적용이 소비자의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시장 현황



가.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의 개념

■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 ·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전업 신용카드회사에만 판매가 허용됨.

- 전업 신용카드회사는 2007년 금융감독원의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 소비자보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청구액에 대한 채무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CDS 판매 허용에 관한 논의와 입법 추진이 은행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모두 불발되어 DCDS의 허용 및 불허를 명시한 법률은 최종 입법되지 않음.
 - 2009년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 DCDS 판매를 허용하는 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 · 폐기되었고, 2010년 DCDS를 보험으로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 · 폐기됨.

■ 신용카드회사는 계약상 책임보험(CLIP: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채무면제나 유예로 인한 자사의 손실위험을 손해보험회사에 이전하고 있음.

- DCDS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과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고객과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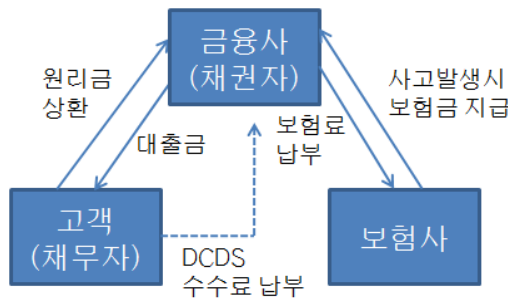
■ DCD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험⁶⁾은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간 3자 계약임(〈그림 2〉 참조).⁷⁾

6) 미국에서는 credit insurance 또는 credit life(health, unemployment, disability) insurance, 영국에서는 payment protection insurance라고 표현함.

7) Durkin, T.A., and Elliehausen, G.(2012), “Consumers and Debt Protection Products: Results of a New Consumer Survey”, *Federal Reserve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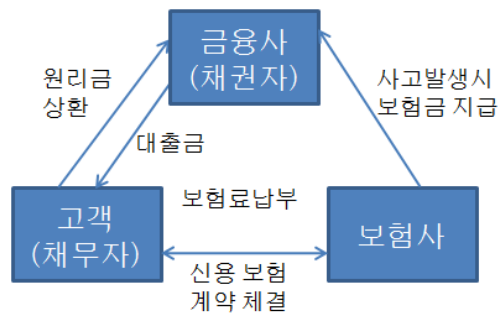
- 신용보험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인식하여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에 대출잔액을 변제하는 보험임.
 - 주요담보는 사망, 상해 또는 질병 장기입원, 비자발적 실업, 화재손해담보 등임.
- 개인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신용보험을 대출실행 금융회사가 단체보험형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채권자가 되며 피보험자는 채무자가 됨.
- DCDS와 신용보험은 신용위험 보장이라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의 입장에서 DCDS는 ‘보험’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 또는 DCDS와 상이함(〈표 1〉 참조).
 -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의 대가라기보다는 취급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예정원가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림 1〉 DCDS 거래구조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그림 2〉 개인 신용보험 거래구조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표 1〉 DCDS · 신용보험 · 보증의 비교

구분	DCDS	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	신용보증
보험사고	사망, 장애, 실업 등	사망, 장애, 실업 등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변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채무변제 후 구상	채무변제 후 구상
계약자	채무자	채무자(개인) 채권자(단체)	채무자 (타인을 위한 보증)	채권자 (자신을 위한 보증)
제공사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주: 신용보험을 대출실행 금융회사가 단체보험형태로 판매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채권자, 피보험자는 채무자가 됨.

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시장

■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DCDS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회사들이 DCDS 판매를 통해 수취한 수수료는 1조 4,754억 원에 이릅니다(표 2) 참조).

-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취급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카드회사들도 판매를 시작하여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전업 신용카드회사(7개)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함.
- 가입회원 수 및 보장대상 채무액 증가로 인해 DCDS 수입수수료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580억 원에 이릅니다.
 - 2016년 6월 말 기준, 7개 신용카드회사의 DCDS 가입회원 수는 약 310만 명이며, 2015년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인 총 채무액은 약 67조 원에 달함.

〈표 2〉 DCDS 수수료 및 수입(2005~2016년 2사분기)

연도	가입회원 수 (천 명)	채무액 (억 원)	수입수수료 (억 원)	인당채무액 (백만 원)	수수료율	채무액 증가율	수입수수료 증가율
2005	248	9,418	65	3.80	0.69%	-	-
2006	474	41,188	231	8.69	0.56%	337.3%	255.4%
2007	590	57,566	281	9.76	0.49%	39.8%	21.6%
2008	747	82,023	373	10.98	0.45%	42.5%	32.7%
2009	1,141	136,509	614	11.96	0.45%	66.4%	64.6%
2010	1,532	226,312	1,057	14.77	0.47%	65.8%	72.2%
2011	2,129	315,750	1,525	14.83	0.48%	39.5%	44.3%
2012	2,934	452,172	2,110	15.41	0.47%	43.2%	38.4%
2013	3,278	552,983	2,291	16.87	0.41%	22.3%	8.6%
2014	3,465	619,546	2,416	17.88	0.39%	12.0%	5.5%
2015	3,323	666,747	2,580	20.06	0.39%	7.6%	6.8%
2016 1/2	3,129	321,850	1,211	10.29	0.38%	-	-
합계	22,990	3,482,064	14,754	15.15	0.42%	-	-

주: 수수료율 = 수입수수료 / 총 채무액.
자료: 여신금융협회.

■ DCDS 보장대상 채무액 대비 수수료의 비율, 즉 수수료율은 2005년 평균 0.69%에서 2016년 상반기 0.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수료율 감소와 보장대상 가입회원 수 및 채무액 증가율 둔화로 수입수수료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DCDS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DCDS와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을 감안하여 DCDS 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 유도함.
 - 2012년 11월에는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검증결과에 따라 삼성카드 등 3개사는 2년 이상 DCDS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5~10% 인하함.⁸⁾
 - 2013년 5월,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감독기관의 지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12.1% 내리고 장기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인하 조치함.⁹⁾

■ DCDS 판매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대두되었음.

- 금융감독원은 보상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수취, 카드채무 면제 등 보상누락,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불명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함.¹⁰⁾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2년~2015년 8월) DCDS 관련 소비자상담 504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396건(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¹¹⁾
 - 구체적으로,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245건, 48.6%),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1건, 16.1%), 무료 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0건, 13.9%) 등

3. 과도한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수수료



■ 2005~2016년 기간 동안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1,352억 원)은 총 수입수수료(1조 4754억 원)의 9.2%에 불과하고, 신용카드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2,726억 원)의 49.6%에 불과함.

- 카드회사의 보상률이 2005년 1.5%에서 2016년 11.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률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DCDS 판매를 통해서 약 1조 2,02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9)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4. 30), 「채무면제 및 유예 계약(DCDS)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KB 지식 비타민』, 제14-34호.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11) 한국소비자원(2015. 12), “카드회사 부가상품(채무면제, 유예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3〉 DCDS 수익 구조(2005~2016년 2사분기)

(단위: 천 명, 억 원)

연도	수입 수수료 (A)	CLIP 보험료 (B)	보상금 (C)	카드회사 수입 (A-B)	보험회사 수입 (B-C)	CLIP보험료 /수입수수료	보상금 /수입수수료	보상금 /CLIP보험료
2005	65	26	1	39	25	40.0%	1.5%	3.9%
2006	231	88	10	143	78	38.1%	4.3%	11.4%
2007	281	84	13	197	71	29.9%	4.6%	15.5%
2008	373	90	19	283	71	24.1%	5.1%	21.1%
2009	614	133	32	481	101	21.7%	5.2%	24.1%
2010	1,057	227	64	830	163	21.5%	6.1%	28.2%
2011	1,525	324	88	1,201	236	21.2%	5.8%	27.2%
2012	2,110	411	140	1,699	271	19.5%	6.6%	34.1%
2013	2,291	387	328	1,904	59	16.9%	14.3%	84.8%
2014	2,416	372	247	2,044	126	15.4%	10.2%	66.3%
2015	2,580	394	276	2,186	118	15.3%	10.7%	70.1%
2016 1/2	1,211	189	134	1,022	55	15.6%	11.1%	70.9%
합계	14,754	2,726	1,352	12,029	1,374	18.5%	9.2%	49.6%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 2005~2016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임.¹²⁾

- DCDS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가지는 신용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상품에 가입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료 구조체계와 비교·대조함으로써 수수료 과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DCDS의 수입수수료, CLIP 보험료, 판매비용 등은 신용보험의 일반적인 보험료 구성체계상 각각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CLIP 보험료는 DCDS에 가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 보상금 지급의 재원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보험의 순보험료 항목과 유사함.
 - 판매비용 등은 신용카드회사가 DCDS를 판매·관리하는 데 소요되므로, 신용보험의 부가보험료 성격을 띠는 것임.
- 동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CLIP 보험료는 18.5%로, 이는 2005년 40%에서 2016년 1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망보험의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이 약 8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2) 한국소비자원(2015. 12).

■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DCDS 수수료 수익은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DCDS와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대체상품(예를 들어, 신용보험)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보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커짐.

4. 미국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운영사례 검토



■ 우리나라 신용카드회사의 DCDS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DCDS와 관련하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과 주 보험감독당국 간 DCDS의 법적 성격과 감독관할에 대한 오랜 분쟁 끝에, 1990년 연방대법원은 DCDS가 보험업무가 아닌 은행업무라고 판결함.¹³⁾

- 1998년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국법은행¹⁴⁾이 채무 유예계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2002년 DCDS 관련 규정을 제정함.¹⁵⁾
 - OCC의 상기 규정은 DCDS가 은행상품이므로 연방법에 의한 감독을 받으며, 국법은행이 이 서비스를 취급하는 데에 대해 주 보험감독당국은 감독권이 없음을 명시함.

■ 2002년 OCC의 규정 제정으로 DCDS의 법적 성격과 감독관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신용카드회사의 DCDS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기 시작함.

- 1917년 개인신용보험이 도입되고 1928년 단체신용보험이 판매된 이후 신용보험이 신용위험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됨.
- DCDS는 1960년대 초 개발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 신용카드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체신용보험을 판매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DCDS 판매를 본격화함.

13)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바람; 김선정(2015), 「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보험법연구』, 9권 2호, 보험법학회; 정경영(2016),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14) 국법은행(National Bank)은 연방법인 National Bank Act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은행을 의미함; 김선정(2015)을 인용.

15) 12 Code Federal Regulation Part 7 and 37.

- 2009년 기준 신용카드채무 관련 신용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30% 이상인 3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001년 7억 5,700만 달러에서 2009년 1억 8,600만 달러로 75% 감소함.

■ 미국 회계감사원(2011)은 신용카드 채무 관련 DCDS의 신용보험 대체는 규제차이에 기인한다고 지적함.¹⁶⁾

- DCDS는 연방규제, 신용보험은 각 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용보험은 상품, 판매 등의 규제가 주마다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품 제공이 어렵고 마케팅 비용도 더 높음.
- 무엇보다도, DCDS는 수수료 및 대리인 자격요건 규제가 없고, 상품 설계 및 보장 조항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일단 개발한 상품은 추가적인 수정작업 없이 전국적으로 판매 가능함.
-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 의무 및 최저손해율 제한이 있고, 상품 구조 및 보장내용 설계 시 주보험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용보험을 취급하려는 금융회사는 각 주의 보험법규에 따라 보험판매 대리인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신용보험모델규제(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는 보험회사가 신용보험 손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 미국 회계감사원(2011)은 주요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이 수입수수료의 55%를 차지하는 등 DCDS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대비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7개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입수수료는 2009년 기준 24억 달러로, 이 중 지급보상금은 21%(5억 1,800만 달러), 사업비와 준비금은 24%(5억 7,400만 달러), 수익은 55%(13억 달러)를 차지함.
- 반면, 동 기간 신용카드채무 관련 신용생명보험의 손해율은 61%로 단체생명보험의 손해율(83%)보다는 낮으나, DCDS에 비해 높음.

〈표 4〉 미국의 DCDS와 신용보험 규제

구분	DCDS	신용보험
상품유형	은행상품	보험상품
규제	연방법	주법
감독당국	연방은행규제당국	각주 보험감독당국
계약구조	카드회사와 고객 간 양자 계약	보험회사, 카드회사, 고객 간 삼자 계약
상품구성	전국 동일 상품	주별로 상이
가격규제	가격규제 없음	주별 가격규제 있음

자료: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16)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Consumer Costs for Debt Protection Products Can be Substantial Relative to Benefits but Are Not a Focus of Regulatory Oversight".

5. 결론 및 시사점



- 은행권의 DCDS 제공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연장과 같이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 등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함.
 - 정경영(20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은 신용카드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요업무이므로 신용카드회사에 적용되었던 논리와 동일한 이유로 은행도 신용카드 채무면제 및 유예의 판매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보증연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부가서비스로 해석하였음.
- 불완전판매와 달리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찰이 필요함.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DCDS 소비자 상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 소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DCDS 운영사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 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줌.
-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¹⁷⁾, DCDS가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입회원의 입장에서는 DCDS를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¹⁸⁾
 - 미국 사례에서는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하였는데, 이는 DCDS가 신용보험과 동일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함. [kiri](#)

17) 정경영(2016).

18)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 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함.
 -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보험환경 변화에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고,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금융개혁으로 보험상품 가격 상승, 신상품 개발, 표준약관 폐지, 신종자본증권 발행, 판매채널 개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판단요율 사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있었으나 적정보험료 산출, 신상품 개발 활성화, 판매채널 관련 규정 확정, 보험다모아 오픈 등 긍정적 변화가 발생함.
 -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협회 주도의 보험상품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등의 진전
- 보험산업이 금융개혁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이 연착륙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 강화 등도 요구됨.

1. 검토배경



■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상품 · 가격 출현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명시적 · 비명시적 가격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됨.
- 표준약관 폐지, 가격자율화 등으로 부각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고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진행 현황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¹⁾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내용은 <그림 1>과 같으며 2017년 말까지 체계적 ·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그림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개요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별첨 자료 참조.

- 첫째,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신고제도, 표준약관제도, 상품설계기준, 부실상품에 대한 감독, 배타적 사용기간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한하던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확대하여 신상품 개발을 촉진
- 둘째,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를 위해 위험요율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제 재정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 그리고 사후적 건전성 감독시스템을 강화함.
 -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위험률 조정한도 및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의 가격규제 완화는 2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
 - 보험료 비교·공시 정보는 물론 보험상품 검색기능을 장착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
- 셋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의 사전적·직접적 통제 방식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함.
 -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규제·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규제·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기준 완화
- 넷째, 과도한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
 - 불완전판매 및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행위 억제,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부당승환 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강화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다섯째, 기업성 보험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의 종합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
 -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적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여,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도록 유도

3. 현황 및 평가



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보장성 상품 대부분이 이미 보험시장에 소개되어 있어, 아직까지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음.
 - 종신보험, CI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상품들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판매되었음.
 -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는 주요 상품으로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e Product)이 있으나, 우리 사회환경에서는 위험이 너무 많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지 않고 있음.

■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안전할증 규제도 2017년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길게는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 출현 기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임.
- 안전할증은 2016년에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이후 2017년에 완전 폐지되므로, 내년에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구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등 고객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배타적 사용권 취득이 2015년에는 생명보험 3건, 손해보험 5건이었으나,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8건, 손해보험은 6건을 기록함.
 - 예를 들어,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험상품에 연계시키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표 1〉 배타적 사용권 부여상품 추이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
생명보험	3	4	6	5	3	8
손해보험	6	4	1	3	5	6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던 표준약관이 폐지되는 대신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약관에 대하여 자문하기로 함.

-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불공정약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함.
- 상품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함.

■ 표준약관 관련 법규 개정 지연으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나, 상품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 폐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나.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 금융개혁으로 직·간접적인 가격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실손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 그간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약 20% 가까이 인상되었음.
-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사망률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기도 하였음.
 -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타 상품의 손실상쇄를 위하여 사망보장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았음.

■ 가격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손해율을 반영한 적절한 보험료 산출에 기인한 것으로 가격자율화로 보험료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험료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음.
- 그 동안 가격 통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다가 가격자율화에 따라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이 허용되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아직 활발히 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행환경이 개선될 경우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주식형 신종자본증권은 일부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수요 부족으로 국내 발행이 어려운 상황임.
 - 올해 기업은행만이 3,000억 원 규모의 주식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신한은행 등 신용도가 높은 은행도 해외발행을 추진 중에 있음.

라. 판매채널 전면 혁신

■ 판매채널 혁신 관련 로드맵 일정에 따라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행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임.²⁾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했던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확대 적용함(2017년 4월 1일 시행).
 - 상품비교설명제도는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또한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가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함.³⁾
-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안은 실제 추진 검토 단계에서 보험상품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장기 후속과제로 검토하기로 함.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보험다모아의 경우 도입 이후 약 11개월 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추가해 나가고 있음.

- 인터넷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와 연계한 보험가격 비교 정보의 제공 등 앞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9. 27),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3) 이 밖에도 보험회사와 대형 법인대리점 간의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마.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

■ 로드맵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 일반손해보험 효율체계 변경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판단요율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 지난 수십년 동안 재보사 협의요율에 의존하던 일반손해보험 업계관행에 변화를 가져왔음.
- 일반손해보험 대행사들은 관련 통계를 집적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 판단요율 사용으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 및 이로 인한 보험료 규모 축소로 업계는 판단요율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개선방향



■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보험상품 등 기존 보험상품과 전혀 다른 형태의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신고 수리 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함.

-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사고 예방 측면이 부각되는 상품이 출시될 것임.
- 따라서 사고 예방으로 보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는 표준약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무의 범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보험업감독규정」의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에 보다 구체화할 필요
- 불평등 약관에 대해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작성 시 주의하도록 유도

■ 보험료 인상은 보험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장 기제에 의한 가

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보험가격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할 필요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완화를 검토하였으나 아직 시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미해지된 외화자산의 잔존만기 인정 문제 등이 일례임.

■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함.

- 표준화된 상품 형태와 항목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소비자 민원과 분쟁에 대비하여 비교상품 중 특정 상품을 추천권유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보험산업이 금융개혁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산업이 연착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개혁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 평가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판단요율처럼 준비기간과 활성화기간이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함. [kiri](#)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2016년 10월 2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함.
 - 위자료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적용하고 기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함.
 -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나 음주운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을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취지임.
-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2004년 이후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위자료 상향의 목적인 음주운전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함.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영국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음.
-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청구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례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함.

- 2016년 10월 24일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함.
-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 유형별로 기준금액이 가중됨.
 -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 원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기준금액은 특별가중 기준금액인 2억 원으로 상향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50% 증액이 가능함.

〈표 1〉 불법행위별 기준금액과 특별가중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특별가중
교통사고		1억 원	2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4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6억 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5천만 원	1억 원
	중대피해	1억 원	2억 원

주: 최대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양태에 따라 $\pm 50\%$ 를 가감할 수 있음.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마련”.

■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식 조정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악의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¹⁾

- 음주운전은 실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위자료 가중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징벌적 위자료의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 금액을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부상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배상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을 것임.

1) 보험업계와 언론에서는 이를 “징벌적 배상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매일경제(2016. 11. 8), “중과실 차사망사고에 ‘위자료 폭탄’”.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보상제도



■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가입자를 보상함.**

-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사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자기차량담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체상해도 보상함.²⁾
 - 현행 보상제도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징벌적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함.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
- 음주운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감소함.
 -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불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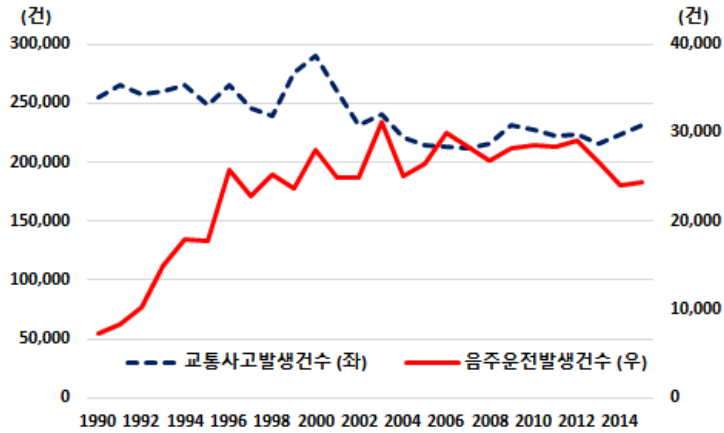
■ **음주운전 가해자가 일으킨 손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보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부담하는 음주운전 비용은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에 불과함.
 -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유인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04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고 발생비중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대인배상Ⅱ는 무면허운전 가해자를 보상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음.

2) 「상법」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대인Ⅰ, 대인Ⅱ, 대물의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인 경우만 면책되도록 정함. 그리고 자기신체보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됨.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이기형(2016),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KiRi Weekly』, 제398호, 보험연구원 참조.

〈그림 1〉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음주운전 사고발생 건수 추이



주: 자동차사고 운전자 중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임.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각 연도.

3. 주요국의 음주운전 보상제도



■ 일본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청구자가 되는 (인신)상해보험은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서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피보험자 자신이 받는 보상은 (인신)상해보험 이외의 차량보험, 탑승자 상해보험, 자손사고보험, 대차비용특약, 변호사비용특약 등에서도 면책임.

■ 미국 뉴욕주는 보험 계약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해자의 신체상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뉴욕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앰불런스, 응급실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기

4)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상태임.

5) 일본손해보험협회(2016), “음주운전방지매뉴얼”, p. 28; 이기형(2016) 재인용.

신체상해(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던 앰블런스, 응급실 비용도 구상함(뉴욕주 보험업법 § 5103(b)(2)).

■ 또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음주운전 벌칙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계약 취소 혹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⁶⁾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대형 4개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평균 1,830달러에서 7,794달러(4.3배), 그리고 1,812달러에서 5,532달러(3배)로 인상함.
-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스테이트팜은 음주운전 적발 경향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5년간 허용하지 않음.

■ 영국은 음주운전이 위험의 동질성 유지를 저해하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있음.⁷⁾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4. 개선방안



■ 음주운전 가해자 자신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현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함.

-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차량손해, 상해·사망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주중용 의원(국민의당)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39조 개정안을 제출함.

6) Taylor v. Superior Court(1979) 24 Cal. 3d 890; Peterson v. Superior Court(1982) 31 Cal. 3d 147 판례 참조.

7) 한기정(1998),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판례실무연구Ⅱ』, 비교법실무연구회, pp. 672~674.

- 대법원 판결(대판 89다카17591)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에서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상해보험의 약관규정은 「상법」 제732조의 2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음.
-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모두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 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지만 대인배상 I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배상 금액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법학자들은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구성원들의 위험의 동질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므로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⁸⁾
 - 보험계약의 본질은 추상적인 위험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의해 위험을 전가·분산시키는데 있음.
- 대인배상 II 담보는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인 임의보험인데 음주운전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한도 이상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 범죄 및 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책임.⁹⁾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 보험회사가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

8) 박세민(2002),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p. 9; 양승규(1993), 「무면허운전면책 보험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상사법의 기본문제』, 해암이법찬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p. 701; 김대연(1998),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보험약관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10집, 한국상사판례학회, pp. 148~149.

9) 대만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強制汽車責任保險法)」 제29조.

례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kiri](#)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 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및 금융감독당국은 대리점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함.
 - 보험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 대리점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음.
 -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 없이는 보험대리점이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 거래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계약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
 -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1. 검토배경



- 대리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대리점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업 관련 거래는 해당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도 대리점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 또한 보험대리점 계약은 일반 대리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¹⁾
- 대리점법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동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조업 분야에서의 본사 및 대리점 간의 거래 구조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간의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이 상이함.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1) 머니투데이(2016. 11. 9), “공정위, 보험약관 이어 판매까지 이중규제...대리점법 논란”.

2.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대리점법 적용 문제



가. 대리점법의 제정 경과

■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에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됨.

-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하여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판매목표량 설정,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촉발되었음.
-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종(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고 업체별로 50개 대리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9월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²⁾
- 공정위는 실태조사 후 2014년 5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공정위 고시 제2014-6호)를 제정함.
- 서울시는 2015년 위 고시의 준수 여부 및 대리점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9개 업종(자동차, 자동차부품, 음료, 식자재, 위생용품, 교복, 이동통신, 아웃도어, 스크린골프)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³⁾
 - 당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이후 공정위 고시가 아닌 별도의 법령으로 대리점거래를 규율하고자 대리점법이 제정됨.⁴⁾

나. 대리점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대리점법 제2조 제1호).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 9. 11),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3) 서울시 보도자료(2015. 12. 1),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법 공포(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및 2016년 7월 26일 대리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여기서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됨(대리점법 제2조 제2호).
- 또한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됨(대리점법 제2조 제3호).

■ 대리점법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 적용이 배제됨(대리점법 제3조 제1항).

■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도 대리점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됨(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 대리점법은 이에 더하여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4호).
 - 그러나 현재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위 조항에 근거한 적용 제외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대리점법 적용 문제

■ 보험대리점 계약은 원래 대리점법의 주요 규제 대상인 제조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무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거래 성격 및 구조에 의할 때 대리점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업자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대리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그런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뿐이며(「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 ‘재판매’란 상품 또는 용역 구매를 전제로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님.
- ‘위탁판매’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상법」 제101조), 보험대리점은 자기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은 대리점법이 정의하는 대리점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제로 ‘상품·용역의 공급-재판매·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한 대리점법상 많은 조항들은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시 납품방법,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하도록 한 조항(대리점법 제5조),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대리점법 제6조),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대리점법 시행령안 제6조 제2항 제2호) 등임.

■ 또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법인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및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⁵⁾

■ 결국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라.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 적용 배제 조항의 필요성

■ 현재 대리점법 문언은 대리점거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공정위 또한 대리점법이 보험대리점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됨.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8. 27),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 이에 대리점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과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거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 적용 배제 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될 수 있고,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및 시책은 기본적으로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적용을 전제함.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 제4호).
- 보험대리점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의 차등지급·적용이 이러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⁶⁾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 제1호).
- 보험대리점은 무실적을 이유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가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7조 제1항 제4호).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이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특히 대리점법은 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6) 금융위원회(2015. 8. 27)의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마련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3호.

-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있어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였음(공정거래법 제48조의3 제1항 및 제48조의6 제1항).
- 그런데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이기만 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대리점법 제13조 및 제19조 제1항).

■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공정위가 판단하여 대리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보험료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3. 결론



■ 보험대리점 계약은 원래 대리점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이 적절하지도 않음.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굳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음.

■ 이에 대해 대형 보험대리점(GA)을 제외하고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여도 충분함.
-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 보호를 위하여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음.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설사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부 여부,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적 불안과 불명확성이 존재함.
- 또한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분쟁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데, 보험대리점 계약을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보험대리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 있음.

- 대리점법 또는 동법 시행령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ri](#)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임.
-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여 저축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임.
 - 공적연금을 보충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중 보험회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에 이룸.
 -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강화는 노후소득원 마련이 절실한 중산층의 노후소득원 마련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세금 납부 방법의 규칙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함.
- 해당 법안의 개정이유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임.
 -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 관한 과세 요건 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 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 및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 및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 및 수익 감소가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약 50.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¹⁾

■ 본고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조건 변화가 경제주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1)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2.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의 효과



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안

■ 저축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를 지칭함.²⁾

-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기간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여 보험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임.
 - 장기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반 저축성보험과, 펀드처럼 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변액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의 장기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세제비점적 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 혹은 연금전환 특약을 포함한 보험상품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³⁾
 - 첫째,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2억 원 이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하 ‘즉시연금’)
 - 둘째, 계약자가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하 ‘월납식 보험’)
- 납입방법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차익에 대한 예외규정은 장기저축을 통한 가계의 재산형성 및 노후소득원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총액을 1억 원 이하로 축소하는 것임.

2)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제4호 참조.

3) 본고에서는 시행령 개정 시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개략적으로 소개함.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참조.

- 세제혜택 한도 총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이던 즉시연금 및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월납식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유인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나.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인한 영향

-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장기저축성보험 수요자들은 장기저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성 제약보다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가입자의 장기저축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은 남아있는 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입유인은 줄어들게 됨.
-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10년 이상 장기저축 가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음.

- 우리나라 2015년 기준 가계 저축률은 5.3%로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낮은 수준임.⁴⁾
-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저축률 제고를 위해 5년 이하의 중·단기 저축에 대해 1억 원까지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ISA를 도입하였음.⁵⁾
- 이를 감안할 때 유일한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최근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임.
 - － 노인빈곤층 가운데 46%가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는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시

4) OECD(2016),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household-saving-rates-forecasts_2074384x-table7.

5) ISA 가입자에게는 최대 원금 1억 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2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급한 과제임.⁶⁾

-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으로 준비가 가능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함.
 - OECD가 권장하는 노후 소득대체율 7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3층)의 준비가 필수적임.
 -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세제혜택은 가입자의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임.
 -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및 확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비과세(Exempt), 운용 시 발생하는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Exempt)하고 연금 수령 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과세(Taxation)함.⁷⁾
-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고(Taxation),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Exempt)하고 연금 수령 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비과세(Exempt)함.⁸⁾
- 따라서, EET와 TEE는 과세 시점, 즉 연금 납입 시 혹은 연금 수령 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 과정에서 과세 누락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장기저축성보험을 통한 개인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

- 2015년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 292.2조 원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5조 원으로 이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대비 63.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⁹⁾
 - 이는 주로 연금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개인은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상품과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미국 등 선진국 역시 개인에게 적합한 연금상품 및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EET 방식 연금과 TEE 방식 연금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6) 정원석·김미화(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조사자료집, 보험연구원.

7) 이를 납입 시 비과세(E), 운용 시 비과세(E) 그리고 수령 시 과세(T)한다 하여 EET 과세방식이라 칭함.

8) 이를 납입 시 과세(T), 운용 시 비과세(E) 그리고 수령 시 비과세(E)한다 하여 TEE 과세방식이라 칭함.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3. 결론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한도 축소는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는 ISA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저축과 국민자산 형성을 활성화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의 안정적인 산업자본으로서의 역할, 자본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투자자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국민의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고, 국민의 42%가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¹⁰⁾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축소는 개인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여 전체적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세수확대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음.¹¹⁾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저축의 수단 및 개인연금 선택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장기저축 및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 및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kiri**

10) 보험연구원(2016),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1) 정원석·문성훈(2016),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행태 변화」, 『세무와 회계저널』.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일본은 총리실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자율주행자동차(AV) 개발과 상용화 정책을 공표함.
 - 국토교통성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민관 ITS 구상 로드맵’을 2016년에 공표함.
 -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한정된 지역에서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L4)는 2026년 이후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L3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는 L4보다 이른 2020년 이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시 책임부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2016년 11월에 ‘자율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임.
 - 손해보험업계는 실험실증용 보험상품 개발에 이어 L3 이하 자율주행 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2017년 4월부터 제공할 예정임.
 - 손해보험업계는 L3 이하 자율주행 사고의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L4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사고책임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논의와 상품개발 동향은 국내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의 법제와 적용법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논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업계는 운전자요인이 배제된 자동차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담보위험결정과 요율산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일본은 2013년 6월 자율주행자동차(AV: Autonomous Vehicle)¹⁾ 개발을 일본경제 재생계획의 10대 프로그램 일환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민관 ITS 구상 로드맵’²⁾을 발표하였음.

- 동 로드맵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한정된 지역에서의 운전자 없는 AV(L4)는 2026년 이후에 상용화가 되도록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
- 또한, L3³⁾ 이하의 상용화는 L4보다 이른 2020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AV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리와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개별 보험회사들은 실험실증용 보험상품을 제공한데 이어 자율주행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임.

■ 우리나라에서도 AV 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고 시 책임부담 방향성과 보험상품 개발 현황 등은 국내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AV 사고책임부담과 관련하여 세미나, 보고서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시험운행이나 준자율주행과 관련한 상품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1) 일본은 AV를 자동주행자동차로 부르고 있음.

2) 일본 총리실(2016. 5. 20), 「官民 ITS 構想・ロードマップ 2016」,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60520/2016_roadmap.pdf.

3) L1은 자동차 운전의 요소인 가속, 핸들조절, 브레이크 작동 중 하나를 시스템이 수행하는 경우이며, L2는 복수의 조작을 한 번에 시스템이 행하는 경우, L3는 이들 요소 모두를 시스템이 하고 시스템이 요청 시만 운전자가 대응, L4는 운전자 없이 모두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로 구분함; 이기형·김혜란(2016),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p. 128 참조.

2. 일본의 AV 상용화 방안



■ 일본은 총리실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AV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사회를 구현할 계획임.

- 2013년 6월 AV 개발을 일본경제 재생계획 10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채택하여 제조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공용도로에서 AV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음.
- 총리실은 AV 상용화를 구체화시킨 ‘민관 ITS 구상 로드맵’⁴⁾을 2016년에 공표하였음.
 - 동 로드맵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속도로 및 한정지역에서의 운전자 없는 L4 상용화는 2026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세계 최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할 예정임.

- 고속도로에서 L2는 2018년 중반부터 추월주행과 차선변경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 준자율주행 운전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하는 L3는 2025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임.
- 한정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는 2017년부터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2020년 이후부터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표 1〉 일본의 AV 상용화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5	2026~30
고속도로 자율주행	L2(추월, 차선변경)	개발	상용화	보급확대		준자율차 상용화	보급확대		
	L2(준자율주행)	개발	대규모 실증실험						
	L3(자율주행)	관련 제도 조사검토 및 상용화 계획 수립					시범적 상용화		보급확대
	L4(완전자율주행)	L4 니즈 및 사업모델 조사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한정지역 자율주행서비스(L4)		공용도로 외 실증실험	공용도로 실증실험 확충			이동서비스 실현	서비스 개시 및 고도화		
트럭행렬 자율주행(L4)		기술개발	안전성검증	실증실험		운행 시험			보급확대

주: 2020년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기반구축을 완료함.

자료: 일본 총리실(2016), 「官民 ITS構想・ロードマップ 2016」, p. 49를 요약 정리함,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60520/2016_roadmap.pdf.

4) 일본 총리실(2016. 5. 20) 참조.

- 이와 같은 동 로드맵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3.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AV 손해배상책임 부담방향 논의⁵⁾

- 일본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09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인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기초하고 있음.
 - 대인사고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운행공용자)는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시키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됨.
 - 다만, 운전자가 ‘① 자기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장해가 없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대물사고는 「민법」 제709조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나, 가해자가 업무종사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715조에 의거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 보험업계는 AV 사고 시 자율주행단계 구분에 따라 사고책임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
 - L2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전이 실현되나 자율주행 중일지라도 운전자에게 항상 운전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L3는 시스템에 의하여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운행책임이 일정 부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 발생함.
 - 대인사고의 경우 운행이익이 운전자와 사용자에게 존재하지만 운행지배는 자율운행하는 동안에 시스템이 하고 긴급상황 시에 운전자가 개입하므로 운전자에게 운행지배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일본 손해보험협회(2016. 6), “自動運転の法的課題について”, pp. 2~3 참조.

- 이에 따라 자율운전 중의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배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물사고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L4는 운전자가 운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관점에서 「자배법」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L4에 적용할 자동차안전기준, 이용자 의무, 면허제도, 형사책임부담, 자동차관계법령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하고, 제조물책임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에 대한 쟁점도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미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피해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곤란하므로 「자배법」에 자동차 결함도 포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이버리스크는 자율운전 기술이 진전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킹 등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이버리스크 대인사고의 경우 「자배법」상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물사고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제3자의 사이버공격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현행 「자배법」에서는 운전자나 보유자가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나 L4 사고 시 운전자나 보유자도 타인으로 보아 피해자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보험업계의 논의와 더불어 L4 사고의 손해배상책임부담에 대한 연구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자율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⁶⁾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1차 회의(2016년 11월 2일)에서는 자율주행운전에 대한 국내외동향과 「자배법」 검토사항을 논의하였음.
- 향후 2차 회의(2017년 1월)에서는 외국의 사고 시 책임관계의 방향성 검토와 논점 정리 및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하고 3차 회의(2017년 3월)에서는 논점 정리 및 향후 검토방향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6) 법학 교수 4명과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됨; 일본 국토교통성,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http://www.mlit.go.jp/common/001151040.pdf>.

4. 일본의 AV 보험상품 개발 추이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정부의 AV 상용화 정책에 맞추어 실험실증용 보험과 준AV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4월에 공표된 ‘자동운전 공용도로 실험가이드라인’에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험실증용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2016년에는 총리실이 공표한 ‘민관 ITS 구상 로드맵’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동주행상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표 2〉 일본의 AV 보험상품 개발 현황

구분	실증실험 AV 보험상품	상용화 AV 보험상품
대상자동차	L4 이하	L3 이하
주우해상	자율주행 실험실증 종합보상플랜(2015. 12)	—
동경해상	공용도로 실험실증 전용보험(2016. 3)	피해자 구제비용 등 보상특약

■ 실험실증용 AV 보험은 주우해상보험그룹(MS&AD)과 동경해상보험그룹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⁷⁾

- 주우해상보험은 2015년 12월부터 ‘자동주행 실험실증 종합보상플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실험실증 운행리스크와 비운행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음.
 - 운행리스크 담보는 운행사고에 대한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을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결함원인에 의한 사고를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도 제공함.
 - 비운행리스크 담보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
- 동경해상이 2016년 3월 28일에 개발한 ‘공용도로 실험실증 전용보험’은 AV의 조립과정과 실험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운행리스크(자동차보험), 고액기기 및 센서의 파손 및 고장리스크, 부수리스크인 사고 시 사고조사비용과 사이버리스크를 보상함.

7) 이기형 · 김혜란(2016), pp. 134~135 참조.

■ 상용화 AV 보험상품의 경우 L4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은 아직 없으나 L3 이하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동경해상이 2016년 12월에 개발하였음.

- 동경해상이 개발한 ‘피해자 구제비용 등 보상특약’ 상품⁸⁾은 2017년 4월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과 신계약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 동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제어불능 상태가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함.⁹⁾
 - 즉, 동 보험은 자율주행상태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는 것임.
- 상품제공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부대한 계약에 한정하여 특약을 부대할 수 있으며 자기신체나 자차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회사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 등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AV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과실비율 결정체계를 확립하여야 AV 보험상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¹⁰⁾

- AV 사고는 운전자요인이 배제되고 시스템 결함이나 고장, 사이버 공격, 도로 및 신호등 등 교통인프라의 결함이나 고장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보고 있음.
 - 사고 인과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운행기록장치(drive recorder 또는 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하고 공정한 분석기관 및 절차 등 체제구축이 제안되고 있음.
- 대인 및 대물사고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 하나, AV 사고가 시스템, 교통인프라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과실비율 확정이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대인사고의 경우 운행공용자의 과실감액¹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8) 일본 동경해상(2016. 11. 18), “自動車保険「被害者救済費用等補償特約」の開発”,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release/pdf/161108_02_.pdf.

9) 약관에서는 ‘이 계약의 자동차에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동작이 생긴 것에 의하여 사고가 생겨 피보험자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로 규정하고 있음.

10) 일본 손해보험협회(2016. 6), “自動運転の法的課題について”, p. 3 및 p. 5 참조.

11) 전용식(2016),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 『KiRi 리포트』, 제404호, 보험연구원, p. 6 참조.

5. 요약 및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의 AV 사고책임과 관련한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나, 손해보험업계는 L3 이하의 사고는 현행 「자배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L4 사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를 2016년 11월부터 운영하여 「자배법」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들은 정부정책 추진에 부합하고 자율주행 리스크 분석차원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의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형태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 일본의 AV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보험상품 개발 전망

구분	L1~L3 AV	L4 AV
「자배법」 적용	적용 가능	2017년 이후 심층 연구 필요
보험상품	현 자동차보험상품 + 자율주행 리스크 담보 특약 부대	책임부담 방향에 따라 상품개발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AV 사고 시 책임부담방안과 관련 보험상품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음.
- L4 사고책임 부담에 대해 제조사부담방안과 운행자와 제작사의 공동부담방안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법제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¹²⁾
- 이에 따라 주요국의 사고책임 분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배제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AV 리스크를 분석하여 관련한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kiri](#)

12) 이기형·김혜란(2016),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pp. 59~79; 황현아(2016. 12. 12),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과 손해배상”, 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참조.

3. 고령화

1.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	최장훈 강성호
2. 연금해지 시 세금 부과, 과도한가?	정원석
3.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오승연
4.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 및 시사점	전성주 조영현
5.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평가와 시사점 : 반·추납 및 임의가입을 중심으로	강성호 최장훈
6. 일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제휴전략과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7.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강성호 류건식
8.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정원석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

최장훈 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및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소득상한 인상의 경우 그만큼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므로 소득계층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연금급여액이 올라간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소득상한 인상은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노후 소득 격차를 확대하며 기업의 재원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 첫째, 퇴직 시 연금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나,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2060년 기금소진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 증가로 형평성이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수급 시 받게 될 연금급여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부(富)의 이전이 발생하게 됨.
 - 셋째, 기업 측면에서는 사업주 부담(보험료의 4.5%)이 증가하게 되어 신규 고용 및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가입자의 노후보장수준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연금 재정 악화, 기업(사업주)의 재원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현행 연금시스템이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요율 인상, 연금급여 조정, 보험료와 급여의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연금급여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및 언론에서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거로 첫째는 소득계층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1988년부터 채택·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특히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사회적 위험 중 노령과 관련된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그 상한은 421만 원이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출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가입자의 급여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을 정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하한 이하이면 하한 값(27만 원), 상한 이상이면 상한 값(421만 원)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7만 원~421만 원 범위 내에 있게 된다.

연금 보험료의 부담방식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앞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실제 소득월액이 1,000만 원이라면 기준월소득액이 421만 원(상한소득)이 되고 납입 보험료는 ‘1,000만 원×보험요율(9%)’인 90만 원이 아니라 ‘421만 원×9%’인 37만 8,900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1,00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소득월액이 421만 원인 가입자는 동일한 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을 기초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 조정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에 해당되는 소득(A값)과 자신의 소득평균에 해당하는 소득비례 부문(B값), 그리고 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소득재분배효과는 A값의 존재로 나타난다. 예컨대, 전자가 후자보다 큰

(작은) 경우에 해당되는 계층은 평균소득 대비 저(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연금급부액은 소득재분배의 혜택을 평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적게) 받게 된다.

여기서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연도별 평균소득월액²⁾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된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생애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자는 자신의 소득평균(B값)보다 A값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을 받고 고소득자는 낮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급여 산출식에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보다 큰 수익비를 갖고 있다. 소득재분배기능은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수익비가 1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수익비란 자신이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급여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영보험에 적용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료 대비 연금급여가 초과되는 부분만큼 궁극적으로 재정지원으로 충원될 수밖에 없다.³⁾

3.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소득상한의 역할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소득상한은 제도 도입이후 상향조정되어 오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5년에 한 차례 조정이 있었으며, 2010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상한액이 A값 변동률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제도초기인 1988~1994년에는 200만 원이었으나 2015년 7월 이후 421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상한에 속한 가입자 비중은 2010년 이후 13.15%와 14.1% 사이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에 속한 가입종별 가입자⁴⁾의 분포를 비교하면 사업장가입자가 96%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소득상한액을 두고 있는 것은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수급 시 연금급여의 격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함이다.

소득상한을 통해 연금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은 수지상등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 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연금급여 수준은 더 높아지고

1) 기본연금액=

$$[2.4(A+0.75B) \times P_1/P + 1.8(A+B) \times P_2/P + 1.5(A+B) \times P_3/P + 1.485(A+B) \times P_4/P + \dots + 1.2(A+B) \times P_{23}/P] \times (1+0.05n/12)$$

(P: 전체 가입월수, P₁, ..., P₂₃: 기간별 가입월수)

2)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의 평균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의미함.

3)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음.

4)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됨.

이에 따라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소득상한(421만 원)은 재정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상한 수준을 더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금을 받게 되어 그만큼 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따르면 최고 소득에서도 수익비가 약 1.2가 됨).

4. 소득상한 인상 주장에 대한 평가

먼저 소득상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현재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소득상한이 낮아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은 월 소득이 상한인 42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상한 이상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똑같이 37만 8,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저부담과 저급여로 되어 있는 현재 제도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상태인데 상한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의 급여수준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상한이 올라가면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인 균등 부문(A값)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급여수준이 올라간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일 국민연

금 소득상한액이 421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크게 되면 421만 원~6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추가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을 증가시켜 기존 값보다 높은 A값이 산식에 적용되게 된다. 증가된 A값은 상한소득 이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므로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상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립기금 고갈 문제,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업주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첫째, 소득상한 인상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재정을 악화시킨다. 국민연금 적용 소득의 상한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수급시점에서 연금 수급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가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1보다 큰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금재정수지 악화 수준은 상한선 확대 대상자 수에 대상자의 평균 수지차를 곱한 수준(‘총급여액 현가’-‘총납부액 현가’)만큼 추가적으로 기금재정수지가 악화된다고 하겠다. 이때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총급여액 현가’가 ‘총납부액 현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금재정에는 부정적이게 된다.

둘째, 현행 소득상한 이상의 소득층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순이전연금소득(‘연금액 현가’-‘보험료 현가’)을 발생시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연금액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즉, 현행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상한

소득 421만 원은 매년 국민연금 A값 상승률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낮다고 보아 일시에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증가시킬 경우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게 되겠지만 급여수준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비가 1보다 큰 구조에서 소득상한을 인상하게 되면 고소득층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한소득이 수익비가 1이 되는 선(월소득 약 800만 원)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급여산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상한선 확대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수익비뿐만 아니라 순이전연금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상한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부분은 가입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뿐, 상한 인상만큼 급여수준도 올라가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득상한을 높이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정년연무화 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기업들의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즉 소득상한을 인상함으로써 인한 긍정

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시사점

앞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로 소득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높이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재정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득계층에 수직상등의 원칙보다 노후보장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수익비가 1보다 큼) 공적연금의 특성상 소득상한 인상은 기금의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상한을 올리게 되면 상위 14%에 속하는 고소득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되어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고소득자는 사적연금을 통해서도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소득상한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소득상한 인상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커지게 되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소득상한을 올리게 되면 기업(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채용 등 노동시장에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소득상
한 인상은 이로 인한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
적인 요인들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상한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
장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iri](#)



연금해지 시 세금 부과, 과도한가?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부과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장 내용의 핵심은 부과되는 세금이 납입 시 받는 혜택보다 크며, 연금수령 시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과도하다는 것임.
 - 연금납입 시 세제혜택은 과세시점을 수령 시로 이연시킨 것이므로, 중도해지로 축적된 자산을 수령할 경우 미루어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일정수준 이상의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것 역시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세금부과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회사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에서 비롯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축적에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해지하거나 만기 시 적립금을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 징벌적 과세가 부과됨.
 - 하지만 정책전달과정에서 이러한 목적보다는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
-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에게 연금세제 전반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써야 함.
 -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노후보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적연금은 질적·양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 배경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원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¹⁾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저축은 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연금가입률이 52%에 이를 정도로²⁾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연금저축의 성장에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절세(節稅)효과 홍보 역시 국민이 연금저축의 세제효과를 인지하고 가입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절세를 통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연금자산 축적이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금세제 전반에 관한 내용보다는 절세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와 세제 개요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첫째, 중도 혹은 만기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적인 예금상품과 달리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원금 역시 과세가 되어 납세자의 세(稅)부담이 크다는 점과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납입 시 받는 세제혜택보다 크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되어 세(稅)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풀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납입 시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 비과세(Exempt),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Exempt), 그리고 연금수령 시 원금과 연금자산 운용이익 모두에 대해 과세(Taxation)하는 이른바 “EET”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납입 시 비과세란 과세대상인 개인의 전체 소득 중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한 해 최대 400만 원까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과세대상 제외 방식은 2014년부터 납입금액의 일정부분(12%)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³⁾ 운용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역시 비과세한다. 여기서 비과세의 정확한 의미는 면세(免稅)의 의미가 아니라 납입

3)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5%를 적용함.

1)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국세청(2016), 『2015 국세통계연보』.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은 과세를 연금수령시점으로 미룬 것을 의미하며, 연금수령시점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하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적립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적립금을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만기 이후 적립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금(annuity)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율 3~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하며 이를 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과세이연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및 적립식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본인이 납입한 과세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적연금액은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다.

3. 연금세제의 타당성 논거

앞서 설명한 연금세제의 EET 과세원칙에 따라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의 과세는 미루어졌던 과세가 실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금에 대한 과세는 과세논리상 타당하다.

또 다른 지적은 과세이연 시 받은 혜택은 세액공제율 12%인데,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납입 시 혜택보다 수령 시 과세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자⁴⁾의 경우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은 기타소득세율과 동일한 15%이다. 또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이주, 가족의 질병, 개인 파산 혹은 워크아웃 등 급전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하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계층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로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15%의 세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퇴직급여) 중도수령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사적연금 적립액의 중도 및 일시금 수령에 관한 가입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노후준비장치로 퇴직급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중도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2%에 이르며, 중도수령으로 사용한 퇴직급여의 용도는 여가활동, 자동차 구입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하지 않은 용도의 소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립금을 중도수령한 사람의 45.7%가 퇴직급여 중도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다.⁵⁾

이를 요약하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해 두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만, 중도수령 시 세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퇴직급여의 경우 은퇴

4)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자의 비율은 92%인.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7. 17).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 후에는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연금가입 시에는 세제혜택을 베풀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보다 큰 과세를 함으로써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줄이고자 하는 연금세제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49세 이하 가입자는 연간 \$18,000까지, 50세 이상은 \$24,00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 연령인 60세 이전 해지 시 원금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여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며 이에 더하여 10%의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나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5년 이후 해지 시에는 일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납입 시 수령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거나 혹은 이보다 3% 포인트 높은 수준의 해지 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중과세에 관한 지적 이외에도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으로 인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적연금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로 보인다.

사적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대해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은 ‘동일한 규모의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을 가진다. 물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의 특별한 기능을 고려하여 적은 수준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과연 분리과세 해야 할 ‘적은’ 수준의 연금수령액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기준인 연소득 1,200만 원에는 사적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⁶⁾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개인이 임의로 쌓은 적립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만을 포함하므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간 1,200만 원을 20년간 수령하려면 단순계산으로도 연금적립 시 1년에 1,2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해야 가능한 액수인데, 현재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가 IRP 추가적립금을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종합과세 걱정은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2,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역시 2,0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득 종류가 달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

4.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의 원인

현재 연금세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연금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금세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시행된 2014년에 이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1.1%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국민의 연금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낮은 수준이다.⁷⁾ 또한 연금세제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접하게 되는 금융기관에서 역시 연금저축 납입 시 세제혜택은 크게 강조하는 데 반해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혜택에 비해 강조를 덜 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연금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저율로 과세하는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적립한 자금을 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약속할 때 주었던 혜택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연금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를 설계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사적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유인에 관한 정보만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연금세제 전반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적연금세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때 사적연금 이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사적연금 시장이 앞으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kiri**

5.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세제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와는 달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국민에게는 납입 시와 운용 시 과세를 이연시킨 후 수령 시에

7) 보험연구원(2014),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2014-9.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차이는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인 연금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사망률 개선이 주로 고소득층에서 일어나는 경우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소득계층별 50세 기대여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20년생과 1940년생의 50세 기대여명을 비교한 결과,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하였음.
 - 하지만 소득계층별로는 남성 상위 10%의 경우 50세 기대여명이 8.7세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기대여명은 1.7세 증가에 그침.
- 소득계층별로 기대여명의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애연금소득(lifetime benefit)에 영향을 미침.
 - 기대여명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이 고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보다 짧아지게 되어 생애연금소득의 격차가 커지게 됨.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익비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대여명의 격차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수익비 차이가 줄어들게 됨.
 - 소득계층별로 연금수급기간이 다른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의 심화는 건강 불평등과 노후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짐을 의미함.
 -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사사각지대 해소 등 건강 형평성 제고 정책은 간접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후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1. 검토 배경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 61.9세였던 것이 2014년에 82.4세가 되었다. 그런데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인구 집단별로 사망률 하락의 정도는 이질적이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는 2014년 현재 6.5세이다.¹⁾ 성별 외에도 사회계층별로 사망률과 기대여명이 이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기 연령대보다 고령층에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대여명 격차는 연금소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노후 연금소득 불평등과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육, 직업, 소득이 있는데, 소득계층별 평균수명 격차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노후 소득의 주요 원천인 연금소득이 근로기 생애소득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들을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계층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의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데이터 축적의 역사가 짧아 생애소득과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장기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²⁾은 1920년생과 1940년생의 기대여명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였는데,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는 최하위 10%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인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망률 개선이 주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는 노후 연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2)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Later Retirement, Inequality in Old Age, and the Growing Gap in Longevity Between Rich and Poor*, Brookings Institute.

1) 통계청, 『2014년 생명표』.

3. 기대여명 격차와 연금소득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금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금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기대여명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이 고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보다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생애연금소득(lifetime benefit)의 차이는 기대여명 격차를 고려하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 연구는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 생애소득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소득 10분위로 분류하고 각 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연금수급기간을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1920년생 최하층과 최상층의 연금수급기간은 각각 16.6년과 18.8년이었고, 1940년생은 17.8년과 26.0년이였다. 연금수급기간의 격차가 2.2년에서 8.2년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자연히 생애연금소득의 격차도 벌어졌다. 최상층의 생애연금소득이 최하층과 비교해서 1920년생의 경우 2.6배였는데 1940년생은 3.3배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여명 외에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여부 등)을 통제한 결과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는 연금소득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납부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전가량 즉,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더 받는 연금액의 절대액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기대여명의 차이를 반영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수익비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후세대 부담전가량 차이는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정림·이항석(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⁴⁾, 소득계층을 통합하여 기대여명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비와 비교해서 저소득층의 수익비는 2.68~4.83% 정도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익비는 2.07~4.98% 정도 높아진다. 또한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저소득층이 약 3.00~5.74% 정도 낮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2.53~9.6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민연금 도입기간이 짧아 미국과 같은 장기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비와 후세대 부담전가량이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정책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 노후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

3)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4) 한정림, 이항석(2014),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용역통계연구』, 27(2); 동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크게 상·중·하위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60세 기준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수익비, 후세대 부담전가량을 계산하였음.

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왔다.⁵⁾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기간만큼 연금수급 기간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더 짧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생애연금소득 감소가 더 커서 생애연금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4. 기대여명 격차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 기대여명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기대여명의 격차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을 예방하기 위한 암 검진율을 살펴보면,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계층 간 차이는 위암 4.1%p, 간암 10.4%p, 대장암 10.0%p에 이른다.⁶⁾ 또한 동일한 중증상태인 암환자라 하더라도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⁷⁾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10배나 더 높다.⁸⁾

사회경제적 계층과 기대여명의 관련성을 매개

하는 것으로 건강행태 위험(behavioral risks)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생활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가 사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⁹⁾

5. 시사점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차이는 국민연금의 생애연금소득 격차를 증가시키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여명 격차의 심화는 건강 불평등과 노후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건강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사회경제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건강정책은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집단 간 건강 형평성 제고 측면은 부족하였다.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9) 김혜련 · 강영호 · 여지영(2014),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노령연금의 경우 1953~1956년생의 수급개시연령은 61세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임.

6) 김동진(2015),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불평등」, 『보건 · 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Yoon, Tae Ho, et al.(2011), "Inequaliti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outh korean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income: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1(1).

8) 김동진(2015) 참조.

향후 노후소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득 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연과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대여명 격차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연금액을 결정하는 산식에 소득계층별로 기대수명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 자료를 가지고 근로기간 총 생애소득을 추정하기에는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또한 연금 수령기에 가까워지면서 소득액을 낮춰 이후 연금 수령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도덕적 해이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도록 A값과 B값에 가중치를 달리 주거나¹¹⁾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ri**

10) 우해봉(2011), 「소득과 기대여명」, 『보건사회연구』, 31(2).

11)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B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자기소득의 평균액을 의미함.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 및 시사점

전성주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DC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014년 퇴직연금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용기관을 회사 단독으로 선정한 경우가 33.5%에 달하며, 운용기관 선정이 연금자산 운용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운용기관이 사용자의 주도하에 선정될 경우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대한 절감 노력이나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음.
-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퇴직연금 기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함.
 - 1992년 도입된 의무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은 DC형이 80%를 차지하며 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소형기금 등 크게 5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 도입 이전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기금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의 기금선택이 자유화되었음.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금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의 기금 변경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금 간 경쟁을 강화시켜 전반적인 퇴직연금 기금의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매형과 기업형, 산업형기금은 각각 18%, 45%, 2% 가량 감소한 데 반해 공적기금과 소형기금은 각각 12%, 33% 가량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10년 1.85%에 이르던 소매형 기금의 총수수료율이 2013년에는 0.28%p 낮아졌으며 동일 기간 기업형, 산업형, 공적기금의 총수수료율은 각각 0.02%p, 0.1%p, 0.05%p 감소함.
-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가입자를 위한 제도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수료 절감 및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택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2005년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합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5년 4분기 현재 126조 4,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¹⁾ 퇴직연금 가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상용근로자 1,100만 명 가운데 590만 4천 명이 가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률은 53.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성과를 직접 책임지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도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록 30인 미만 중소기업체 가운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수는 26만 7천여 개로 전체 중소기업체 168만 개의 15.9%에 지나지 않지만 이 가운데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체는 15만 7천여 개로 제도 도입 사업체 가운데 60.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84.4%의 사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도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체사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DC형 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는 명확한 선정지침이나 가

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정은 각 사업체별로 결정되며, 많은 경우 사용자의 주도하에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개별 근로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대한 절감 노력이나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다.

한편, 1992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가입제로 시작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제도는 2015년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MMGPI)의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Choice of Superannuation Fund Legislation)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퇴직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산업,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에서 운용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운용수수료를 크게 절감시켰으며 퇴직연금 기금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선택권이 도입된 배경과 가입자 선택권 도입 이후의 수수료 인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운용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임.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이나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한 적립금을 의미하며 DC형과 유사하게 운용됨.

2.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 보면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해 적절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나 절차,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퇴직연금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사업자를 회사 단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용사업자 선정기준이 사업자 안정성(25.3%), 대출 등 기존 거래관계(13.0%)와 같이 연금자산 운용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인들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운용능력(9.7%)이나 자산관리서비스 능력(2.8%) 등 연금자산 운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순투자수익률(명목수익률에서 투자관리비용을 제외한 수익률)은 2014년 기준 2.3%를 기록,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비교 대상이 된 OECD 31개국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고의 비교 대상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8.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 및 역할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19세기 중반에 뉴사우스 웨일즈 은행과 AMP 등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1992년에 슈퍼에뉴에이션으로 불리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가 전체 근로자 대상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 특히,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금융업 발전 및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은 DC형이 80%를 상회하고, 기금형이 대부분³⁾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업형기금(industry funds), 금융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소매형기금(retail funds), 공공부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공적기금(public sector funds), 회사가 설립한 기업형기금(corporate funds), 가입자 4인 이하의 소형기금(small funds)이 그것이다. 이 중 소매형기금만이 영리형(for profit)이고 나머지 기금은 비영리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소형기금을 제외하면 2015년 말 현재 242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이 중 소매형기금이 148개로 가장 많다.⁴⁾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2005년 가입자 선

2) 현재 사용자의 의무기여수준은 근로자 연봉의 9.5%인데, 2020년까지 12% 수준으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3) 기금형이 아닌 것으로는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가 있음. 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인데, 전체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4) 소매형기금의 자산은 전체(소형기금 제외) 기금자산의 약 43%를 차지함.

택권 보장법(Choice of Superannuation Fund Legislation)을 도입함으로써 대다수⁵⁾ 가입자의 기금선택이 자유화되었다.⁶⁾ 제도 도입 이전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기금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가입자는 하나 이상의 기금 선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각 기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배분할 수도 있다. 가입자의 기금선택을 자유화한 것은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운용 효율성을 제고(비용 절감 및 수익률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금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의 실제 기금변경 정도와 기금의 수수료 절감 정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기금 변경률을 살펴보면 2005년 도입 이후 2009년까지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Fear and Pace(2009)⁷⁾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금 변경률을 추정하였는데, 2005년 약 6%였던 것이 2008년에는 약 3% 정도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의 기금 수수료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05년 평균 1.42%였던 기금(소형기금 제외)의 평균 수수료율은 2009년에 1.36%로 0.06%p 하락하는 데 그쳤다.⁸⁾

이와 같은 결과는 가입자 기금선택 자유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 Fear and Pace(2009)가 지적하였듯이 가입자들이 기금선택과 투자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호주 근로자들이 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믿을만한 정보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기금변경을 위해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변경한 가입자의 비율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변경 가입자 중 40~53%는 이직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능동적으로 기금을 변경한 가입자가 매우 적었음을 시사한다.⁹⁾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먼저 기금유형별 계좌 수의 변화가 2010년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좌 수가 가장 적은 기업형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계좌 수

8) Ricewarner(2014), "Superannuation Fees".

9) R. Gupta and T. Jithendranathan(2015)는 기금선택 자유화 이후 연금 가입자의 투자전략이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화했음을 발견했음. 그러나 이는 가입자의 기금변경에 관한 연구결과가 아니며, 소매기금의 자산배분 변화에 관한 것임. R. Gupta and T. Jithendranathan(2015), "The Impact of Superannuation Fund Choice Legislation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Australian Retail Fund Flows", *Financial Services Review*, 24 참조.

5) 80%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금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기금선택 자유화 법안은 1997년과 1998년에도 상정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음.

7) J. Fear and G. Pace(2009), "Australia's 'Choice of Fund' Legislation: Success or Failure?", *Rotman International Journal of Pension Management*.

가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소매형과 기업형기금의 계좌 감소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약 1,680만 개에 이르렀던 소매형기금의 계좌 수가 2015년 6월에는 1,375만 개로 18% 감소하였다.¹⁰⁾ 동일 기간에 기업형기금은 약 62만 개에서 34만 개로 45% 감소하였으며, 산업형기금은 약 2% 감소하였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공적기금과 소형기금은 각각 12%, 33%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입자들의 기금선택에 변화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1만 6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기금 변경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금 변경률은 2013년에는 9%, 2014년에는 11%까지 상승하였다.¹¹⁾ 2008년의 기금 변경률이 3%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입자 행태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주 은행들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금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의 가입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또한, 젊은 층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금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기금 변경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기금변경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기금 수익률이 저하된 것도 있다. Gupta and Jithendranathan(2015)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금 가입자들이 안전자산을 줄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유의하게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금 가입자들이 금융위기 이후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기금으로 이동한 것이다.

가입자들의 기금변경 활성화는 기금 간 경쟁을 강화시켜 기금의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2010년 1.85%에 이르던 소매형기금의 총수수료율이 2013년에는 1.57%로 0.28%p 낮아졌다.¹²⁾ 동일 기간 기업형, 산업형, 공적기금의 총수수료율은 각각 0.02%p, 0.1%p, 0.05%p 감소하였다.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았던 소매형기금의 수수료 인하 폭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소형기금의 총수수료율은 2013년에 0.95%로 소매형기금에 비해 0.62%p 낮아 적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가입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금변경 자유화는 기금의 M&A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총 426개였던 기금(소형기금 제외)이 2015년에는 242개로 43% 줄어들었다. 이는 기금의 비용효율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³⁾

10)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2013, 2015) 참조.

11) 다음의 기사 참조; Financial Standard(2015), "Super fund members switching at record rates: research"; Professional Planner(2015), "Investment Trends 2015 Member Sentiment and Communications Report".

12) Ricewarner(2014), "Superannuation Fees".

13) APRA도 비용효율화를 위한 M&A가 더욱 늘어날 것을 전망한 바 있음(APRA(2012), "Insight", issue 1).

4. 결론 및 시사점

앞서 호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이 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사업자로 이동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제고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연금 관련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정은 많은 경우 사업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자인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가입자를 위한 제도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수료 절감 및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택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kiri**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평가와 시사점 : 반·추납 및 임의가입을 중심으로

강성호 연구위원, 최장훈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국민연금 반·추납, 임의가입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국민연금 반·추납, 임의가입을 통한 가입 확대는 급여적절성(Adequacy), 재정지속성(Sustainability)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첫째, 급여적절성 측면에서 가입기간 증가를 가져와 국민연금 급여수준(반납, 추납, 임의가입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은 각각 1.6%, 1.4%, 5.6% 증가)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의 0.6%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연금소득 증가로 기초수급 노인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민연금 가입 확대는 고령화·장수화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추가적인 가입을 통해 급여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OECD 기준 소득대체율 70%)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상호보완적인 공·사 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제기구가 주장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및 보조금정책(독일 리스터 연금, 스웨덴 프리미엄팬션 등)이 있음.

1. 검토배경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반납 및 추납, 그리고 임의가입이 증가하고 납부예외자는 감소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국민연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반납)하는 경우 과거 가입이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사유²⁾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가입은 주부, 학생 등 당연가입자가 아닌 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가입 확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 확대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따른 급여 수준 개선 및 재정부담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16. 3. 16).

2)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2.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최근 가입 확대 원인

가.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가입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된다. 당연가입자는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자로서 이들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9%만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물론 당연가입자이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납과 추납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자로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은 없다.

최근 반·추납과 임의가입자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이후 반납금은 16.9%(2014년), 27.9%(2015년) 증가하였으며, 추납 또한 37.3%(2014년), 41.5%(2015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전업주부가 대상이 되는 임의가입의 경우도 14.1%(2014년), 18.8%(2015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물론 이들이 전체 가입자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금

3) 한편, 자발적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임의계속가입과 납부예외의 경우도 있음. 임의계속가입자는 43.6%(2014년), 30.4%(2015년) 증가하였고,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0.1%(2014년), 1.3%(2015년) 감소함. 단, 임의계속가입자는 증가할수록, 납부예외자는 감소할수록 가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4) 전체 21,125천 명 중 약 1.5% 수준임.

인식 변화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 최근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최근 반·추납, 그리고 임의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는 제도 특성과 관련이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이력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면 자신의 사망시점까지 보장하고, 이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신뿐 아니라 유족의 생계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성이 지속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국민연금이 사회보장 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둘째, 공적연금연계제도⁵⁾ 시행(2009년)으로 가입 확대 유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각각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연금의 절반 이하의 가치)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되면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각각의 공적연금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추납, 임의 가입을 통해 모자라는 가입기간을 보충할 유인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공적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12% 정률 적용⁶⁾)로 전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개인적 원인

한편,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원인 외에 개인적 인식 전환도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령화 및 장수화 리스크 증가, 노인빈곤, 부양의식 약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신의 노후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은 6.1~10.7%⁷⁾로 추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적저축을 통한 노후준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저축 등은 기본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연금(DB방식)을 가입하는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5)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간의 연계임.

6) 과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

7) 한정림(201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연금이슈&동향분석』, 국민연금연구원.

3.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따른 효과

반·추납, 그리고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증대(반·추납, 임의가입)하고, 가입자 수도 많아져(임의가입)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증가하거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가입자가 많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가. 급여개선 효과

이제 반·추납과 임의가입 확대가 국민연금 급여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급여산식을 살펴보자. 현행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제도 변화⁹⁾에 따라 변해왔으므로 실제 수급시점의 기본연금액은 제도 변화 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에 의해 결정된다.¹⁰⁾

$$\text{기본연금액} = \alpha(A + B) \times 0.05n/12$$

단, α :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조정계수(소득대체율 40% 기준 시 1.2)

8) 국민연금 급여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추정함.

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70%(1988~1997년), 60%(1998~2007년)로 감소한 후 2008년 50%에서 매년 0.5%p 감소하여 2028년에 40%가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10) 기본연금액 산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최장훈·강성호(2016) 참조.

A: 연금수급 전년도(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가입 월수

본고에서 검토하고 있는 반·추납과 임의가입의 급여개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변수인 A값과 B값, 그리고 가입기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에 대한 통계가 공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추가가입 대상자의 평균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 200만 원)과 동일하다.

둘째, 반·추납은 2014년 시점에 납부한 것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0세 미만인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혹은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반납 혹은 추납할 수 있으므로 동 가정에 의한 대상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정확한 추정보다는 가입 확대의 의미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2014년만 고려하였다.

셋째, 임의가입은 2014년에 가입하여 최소가입기간인 10년 동안 가입하며, 추가적인 임의가입은 없는 것으로 한다.

넷째, 수급은 20년¹¹⁾ 동안 종신연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11) 국민연금은 종신수급을 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2014), 『2013년 생명표』에 의하면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성 18.0세, 여성 22.4세로 나타나, 약 20년으로 가정함.

다섯째, 수익비¹²⁾는 2배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 평균가입자의 수익비는 ‘1.8’ 정도로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되 단순화를 위해 ‘2’로 하였다.

위 가정에 의해 가입유형별¹³⁾ 평균소득자(월 200만 원)의 추가적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납금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연금소득은 월 32천 원¹⁴⁾이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1.6%¹⁵⁾로 추정된다.

둘째, 추납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연금소득은 월 29천 원¹⁶⁾이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1.4%¹⁷⁾로 추정된다.

셋째, 임의가입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연금소득은 월 112천 원¹⁸⁾이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5.6%¹⁹⁾로 추정된다. 유의할 점은, 임의가입은 반·추납과 같이 한 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내는 형태이므로 10년 동안 납부한 적립액을 추정한 후 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특히, 임의가입의 경우 반납 및 추납에 비해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사각지대 감소)가 있다. 즉, 반납 및 추납은 그 대상기간이 존재할 경우 추가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기능이다. 이에 반해 임의가입은 미가입자가 가입기간 확보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제도상으로는 최대 모든 적용제외자²⁰⁾(타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나.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증가 효과

여기에서는 반·추납, 임의가입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재정부담은 ‘총수급액-총납부액’으로 설정한다. 즉, 가입자가 낸 돈(총납부액)보다 받는 돈(총수급액)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총수급액’은 ‘대상자 수’에 ‘평균수급액’²¹⁾을 곱하여 산출하고, ‘총납부액’은 ‘대상자 수’에 ‘평균납부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부담은 추가가입에 따른 대상자 규모, 납부한 평균보험료, 해당 수익비를 안다면 산출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추가적 재정부담은 연금수급자가 수급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총부

12) 수익비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 대비 총연금수령액을 의미함.

13) 2014년 말 기준, 반납금 신청건수는 80,415건, 반납금 총액은 306,068백만 원, 추납 신청건수는 41,165건, 추납 총액은 141,751백만 원임. 임의가입자 수는 202,536명, 납부 총액은 271,694백만 원임.

14) 평균 반납금액(3,806천 원)×수익비(2배)/종신수급월수(20년×12개월)

15) 반납금에 의한 월연금수급액(32천 원)/평균소득(2,000천 원)

16) 평균추납금액(3,443천 원)×수익비(2배)/종신수급월수(20년×12개월)

17) 추납금에 의한 월연금수급액(29천 원/평균소득(2,000천 원))

18) 평균임의가입납부액(1,341천 원)×가입기간(10년)×수익비(2배)/종신수급월수(20년×12개월)

19) 임의가입에 의한 월연금수급액(112천 원/평균소득(2,000천 원))

20) 국민연금연구원(2014), 『국민연금 생생통계』에 의하면, 18~59세 총인구(32,994천 명) 중 약 32.1%인 10,593천 명으로 추정됨.

21) 평균수급액은 수익비를 알 경우 평균납부액과 수익비의 곱(평균납부액×수익비)으로 산출됨.

담(현가)이므로 연간 재정부담으로 환산하려면, 총부담에 20(20년간 수급 가정)을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수익비가 1(수지상등)이면 추가적 재정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추가적 재정불안정이 발생하게 된다.

반납금, 추납금, 임의가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납금에 의한 재정효과를 보면, 총급여 수준은 6,121억 원²²⁾이고 총보험료 수준은 3,061억 원²³⁾이어서 추가적 재정부담은 3,061억 원이 된다. 추가적 재정부담과 총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이유는 수익비를 2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수익비가 2보다 크다면 ‘추가적 재정부담’은 총보험료 수준보다 많게 된다.

둘째, 추납금에 의한 재정효과를 보면, 총급여 수준은 2,835억 원²⁴⁾이고 총보험료 수준은 1,418억 원²⁵⁾이어서 추가적 재정부담은 1,418억 원이 된다.

셋째, 임의가입에 의한 재정효과를 보면, 총급여 수준은 5조 4,339억 원²⁶⁾이고, 총보험료 수준은 2조 7,169억 원(202,563명×1,341천 원)이어서 추가적 재정부담은 2조 7,169억 원이 된다.

22) 2014년 반납 신청건수(80,415명)×평균 반납금액(3,806천 원)×수익비(2배)

23) 2014년 반납 신청건수(80,415명)×평균 반납금액(3,806천 원)

24) 2014년 추납 신청건수(41,165명)×평균 추납금액(3,443천 원)×수익비(2배)

25) 2014년 추납 신청건수(41,165명)×평균 추납금액(3,443천 원)

26) 2014년 임의가입자 수(202,563명)×월납부액(1,341천 원/12월)×수익비(2배)

4. 국민연금 가입 확대 평가 및 시사점

이러한 최근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가 연금시스템을 비교·평가하는 글로벌연금지수(MMGPI)에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급여적절성(Adequacy), 재정지속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공·사 연금시스템을 진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연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추납, 임의가입의 국민연금 가입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인 급여적절성, 재정지속성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²⁷⁾

첫째, 급여적절성(Adequacy) 측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납, 추납, 임의가입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은 각각 1.6%, 1.4%, 5.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반·추납, 임의가입의 확대는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은 25~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가입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적정 노후소득보장(OECD 기준 소득대체율 70%)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지속성(Sustainability) 측면이다. 국민연금은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가입기간이 증가하거나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국민연금 재정은 불안정하게 된다.

27) 호주의 금융사인 Mercer사가 2009년부터 발표한 index로서, 2009년 11개국, 2011년 14개국, 2015년 14개국의 연금체계를 분석하여 점수화한 지표임(The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2015)).

그러나 본고에서의 분석대상인 반·추납, 임의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 대비 0.6%²⁸⁾ 수준이어서 재정불안정 요인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복지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가입 확대는 노후빈곤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복지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불안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²⁹⁾

종합하면, 반·추납, 임의가입에 대한 가입 확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다소 긍정적이고 재정부담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공적연금에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를 보이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추납,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제도 내실화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그 동안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³⁰⁾이 헛되게 되며, 정책일관성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 연금 협력을 통해 고령화와 재정문제를 해소해가고 있는 선진국의 대응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³¹⁾에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kiři

28)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500조 원(2014년, 시가 기준)이고 본고에서 추정한 추가 가입에 따른 총재정부담은 3조 1,648억 원으로 추정됨.

29) 강성호·한덕희(2014),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 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지역산업연구』, 38권, 1호, 경남대학교, pp. 21~45.

3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 2007년 연금개혁이 단행된 바 있음.

31) 여기에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및 보조금정책(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프리미엄팬션 등)이 대표적임.



일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제휴전략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요약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양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음에도 오히려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에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보험권을 추월한 후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일본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연금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음.
 - 일본생명은 그룹 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2014년 현재 DC형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3위)을 강화하는 추세임.
 - 미즈이스미토모해상 등은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손보재팬 등은 DC형 연금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함.
-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저금리 기조,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패턴이 DC형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 일본 사례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략적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관계금융회사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연금운용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는 비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DC형 제도에 특화된 연금전문회사의 공동출자 설립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1. 검토배경



-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원을 상회하고 가입률은 56.1%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3년(2008년)만에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보험권을 추월하였으며, 이후 은행권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9월 보험회사와 은행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은 각각 61.7%와 31.5%였으나, 2008년 10월 보험회사와 은행의 시장점유율 순위가 역전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됨.
- 이 같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 약화는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시현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연금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체를 중단하려는 경향마저 보임.
 - 2011년 22개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15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등록사업자는 19개사로 줄어들.
 - 반면,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시장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장¹⁾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와는 대조적인 상황임.
-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국내보험회사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본고에서는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 배경, 제휴 사례, 특징 등을 검토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퇴직연금시장 진입 초기에는 이익이 적을 수 있으나,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할 경우 운용관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전략적 제휴 사례: 일본



2.1.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연금수익률 악화로 기업의 퇴직급여 적립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성과를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01년 제도개혁을 통해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 퇴직연금제도는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신(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됨.

■ 이에 따라 근로자 및 기업들이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중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전환하면서, DC형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확대됨.

●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 및 근로자의 니즈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고전하였음.

– 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보험회사 위주의 DC형 퇴직연금 사업²⁾으로 인해 차별적인 운용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기 때문임.

■ 이에 일본 보험회사들은 연금운용능력 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통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휴³⁾ 전략을 추진함.

● 적립금의 규제완화 조치⁴⁾ 등으로 투자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연금 운용전문기관으로서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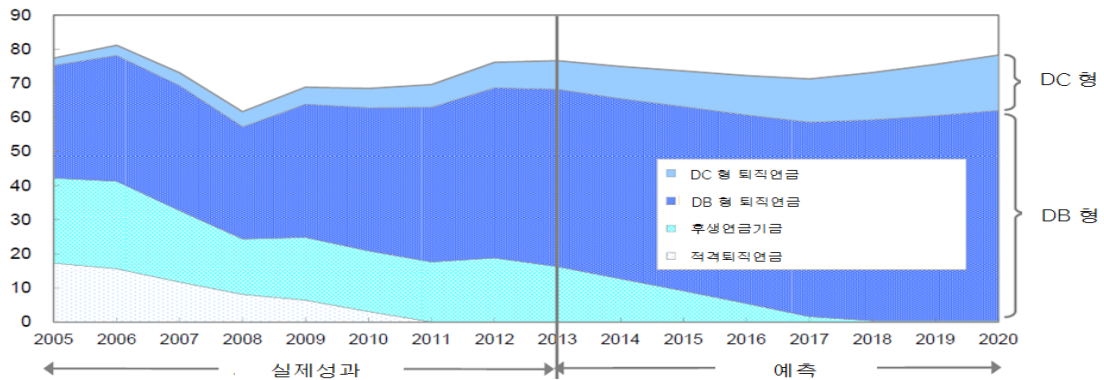
2) 보험회사 위주의 DC형 퇴직연금 사업은 보험회사 관계회사 간 제휴 또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 간 제휴 없이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운용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상품제공, 기록관리 등)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기업들의 경쟁 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의미함.

4)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운용가능자산의 종류와 비율을 정한 5·3·3·2 규제(안전자산 50% 이상, 주식 30% 이하, 외화자산 30% 이하, 부동산 20% 이하로 투자를 제한)를 시행하였으나, 2001년 이후 자산운용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주식, 채권 등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됨.

〈그림 1〉 일본 퇴직연금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단위: %)



자료: Dai-ichi Life Insurance(2015).

■ 이러한 일본 보험회사들의 전략적 제휴는 보험회사 내 관계금융회사 간 제휴, 은행 등 타 금융기관 간 제휴, 그리고 연금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제휴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즉, 보험회사 단독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 측면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임.

2.2. 전략적 제휴의 유형

가. 보험회사 관계회사 간 제휴

■ 일본생명은 DC형 퇴직연금 사업에서 그룹 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 업무제휴를 통해 연금운영 시너지를 제고하고 있음.

● 일본생명은 그룹 내 관계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괄서비스(Bundled Service)⁵⁾를 제공하는 사업모형을 운영하고 있음.

– 핵심업무는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타 회사에 재위탁하는 형태임.

5) 일괄서비스(Bundled Service)는 제도 설계, 기록 및 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 제출서류 작성 등을 통합해서 인수하는 형태를 의미함.

■ 제도설계 및 컨설팅, 제도관리 서비스는 일본생명이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업무는 업무제휴를 맺은 NRK(Nippon Record Keeping)사에 재위탁하고 있음.

● 적립금의 자산관리업무는 관계회사인 일본 마스터 신타은행⁶⁾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 및 상품제공은 그룹 내 자회사인 닛세이에셋메니지먼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수탁기관별로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서비스 제공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생명 관계회사 간 제휴형태



자료: 일본생명 홈페이지(2015).

■ 이러한 제휴 등으로 인해 일본생명은 2014년 기준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미츠비시 UFJ, 미즈호 FG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시현하고 있음.⁷⁾

6) The Master Trust Bank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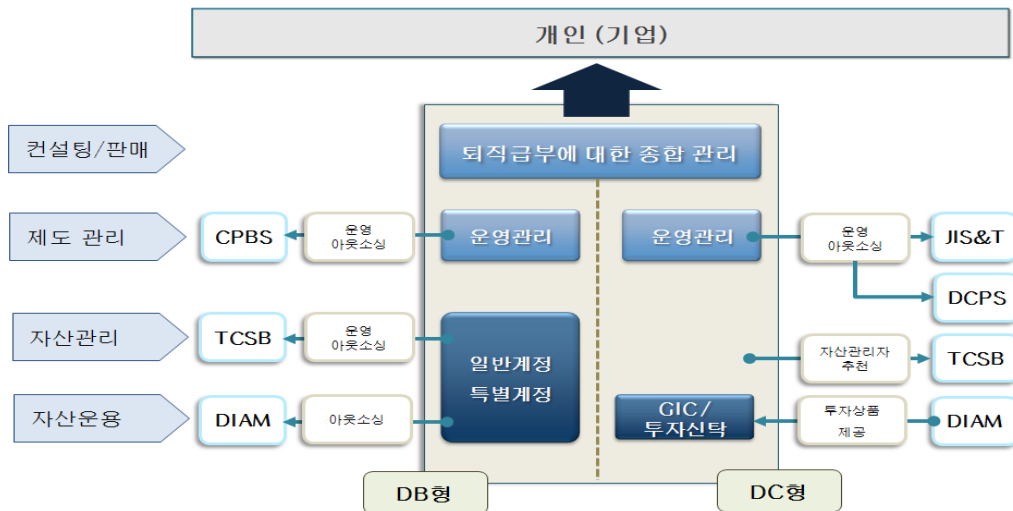
7) 연금정보(2014).

나. 은행 등 타 금융기관 간 제휴

■ 제일생명의 경우 기록관리업무는 JIS&T(Japan Investor Solutions & Technologies), 운용관리업무는 DCPS(Defined Contribution Plan Services), 자산관리업무는 TCSB(Trust & Custody Services Bank)⁸⁾와 제휴함.

● 특히, 상품라인업 선정업무는 에셋메니지먼트⁹⁾, 제도관리 및 시스템설계업무는 CPBS(Corporate Pension Business Service)¹⁰⁾ 등과 제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3〉 일본 제일생명의 타 금융기관 간 제휴



자료: 제일생명 홈페이지(2015).

■ 이에 반해, 미츠이스미토모해상(三井住友海上)은 주오미츠이(中央三井)에셋신탁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미츠이생명과의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개발·운영함.

● 운용관리기관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J-PEC과 NRK에 운용상품선정과 자산관리지시 등의 운용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한편, 주오미츠이에셋신탁은행과 재팬Trustee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함.

● 또한,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주오미츠이에셋신탁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미츠이생명은 퇴직연금

8)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메이지야스다생명, 부국생명 등과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신탁업무, 마스터트러스트업무, 확정기여형 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임.

9) 제일생명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자산운용 기능을 결합하여 설립한 자산운용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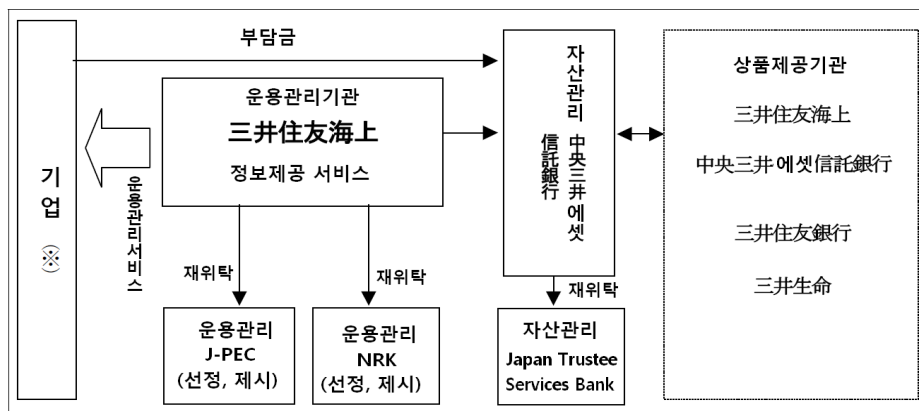
10) 일본생명의 공동출자회사임.

의 원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이처럼 타 금융기관 간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미츠이스미토모화재 외에도 동경해상,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부국생명 등이 있음.

- 동경해상은 82은행, 아이오이닛세이손보는 노무라증권, 부국생명은 미즈호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음.¹¹⁾

〈그림 4〉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타 금융기관 간 제휴 형태



자료: 미츠이스미토모해상 홈페이지(2015).

다. 연금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제휴

■ 손보재팬은 퇴직연금사업을 새로운 성장형 사업모델로 판단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손보재팬DC증권)를 100% 출자하여 설립·운영함.¹²⁾

- 손보재팬DC증권사는 증권업과 DC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최초의 DC형 퇴직연금 전문회사로 평가받고 있음.

11) 일본 주요보험회사의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실태

운용관리회사	제휴기관	가입기업 수	가입자 수(천 명)
동경해상	82은행 등	1,536	105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노무라증권	643	18
부국생명	미즈호은행	5	5

자료: 일본연금정보(2014. 9. 10).

12) 損害保険ジャパン(2009. 7), pp. 15~16 및 損害保険ジャパン 각종 보도자료 참조.

■ 손보재팬DC증권사의 주요업무는 운용관리업무, DC형 상품의 제공 및 교육·컨설팅 서비스, 기록관리 업무 등을 직접 취급하고 있음.

- 손보재팬DC증권사는 2000년에 연금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1년 11월 DC형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업무조직은 총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 대부분 퇴직연금 관련 부서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주 고객층은 모회사인 손보재팬그룹의 기업고객이며, 개별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DC형 제도, 중소기업형 전용 DC종합제도 등도 제공하고 있음.

■ 손보재팬과는 달리 스미토모(住友)생명과 미츠이(三井)생명은 공동출자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전문회사(J-PEC)¹³⁾를 설립하여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J-PEC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기관으로 퇴직급여컨설팅, 퇴직급여채무계산, 투자교육, 운용관리업무, 기록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일본의 전략적 제휴 특징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 특징은 크게 DC형 퇴직연금 중심, 중소기업 중심, 그리고 운용서비스 차별화 중심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는 대체로 DB형 퇴직연금보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일본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완화 등으로 DB형 중심에서 DC형 중심으로 퇴직연금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진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일본 보험회사는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되, DC형 퇴직연금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제휴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3) J-PEC의 공식 회사명칭은 재팬 펜션 네비게이터(Japan Pension Navigator)임.

■ 또한, 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대기업은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장 선점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전체를 일괄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번들형 형태인 일괄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였음.
 -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업무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보다 가입단계에서 운용단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차별화된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본 보험회사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순수 위험보장기관에서 연금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순수위험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함.
- 즉,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제휴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운용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기조,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DB형 퇴직연금 운용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양적규제(legal list rule)에서 질적규제(prudent men's rule)로 전환되고 있어, 가입자 니즈에 부응한 연금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 제휴 사례 등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의 운용능력을 제고하여 DC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DB형 중심의 제도 운영과 보험사 위주의 사업 운영 등으로 연금전문기관으

로서 이미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임.

-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¹⁴⁾에서도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한 보험 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먼저, 보험회사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 경우 일본 보험회사가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관계금융회사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그룹화 전략)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퇴직연금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관계금융회사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연금운용 시너지를 제고하되, 중·소형 보험사는 DC형 제도에 특화된 연금전문회사를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kiri**

14) 상품 및 업무 제휴 등을 통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중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1.6%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6.5%에 불과함(보험연구원 2015).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 원(현 20만 원)으로 증액(더불어민주당)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어 급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 개혁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 보완형 혹은 공·사연계형 연금도입이 필요함.
 -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축소하되 이를 보완할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공·사연계형 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 보장강화 차원에서 공·사 간 협력을 도모함.
 - 일본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 연금(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2028년 소득대체율 40%)이 약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공·사연계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
 -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
 -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

1. 검토 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2.5%)와 장수화(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 0.45세씩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율(2013년 49.6%)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또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대될 우려마저 있음.
 - 2005~2011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을 보면, 0.6%는 고소득층에서, 13.1%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¹⁾

■ 이에 따라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보험료를 조기 인상하고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감소시키는 단계적 국민연금 급여감액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 원(현 20만 원)으로 증액(더불어민주당)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만 증가시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문제를 후세대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²⁾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김미곤(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2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기존 자료에서 발견되는 인증형 개인연금(예, 독일 리스트연금)이라는 용어는 사적연금이라는 의미로만 접근되어 실질적인 의미와 다소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용어를 재정립하였음. 또한 공·사연계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되 사적연금 체계(수지상등 원칙)로 운영하는 공·사적 연금의 혼합형태로 기존의 사적연금과는 별개임.

- 이에 보고는 공·사 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독일 등 외국의 공·사연계연금 운영사례 및 특징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설계(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³⁾
- 한편, 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도 있으나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공·사연계연금 설계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2. 공·사 연금 현황 및 문제



■ 국민연금 제도개선으로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미흡한 실정임.

- 1988년 제도시행 당시 소득대체율⁵⁾은 70%였으나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8년부터 40%로 낮아짐.
-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6.3%⁶⁾수준이며, 제도가 성숙⁷⁾되더라도 25~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⁸⁾

■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됨.

-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나⁹⁾ 여전히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됨.

■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 및 유지율 등으로 인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함.

- 전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은 53.6%이며,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률은 7.1%에 불과함.

3)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을 의미함.

4) '김원섭·강성호(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집, 사회복지학회', '조재훈·양성문(2013), 「정부지원개인연금 도입 효과 분석」, 『보험학회지』, 제94집, 보험학회'는 노후보장효과 분석에, '김원섭(2016), 「독일 리스터연금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는 리스터연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시에, '류건식·이상우(2011),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KiRi Weekly』, 제161호, 보험연구원'은 리스터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고와 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설계모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제시되지 못함.

5) 일반적으로 40년 가입기준으로 하되, '은퇴 전 평균근로소득' 대비 '수급하게 될 연금소득'으로 산출됨.

6) 평균소득월액은 208만 원이고 평균연금액은 34만 원(국민연금통계연보 2015년 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대체율임.

7)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40년 이후부터 성숙기라고 볼 수 있음.; 강성호(2015),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보험연구원.

8) 이태열·강성호·김유미(2014),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9) 보험료는 9%로 그대로 둔 채 1998년에서 2007년 50%로(1998년 개혁), 2008년 50%, 2008년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2007년 개혁).

- 또한 연금저축 가입률은 14.1%¹⁰⁾(2014년), 10년 유지율은 52.4%(2012년)에 그침.
- 개인연금¹¹⁾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64.4%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연금가입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 퇴직연금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매우 낮아 향후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격차의 증가가 우려됨.
- 연금저축의 경우도 저소득층(예: 2천만 원 이하)의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연금소득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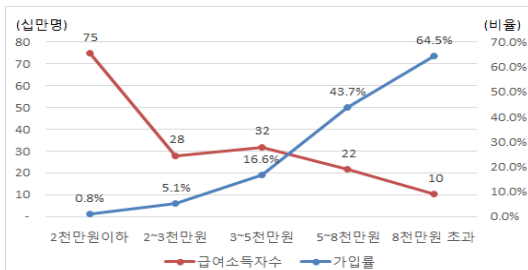
〈표 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015년)

(단위: 천 개소, %)

사업장 규모	도입 사업장	전체 사업장	도입 비율
10인 미만	186	1,487	12.5
10~29인	81	193	42.0
30~99인	29	58	49.6
100~299인	7.3	12	62.0
300~499인	1.1	1.6	71.6
500인 이상	1.3	1.3	99.3
합계	306	1,753	17.4

자료: 금융감독원, “2015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그림 1〉 연금저축 가입률



주: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 비율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2015), 『국세통계연보』.

3. 해외의 공·사적 연금 연계 동향 및 특징



가. 연계 동향

■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0) 국세청(2015), 『2015년 국세통계연보』.

11)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보험연구원(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개인연금 미가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특히, 독일 등은 단순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차원을 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을 도입·운영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은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¹³⁾을 도입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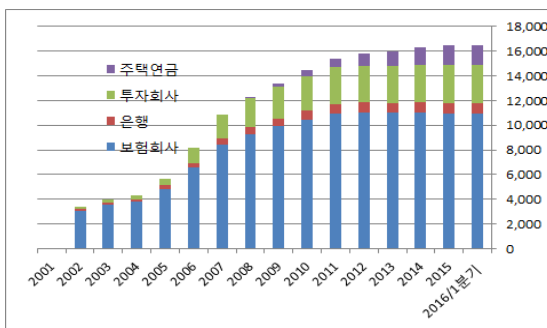
나. 도입 특징: 독일사례 중심¹⁴⁾

■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삭감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고됨.

- 이는 제도 도입초기인 2002년 340만 건에서 2016년 1/4분기 1,648만 건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 특히, 보조금 및 세제유인을 통해 저소득층 집단의 가입률이 42%(평균 35%) 수준으로 증대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4〉 독일 리스터연금의 계약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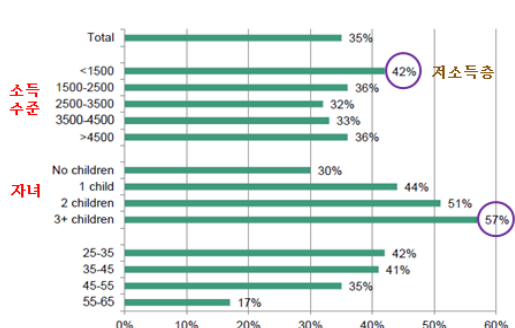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자료: 독일 노동사회청(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BMAS: <http://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를 참고하여 저자가 별도로 작성함.

〈그림 5〉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률

(단위: %)



자료: Brigitte Miksa(2013), “Prepared for Retirement? Exchange on Pension Trends and the German ‘Riester’ Model”,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13)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상우(2016), 「일본판 리스터연금(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 『KiRi Weekly』, 제382호, 보험연구원’을 참고.

14) 여기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처럼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가입대상, 재정지원, 재분배기능, 상품인증 등에서 강한 가입유인이 있었기 때문임.

■ 첫째,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을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자영업자, 공적연금 임의가입자 등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점임.

● 부부 중 한 명만 리스터연금 대상자일 경우 그 배우자는 직업과 공적연금 의무가입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간접 수령할 수 있음.

– 단, 부부 각자가 연금계약을 맺어야 하고 최소기여금 60유로를 납입하여야 함.

〈표 3〉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 및 내용

구분	보조금 수급 대상	보조금 수급 비 대상
내용	-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 직업훈련생, 직업군인 -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소득의 수령인 -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과 병역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 - 공적연금가입이 의무화된 자영업자(공예가, 조산사, 배달원, 예술가) - 피고용인 같은 자영업자 -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간호직원 - 저소득 근로자(월수입 400~800유로)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 -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환자 - 장애, 취업불능 - 조기퇴직연금, 질병수당, 생계수당 수급자	-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직역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 - 공무원연금 임의가입자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이며, 사회보장체계 면제에 응한자 -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 사회부조금이나 복지혜택 수령자 - 학생

■ 둘째, 리스터연금 가입 시 보조금 및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임.

● 보조금은 본인과 자녀에게 정액으로 제공(기본 154유로, 자녀 300유로)되며 최소기여율 4% 수준에서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2,100유로 수준임.

● 특히, 정부보조금만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 최소기여금액(60유로)을 설정하고 있음.

〈표 4〉 보조금 및 소득공제(연간기준)

(단위: 유로, %)

구분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최소 기여율	소득공제 한도
2002~2003	38	46	1.0	525
2004~2005	76	92	2.0	1,050
2006~2007	114	138	3.0	1,575
2008년 이후	154(200)	185(300)*	4.0	2,100

- 주: 1) 26세 이전 취업 시 200유로 취업보너스 지급.
 2) 기여율은 전년도 소득 대비 비율임.
 3) ()안은 25세 이하 신규가입자에게 1회에 한해 200유로 추가 지급.
 4) (*안은 2008년 이후 출생.

자료: BMAS; Pension Reform in Europe(2005); Federal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OCIAL SECURITY AT A GLANCE 2016을 참고해서 재정리.

〈표 5〉 최소기여금(연간기준)

(단위: 유로)

구분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이상
2002~2004	45	38	30
2005년 이후	60		

자료: BMAS; Pension Reform in Europe(2005)를 참고해서 재정리.

■ 셋째,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임.

- 연간소득 5,000유로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가입자의 전체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중은 91.9% 수준임.
- 반면, 연간 10만 유로 이상이면서 독인가구인 가입자는 전체보험료 대비 지원금 비중이 44.3% 수준임.

〈표 6〉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리스터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자료: 류건식 · 이상우(2011).

〈표 7〉 1인 가구(무 자녀 독신): 리스터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154	—	60	214	—	72.0
15,000	154	—	446	600	—	25.7
25,000	154	—	846	1,000	141	29.5
40,000	154	—	1,446	1,600	432	36.6
50,000	154	—	1,846	2,000	672	41.3
75,000	154	—	1,946	2,100	777	44.3
100,000	154	—	1,946	2,100	777	44.3

■ 마지막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한 연금상품이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사한 후 인증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설정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60세 이전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원금은 보장되며,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리스터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표 8〉 독일 리스터연금의 상품인증 기준

구분	인증기준 내용	기타
급여지급	- 60세 이전 급여지급 금지(2012년 이후 계약은 62세) - 연금급여에서 남녀차별 금지	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상품가능
원금보장	- 급여개시시점의 축적자금은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상일 것	재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 시 보장금액 15%감소
연금지급	- 종신연금 또는 인출계획에 따라 확정분할지급을 받고 늦어도 85세부터 일정자금을 바탕으로 종신연금을 지급받음 - 축적된 자금의 3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1년치 지급가능
사업비규제	- 사업비는 최초 5년간 균등부과	계약기간 동안 정률 공제 시 제외
가입자관리	- 연금지급기간 전 일시정지, 해약, 이전할 수 있는 권리부여	-

- 이처럼 독일 등은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공·사연계연금의 설계 방향



-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독일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요구됨.

- 그럼에도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재원확보문제 등)을 감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 미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표 9〉 공·사연계연금의 적용(도입)방향(안)

구분		적용방향(안)	비고
가입대상		- 공적연금 가입자(임의가입자 포함)	- 미가입자 제외 - 기존 연금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보험료		- 기준소득(국민연금기준)의 최소 4% -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 최소 본인부담금 연간 10만 원
보조금		- 기본: 연간 10만 원 - 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15만 원	- 소득공제한도 연간 150만 원 *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
급여		-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종신연금을 원칙으로 설정	- 수급조건 미충족 시 일시금 * 중도 해지 시 해지패널티 적용
운용 기준	판매기관	보험회사, 은행, 증권 및 자산운용기관, 우체국	-
	인증검사	적격상품 인증은 금융감독원 수행	-
	중도인출	적립액의 일정비율	-
	특약유무	유족, 장애보장 특약 가입의무화	-
	최소급여	원리금보장	-
	사업비	사업비 상한 설정	신계약비, 유지비, 관리비
	해지패널티	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본인기여분, 수익분: 기타소득세

주: 보험료 및 보조금의 수치는 적용(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예시임.

■ 또한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즉,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저소득계층) 중심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4%(최소 본인부담금은 연간 10만 원)로 하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국민연금과 동일)으로 함.
 - 보조금은 가입자에 대해 기본 연간 10만 원을, 자녀(18세 미만)에 대해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이와 더불어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즉, 인증검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되, 원리금 보장형 운용, 중도인출 엄격규제, 사업비 상한 설정, 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등의 기준하에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kiri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이하 “연금 자유화”)하였음.
 -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적립금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수령하였으나 그 이상 수령 시에는 최대 55%로 중과세 하였음.
 - 영국 정부는 연금 자유화 이후 중과세 하던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여 일시금 선택에 대한 세(稅)부담을 경감시켰음.
-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관찰되었음.
 - 가입자 절반이 상시 출금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FAD) 혹은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등을 이용하여 일시금을 수령하였음.
 - 제도 변화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나, 이자율이 낮은 종신연금 수령 비율은 감소하고 실적배당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추후 일시금 수령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Drawdown) 수령비율은 대폭 증가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 영국의 연금 자유화 이후 가입자 행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이하로 영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 또한 다양하지 못해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연금 자유화 이후 적립금 일시금 수령이 급증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은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¹⁾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이하 “연금 자유화”²⁾)하였음.

-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했음.
 - 과거에는 적립금의 25%에 대한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 하였으며, 나머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최대 55%의 세율로 중과세 하였음.
 - 연금 자유화 이후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되며,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함.³⁾
- 대표적인 연금화 형태로는 일반적인 연금(이하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펀드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에 따라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이하 “Drawdown”)이 있음.⁴⁾

■ 연금 자유화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활용 방법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입자의 적립금 수령 행태에 영향을 미침.

-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및 Drawdown 등 금융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일시금 인출 후 금융상품 직접투자, 부동산 투자 혹은 소비 등이 가능해짐.
 - 연금화 상품인 종신연금의 낮은 이자율 및 Drawdown의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에 대한 불만은 영국 정부의 연금 자유화 시행 배경이 됨.
- 금융회사는 이탈 가능성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묶어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발생함.

1) 영국의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제도는 1921년 금융법(Finance Act)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음.

2) 영국 현지 언론은 이를 Pension Freedom이라 표현하고 있음.

3) 2016년 현재 영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밴드	과세표준	세율
Personal Allowance	~£11,000	0%
Basic rate	£11,001~£43,000	20%
Higher rate	£43,001~£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45%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rates>).

4) 이는 자산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미국 변액연금과 유사함.

- 본고에서는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가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령 행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함.

2. 영국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



- 영국의 퇴직연금은 적립기와 수령기⁵⁾로 이원화되어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함.
- 퇴직연금 수령기에는 적립금의 25%까지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며,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종신연금 혹은 Drawdown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종신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 서만 판매할 수 있음.
 - Drawdown은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판매함.

- Drawdown은 종신연금의 낮은 이자율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되었음.

- Drawdown은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 단,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생활자금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원본 손실 가능성도 있음.
- Drawdown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이후 종신연금으로 전환 가능함.

- 연금 자유화 이전에는 Drawdown 가입 시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수령이 불가능하였음(표 1) 참조).

- 적립금의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간 상한액 이내에서만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거나(Capped Income Drawdown), 가입자가 충분한 노후소득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연간 12,000파운드⁶⁾까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음(Flexible Income Drawdown).

5) 적립기 연금은 종자돈을 만든다는 의미로 Pension, 수령기 연금은 일정한 주기로 자금을 수령한다는 의미로 Annuity라고 칭함.

6)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20,000파운드.

■ 연금 자유화 이후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Flexi-Access Drawdown(이하 “FAD”)이 도입됨.

- FAD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단, FAD 가입 시점에 전체 적립액의 25%까지 비과세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가입 시점에 25% 이내로 수령하고 이후 추가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Flexible Income Drawdown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은 연금 자유화 이후 FAD로 이전을 허용함.
- FAD 등 Drawdown을 이용한 수령형태를 결정형 연금펀드(Crystallized Pension Fund)라고도 칭함.

■ 연금 자유화 이후 종신연금과 Drawdown 이외에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Uncrystallized Funds Pension Lump Sums)가 새로이 도입 됨.

- UFPLS 가입자는 자유로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나, Drawdown처럼 UFPLS 가입 시점에 전체 적립금의 25%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는 없음.
 - 단, 추후에라도 적립금 인출 시마다 인출금액의 25%에 대해서는 비과세, 나머지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표 1〉 영국의 연금수령 형태

구분	수령방식	특징	도입 시기
종신연금(Annuity)	사망 시까지 일정액 수령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Capped Income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ble Income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충분한 소득원이 존재할 경우 일부 일시금 인출이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Access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제한 없이 적립금 일시금 인출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UFPLS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 가능	일시금 인출 시 마다 인출금액의 25%는 비과세, 75%는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3. 연금 자유화 이후 연금 수령자 행태



■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령하는 계좌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연금 자유화가 시작된 2015년 2분기에 20만 계좌가 넘던 적립금 수령계좌 수는 4분기에 12만 7천 계좌 수준으로 감소하였음(〈표 2〉 참조).
 - 특히, 2분기 수령계좌 수는 전년도 동기 95,372계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일시금 수령 가능시기를 기다려 온 가입자들이 일시에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보임.

■ 종신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 수는 2013년 2분기 89,896계좌에서 연금 자유화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2,418계좌로 2년 전 동일 기간의 14% 수준으로 급감함.

- 전체 일시금 수령 계좌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 가입자가 종신연금 대신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들은 종신연금보다는 적립금을 추후 현금 혹은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FAD 혹은 UFPLS 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표 2〉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선택 추이

(단위: 계좌)

구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좌 수	비율	계좌 수	비율	계좌 수	비율
총 연금수령 계좌 수	204,581	-	197,443	-	127,094	-
종신연금	12,418	6%	23,385	12%	21,289	17%
Drawdown	53,543	26%	54,604	28%	37,150	29%
일부 일시금	3,154	2%	N/A	N/A	3,045	2%
전체 일시금	118,574	58%	113,100	57%	65,610	52%

주: 1) 본 통계량은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전체 일시금은 UFPLS와 FAD 및 Small pot 등을 이용하여 전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 수입.

3) 2분기 자료에는 비과세 한도(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이후 용처가 나와 있지 않은 16,892(약 8%)계좌로 인해 비율의 총합은 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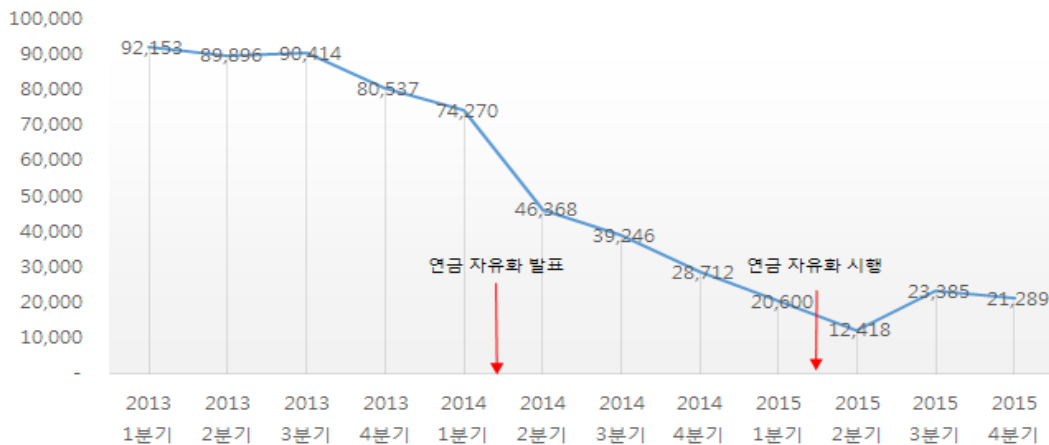
자료: FCA(2016), "FCA pension freedoms data collection exercise"; FCA(2016),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재구성.

■ 가입자 중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종신연금 이자율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입자의 종신연금 가입유인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⁷⁾
 - 가입자들은 연금 자유화 전까지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었으므로 종신연금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수령해 왔음.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계좌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3월 영국 재무장관의 연금 자유화 발표 이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가입자들이 자유로운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연금 자유화 이후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후 FAD 혹은 UFPLS 등을 이용해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1〉 연금 자유화 전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종신연금 계약건수

(단위: 계좌)



자료: FCA(2015), “FCA pension freedoms data collection exercise” 자료 재구성.

■ 반면, 연금 자유화 이후 Drawdown은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연금 자유화 이전 Drawdown은 높은 수수료 및 최소 가입금액 등으로 인해 적립금의 규모가 1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
 - 연금 자유화 이전인 2013년 종신연금 판매는 총 353,000계좌였으며 판매액은 120억 파운드였던 반면, Drawdown은 총 22,000계좌가 판매되고 판매금액은 12억 파운드였음(〈그림 2〉 참조).

7) The guardian(2013. 2. 15), “Annuities VS drawdown” 참조.

- 연금 자유화 이후 가입금액 등이 대폭 조정되어⁸⁾ Drawdown과 종신연금의 선택비율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 및 은퇴관리 전문회사인 영국 Aegon사의 경우 연금 자유화 이후 FAD로의 연간 자산 이동이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연금 자유화 이전 종신연금과 Drawdown 가입 추이

(단위: 천 계좌, 10억 파운드)



자료: FCA(2014, 12), "Retirement income market study: Interim Report".

4. 결론 및 시사점



■ 영국 연금 자유화의 특징은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과세 완화와 적립금 수령 방식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전체 적립금의 25% 이내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그 이상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최대 55%로 중과세 하였으나, 이를 세율 0~45%의 종합소득과세로 전환함.
- 또한, FAD와 UFPLS 등 새로운 적립금 수령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의 선택을 확대함.

8) Financial Times(2016, 4, 1), "Pension freedoms on year on: Boomers shun sports cars for DIY" 참조.

- 이는 세제 변화 및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노후준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금 자유화 시행 이후 가입자와 금융회사는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시금 수령에 대한 적용 세율이 완화됨에 따라 일시금 수령자 수가 대폭 증가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자 중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일시금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Drawdown을 선택한 반면, 종신연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대폭 감소하였음.
- 특히, Drawdown의 성장은 수수료 및 최소 납입금액 하향 조정 등 새로운 제도에 반응한 금융회사의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연금 자유화가 시행된 지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 단, 일시금을 이용한 투자와 Drawdown의 특성상 수령기 연금자산 및 노후소득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5조 원으로 상당한 적립금이 쌓여 있으며, 적립금의 증가 속도 역시 지난 1년간 약 20조 원이 증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⁹⁾
 - 올해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제도가 확대 되면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
-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¹⁰⁾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영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세제 측면에서는 낮은 퇴직소득세율과 다양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법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비율 제고가 절실하나 대부분 일시금 수령자들에 대한 실질 퇴직소득세율이 3% 미만임.¹¹⁾

9) 금융감독원(2016. 6),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10) 금융감독원(2016. 6),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이는 연금 자유화 이후 일시금 선택이 급증한 영국이 적용하는 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임.
- 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¹²⁾ 및 세율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령 행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수령방법 측면에서는 적립금 선택 방법이 일시금과 연금¹³⁾만으로 다양하지 못하며, 연금의 이자율이 낮은 경우 일시금 선택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역시 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금 자유화 이후 일시금 수령이 급증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제 측면에서는 공제 방식 등을 조정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실질 퇴직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감면 혜택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를 통한 연금화 수령 유도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영국 Drawdown과 유사한 실적 배당형 연금상품과 종신연금이 연계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kiri](#)

12)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함.

13) 보험회사의 종신수령연금과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 등의 정기수령연금을 망라하여 연금으로 칭함.

4. 보험경영

1. MetLife 분사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2. 저금리 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조재린 이해은
3.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4.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5.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희
6. 전속설계사 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김석영 이선주
7.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조영현 이해은
8.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
9.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조영현 이해은
10.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송윤아
1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송윤아
12.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
13. 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이용	임 준
14. 미 대선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임준환 조영현 황인창
15.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 이선주
16.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임태준 이규성
17.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18.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 동향	송윤아 권오경 마지혜



MetLife 분사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MetLife 보험그룹은 지난 1월 12일 미국 내 변액연금 등 가계성 보험 사업부문을 그룹으로부터 분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SIFI 지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 SIFI로 지정되는 금융그룹은 미국 FRB의 감독대상이 되며 리스크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아야 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한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FSOC에 부실화 시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는 권한을 줌.
 - FSOC는 MetLife의 사업모형 중 주로 변액연금 등 비전통적 보험상품과 자본시장과 연계성을 높이는 비보험 금융상품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여 SIFI로 지정함.
 - 특히 변액보험 등 가계성 보험에 부가된 보증 옵션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보험회사를 노출시키면서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
- SIFI 지정에 대한 MetLife의 대응은 시스템리스크가 큰 가계성 사업부문을 본체로부터 분리시켜 시스템리스크를 낮춤으로써 SIFI 지정 및 이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임.
 - 분리 형태는 주식공개(IPO)를 통하여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분리공개(carve-out) 방식, 분리되는 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 넘기는 방식(spin-off), 그리고 분리되는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직접 매각(sell-off)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 미국 MetLife 사례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그룹감독을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사점을 줌.
 - 향후 SIFI 감독이 도입된다면 대형 보험회사는 지정 시 고려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모형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필요 시 시스템리스크가 높은 사업부문을 선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전 또는 분사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미국 MetLife 보험그룹(MetLife, Inc. 이하 ‘MetLife’)¹⁾은 지난 1월 12일 변액연금과 변액 보험 등 미국 내 가계성 보험사업의 상당 부분을 그룹으로부터 분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²⁾

이번 MetLife의 가계성 보험 분리결정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지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³⁾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부실이나 도산 시 미국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FRB’)의 감독 대상인 SIFI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규제 등 감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tLife는 SIFI 지정에 따른 추가적 자본규제 등 규제부담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경쟁력 저하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모형상 시스템 리스크⁴⁾를 내포한 사업부문을 분리시켜 규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MetLife의 조직 분리 계획이 나오게 된 규제의 배경, MetLife의 SIFI 지정 사유와 이에 대한 MetLife의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FSOC의 SIFI 지정 배경 및 기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각 금융권역별로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도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금융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⁵⁾는 부실화 시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금융회사를 SIFI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5)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설치됨.

1) MetLife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2014년 말 현재 자산규모 9,023억 달러를 보유한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임.

2) MetLife(2016. 1. 12), “MetLife Announces Plan to Pursue Separation of US Retail Business”, Press Release.

3)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4) FSB/BIS/IMF는 시스템리스크를 ‘(1)금융 시스템의 부분 또는 전체의 장애로 인하여, (2)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금융서비스 흐름을 중단시키는 리스크’로 정의함.

SIFI는 자산규모, 파생상품 및 부채 규모 등의 양적 기준과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한 질적 기준을 함께 평가하여 지정된다. 양적 기준은 금융그룹의 연결기준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충족된다. 즉, CDS가 파생된 회사채 총액 300억 달러 이상, 파생 부채 35억 달러 이상, 총부채 200억 달러 이상, 연결기준 레버리지 비율 15 이상, 12개월 미만 단기채무 대비 연결기준자산 비율 1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질적 기준은 양적 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그룹에 대하여 금융그룹 사업모형의 성격, 규모,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한다.

SIFI로 지정되면 대형 은행지주회사⁶⁾와 함께 FRB의 감독대상이 되며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의 정도에 맞추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한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⁷⁾ 특히, 2014년 말 Insurance Capital Standard Clarification Act가 통과되면서 FRB는 연방보험청(FIO) 및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IC) 등과 함께 보험그룹에 대한 맞춤형 적용을 위한 자본기준을 만들고 있다.⁸⁾ 현재

FSOC가 SIFI로 지정한 금융그룹은 MetLife, Prudential, AIG(이상 보험그룹)과 GECC⁹⁾ 등 4개이다.

3. MetLife의 SIFI 지정 근거

FSOC는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파되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경로를 크게 리스크 노출(exposure), 자산 유동화(asset liquidation), 주요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critical function or service)의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여 해당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한다. 금융그룹이 영위하는 사업모형의 차이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 금융그룹의 조직 및 영업 복잡성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대체가능성 등이 달라지고 나아가 금융그룹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영향력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¹⁰⁾

FSOC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MetLife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¹¹⁾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증언; 도드-프랭크법 제171조(부채비율 및 위험기준요구자본)를 수정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은행과 차별적인 자본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미국 General Electric의 금융부문인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oration(GECC)은 연결기준 자산규모가 5,39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저축대부지주회사(Savings & Loan Holding Company)인.

10)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그룹의 부실화 또는 파산 확률보다는 그 부실화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보다 주목함.

11) FSOC(2014, 12), "Basis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s 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6) 연결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7) FRB는 사업모형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다른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영위하는 사업모형이 은행과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기로 함. 12 CFR Part 252 Enhanced Prudential Standards for Bank Holding Companies and Foreign Banking Organizations; Final Rule(2014, 3), pp. 17244~17245.

8) 2015년 4월 28일 FRB 은행규제감독국 부국장 Mark E. Van Der Weide의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첫째, 노출 경로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MetLife의 레버리지 정도, 미국 내 부외노출 성격 및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주로 채권자, 투자자, 거래상대방 및 기타 시장참가자 등이 MetLife와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리스크에 노출되고 MetLife의 부실 시에 금융시스템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경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한 다른 대형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본시장에서의 활동 등을 통한 리스크 노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FSOC는 MetLife가 유가증권 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보증투자계약(GICs: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¹²⁾과 같은 보증성 보험상품 및 각종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와 상호연계성을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즉, 이들 사업모형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며¹³⁾ 이는 MetLife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산유동화 경로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MetLife가 긴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한 자산을 급매각하는 경우 유사한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하는 등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유사 자산을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손실 또는 자금조달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로 평가한다. 특히,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그룹의 자산투매가 다른 금융그룹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FSOC는 MetLife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경로를 크게 기관투자자나 자본시장의 만기연장 거부, 그리고 가계성 보험계약을 통한 대규모 인출과 해약 사태로 보았다. 예를 들어 MetLife의 사업모형 중 기관과의 거래비중이 높은 Funding Agreement나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의 거래연장이 거부되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 대규모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MetLife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FSOC는 이런 경우 MetLife가 보유한 유동자산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MetLife가 자산을 긴급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에 의한 시스템적 중요성은 해당 금융그룹의 부실 또는 실패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던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유사한 금융 기능이나 서비스 대체물을 바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FSOC는 MetLife의 금융서비스 대체성 경로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는 낮게 보았다. 생명보험 시장에서 MetLife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4년 말 현재 16.14%로 다른 회사가 충분히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FSOC도 MetLife

MetLife, Inc.”, pp. 15~26.

12)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과 원금을 보증하는 보험상품.

13) 예를 들어, 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담보를 주택담보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노출이 커짐.

가 영업 중인 주요 보험상품시장의 경쟁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변액연금이나 보증을 동반한 종신보험 등 비전통적 보험상품과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비보험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변액보험 등 가계성 보험에 부가된 보증 옵션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보험회사를 노출시키면서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SIFI 지정에 대한 MetLife의 대응

MetLife는 SIFI 지정에 따라 주 보험청의 감독에 더하여 FRB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추가적 자본규제 등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MetLife의 대응은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사업부문을 본체로부터 분리시켜 SIFI 지정 및 이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¹⁴⁾

현재 MetLife의 그룹 구조는 가계성 보험(Retail), 단체보험(GVWB: Group, Voluntary & Worksite Benefits), 퇴직연금을 포함한 기업성 금융상품(Corporate Benefit Funding), 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의 6개 주요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계성

보험, 단체 보험, 기업성 금융상품과 남미를 아울러 미주(Americas) 사업부문으로 통칭한다.

2014년 말 현재 미주 사업부문의 매출규모는 55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77.4%를 차지하며, 자산규모는 7,062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78.3%를 차지한다. 단일 사업부 중에는 가계성 보험의 매출이 21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전체 그룹매출의 30.1%를 차지한다. 가계성 보험의 자산규모는 3,592억 달러로 전체 그룹자산의 39.8%를 차지한다.

MetLife는 미국 내 가계성 사업부문 중 변액연금, 보증옵션을 포함한 변액보험 등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를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분리계획에 포함되는 회사는 Metlife USA, General American Life, Metropolitan Tower Life와 관련 자회사 및 재보험사 등이다. 분리되는 사업 부문은 2015년 3분기 말 MetLife 전체 영업이익의 20%와 전체 가계성 보험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하며 약 2,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재 미국 내 변액연금의 약 60%와 보증옵션을 가진 유니버설 보험의 약 85%를 보유하게 된다.

분리 형태는 분리되는 회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주식공개(IPO)를 통하여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분리공개(carve-out) 방식, 분리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보유 비율대로 나누어 넘기는 방식(spin-off), 그리고 분리되는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직접 매각(sell-off)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은 MetLife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사회 논의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당국의

14) 가계성 보험을 분리한 후에도 시스템리스크가 높은 기업성 금융상품 사업부를 통한 비보험 금융상품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SIFI 지정에서 제외될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승인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업부 분리를 통한 SIFI 규제 회피는 2013년 8월 SIFI로 지정된 GECC도 시도한 바 있다. 모기업인 GE는 GECC의 가계성 금융부문을 2014년 IPO 형식으로 매각하여 Synchrony Financial을 설립한 바 있으며, 향후 상업용 리스 사업의 대부분을 Wells Fargo로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MetLife의 분사계획 발표에 따라 AIG와 Prudential과 같이 SIFI 지정을 받은 다른 보험그룹도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추가적 자본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

MetLife 등 SIFI로 지정된 금융그룹의 대응 방안은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 규제 도입 시 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추진¹⁵⁾하는 등 금융그룹 리스크 감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보험회사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및 규제 흐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형 보험회사도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¹⁶⁾ 향후 금융 복합화 및 대형화가 심화

되면서 사업모형이 복잡해지면 시스템리스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SIFI 지정 대상이 될 경우, 지정 시의 고려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모형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리스크가 높은 사업부문을 선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험업법상의 계약이전이나 MetLife 사례에서 언급된 분사 방식 등을 국내 상황에 맞게 검토한 다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추가적인 규제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금융그룹의 과도한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한 금융규제의 실패가 지목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별로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문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번 MetLife의 분사계획 발표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고 있는 추가적 금융규제로 인한 규제부담을 회피하려는 시장의 대응이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이 같은 추가적 금융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규제준수비용의 문제는 금융회사 경영상의

15) 금융위원회(2015. 1. 29), 「2015년 업무계획」, p. 70.

16)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 11), 「금융위기 이후 보험 규제 변화 및 시사점」, 정책보고서 2012-3, 보험연구원.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이런 경우 MetLife 처럼 분사를 통해 규제부담의 원인이 되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방식은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응하

여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사례로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kiri**



저금리 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조재린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저금리 ·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춘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종신보험이 이에 해당됨.
 - 저해약환급금형은 고객이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임.
 -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은 고객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임.
- 이러한 종신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제도 변화, 소비자 선호, 그리고 자본금 역량 등에 기인함.
 - 기존 표준해약환급금 규제하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한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보장성에 대한 표준해약환급금 규제변화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음.
- 새로운 종신보험은 저금리 · 저성장 환경하에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높음.
 -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1. 검토배경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주는 신상품 출시는 인상적이다.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종신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저금리의 지속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보험산업에 커다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아직도 상당한 가운데 저금리는 보험부채의 실질적인 크기를 키워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손익 측면에서도 이차역마진¹⁾으로 인한 투자수익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는 기존 보험계약의 관리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할인율로 사용되는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저금리에 따른 예정이율의 하락은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보험의 판매를 어렵게 한다.

더욱이 저금리와 함께 저성장은 보험소비자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저금리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고수익투자처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낮춘 신상품 출시는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저금리 시대하에서 이러한 신상품 도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동 상품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신상품 개발 결정요인

상품개발전략은 규제제도, 소비자 선호, 자본금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세워진다. 따라서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화는 상품전략의 다양화로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새로운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나 규제 개혁 이후 개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제시를 계기로 향후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차별성과 다양성을 갖춘 새로운 상품들의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율 감소는 신규 보험계약을 저해함은 물론, 실효·해약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채지가평가를 기초로

1) 이차역마진이란 적립금(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쌓아둔 돈)의 적립이율이 자산운용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보험회사들은 과거에 연 5% 이상의 확정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판매한 상품이 많아 자산운용 수익률이 적립금 적립이율보다 낮은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음.

하는 IFRS4 2단계 도입과 지급여력제도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새로운 종신보험의 구조와 특징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의 이면에는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한 표준해약환급금 규정의 완화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5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표준해약환급금보다 낮은 수준의 해약환급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급금을 낮게 설정한 무해약·저해약 상품 출시대상을 순수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 상품에서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해약환급금 제도하에서 기존 종신보험 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었다. 해약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환급금의 최저수준이 표준해약환급금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 그 부담에 상응하는 만큼 보험료를 책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되는 변수들(예정이율, 표준이율, 예정신계약비, 예정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구한 값과 같거나 커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주는 신상품으로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상품이 있다. 저

해약환급금 상품은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최저환급금보다 낮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 상품은 해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약유지자의 준비금 적립 재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도 같은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저해약환급금 상품은 장래에 많은 계약자들이 해약할 것이라고 가정할수록 계약유지자의 준비금 적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계산되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반면,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시 예상했던 해약률보다 실제로 해약하는 계약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계약유지자에 대한 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상품은 상품개발 시 해약률에 대한 가정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현재 출시 중인 상품들은 해약률이 기존 종신보험의 해약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 구조상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계약자의 유지성향이 높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향후 해약률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형으로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상품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

를 인하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에는 예정이율을 적용하되, 해약환급금 재원인 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에 대한 금리위험을 줄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공시이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예정이율로 계산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리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4. 결론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압력과 저성장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종신보험들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보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

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새로운 보험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압력은 경기불황과 맞물려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선, 예상보다 저금리 환경이 길게 지속되면서 예정이율 인하 압력이 커질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보험수요 위축으로 신상품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잘 대응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성장·저금리와 같은 위협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신상품 개발에 있어 신수요 출현과 감독규제 완화 등을 성장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결정을 자율화할 것을 밝힌 만큼, 앞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kiri](#)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규모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40조 2,668억 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1조 7,236억 원임.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3%에서 2014년 16.2%, 손해보험의 경우 30.9%에서 47.5%를 기록한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5.5%, 2014년 7.8%에 불과함.
-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확대는 가계대출 축소와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 감소, 그리고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 때문임.
 -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임.
 - 2016년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2%,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8% 수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8%의 두 배에 이름.
-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증가는 보험회사에게 양날의 칼(Double Edged Knife)로 작용할 것임.
 - 긍정적인 측면들은 기업의 자금난 완화, 운용수익률 제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한 금리위험 감소 등임.
 -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기업의 신용위험이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기업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 자산운용수익률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일본 보험회사들은 신용위험 평가 역량, 대출 회수 가능성과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해서 2000년 이후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있음.

1. 검토 배경

최근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기업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보험업권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에서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저금리하에서의 보험회사 기업대출 현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득과 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자산운용 전략과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대출 현황과 원인

2015년 9월 말 현재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규모는 생명보험 40조 2,670억 원, 손해보험 21조 7,240억 원이다.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생명보험 7.2%, 손해보험 12.2%로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비중이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높다. 기업대출 증가속도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는 2012년 13%에서 2014년 16.2%로, 손해보험의 경우는 30.9%에서 47.5%로 높아졌다. 반

면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5.5%, 2014년 7.8%에 불과하다. 기업대출 수요자 측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높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더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보험회사들이 공급하고 있는 형세이다.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보험계약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연평균 4.2%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11.2%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 11.7%, 2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는 가계대출 축소와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 감소, 그리고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에 기인한다.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은 2009년 86.6%에서 2015년 3분기 81.7%로 하락한 반면 보험 및 연기금의 비중은 3.7%에서 6.1%로 상승하였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11월에 비해 9조 9,000억 원 감소했는데 대기업 대출은 5조 6,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에 있으며,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¹⁾ 특히 조선, 건설 등 경기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이 감소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2016년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2%,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8% 수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8%의 두 배에 이른다.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최고 9%에 이르지만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증가세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보험회사 기업대출 확대의 득과 실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증가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실물경제에의 기여, 운용수익률 제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한 금리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대출 감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는 신규 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우량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대출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AXA 보험그룹과 영국의 Legal & General 금융그룹 등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하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기업대출 이자율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대출 비중 확대는 보험회사의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평균 3% 중반 수준의 대출 이자율은 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대출은 연장을 통해 만기가 길어질 수 있어 자산-부채 매칭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부채의 만기가 길고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이 높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높아 집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지고 있어 기업대출과 같이 상대적으로 운용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긴 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회사의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비중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위험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대출과 관련된 신용위험이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위험이란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 약화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의미하는데,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어 부채 상환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기업의 채권발행과 대출잔액 비중은 2014년 말 105.3%로 OECD 평균 97.1%를 웃돌고 있다.²⁾ 그리고 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상

1) 박선영·전용식(2014. 4.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78호.

2) 한국은행(2015. 12), 『금융안정보고서』.

반기 기업 매출은 7.1%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 1.2%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지속된 경기부진 장기화로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5년 상반기 35.3%를 기록하였다. 반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14년 영국과 독일의 기업부채 비율은 75%, 54.4%이며 기업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영국 6.0배, 독일 10.2배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관련 신용위험은 은행의 신용위험보다 클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 역량은 은행보다 좋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경기부진 심화로 인해 기업 도산이 증가할 경우 기업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고 회수가 된다 해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등 기업대출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등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보험산업의 실물 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신용위험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업대출의 수익률이 국채보다 높지만 위험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들이 중위험·중수익 자산운용 전략으로 운용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대출 비중이 2015년 9월 기준으로 손해보험 12.2%, 생명보험 7.2%로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이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는 보험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역량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인 것이다. 유럽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면서 증가한 것이며, 이에 반해 일본 보험회사들은 신용위험 평가 역량, 대출 회수 가능성과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업대출을 축소시켰다. 최근에는 은행이 주관하는 신디케이트론에 보험회사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저금리 지속으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kiri](#)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
 - 매출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1/4분기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비율은 각각 12.03%, 11.43%를 기록함.
 - 조선·해운업 이외에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에서도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될 계획임.
- 이들 업종의 생산 위축이 가시화된 2012년 이후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함.
 -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를 초래하였고 보험료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임.
-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내수 위축,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및 생산시설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은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의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기업 구조조정 장기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국내 경제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음.
 -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은 2012년 99조 1,778억 원에서 2015년 93조 1,805억 원으로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위축,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비용절감 방안,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인수위험 다변화, 사업 및 지역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

1. 검토 배경



■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실물경제 둔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조선업의 수출비중은 2009년 12.4%에서 2015년 말 기준 7.6%로 감소함.
- 조선업 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의 수출 및 생산 감소, 수익성 둔화는 고용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짐.

■ 실물경제 둔화는 보험수요 둔화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성보험 손해를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조선·해운업의 생산감소는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 기업의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임.
-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인해 가계성보험 수요 둔화도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본고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의 수익 감소와 자본확충 부담 등으로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자본확충 부담



■ 조선·해운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

- 2016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임.¹⁾

-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구조조정 협의체와 채권단 및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 이외에도 부실징후 기업은 채권단이 주채무계열 평가, 상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
- 2016년 6월 8일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자본감소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추산되고,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것임.

- 은행권의 부실대출비율은 2016년 1/4분기 기준으로 1.87%이며, 조선업은 12.03%, 해운업은 11.43%, 건설업은 4.27%를 기록함.
 - 2011년 1/4분기 2% 이후 5년만의 최고치이며 미국 1.54%, 일본 1.53%보다 높은 수준임.
 - 부실대출 규모는 31조 3,000억 원으로 2015년 말 30조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부실대출의 93.3%가 기업대출임.
-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일부 조선사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더 상승할 것임.
 - 국책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높고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하나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은 부실단계별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충당금 적립은 은행의 자본을 감소시켜 신용공급 여력을 감소시킬 것임.

〈표 1〉 은행권의 여신부문별 부실채권비율

(단위: %)

구분	2010년 3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
부실채권비율	1.48	1.90	1.36	1.33	1.79	1.55	1.80	1.87
기업여신 ¹⁾	1.96	2.60	1.73	1.66	2.39	2.09	2.56	2.67
가계여신	0.51	0.56	0.60	0.69	0.60	0.49	0.35	0.36
신용카드	1.16	0.97	1.36	1.48	1.34	1.11	1.14	1.40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6) 참고.

1)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6. 4. 26),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관련”.

■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확대된 보험회사 기업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용위험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

-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2016년 1/4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이 4.07%라는 점과 보험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4.07%보다 더 높을 수 있음.

〈표 2〉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규모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2014	2015
생명보험	기업대출	21,533 (6.93)	23,149 (6.04)	26,162 (5.87)	31,468 (6.73)	36,550 (6.99)	41,895 (7.31)
	총대출	72,744 (23.42)	80,394 (20.97)	86,141 (19.32)	95,345 (20.40)	104,146 (19.91)	114,699 (20.00)
손해보험	기업대출	6,624 (8.10)	8,427 (8.23)	11,036 (8.97)	13,428 (9.88)	19,802 (12.21)	23,449 (12.79)
	총대출	18,471 (22.58)	23,269 (22.72)	28,250 (22.96)	33,740 (24.82)	42,465 (26.19)	50,103 (27.3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운용자산대비 비중이며, 2014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경우 자본확충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IFRS4 Phase2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기업대출 부실이 증가할 경우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될 것임.

3. 기업 구조조정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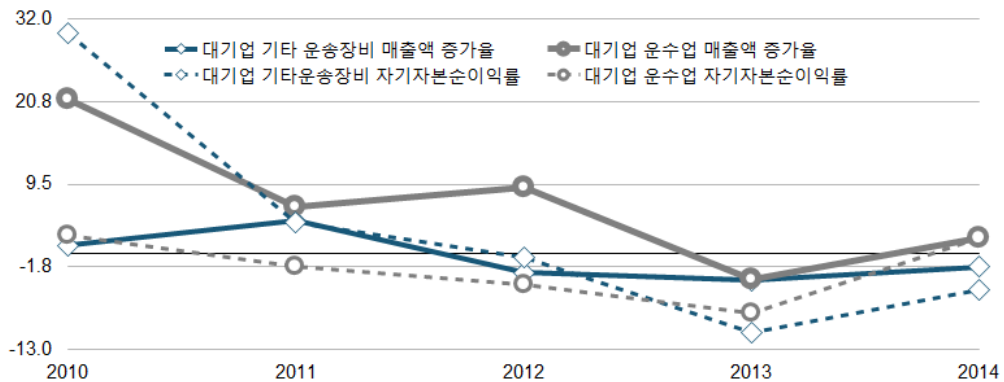
■ 조선, 해운업 등 5개 업종의 수익성 둔화와 생산 감소는 기업성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성보험이 60%를 차지하는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로 인한 보험료 하락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해운 등 운수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4.52%, 6.39%에서 2014년 -1.76%, 2.27%로 감소
-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2011년 4.24%에서 2014년 -4.91%로 감소하였고, 해운 등 운수업은 2014년 2.2%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함.
- 기업성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주요 업종의 생산 감소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는 보험료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그림 1〉 조선·해운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1년 14.9%를 기록했으나 2014년 -0.26%를 기록함.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조 1,424억 원이며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의 비중은 각각 9.0%, 61.4%를 차지하고 있음.
 -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 특종보험 중 기업 종합보험은 기업의 생산, 보증보험은 건설업 경기와 관련이 있음.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3년 -16.97% 이후 2015년 -3.43%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FY2012 이후 둔화되고 있음.

〈표 3〉 일반손해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¹⁾	2014 ²⁾	2015
화재	-3.72	1.44	21.75	0.65	-3.42	-2.10
해상	-4.07	12.67	5.75	-16.97	-2.19	-3.43
보증	6.39	16.14	4.15	-4.08	-0.65	4.40
특종	11.52	14.57	12.50	6.41	1.19	3.07
해외원보험	11.92	36.05	54.11	40.15	-6.81	-8.97
일반손해 합계	7.59	14.90	10.71	3.30	-0.26	1.67

주: 1) FY2013 증가율은 2012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2) 2014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내수 위축은 기업성보험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가계의 보험 및 연금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임.

- 기업 구조조정 대상 5개 업종의 생산활동 및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경우 고용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위축은 지속될 것임.
 - 일본의 경우 자산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처리에 약 10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의 내수 위축으로 현재까지 장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 규모는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고용 위축, 기업 투자감소 등 내수 위축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의 금융상품 및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2012년 3.8%를 기록했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은 2015년 0.9%로 하락함.
 -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은 2011년 70조 5,756억 원에서 2012년 99조 1,778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13년 93조 6,985억 원, 2015년 93조 1,805억 원으로 감소함.

〈표 4〉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과 가계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

(단위: %, 십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 ¹⁾	2.8	1.7	3.8	0.8	2.1	0.9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	65.8	70.6	99.2	93.7	92.9	93.2

주: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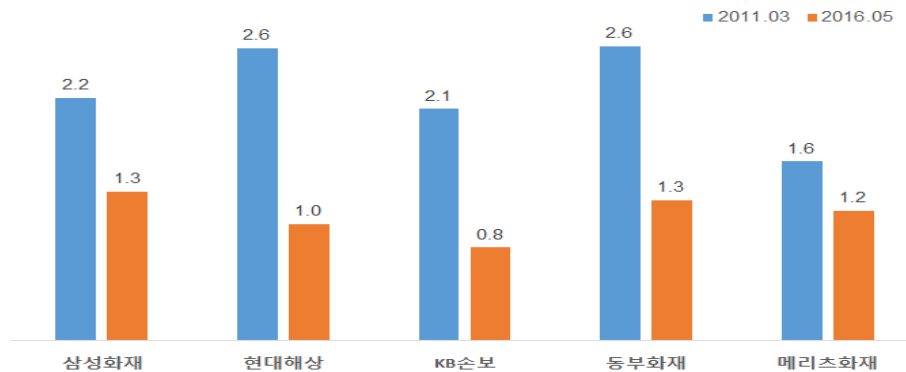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한국은행.

■ 기업 구조조정과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둔화,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는 자본확충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의 미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0년 말 16.5%에서 2015년 말 9.6%로 하락 추세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2011년 3월에 비해 2016년 5월 현재 더 악화되고 있음.²⁾
- 투자자들의 손해보험회사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료: 인포맥스.

4. 결론 및 시사점

■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부진은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

●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부채비율 상승 그리고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비율 상승과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함.³⁾

- 중국 경제 둔화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임.

3) 전용식(2016. 5. 16),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KIRI Weekly』, 제384호.

■ 현재 수익 감소가 미래 수익 감소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지역 다각화가 지속되어야 함.

- 수익성 악화와 가중되는 자본확충 부담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위축과 미래 성장가능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인프라 구축 등 현지화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해 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익성 둔화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비용절감을 고려할 수 있는데, 비용절감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는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함.
-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인수위험을 다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평가 역량이 배가되어야 함.
 - 독일의 알리안츠는 사업다변화를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령인구 대상 자동차보험, 미국 재난보험 시장으로 진출하였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고령자보험, 자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의 사업다변화 모색이 필요함. [kiri](#)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희 교수(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요약

- 연금저축상품은 장기계약 특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계약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적립금을 이체시키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의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짐.
- 연금저축상품 간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권별로 상이한 사업비 부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신탁(은행) 및 펀드(증권·자산운용)는 실적배당형으로 적립금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낮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증하는 반면, 보험(생보·손보)은 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 존재)으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사업비가 높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구조임.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에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분기 조 회 시점 기준으로 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 전체의 단순평균 수익률은 3.5%, 10년 경과 후 적립률(적립금÷납입원금)은 115.1%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판매된 전체 상품에 대한 투자성과를 신탁·펀드·생보·손보상품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값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음.
 - 다만, 동일 업권 내 상품 간 수익률 격차는 펀드상품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나, 펀드상품 선택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8년 이상 경과 펀드 연평균 수익률 -3.1~12.2% 분포, 표준편차 3.3%).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 특히,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을 잘 선택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금융권역 특성보다 금융회사별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검토배경



- 연금저축상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최저 15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은 적립 후 10년 경과와 5년 이상 분할 수령을 요구하며, 2013년 3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적립 후 5년 경과와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요구함.
 - 납입금액(연 4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5,5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초과: 12%)하며, 총 연금액이 일정금액(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3~5%)와 종합과세(6~38%) 중 선택할 수 있음.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계약 특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서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해짐.
 -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계좌이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한 8,650건에 달하였음(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4. 21).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대상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총 계좌 수의 6.8%인 53만 건, 14조 원에 달한다고 함(머니투데이 2016. 5. 31).
- 계좌이체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이러한 니즈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비교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성과를 금융 권역 상품 유형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장기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분기 기준 판매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과 10년 전 가입을 가정하여 산출한 적립률을 연금신탁(은행)/연금펀드(증권 · 자산운용)/연금보험(생보)/연금보험(손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2.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의 특징



■ 연금저축상품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손해보험)으로 구분되어 불림.

● 금융권역별 투자성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권역별로 취급하는 연금저축상품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함.

■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은 납입방식, 상품유형, 적용금리, 사업비 부과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수령하는 연금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

<표 1> 연금저축상품 비교

구분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
납입방식 ¹⁾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상품유형	채권형 안정형(주식 10% 미만)	채권형(채권 60% 이상) 혼합형(채권/주식) 주식형(주식 60% 이상) 등	금리연동형(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금리연동형(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있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있음)
사업비 부과방식	후취 구조 적립금 비례	후취 구조 적립금 비례	선취 구조 납입 보험료 비례	선취 구조 납입 보험료 비례
원금보장	보장	미보장	보장	보장
연금형태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	확정기간(최대 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주: 1) 자유납이란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납입방식이고, 정기납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임.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길라잡이에서 저자 수정 작성.

■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사업비는 매 기준시점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적립금이 적은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 투자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그러나 계약기간이 길어져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면 수수료 부담도 높아짐.
-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장점이 있음.

■ 연금저축펀드 역시 연금저축신탁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에 비례하는 후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높아짐.

-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원금보장이 안되고 예금자보호 적용대상도 아니지만,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등 다양한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금저축보험은 신탁·펀드와 달리 선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함에 따라,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높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음.

- 선취방식으로 인해 초기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사업비 부담이 낮아져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며, 적용금리는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는 공시이율 방식이고, 최저이율¹⁾을 보장함.

3. 장기 투자성과 분석



가. 데이터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²⁾에서는 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1) 2001~2007년 판매된 개인연금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2.0~4.0% 수준으로 파악됨.

2)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계좌이체 및 관련 수수료 각각에 대해 조회하면,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공시정보로 연결됨.
-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舊) 개인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1〉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

■ 2016년 1분기 기준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판매 중지 포함)은 총 1,943개에 달하며, 2013년 이후 신규상품 출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연금신탁은 총 36개의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공시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대부분이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고 2008년 이후에는 신규 출시된 상품이 없음.
- 연금펀드는 전체 1,973개의 50.3%에 달하는 977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데, 977개 중 88.5%가 2013년 이후 판매된 상품임.
- 연금보험(생보)과 연금보험(손보)은 각각 433개, 497개 상품의 수익률이 공시되고 있는데, 매년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음.

〈표 2〉 연금저축상품 판매개시 건수 추이(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판매개시 연도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생보)	연금보험(손보)	전체
2001	27	14	26	25	92
2002	0	0	7	8	15
2003	1	1	17	16	35
2004	4	0	7	3	14
2005	2	5	20	13	40
2006	1	1	26	17	45
2007	1	14	7	23	45
2008	0	9	14	19	42
2009	0	15	46	59	120
2010	0	13	19	28	60
2011	0	22	6	29	57
2012	0	18	47	30	95
2013	0	125	45	83	253
2014	0	288	18	42	348
2015	0	395	85	72	552
2016	0	57	43	30	130
합계(2001~2015)	36	977	433	497	1,943
비중 ¹⁾	1.9	50.3	22.3	25.6	100.0

주: 1) 전체 합계(2001~2015)에서 각 금융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데이터 다운로드(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관련 정보로 공시되는 사항은 직전 3년의 연간 수익률,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과거 적립률(1/3/5/7/10년) 등임.³⁾

- 연간 수익률은 각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판매시점부터 조회시점까지 납입한 원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임.
 - 예를 들어, 판매개시 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4%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납입된 원금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4%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적립률은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3/5/7/10년 전에 가입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임.
 - 적립금은 납입원금에 이자 등 수익을 더하고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적립금이 많

3)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길라잡이, pp. 6~7. 연금저축보험상품의 경우 장래(판매시점부터 각 15년, 20년, 30년) 시점의 예상 적립률도 공시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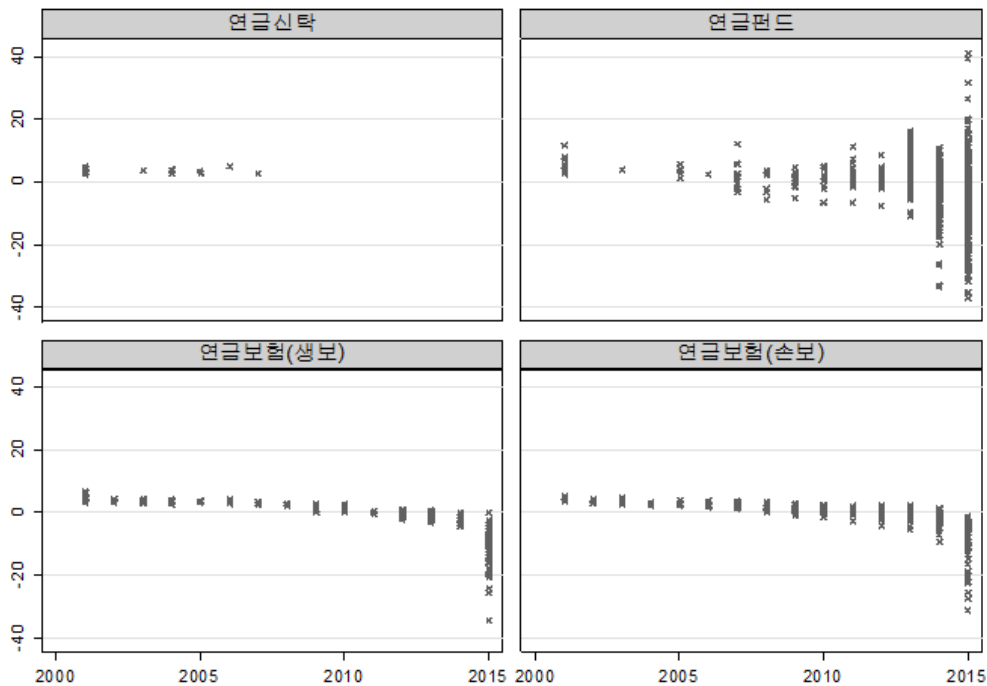
을수록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게 됨.

- 적립률 계산방식을 예로 들면, 10년간 납입원금이 3,600만 원이고 적립금이 4,320만 원인 경우 10년차 적립률은 120%(4,320만 원÷3,600만 원)가 되는 바, 이는 적립금이 납입원금 대비 1.2배임을 의미하는 것임.

나. 판매개시 연도별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 2016년 1분기 조화시점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개시된 1,943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을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판매된 상품일수록 권역별 특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 판매개시 연도별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 연금신탁의 경우 2008년 이후 신규 출시된 상품이 없으므로, 2001~2007년 판매개시된 상품의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것임.

- 연금펀드의 경우 2013년 이후 대부분의 상품이 출시되어 최근 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상품 간 수익률 분포의 폭이 매우 넓음.
- 연금보험의 경우 모든 연도에 신규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최근 연도일수록 마이너스 수익률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가입 초기 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비 부과방식에 기인한 것임.

■ <그림 2>를 통해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비교 시 어느 시기에 판매된 상품(예: 2001년 vs. 2015년)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초기 사업비 부과가 집중되어 적립을 위해 투입되는 원금이 감소하므로 대체적으로 판매개시 후 3년 경과 시점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게 됨.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다. 장기 연평균 수익률 및 적립률

■ 1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943개 상품 중 판매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수익률과 적립률을 분석함.

- 당초 10년 이상 경과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투자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2001~2005년 판매개시된 펀드가 21개에 불과하며, 이 중 설정액 100억 원 이상 펀드는 14개에 불과해 대상 상품을 8년 이상(2001~2007년 판매개시)으로 확대하였음.

■ 금융권역 간 동일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펀드상품은 설정액을 공시하는 데 비해 신탁·보험상품은 유지건수를 공시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성과를 비교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⁴⁾

- 펀드는 설정액(억 원) 기준, 신탁과 보험은 유지건수(건) 기준으로 2001~2007년 출시된 상품의 기술통계를 정리하면 상품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신탁 36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122~78,948건임.

4) 연금저축 통합공시 항목 중 “유지율 비교공시”에 연금저축 펀드의 유지건수 자료가 있으나, 수익률과 매칭이 용이하지 않아 설정액을 사용하였음.

- 생보 110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1~59,989건이며, 손보 105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41~18,372건임.
- 유지건수가 아닌 설정액을 공시하는 펀드의 경우 35개 상품별 설정액은 0.4~8,008억 원임.

〈표 3〉 연금저축상품 유지건수 · 설정액(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억 원)

구분	상품개수	유지건수(설정액)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신탁	36	12,040	122	78,948	16,029	5,722
펀드	35	678	0.4	8,008	1,423	164
생보	110	8,658	1	59,989	14,131	1,864
손보	105	3,268	41	18,372	3,673	1,874

주: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건)이며 펀드는 설정액(억 원) 기준임.

■ 판매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수익률 산출방식 및 대상상품 범위에 따라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산출하였음.

- 상품별 유지건수 및 설정액 차이를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방식을 단순평균과 가중평균(유지건수 및 설정액 기준)으로 구분함.
- 대상상품 범위는 공시된 상품 전체와 대표성을 갖는 상품으로 구분하였음.
 - 대표성을 갖는 상품은 신탁 및 보험의 경우 유지 1,000건 이상이며,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하였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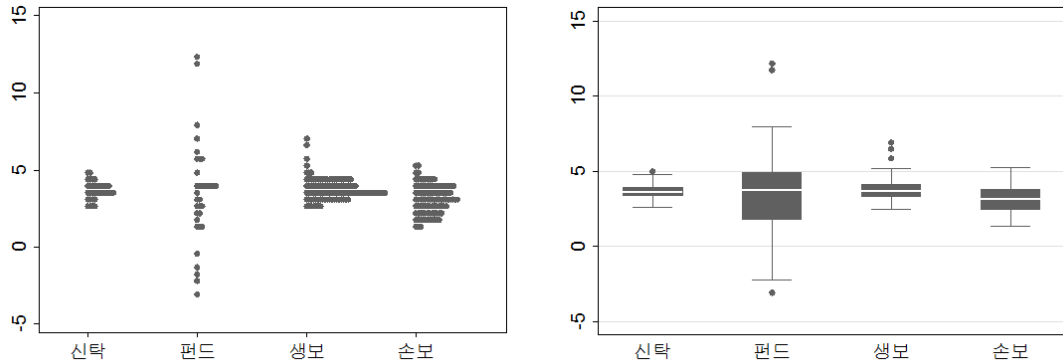
■ 금융회사별 판매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⁶⁾

- 신탁 및 보험의 수익률은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펀드 수익률은 상품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분포가 상당히 넓음.

5) 금융권역별로 대표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자의 자의성이 반영될 수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상품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 금융권역별 투자성과도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상품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6) 전체 상품에 대한 수익률 분포는 〈부록 그림 1〉 참조.

〈그림 3〉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주: 해당 기간 출시된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분포임.

■ 2001~2007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4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 동 기간 판매된 286개 상품의 단순평균 수익률은 3.5%이며, 최저 -3.1%, 최대 12.2%, 표준편차⁷⁾ 1.4%로 나타남.
 - 권역별 수익률 평균(3.1~3.8%)은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표준편차는 펀드 3.3%, 신탁 및 보험 0.6~0.9%로 펀드 상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시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유지건수(설정액) 기준 가중평균 수익률 평균값은 3.5%이며, 최저 -3.1%, 최대 12.2%임.

■ 한편, 10년 전(최초 가입기간: 2001. 1~2006. 3)에 가입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음.

- <그림 4> 오른쪽 박스 그림을 통해 신탁-펀드-생보-손보 간 변동성 척도인 사분위수 간 범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중앙값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펀드상품이 사분위수 간 범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품 간 수익률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 본고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금융회사별 시계열 자료가 아니라 2016년 1분기 기준 해당 권역 내 상품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참고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2012. 10. 16)에 의하면, 2012년 6월 기준 과거 10년간 금융회사별 월간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표준편차는 신탁 채권형 0.28%/신탁 안정형 0.47%, 생보 0.04%/손보 0.03%, 펀드 채권형 0.38%/펀드 혼합형 3.34%/펀드 주식형 5.87%로 나타났음.

〈표 4〉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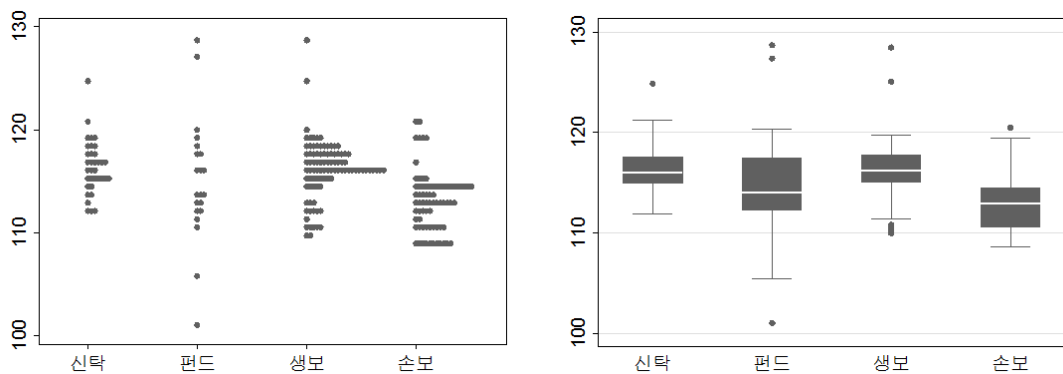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3.6	2.6	5.0	0.6	3.6
	펀드	35	3.5	-3.1	12.2	3.3	3.7
	생보	110	3.8	2.5	6.9	0.7	3.7
	손보	105	3.1	1.3	5.3	0.9	3.2
	전체	286	3.5	-3.1	12.2	1.4	3.5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3.6	2.6	5.0	0.5	3.6
	펀드	35	5.4	-3.1	12.2	3.3	6.0
	생보	110	3.6	2.5	6.9	0.6	3.5
	손보	105	3.0	1.3	5.3	1.0	2.7
	전체	286	3.5	-3.1	12.2	0.8	3.5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3.7	2.6	5.0	0.6	3.7
	펀드	21	4.2	-1.4	12.2	3.4	3.8
	생보	66	3.8	2.5	6.9	0.8	3.7
	손보	71	3.1	1.3	5.3	1.0	3.2
	전체	188	3.6	-1.4	12.2	1.4	3.6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3.6	2.6	5.0	0.5	3.6
	펀드	21	5.5	-1.4	12.2	3.3	7.3
	생보	66	3.6	2.5	6.9	0.6	3.5
	손보	71	3.0	1.3	5.3	1.0	2.7
	전체	188	3.5	-1.4	12.2	0.8	3.5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

〈그림 4〉 과거 10년 적립률 분포(2016년 1분기 기준)



주: 2001년 1월부터 2006년 3월 동안 신규 출시된 상품의 10년 경과 후 적립률임.

■ 과거 10년 적립률⁸⁾ 역시 4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면 <표 5>와 같음.⁹⁾

- 동 기간 판매된 224개 상품의 단순평균 적립률 평균값은 115.1%이며, 최저 101.0%, 최대 128.7%, 표준편차는 3.6%로 나타남.
 - － 적립률 평균(113.1~116.3%)은 금융권역별로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표준편차 (2.6~6.1%)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중평균한 적립률 평균값은 116.3%, 최저 101.0%, 최대 128.7%, 표준편차 2.7%임.

<표 5> 10년 경과 후 적립률(2001. 1~2006. 3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5	116.3	111.9	124.8	2.6	116.0
	펀드	21	115.2	101.0	128.7	6.1	114.1
	생보	95	116.1	110.0	128.4	2.8	116.2
	손보	73	113.1	108.6	120.5	2.9	113.0
	전체	224	115.1	101.0	128.7	3.6	115.2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5	116.8	111.9	124.8	2.0	116.8
	펀드	21	109.3	101.0	128.7	8.7	105.5
	생보	95	116.8	110.0	128.4	1.6	116.6
	손보	73	114.0	108.6	120.5	3.9	113.4
	전체	224	116.3	101.0	128.7	2.7	116.6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29	116.6	111.9	124.8	2.6	116.8
	펀드	14	115.3	101.0	128.7	7.3	115.1
	생보	58	117.0	110.1	128.4	2.4	116.6
	손보	47	113.1	108.6	120.5	3.4	113.4
	전체	148	115.5	101.0	128.7	3.9	115.8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29	116.8	111.9	124.8	2.0	116.8
	펀드	14	109.3	101.0	128.7	8.9	105.5
	생보	58	116.9	110.1	128.4	1.6	116.6
	손보	47	114.0	108.6	120.5	4.0	113.4
	전체	148	116.4	101.0	128.7	2.7	116.6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

8) 7년 경과 후 적립률은 <부록 표 1>에 첨부하였음.

9) 해당 기간 출시된 전체 상품에 대한 10년 경과 후 적립률 분포는 <부록 그림 1> 오른쪽 그래프에 첨부하였음.

■ 전체 금융권역을 포함하여 10년 적립률 상위 10위에 기록된 상품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 투자성과 상위 10위권에 펀드, 신탁, 보험상품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금융권역 특성보다 회사의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6> 10년 경과 후 적립률 상위 10위 상품(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억 원, %)

순위	적립률	금융회사	상품유형	유지건수/ 설정액 ¹⁾	10년 유지율	판매개시 연도
1	128.7	자산운용	채권형	892	55.6	2005
2	128.4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1,944	60.1	2001
3	127.3	자산운용	혼합주식형	876	56.8	2001
4	125.1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2,304	69.6	2001
5	124.8	은행	안정형	7,951	68.8	2006
6	121.2	은행	채권형	4,006	65.9	2001
7	120.5	손해보험	금리연동형	5,928	59.6	2001
8	120.5	손해보험	금리연동형	1,269	—	2001
9	120.3	자산운용	혼합채권형	144	75.8	2005
10	119.8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²⁾	65	—	2001

주: 1)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펀드는 설정액임.

2) 2000년대 초반까지 일부 보험사는 금리확정형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였음.

4. 시사점



■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연금저축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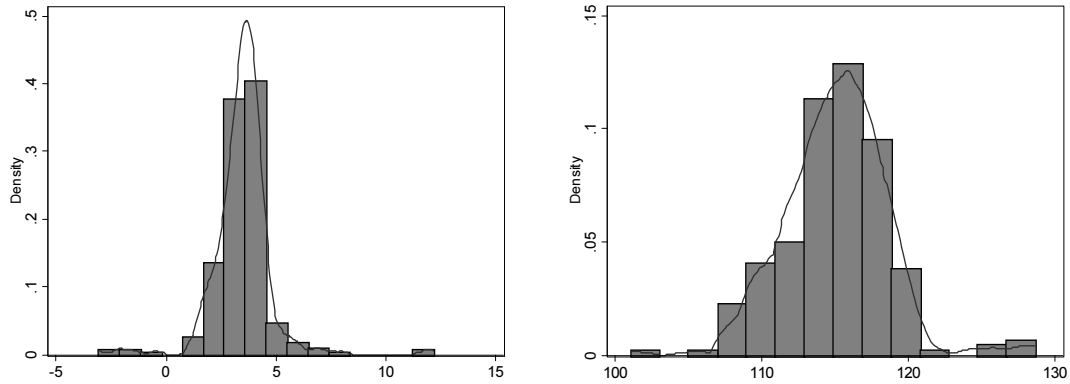
- 이는 사업비 부과방식을 선취(보험료 비례)로 하느냐 후취(적립금 비례)로 하느냐에 따라 판매개시 후 경과시점에 따라 수익률 패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공시되는 수익률은 해당 상품을 최초 판매한 시점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표준가입조건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실제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함.

- 개인별 실제 수익률은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수익률 외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경과기간, 사업비 부과방식, 가입조건(예: 최저보증이율 여부 및 수준 등), 향후 연금수령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가 공시 정보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수익률 외에 유지율, 유지건수 및 적립금 규모 등을 한 번에 조회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유지건수가 많고, 유지율이 높으며, 적립금 규모도 클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상품을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장기 투자성과 분석 결과는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2016년 1분기 기준 8년 이상 경과된 연금저축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한 지 10년 경과 후 적립률도 납입원금 대비 1.15~1.16배 수준에 머물러, 판매당시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1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장기저축상품이므로 이에 적합한 상품구조 및 자산운용방식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초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투자수익 제고를 위한 연금상품 운용전략이 필요함.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 펀드는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다수 존재하므로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을 잘 선택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금융권역 특성보다 회사의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저축상품이 초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 소비자는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당 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고려하여 상품관리 능력이 뛰어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는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5년 이상 유지되는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구조를 변경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세제혜택에 초점을 둔 마케팅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 상품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iri**

〈부록 그림 1〉 전체 상품 투자성과 분포(2016년 1분기 기준)



주: 왼쪽 그래프는 연평균 수익률(2001. 1~2008. 3 출시 상품) 분포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10년 적립률(2001. 1~2006. 3 출시 상품) 분포임.

〈부록 표 1〉 7년 경과 후 적립률(2001. 1~2009. 3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109.8	107.5	114.0	1.6	109.8
	펀드	35	105.6	88.3	140.4	10.0	105.9
	생보	110	106.6	100.8	115.8	2.6	107.1
	손보	105	104.1	100.1	110.5	2.6	103.6
	전체	286	106.0	88.3	140.4	4.5	106.0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109.8	107.5	114.0	1.3	109.9
	펀드	35	102.5	88.3	140.4	11.4	99.1
	생보	110	107.3	100.8	115.8	1.3	107.3
	손보	105	104.8	100.1	110.5	2.9	104.4
	전체	286	106.0	88.3	140.4	4.5	106.0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109.8	107.5	114.0	1.3	109.9
	펀드	21	102.4	92.5	140.4	11.6	99.1
	생보	66	107.3	101.0	115.8	1.2	107.3
	손보	71	104.8	100.3	110.5	2.9	104.4
	전체	188	107.4	92.5	140.4	2.8	107.6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110.0	107.5	114.0	1.6	110.0
	펀드	21	106.5	92.5	140.4	10.6	105.8
	생보	66	107.2	101.0	115.8	1.9	107.3
	손보	71	104.3	100.3	110.5	2.6	104.1
	전체	188	106.5	92.5	140.4	4.5	106.6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



전속설계사 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 채널인 전속설계사 조직은 인구 변화와 새로운 판매 채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5년 말 현재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 10만 2,148명, 손해보험 8만 1,148명으로 2012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 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보다 각각 12.3%, 14.6% 줄어들었음.
 -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의 보험판매비중도 FY2008 39.7%에서 2015년에는 19.5%로 축소되어, 설계사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
- 한편, 설계사 채널은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연령대의 설계사 조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생명보험설계사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2007년 8.7%, 38.5%에서 2015년 5.6%, 20.3%로 줄어들.
 - 반면, 50대 설계사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15년 29.0%로 증가하였음.
- 설계사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규 설계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은 계속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음.
- 설계사 수 감소와 설계사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채널의 성장은 전속설계사 수에 의존하는 기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전속설계사 조직의 규모에 의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보험회사는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편익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 검토배경



■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 채널인 전속설계사 조직은 인구 변화와 새로운 판매 채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연령층은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음.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6년 5월 현재 5천 160만여 명이며, 2030년 5천 216만여 명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¹⁾
 - 특히, 20~40대 연령층은 2011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는 벌써부터 감소가 시작되었음.
-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전속설계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채널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설계사 조직은 교육비, 초기 정착비, 점포운영비 등 고비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으로 교육비(위촉당일 지급, 200만 원), 정착수당(1년간 매월 지급, 평균 200만 원), 정착축하수당(7차월 시 최고 60만 원, 13차월 시 최고 80만 원)을 지원함.²⁾
 - 그러나 13차월 설계사 정착률은 약 40% 수준에 그침에 따라 설계사 조직을 양성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함.
 - 최근 독립대리점(GA)이 전속설계사 조직을 위협하는 대면 판매 채널로 성장하고 있음.
 - 또한 홈쇼핑, 온라인 채널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판매 채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본고는 전속설계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전속설계사 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추계인구”.

2) 평균적인 예시이며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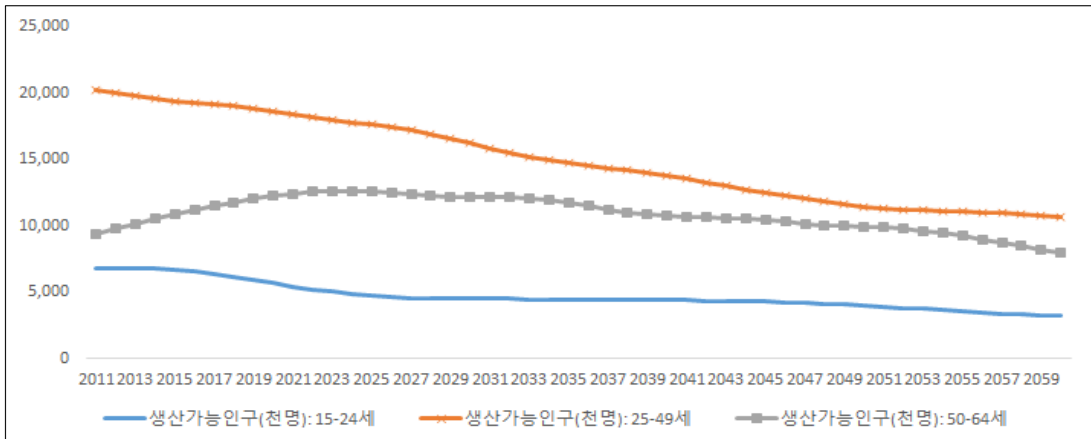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는 2013년 약 680만 명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고, 25~49세도 2011년 약 2,000만 명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함.
- 중·장년층인 50~64세는 2024년까지 증가하여 약 1,260만 명에 이른 후 감소할 것임.

〈그림 1〉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

■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계속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채널은 2003년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저축성보험 시장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음.
- 홈쇼핑 채널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한 새로운 채널로 자리 잡았음.
- 최근에는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보험에 가입하는 모바일슈랑스(모바일+인슈어런스)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등장하고 있음.
- 모바일 금융환경은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환경이지만 20~30대의 젊은 세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숙한 환경이므로 모바일을 통한 금융 및 보험상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채널들은 전속설계사 채널과 달리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설계사 채널보다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속설계사 채널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사 모집 및 교육 그리고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일정 수준의 채널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방카슈랑스 채널, 홈쇼핑 채널, 온라인 채널, 독립대리점(GA) 등은 은행과의 제휴, 투자 또는 계약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함.

■ 과거 비전속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등장 및 성장은 보험시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었음.

- 대형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기준 38.6%이지만, 방카슈랑스 채널 기준으로는 31.2%로 하락함.
 -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대형3사는 적극적으로 방카슈랑스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FY2004 방카슈랑스 채널 기준 시장점유율은 28.6%에 그쳤음.
- 상대적으로 전속설계사 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기준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예를 들어, 현대라이프생명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기준 4.35%이지만, 방카슈랑스 채널 기준으로는 5.02%로 상승함.

3. 전속설계사 채널 현황



■ 2015년 말 현재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 10만 2,148명, 손해보험 8만 1,148명으로 2012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 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보다 각각 12.3%, 14.6% 줄어들었음.³⁾

- 전속설계사 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대형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생명보험 대형3사의 전속설계사가 전체 전속설계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70.6%를 차지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말에는 64.0%를 기록함.
 - 손해보험 대형4사의 전속설계사도 2011년 6월 말 73.6%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5년 말에

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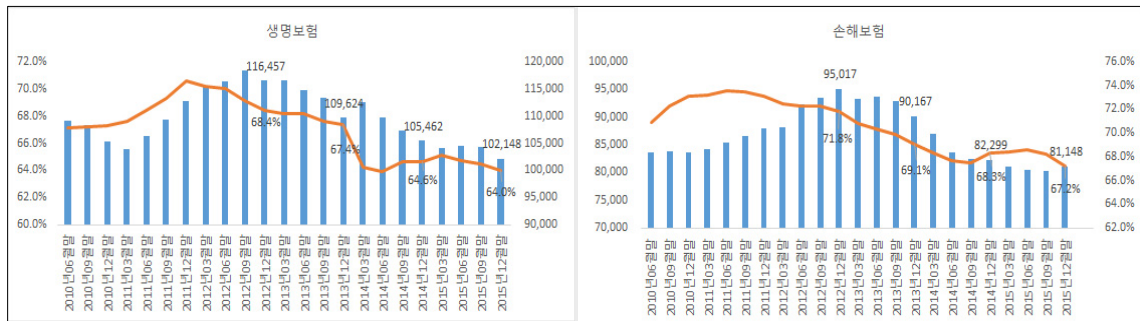
는 67.2%를 기록함.

- 등록설계사⁴⁾ 수도 2009년 말 기준 생명보험 13만 2,522명, 손해보험 16만 4,216명이었으나 2015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 2,038명, 손해보험 15만 6,596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독립대리점(GA)의 설계사 수는 2010년 3월 말 기준 12만 1천 명에서 2015년 6월 말 기준 19만 2천 명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 독립대리점(GA)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하므로, 독립대리점을 활용할 경우 대형사를 증가하는 설계사 수를 확보할 수도 있음.

〈그림 2〉 연도별 전속설계사 수(막대 그래프)와 대형사 전속설계사 비중(꺾은 선 그래프)



자료: 금융통계정보.

■ 생명보험에서 설계사 채널이 보험판매에 차지하는 비중도 FY2008 39.7%에서 2015년에는 19.5%⁵⁾로 축소되어 설계사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

- FY2001 보험판매 채널 중 설계사 채널의 비중은 60.3%로 가장 중요한 판매 채널이었음.
-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등장 이후 설계사 채널의 판매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음.
-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판매비중의 경우 설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FY2008 74.8%에서 2015년 70.2%로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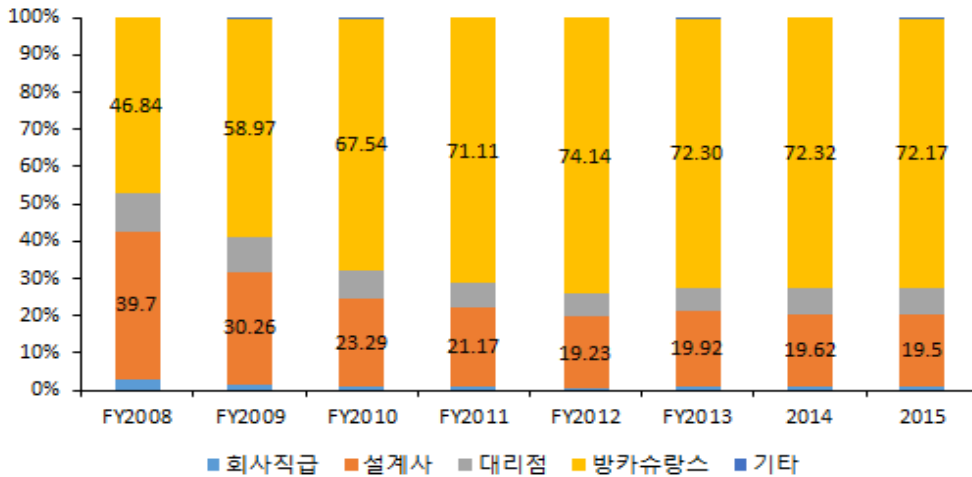
■ 한편, 설계사 채널은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연령대의 설계사 조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등록된 설계사 수로 전속설계사와 교차판매설계사 수를 합한 것과 같음.

5)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일반계정 초회보험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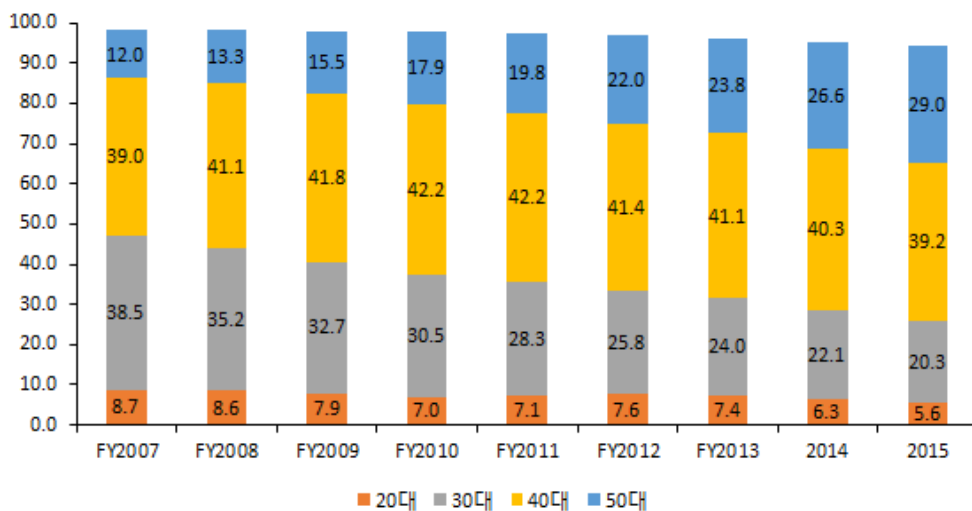
- 생명보험 설계사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2007년 8.7%, 38.5%에서 2015년 5.6%, 20.3%로 줄어들었음.⁶⁾
- 반면, 50대 설계사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15년 29.0%로 증가하였음.

〈그림 3〉 판매 채널별 비중 추이(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그림 4〉 연령구간별 생명보험 설계사 수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6)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4. 보험설계사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설계사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규 설계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설계사 평균 연봉은 약 3,100만 원 수준(2012년 기준)이나 설계사 간 소득격차가 매우 커서 최저 임금(월 109만 원) 이하 설계사가 약 19%(B 생보사 2013년 기준)임.⁷⁾
- 향후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신규 취업자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설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의 경우에도 인구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설계사 기피로 인하여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층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설계사보다 나은 직업으로 취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사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설계사라는 직업을 기피함에 따라 설계사들이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감.

〈표 1〉 Independent Financial Professionals의 연령대별 비중

(단위: %)

연령대	49세 이하	50~54세	55~59세	60~69세	70세 이상
비중	25	14	19	29	12

자료: LIMRA(2016), KIRI/LIMRA&LORA International Executive Forum Korea.

■ 설계사 수 감소와 설계사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채널의 성장은 전속설계사 수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설계사 수 감소에 따라 판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어 설계사 수가 시장점유율 결정에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대규모 전속설계사 조직 운영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던 대형사의 시장 지위에

7) 생명보험협회(201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수수료 분급 확대 관련 등)에 대한 의견」, 『생명보험협회보』, 통권 39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형사는 방카슈랑스라는 새로운 판매 채널의 등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였음.

■ 전속설계사 수의 감소는 독립대리점(GA)의 규모와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독립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다수는 전속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이동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속설계사 수의 감소는 독립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독립대리점이 설계사들을 직접 양성하게 될 경우 교육비 등 잠재적 비용이 증가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저비용의 새로운 판매 채널 등장으로 전속설계사의 활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전속설계사 채널은 교육비 등이 없는 온라인 채널 같은 저비용의 새로운 판매 채널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설계사 조직의 운영이 요구됨.
 - 인구 고령화로 고연령층이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연령 설계사 조직 운영이 필요
 - 재무설계나 건강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속설계사 조직의 업그레이드(upgrade)도 필요

■ 한편,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온라인 채널과 같은 새로운 채널은 상품 판매에 한계가 있어 설계사 채널과 비대면 채널의 채널 믹스전략이 요구됨.

- 설계사 채널은 고객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나 온라인 채널과 같은 새로운 채널은 양방향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 구매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설계사 및 온라인 채널의 유지비용과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채널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속설계사 조직의 규모에 의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보험회사는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상품가격자유화 조치에 의해서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상품비교가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과 서비스가 나은 상품을 선택할 것임. **키리**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그동안 M&A가 드물었으나, 최근 M&A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생명보험회사는 5건의 M&A가 성사되었으며, 현재 일부 회사가 매각을 추진 중임.
 - 기업은 소유구조에 따라 이해관계, 사업시너지 창출, 자본조달 역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전략 및 성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5년간 성사된 5건의 생명보험회사 M&A 중 3건의 소유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서구계와 산업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계의 비중이 확대됨.
 - 2011년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산업의 15.5%를 차지했던 서구계가 4년 만에 8.3%로 비중이 대폭 축소된 반면, 중국계는 0%에서 5.4%로 크게 증가함.
 - 산업계는 동 기간 동안 1개사(동양생명)가 줄어들고 비중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압도적 우위에 있음.
- 사전적 규제 철폐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M&A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대형화되어 산업 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저금리 지속과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향후 생명보험회사는 지배주주의 자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산업계, 기타금융계, 서구계 보험회사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계 금융회사와 은행계 지주회사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대형화 및 점유율 상승으로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산운용과 상품 출시, 그리고 핀테크 기반 보험사업 확대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현재 주류인 산업계 및 기타금융계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확대에 대응할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그동안 M&A가 드물었으나, 최근 M&A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생명보험회사는 5건의 M&A가 성사되었으며,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회사도 있음.
 - 최근 5년간 녹십자생명,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의 M&A가 성사됨.
 - 현재 ING생명, KDB생명 등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¹⁾

■ 이러한 M&A에 의해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중국계 자본과 사모펀드의 생명보험회사 인수로 이들의 산업 내 비중이 증가함.
- 기업은 소유구조에 따라 이해관계, 사업시너지 창출, 자본조달 역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전략 및 성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융자본계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산업자본계열 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음.²⁾

■ 본고는 M&A에 의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를 분석·전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소유구조는 크게 산업계, 금융계, 외국계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계는 은행계와 기타금융계로, 외국계는 중국계와 서구계로 세분화할 수 있음.
 - 현재 산업계는 동부, 삼성, 한화, 현대라이프, 흥국, 은행계는 DGB, IBK, KDB, KB, 농협, 신한, 하나, 기타금융계는 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미래에셋, 중국계는 동양, 알리안츠이며, 서구계는 ING(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보험회사임.

1) 이데일리(2016. 6. 29), “보험사 매물 쌓여만 가는데... 브렉시트가 찬물 끼었나”.

2) 이석호(2016),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사 간 경영성과 비교·분석』, KIF금융분석보고서, 2016-2, 금융연구원.

2.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M&A 현황 및 특징



■ 최근 5년간 성사된 5건의 생명보험회사 M&A 중 3건의 소유구조가 바뀌었으며, 이 중 2건이 중국계 자본으로 변화함.

-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중국 안방보험에 의해 인수되었음.
 - 경영권 매각은 아니지만 2015년 12월 현대라이프생명의 지분 48%가 대만의 푸본생명에 의해 인수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임.
- ING생명은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어, 최근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표 1〉 생명보험회사의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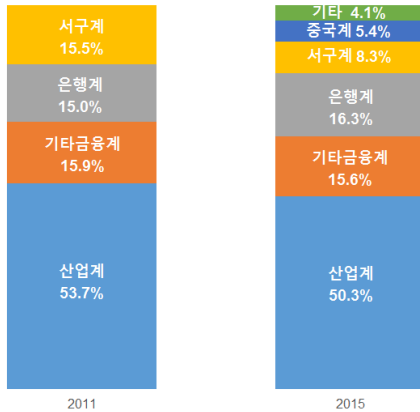
일자	매각사	매수사	인수금액
2012.02.08	녹십자생명(산업계)	현대차그룹(산업계)	2,316억 원
2013.12.11	ING생명(서구계)	MBK파트너스(기타)	1조 8,400억 원
2014.12.24	우리아비바생명(은행계)	DGB금융지주(은행계)	700억 원
2015.06.10	동양생명(산업계)	안방생명(중국계)	1조 1,319억 원
2016.04.05	알리안츠생명(서구계)	안방생명(중국계)	35억 원

자료: 공시 및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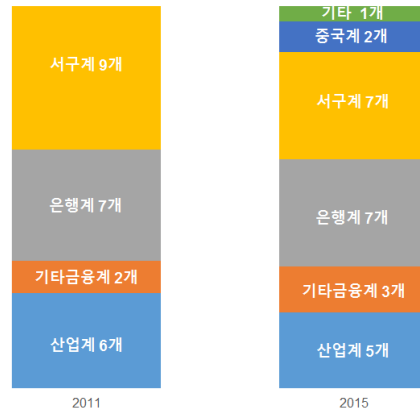
■ 일련의 M&A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에서 서구계와 산업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계의 비중이 확대됨.

- 2011년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산업의 15.5%를 차지했던 서구계가 4년 만에 8.3%로 비중이 대폭 축소된 반면, 중국계는 0%에서 5.4%로 크게 증가함.
- 은행계는 동 기간 동안 수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15%에서 16.3%로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이는 은행계 자본이 생명보험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자체(organic) 성장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산업계는 동 기간 동안 1개사(동양생명)가 줄어들고 비중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압도적 우위에 있음.

〈그림 1〉 생명보험산업 소유구조별 총자산



〈그림 2〉 생명보험산업 소유구조별 회사 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생명보험산업의 M&A 전망



■ 향후 사전적 규제 철폐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M&A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보험산업에 활발한 M&A가 있었는데, 당시 금융업 간 경쟁심화와 RBC제도 도입(1993년) 등으로 규모의 경제 추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M&A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³⁾
-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사전적 규제가 철폐되어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RBC 규제 강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 추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우선, 매각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 지속과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확충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5년간 매각된 생명보험회사의 대부분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악화 혹은 정체된 상태에서 지배

3) Cummins, J. D., S. Tennyson, and M. A. Weiss(1999),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in the US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주주의 추가적인 자본투입 의사가 없었기에 매각된 것으로 보임.

– 녹십자생명,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알리안츠생명이 이에 해당함.

· 4개사의 매각 직전연도 ROE는 각각 0.8%, 8.7%, -17.0%, 0.65%이며,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11.8%, 0.46%, 28.8%, 58.3%이고, RBC비율은 각각 202.2%, 323.6%, 164.0%, 199.5%였음.

– 유럽계 생명보험회사들은 시가평가 시 자본감소가 심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정체된 우리나라 자회사들을 매각함.

· 유럽에서 2016년 시행된 Solvency II는 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하여 요구자본이 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를 매각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단, 동양생명은 양호한 수익성과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재무적 어려움에 의해 매각됨.

● 저금리 지속과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향후 생명보험회사는 지배주주의 자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산업계, 기타금융계, 서구계 보험회사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음.

– 서구계 중 미국계는 유럽계에 비해 자본투입 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⁴⁾ 경영성과도 양호하여 매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진출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성이 낮으므로 향후 생명보험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전략적 매각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본확충의 절대적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 여력이 높아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을 보면, 금융지주사가 전략적으로 생명보험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매수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중국계 금융회사가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인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계 금융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음.

– 또한, 선진국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선진 경영전략을 습득하여 중국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음.

– 단, 중국계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진출은 선진 경영전략을 습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4) 미국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등의 보험회사에 비해 저금리 영향이 낮은 편임. 또한, 미국은 Solvency II에 비해 약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저금리에 따른 자국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낮음; Moody's(2015), "Low Interest Rates are Credit Negative for Insurers Globally, but Risks Vary by Country".

글로벌화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보임.

- 중국계 보험회사는 기존 서구계 보험회사에 비해 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ING생명도 중국계 금융회사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⁵⁾

〈표 2〉 중국 금융회사의 국제(cross-border) 보험회사 M&A 현황

연도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인수금액
2014.01	푸싱그룹	카이하 세로구스 에 사우데(포트투갈, 보험회사)	13억 5,000만 달러
2014.10	안방보험	피데아(벨기에, 보험회사)	비공개
2014.12	안방보험	델타로이드 은행(벨기에, 은행)	2억 7,300만 달러
2015.01	푸싱그룹	메도우브룩(미국, 보험회사)	4억 3,300만 달러
2015.02	안방보험	비바트 베르체케링겐(네덜란드, 보험회사)	18억 달러
2015.02	안방보험	동양생명(한국, 보험회사)	10억 2,160만 달러
2015.05	푸싱그룹	아이론쇼어(미국, 보험회사)	18억 4,000만 달러
2015.11	안방보험	피텔리티&개런티(미국, 보험회사)	16억 달러
2016.04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한국, 보험회사)	300~400만 달러

자료: 신문기사, Timetric.

■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도 자본여력이 많고 사업다각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 최근 여러 금융회사의 매각에서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들의 자금력이 충분함을 방증함.

- 대형 금융지주회사는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함.
- KB금융지주의 경우 LIG손보(2014년, 지분 19.47%, 인수금액 6,450억 원)와 현대증권(2016년, 지분 22.56%, 인수금액 1조 2,500억 원) 인수에 성공함.

●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는 소속 대형 은행들이 이미 은행 간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기 어려운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⁶⁾, 사업규모가 작은 보험 부문에서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일 것으로 보이나 금융지주회사 소

5) 연합뉴스포맥스(2016. 7. 1), “ING생명 조속 매각 선언 했지만... 불안한 인수후보군”.

6) 함준호(2012),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비용 효율성 분석」, 『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참조.

- 속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여서 M&A 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효율성 제고 목적뿐만 아니라 위험분산 차원에서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는 사업영역 다각화와 균형 성장이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최근 생명보험회사 매각에 은행계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 매수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매각자나 중국계 매수자에 비해 생명보험회사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4.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중국계와 은행계 보험회사가 M&A를 통해 대형화하여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계 및 은행계 자본은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한 생명보험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계와 은행계 보험회사들의 대형화 및 점유율 상승은 이들만의 특징적인 상품 및 자산운용 전략의 파급효과가 증대됨을 의미함.
- 특히, 중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산운용과 상품 출시, 그리고 핀테크 기반 보험사업 확대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가 기존 서구계 생명보험회사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은 중국 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임.
 - 실제로 동양생명은 올해 1분기에 높은 최저보증이율(2.85%)의 저축성 상품을 은행과 GA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는 안방보험의 중국 및 글로벌 자산운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⁷⁾
 - 또한, 중국 보험회사들은 핀테크 기반 보험사업과 온라인 보험사업에 적극적이고 앞서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⁸⁾

7) 중국, 미국 회사채, KP에 대한 신규해외투자 3.3~3.4%의 운용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윤태호 · 김서연(2016. 5. 13), “New 동양생명에 대한 기대”, 한국투자증권 참조.

8) 중국 보험시장의 핀테크와 온라인 보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이해은(2016), 「중안보험, 핀테크 혁신 선두 주자로 부상」,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이소양(2016), 「중국 온라인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현재 주류인 산업계 및 기타금융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 확대에 대응할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다수의 해외 협력사 확보를 통해 상품 및 자산운용의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저축성 상품이 중심인 생명보험업에서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에 기반한 저축성 상품 제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지주회사의 네트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새로운 판매전략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 예로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하나멤버스’라는 플랫폼을 도입하여 계열사 간 포인트 통합 및 계열사 상품 판매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소유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산업의 자본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 기존 비주류 계열의 신규자본 공급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생명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형화 및 경쟁 촉진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됨.
- 다만, 리스크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경쟁 발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임.
-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의 M&A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kiri](#)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현재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 이란 의견이 제시됨.
 -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미화 100조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음.
 - 보험 전문가들은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보험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 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음.
-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함.
-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향후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음.
- 향후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시장에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드론 관련 피해를 적 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향후 드론보험시장 확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1. 검토 배경



■ 드론 기술의 빠른 진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증가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드론은 유통(배송), 농업(농약 살포, 병충해 방지), 취재(촬영), 스포츠(촬영), 민간 보안, 손해사정, 재난사고 관리 및 지원, 군사 활동, 구조물 안전 점검, 레저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¹⁾
-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드론시장 규모가 100조 미국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함.²⁾
-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2016년 세계 드론 판매 개수가 242만 5천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7년 판매량은 377만 5천 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³⁾
- Insurance Journal(2015)은 5년 이내에 40% 이상의 기업이 드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함.⁴⁾

■ 해외에서는 드론을 RPAS, UAV, UAS 등으로 부르고 있고, 국내의 경우는 항공법이 드론을 초경량장치로 분류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드론을 통칭하는 용어로 RPAS(Remote Piloted Aircraft Systems: 원격 조정 항공 시스템)를 제안했음.⁵⁾
- 드론은 UAV(Unmanned Air Vehicle)와 UAS(Unmanned Air System) 등으로 불리기도 함.⁶⁾
- 한국의 경우 「항공법」이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제2조), 드론의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제23조).

■ 드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가 존재하므로, 드론시장의 확대는 자연히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용도의 드론 사용으로 인해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1) Swiss Re(2014), “Insurance and the rise of the drones” 참조.

2) <http://www.goldmansachs.com/our-thinking/pages/drones-flying-into-the-mainstream.html> 참조.

드론시장 규모 추정에 대해 다양한 수치가 존재하나 대부분 관련 시장이 향후 20년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3) <http://www.droneflyers.com/2016/07/drone-sales-forecasts-released-cta/> 참조.

4) Insurance Journal(2015), “Market for Drone Insurance Expected to Take Off in Next 5 Years”,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15/05/13/368051.htm#>.

5) https://www.priv.gc.ca/information/research-recherche/2013/drones_201303_e.pdf 참조.

6) Swiss Re(2014), p. 2 참조.

드론 촬영정보 유출배상책임, 드론 적하물 손해 또는 적하물 낙하 배상책임, 다양한 원인(단순 기계 고장, 부품 결함, 해킹, 전파 간섭, 날씨)으로 인한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휴지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해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드론 사고가 발생하였음.⁷⁾
 - 2014년 호주에서 철인삼종경기 참가자가 사진사의 드론에 부딪혀 부상을 입음.
 - 2014년 TGI Friday 프로모션 행사에 사용되던 드론이 신문기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힘.
 - 2013년 버지니아 Great Bull Run 축제에서 드론이 관중을 덮쳐 상해를 입힘.
- Insurance Journal(2015)은 향후 드론보험이 손해보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⁸⁾

2. 미국과 한국의 드론 관련 제도



가. 미국

■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드론 무게의 상한선을 25킬로그램으로 하고, 250그램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함.⁹⁾

- 드론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은 연방항공청 소형무인비행장치 규정¹⁰⁾에 정해져 있는데, 동 규정은 드론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드론 조종사의 자격, 드론의 품질 검사 등을 정하고 있음.¹¹⁾

■ 미국 드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드론보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음.¹²⁾

- 상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드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함.
- 미국 주택종합보험이 무선조정비행장치(radio controlled aircraft)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주택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동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음.

7) Assurex Global(2016), "Drone Insurance: A Market on the Rise", p. 2 참조.

8) Insurance Journal(2015), "Market for Drone Insurance Expected to Take Off in Next 5 Years",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15/05/13/368051.htm#>.

9) https://www.faa.gov/uas/media/Part_107_Summary.pdf.

10)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11) https://www.faa.gov/uas/media/Part_107_Summary.pdf.

12) Andrew Amato(2015), "Do You Need Drone Insurance?", droneline.com 참조.

나. 한국

■ 한국의 경우 드론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항공법」에 정해져 있음.

- 「항공법」 제23조는 드론의 신고, 사용상 제약, 안정성 인증, 영리목적 사용가능조건(보험 가입), 조정자 자격,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장치변경 신고의무,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연료 제외 후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비상업용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항공법」은 드론사업자¹³⁾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드론의 영리목적 사용을 허용함.

- 동 법 시행규칙 제66조의 3은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금액¹⁴⁾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3. 국내외 드론보험 현황



■ 드론보험이 필요로 하는 담보는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 및 자동차보험과 유사점이 많고, 드론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도 필요함(표 1) 참조.

- 드론의 특성상 드론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항공보험 · 자동차보험과 유사점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임.
 - 먼저, 드론은 해킹, 도난, 분실에 취약해 이와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필요로 함.¹⁵⁾

13)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한함(「항공법」 제23조 5항).

14)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報酬)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동 법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드론보험에서 고려되어야 할 담보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 담보임.
 - 상업용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음.
 - 뮌헨리(Munich Re)의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우려하는 드론 관련 손해는 개인 사생활 침해(69%), 부적절한 보험(12%), 제3자 상해(11%), 재물손해(8%) 등의 순이었음.¹⁶⁾
- 또한 드론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함.

〈표 1〉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드론보험 비교

구분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드론보험
자기 신체손해	승무원: 타 보험 적용	자기신체사고 담보	없음
자기 재물손해 ¹⁾	지상 기체손해 (정지 중, 이동 중), 비행 중 기체손해	자차손해 담보	자기 재물손해 담보 (항공보험과 유사), 해킹, 도난, 분실 등에 의한 손해 담보 필요
제3자 신체손해 배상책임 ²⁾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 존재), 대인배상II(임의보험, 한도 없음)	배상책임보험
제3자 재물손해 배상책임 ³⁾		대물배상	배상책임보험
승객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없음
적재물 손해	비행화물 담보로 보상	적재물보험	적재물보험
개인 사생활 침해	없음	없음	필요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음	없음	필요
기타	테러 보험 가입 가능	무보험차 손해 담보	날씨손해 특약 필요

주: 1) 항공보험의 경우 항공기 자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hull cover라 함.

2) 제3자 신체손해는 항공기, 자동차, 드론의 운행으로 제3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손해임.

3) 제3자 재물손해는 항공기, 자동차, 드론 등이 제3자의 재물(구조물, 시설물, 건물)에 미치는 손해임.

자료: 항공보험은 Wells and Chadbourne(2007)¹⁷⁾, 자동차보험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과정 중 「자동차보험」, 드론보험은 Swiss Re(2014) 참조.

■ 외국 보험회사들은 이와 같이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판매하고 있음.

15) 일부 외국 드론보험의 경우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또는 높은 손해율을 가져올 수 있어 이와 같은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16) Insurance Journal(2015), "Market for Drone Insurance Expected to Take Off in Next 5 Years",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15/05/13/368051.htm#>.

17) Wells and Chadbourne(2007), *Introduction to Aviation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Krieger Publication.

- AIG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드론보험을 출시·운영하고 있음.¹⁸⁾
 - 담보범위는 전자기기 고장 손해¹⁹⁾, 드론 조종자 손해, 드론 자체 또는 설치된 기기, 조종 기기, 배상책임, 지상·비행 중 포괄담보, 非비행 중 포괄담보, 非사용 중의 포괄담보 등임.
 - 전쟁, 탈취(hijacking), 테러리즘 등은 특약으로 담보하며,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험도 제공함.
 - AIG는 보험과 함께 리스크 평가와 같은 항공기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²⁰⁾
- Drone Insurance라는 보험회사는 아래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보험을 다수 국가에 판매하고 있음.
 - 기체 손해, 전쟁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제3자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
- Transport Risk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대해 드론 기체 손해, 제3자 배상책임, 렌탈 드론 배상책임 등을 제공하고 있음.²¹⁾
-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의 DJI Japan(드론 제작사)과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고 동 보험사업을 Aeroentry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음.²²⁾
 - DJI로부터 드론을 구매한 구매자는 1년간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공하는 드론보험을 무상으로 제공받음.
 - Aeroentry는 배상책임보험과 드론 기체 손해를 보상하는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18) <http://www.aig.com/business/insurance/specialty/unmanned-aircraft-solutions>.

19) 타 항공보험에서는 면책인 경우가 많음.

20) <http://www.aig.com/business/insurance/specialty/airguard>.

21) <http://www.transportrisk.com/uavrcfilm.html>.

22) <http://aeroentry.co.jp/insurance/>.

4. 결론 및 시사점



■ 각종 규제가 국내 기업의 드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현재는 국내에서도 드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사업화 기회 확대, 비행 여건 개선,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을 통한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²³⁾
 - 이러한 정책적 환경하에서 국내 드론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드론 관련 산업이 향후 10년간 31만 명의 일자리와 12조 7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이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²⁴⁾
- 최근 추세로 볼 때 국내 드론 산업도 이와 같이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14년에 154억 원, 올해 추정 278억 원, 2019년에는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함.²⁵⁾

■ 향후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시장에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험회사들은 외국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드론보험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드론으로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의 드론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동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함.

23) <http://mosfnet.blog.me/220743749116>.

24) <http://www.businessinsider.com/drones-report-market-forecast-2015-3>.

2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2210> 참조.

- 효과적인 드론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드론 사업자는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시 이를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므로, 보험사업자들은 이와 같이 드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드론 사용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비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기존 보험의 약관·요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드론 손해를 보상할 것인지를 판단해 약관·요율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또한 국내 「항공법」이 드론을 항공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보험(특히, 항공기 사고를 면책으로 하는 보험)의 약관 및 요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드론보험 요율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를 위해 드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정확한 요율산출을 위해 드론사고 피해 관련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활용하여 드론보험을 판매하거나 일본 Aeroentry 사례와 같이 드론 제조기업과 제휴해 드론보험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임. [kiri](#)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보험회사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16년 들어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보험회사는 저금리와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저금리에 의한 금리역마진 확대와 부채시가평가제도에 의한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상황임.
 -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도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운용이 어려움.
- 실제로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를 축소 혹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외투자 확대가 리스크관리 없이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님을 시사함.
 - 보험회사는 대체로 금리·신용리스크를 경감시키거나,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보험회사는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헤지비용과 헤지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6년 상반기에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136.3억 달러 늘어서,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¹⁾

〈표 1〉 기관투자자별 외화증권 투자 잔액¹⁾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2Q		
	잔액	잔액	증가폭	증가율	잔액	증가폭	증가율
보험회사	336.8	426.0	89.2	26.5	562.3	136.3	32.0
자산운용사	485.5	601.5	116.0	23.9	660.7	59.2	9.8
외국환은행 ²⁾	72.3	107.8	35.5	49.1	163.1	55.3	51.3
증권사	49.9	79.9	30.0	60.1	99.7	19.8	24.8
합계	944.5	1,215.2	270.7	28.7	1,485.9	270.7	22.3

주: 1) 시가기준 기말잔액이며, 자산운용사는 고유 및 위탁계정, 보험사·외국환은행·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임.

2) 중급사를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8. 26).

-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를 저금리에 의한 손실만회를 위한 수익률 추구행위(searching for yield)로 여기며, 향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²⁾

-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높은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면 이러한 우려는 타당함.
- 실제로 일본 야마토생명은 수익률 추구 목적으로 해외투자비중을 급격히 늘렸으나 위험관리가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년 파산에 이름.³⁾

- 본고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8. 26), “2016년 2/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2) Economy Chosun(2016. 7), “국내 보험사 생존전략”, 158호 참조.

3) 김해식(2013),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보험동향』, 제64호 2012년 겨울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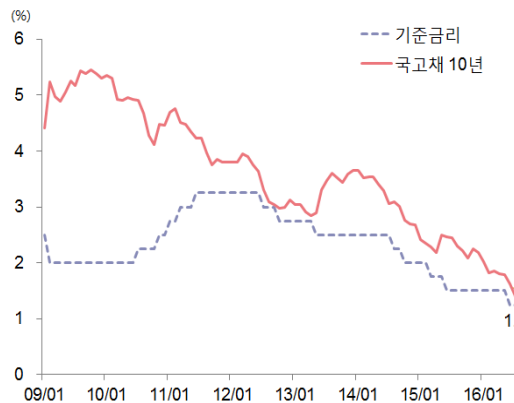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환경과 현안



■ 시장금리 급락에 의해 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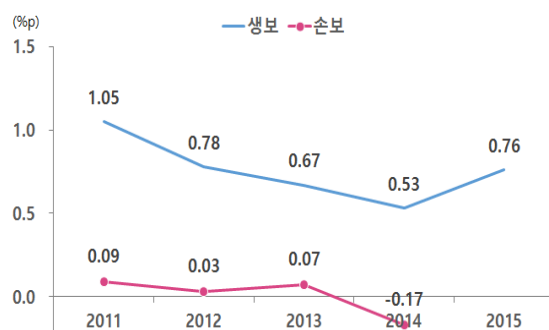
-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최저보증이율 적용대상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실질적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2016. 3)⁴⁾은 생명보험회사 58.6%, 손해보험회사 57%임.
- 이에 보험부채 부리이율 하락보다 자산운용 수익률의 하락이 더 커져 금리역마진율⁵⁾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에 비해 0.23%p 상승한 2015년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율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기준금리 및 국고채 10년물 금리



자료: ECOS.

〈그림 2〉 보험회사 금리역마진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보험회사 경영정보.

■ 또한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제도 도입에 의한 보험회사의 대규모 (가용)자본 감소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일부 연구에 의하면 IFRS 4 Phase 2 방식으로 부채를 평가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 43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⁶⁾

4) 예금보험공사(2016), 「리스크리뷰」, 『금융리스크리뷰』, 제13권 제2호, 계간 KDIC.

5) 금리역마진율 = 보험부채 부리이율 - 자산운용 수익률

6)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201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지급여력평가제도 강화 중 특히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보험부채듀레이션 확대(20년→30년)는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를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이러한 시장 및 제도 환경의 대응을 위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상황임.

- 금리역마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함.
- 반면, 지급여력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금리, 신용리스크 등) 경감 노력이 필요함.
 -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신용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함.

■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운용이 어려움.

- 국내 장기 금리부자산은 대부분 국채이며, 초과수요로 수익률이 낮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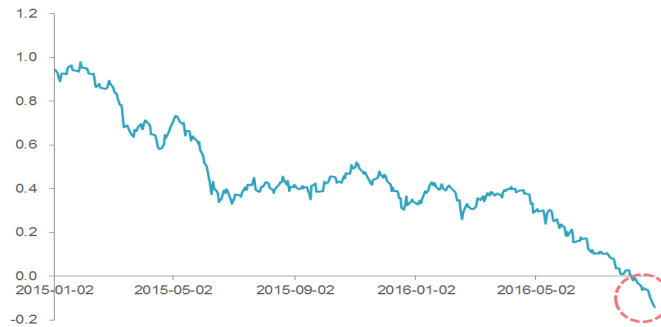
■ 이러한 자산운용 현안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는 해외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장기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⁷⁾, 다양한 우량 장기 회사채가 발행되어 투자 매력도가 높음.
 - 단, 최근 1년 만기 이상 스왑레이트⁸⁾가 음(-)으로 전환하여 만기 1년 이상의 선물환으로 환해 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 점은 투자매력 감소 요인임.
-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익률 추구행위가 아니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산운용전략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7) 국채 30년물 수익률(2016. 8. 29): 한국 1.52%, 미국 2.21%.

8) 스왑레이트(swap rate)는 $\frac{\text{선물환율} - \text{현물환율}}{\text{현물환율}}$ 이며, 이론상 양 통화 간 금리차와 일치함.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단순한 예로 설명하자면, 12개월 스왑레이트가 1%인 경우, 투자자 A가 금리 2% 1년 만기 미국채 매입과 동시에 환해지를 위해 12개월 선물환을 원리금만큼 매도했다면, 만기 시 투자자 A의 원화 표시 수익률은 3%(= 2% + 1%)가 됨. 즉, 헤지한 해외투자의 원화표시 수익률은 해외통화 표시 수익률에 스왑레이트를 더한 것임.

〈그림 3〉 12개월 스왑레이트



자료: 연합인포맥스.

3.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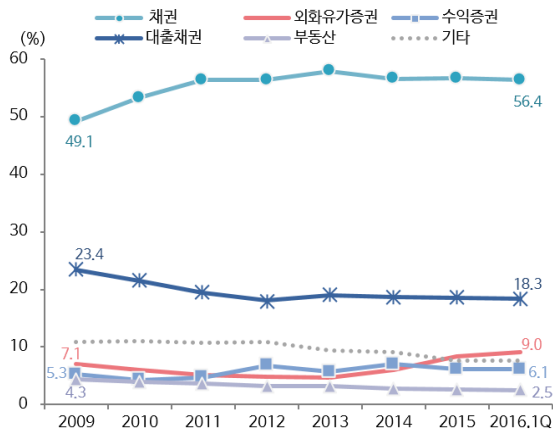


가. 해외투자 추이

■ 보험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증권 및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 3월 말 기준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은 생·손보 각각 9.0%, 10.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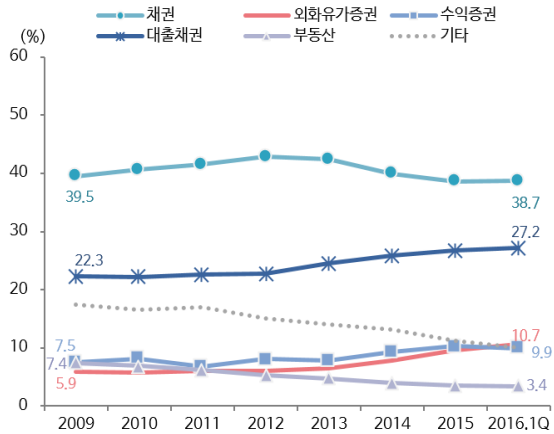
- 해외투자는 유가증권 이외에도 대출채권 형태로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해외투자 비중은 이보다 높음.
- 생명보험회사는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시킨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이와 반대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 특징적임.
 -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및 일반손해보험 비중이 약 30%여서 채권에 비해 만기는 짧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출채권 비중 확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그림 4〉 생보사 일반계정 운용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5〉 손보사 일반계정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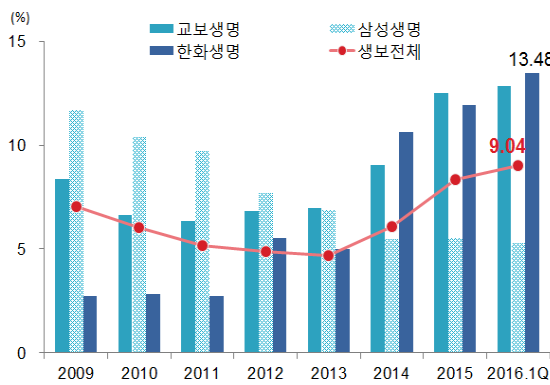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형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2013년 이후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급증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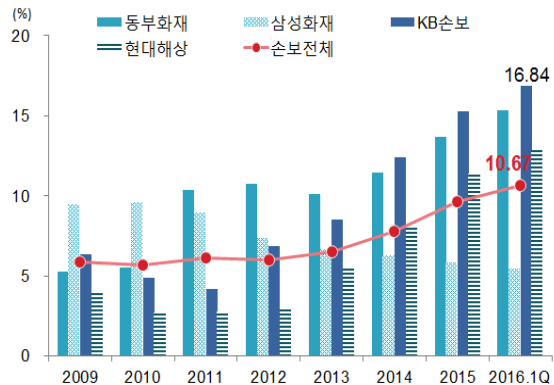
● 대형사 중에는 삼성 계열사만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감소했으며, 산업 평균 미만의 비중임.

〈그림 6〉 생보사 외화유가증권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7〉 손보사 외화유가증권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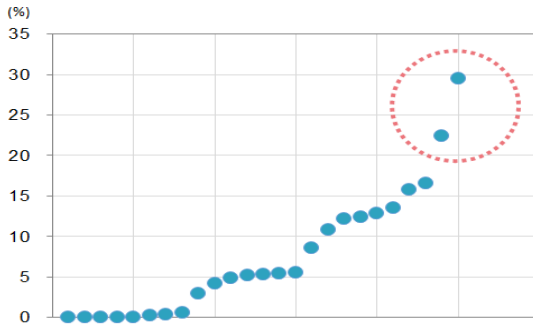
■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비중만 20%를 넘는 보험회사가 3개사에 이릅니다.

●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MG손해보험의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각각 29.5%, 22.4%, 25.0%이며, 이들 모두 최근 2~3년 동안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급격하게 확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시되지 않은 외화대출채권까지 고려하면 3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기존 한도인 총자산의 3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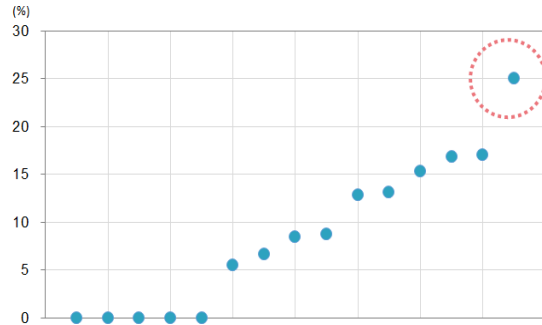
근접한 것으로 보임.

〈그림 8〉 회사별 외화유가증권 비중(생보)



주: 2016년 3월 말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9〉 회사별 외화유가증권 비중(손보)



주: 2016년 3월 말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보험회사는 과거와 다르게 KP(Korean Paper)⁹⁾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함.

- 과거 해외투자는 KP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 국채와 회사채 투자는 KP에 비해 국내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리스크관리 역량이 필요함.

〈표 2〉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종류별 투자 잔액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2Q		
	잔액	잔액	증가폭	증가율	잔액	증가폭	증가율
주식	31.5	24.4	-7.1	-22.5	30.2	5.8	23.8
채권	166.0	248.9	82.9	49.9	346.2	97.3	39.1
KP	139.3	152.8	13.5	9.7	185.9	33.1	21.7
합계	335.8	425.1	89.3	26.5	562.3	136.2	32.0

주: 시가기준 기말잔액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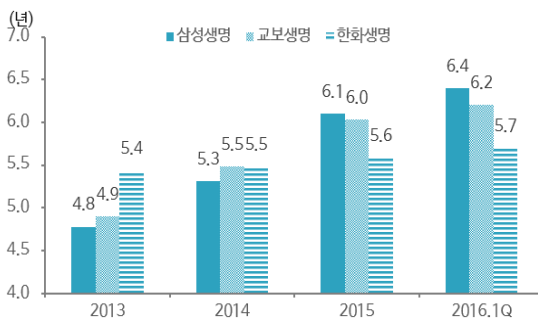
9)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달러표시 채권임.

나. 금리·신용리스크 관리 현황

■ 대형 보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산듀레이션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어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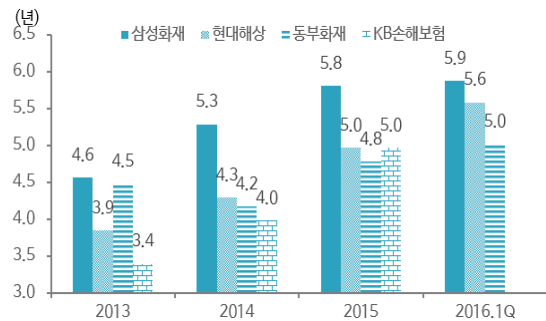
- 다만, 해외투자 비중을 급증시키는 회사들 중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은 자산듀레이션 증가가 더딘 반면 교보생명, KB손보, 삼성화재 등은 자산듀레이션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들 회사 간 해외투자 전략이 다소 다른 것으로 추정됨.
 -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삼성 계열사는 국내 장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0〉 생보 대형사 자산듀레이션



자료: 각사 경영공시 및 IR자료.

〈그림 11〉 손보 대형사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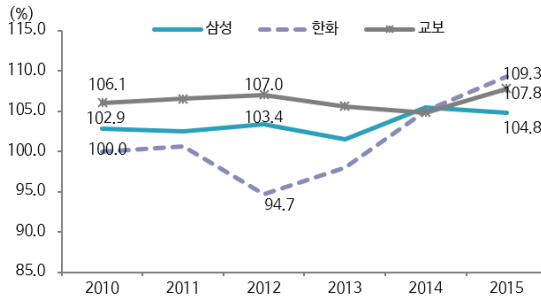
자료: 각사 경영공시 및 IR자료.

■ 다수의 대형 보험사는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도 확대시킴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있음.¹⁰⁾

-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자산듀레이션 확대보다는 금리부자산 비중(익스포저)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삼성화재는 자산듀레이션과 금리부자산 비중을 모두 빠르게 증가시킴으로써 가장 보수적인 금리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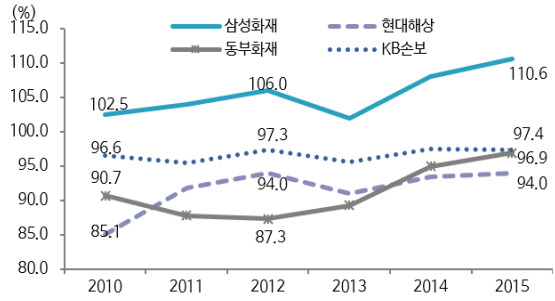
10) 대다수의 대형사가 금리부부채민감액보다 금리부자산민감액이 적은 상황이므로,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금리부자산민감액(= 금리부자산익스포저 ×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하며, 이는 금리부자산익스포저(규모) 혹은 듀레이션을 확대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단, 삼성화재는 금리부자산민감액이 금리부부채민감액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금리부자산민감액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이는 강화되는 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2〉 생보 대형사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자료: 각사 경영공시자료.

〈그림 13〉 손보 대형사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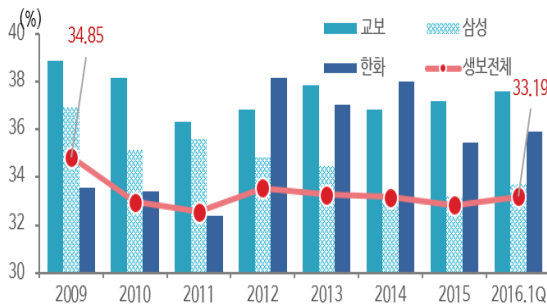


자료: 각사 경영공시자료.

■ 해외투자가 급증한 2013년 이후 대형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다소 낮추며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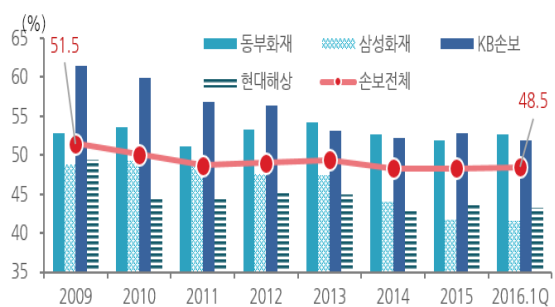
- 이는 해외투자 확대가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를 높인 것은 아님을 보여줌.
-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도 신용리스크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임.

〈그림 14〉 생보 대형사 위험가중자산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5〉 손보 대형사 위험가중자산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신용리스크는 위험가중자산 비율보다는 지급여력제도상의 신용위험액 변화를 살피는 것이 더욱 정확하나 최근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의한 증가 효과가 커서 분석에서 제외함.

4. 결론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외투자 확대가 리스크관리 없이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님을 시사함.

- 보험회사는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두 목표, 즉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을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 해외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sovren risk), 신용위험, 환위험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과거 KP 중심의 해외투자는 이러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작았음.
-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장·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연구,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보험회사는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보험회사는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헤지비용과 헤지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대만 보험회사들은 헤지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수익 제고 및 환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며¹²⁾, 최근 국민연금도 2018년까지 해외채권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0%로 낮추기로 했음.
 - 단, 대만이 비교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상황이긴 하지만 환율제도가 다르며,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도 높아 해외 포트폴리오 차원의 환리스크 관리가 일부 가능함.
 - 국내 보험회사의 환헤지 전략과 리스크, 투자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해 적정한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12) 일본과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환헤지와 관련해서는 동부증권의 두 보고서를 참조; 문홍철(2015. 2. 11), “대만의 해외투자 환경 답사기”; 문홍철(2015. 12. 7), “일본출장기: 모습을 바꿔 성장한 일본의 FI산업”.

-
- 예를 들어, 금리리스크 산정 시 만기 1년 이상의 헤지 수단으로 헤지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래의 듀레이션(달러 기준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가 채권에 대해 1년 만기 이상의 헤지수단(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100% 헤지하는 것은 이 제도의 영향이 큼.
 - 일본과 대만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의 단기 헤지 수단으로 헤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³⁾
 - 단, 합리적인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헤지 수단의 만기와 원화 기준 듀레이션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kiri**

13) 각주 12)의 동부증권 보고서 참조.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06년 3.04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동차 보유가 증가함.
 -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6년 0.98대에서 2016년 1.14대로 증가하는 등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급률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승용차 평균 연령이 2001년 5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차량 10년 이상의 비중이 2001년 7.1%에서 2015년 25.7%로 증가함.
 -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차량 5년 이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차량 10년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등 차량 양극화가 나타남.
 - 2015년 EU회원국의 평균 차량은 9.7년, 미국의 경우 11.5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차량 노후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상 가능성 증가, 일반수리 및 Non-OEM·중고·재제조 부품 수요 증가, 그리고 신품·OEM부품 교체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차량 노후화가 자동차보험 담보물건의 질적 변화와 신규 담보위험 생성을 의미하는 바, 보험회사는 차량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첫째 차량 노후화 등이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차량별 안정성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 손해담보의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자동차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보험과 같이 평균 차량 상승과 차량 양극화가 고려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음.
 - 셋째, Non-OEM·중고·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하는 인센티브가 장착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6년 7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153만 대를 넘는 등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한편, 차량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1960~2000년 기간 동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보유가 크게 늘어난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저성장 기조와 함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내 자동차 시장 예상 판매량은 전년 대비 0.5% 하락한 175만 대로 추산됨.¹⁾
- 이에 따라 전체 등록차량 중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²⁾

■ 자동차 보급률 확대와 노후화는 환경·안전·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부품·정비산업, 중고차산업, 보험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차량 보급률 확대 및 노후화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물건의 양적·질적 변화와 신규 담보위험 생성을 의미함.

■ 이에 본고에서는 차량 노후화가 교통사고 심도, 부품·정비 시장규모, 신품 및 OEM부품 위주 교체 관행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자동차 보급 및 노후화 실태



가. 자동차 등록·보유 현황

■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3.1%씩 증가하여 2016년 7월 현재 2,153만 대를 넘어섰음(〈표 1〉 참조).

1)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2016년 자동차시장 전망(수정)』;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함.

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참조.

-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1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1972년), 중국(2002년), 인도(2009년)에 이어 4번째임.³⁾
 - 1980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한데 이어 5년만인 1985년에 1백만 대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5백만 대, 1997년에는 1천만 대를 돌파하였음.
- 동 기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전체 차종별 대비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9.3%에 이룸.
 - 차종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기준 승용차가 1,706.3만 대(79.3%), 승합차가 90.5만 대(4.2%), 화물차가 348.2만 대(16.2%), 특수차가 7.8만 대(0.4%)임.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06년 3.04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동차 보유가 증가함 (〈표 1〉 참조).

- 주요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14년 기준 미국 1.2명, 일본 1.6명, 독일 1.7명, 영국 1.7명, 프랑스 1.7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
-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6년 0.98대에서 2016년 1.14대로 증가하는 등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국가별 자동차 차령 분포

(단위: 만 대, %, 명)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 비중	1대당 인구수		가구당 보유대수	
				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승용차
2006. 12	1,590	1,161	73.0	3.04	4.17	0.98	0.71
2007. 12	1,643	1,210	73.7	2.96	4.02	0.99	0.73
2008. 12	1,679	1,248	74.3	2.91	3.92	1.00	0.74
2009. 12	1,733	1,302	75.2	2.84	3.78	1.02	0.76
2010. 12	1,794	1,363	76.0	2.75	3.62	1.03	0.79
2011. 12	1,844	1,414	76.7	2.70	3.52	1.04	0.80
2012. 12	1,887	1,458	77.2	2.65	3.43	1.05	0.81
2013. 12	1,940	1,508	77.7	2.59	3.33	1.07	0.83
2014. 12	2,012	1,575	78.3	2.51	3.20	1.09	0.85
2015. 12	2,099	1,656	78.9	2.41	3.06	1.12	0.89
2016. 7	2,153	1,706	79.3	2.36	2.98	1.14	0.90

주: 1대당 인구수와 가구당 보유대수는 통계청의 추정 인구 및 가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1. 04),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 대 돌파, 세계 15번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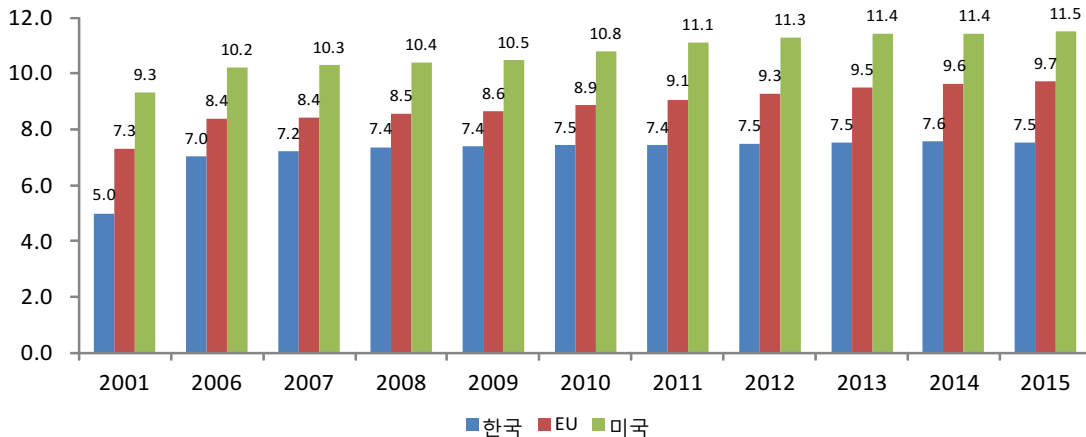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 15), “자동차 등록대수, 2천 1백만 대 육박: 1대당 2.46명, 작년 연말 대비 4.3% 늘어” 참조.

나. 승용차 노후화

■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연령(이하 ‘평균 차령’)은 2001년 5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⁵⁾

- 우리나라의 평균 차령은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EU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15년 EU회원국의 평균 차령은 9.7년, 미국의 경우는 11.5년임(〈그림 1〉 참조).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U와 미국에서도 승용차의 평균 차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림 1〉 국가별 승용차 차령 변화(2001~2015년)



주: 1)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차령(년)을 나타냄.

2) 우리나라의 평균 차령은 차령 21년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EU는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US DOT)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를 참조하여 작성함.

■ 승용차 차령 분포를 살펴보면, 차령 10년 이상의 비중이 2001년 7.1%에서 2015년 2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차량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EU회원국들은 차령 5년 이하의 비중이 2015년 기준 35% 미만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3.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5)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차령 22년 이상인 차량의 등록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실제 평균 차령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음. 다만, 차령 22년 이상인 차량 등록대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 차령과 본고에서 제시한 평균 차령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5년 출고된 차량은 정확한 출고일에 상관없이 2015년 기준 차령 1년으로 계산함.

〈표 2〉 국가별 승용차 차령 분포

(단위: %)

국가	연도	차령 5년 이하	차령 5~10년	차령 10년 초과
한국	2001년	44.1	48.7	7.1
	2006년	42.3	32.0	25.7
	2015년	43.2	28.1	28.7
독일	2015년	29.6	34.4	36.0
프랑스		25.9	32.6	41.5
영국		32.4	32.5	35.1
오스트리아		31.9	30.3	37.7
핀란드		21.9	27.0	51.2

자료: 한국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EU는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US DOT)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를 참조하여 작성함.

■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차령 5년 이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차령 10년 초과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차령 양극화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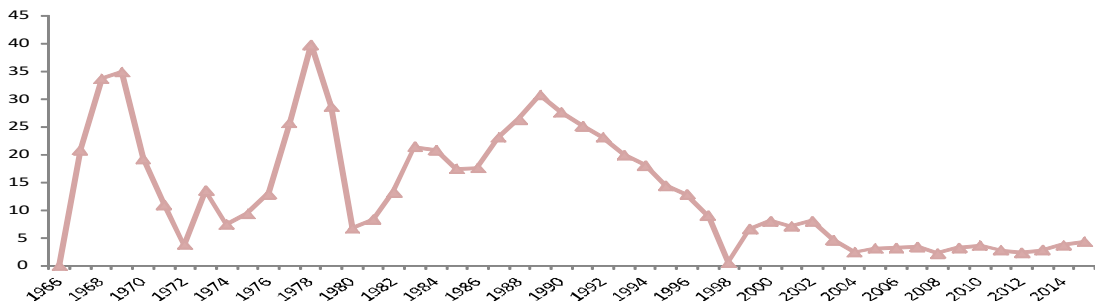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차령 5~10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자동차 기술 발전, 저성장 기조, 자동차 보급률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EU와 미국처럼 승용차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등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차량 내구성 향상과 저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구매심리 위축, 그리고 운전자들의 차량 정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은 향후 신차 교환 주기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경제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1980~2000년 사이에 급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동차 등록대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림 2〉 전년대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증가율 추이(1966~2015년)



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전년 대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3. 차량 노후화의 영향



■ 차량 노후화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보험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차량 노후화는 교통사고 심도 확대, 부품시장 규모 증대, 교통사고 발생 시 신품 및 OEM부품 위주 교체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확산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치평가방식에 영향을 줄 것임.

■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노후 차량 운전자일수록 보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⁶⁾

-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차량과 차량 연식이 교통사고의 치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2005~2011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사고 자료를 분석에 이용함.
 - 분석 자료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승용차 운전자 117,957명과 생존한 승용차 운전자 133,869명을 포함함.
- 분석 결과, 사고시점의 차량이 높을수록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수행됨.⁷⁾

■ 둘째,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일반 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Non-OEM · 중고 · 재제조 부품 시장도 커질 개연성이 있음.

- 자비로 수리할 경우 노후 차량 소유자일수록 신품 · OEM부품을 고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보험 수리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 자동차 수리의 80% 이상을 차지함.
 - 일반 수리는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차량의 마모,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한 수리를 의미함.

6)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s National Center for Statistics and Analysis, "How Vehicle Age and Model Year Relate to Driver Injury Severity in Fatal Crashes", August 2013.

7) Blows S., Ivers R. Q., Woodward M., Connor J., Ameraunga S., and Norton R.(2003), "Vehicle Year and the Risk of Car Crash Injury".

- 승용차의 평균 차령이 비교적 높은 미국의 경우 Non-OEM부품 등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차령이 높은 차량일수록 부품교체 시 Non-OEM부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⁹⁾
 - 미국의 경우 2013년 전체 부품교체비용 대비 OEM부품비용의 비율은 62.7%로, 이를 차령별로 살펴보면 신차 90.8%, 1~5년 72.9%, 4~6년 58.3%, 7년 이상 47.6%임.
- EU의 경우 차령이 높은 차량일수록 완성차 제작자 인가 정비업체(authorized repairshop)보다는 일반 정비업체(independent repairshop)¹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¹⁾
 - 사고수리 시 차령별 일반 정비업체 이용률이 4년 이하 12%, 4~8년 57%, 8년 이상 78%임.

■ 셋째, 차량이 노후화할수록 교통사고 발생 시 신품 · OEM부품 위주 교체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확산될 것임.

-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서 수리비가 지급되므로 동일 조건이면 수리보다는 교체를, 중고품보다는 신품을, Non-OEM부품보다는 OEM부품을 선호함.
- 이러한 보상수리 관행이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유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임.
 - 일례로, 금융위원회 등은 기술 · 안전상 판금 · 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판단하에, 2016년 7월부터 부품교환 · 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하기로 함.¹²⁾

8) Non-OEM부품은 OEM부품 제조업체가 완성차 제조업체의 유통만이 아닌 자체 브랜드 및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을 의미함. Non-OEM부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송윤아(2013),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검토」, 『KiRi Weekly』, 제235호, 보험연구원.

9) Certified Collateral Corporation Information Services Inc., “Parts of the Vehicle Repair”.

10) 일반정비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송윤아(2013), 「공정한 정비요금을 위한 선결조건: 자동차 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제공의무 강화 필요」, 『KiRi Weekly』, 제243호, 보험연구원.

11) The Boston Consulting Group, “The European Automotive Aftermarket Landscape: Customer Perspective, Market Dynamics and the Outlook to 2020”.

12)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공동 보도자료(2015. 11. 18), “고가수리비 · 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참조.

4. 결론 및 시사점



- 이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노후화는 보험회사 담보물건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바, 보험회사는 차량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차량 노후화 등이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차량별 안정성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 손해담보의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 교통부의 분석결과와 같이 노후 차량 운전자일수록 사고발생 시 사고심도가 높다면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는 2007년 4월부터 차량모델별 손상성·수리성 정도에 따라 차량모델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음.
 - 손상성이란 사고 시 차량 손상정도를, 수리성이란 사고 시 수리가 용이한 정도를 의미함.
- 둘째, 자동차 보증연장보험과 같이 평균 차령 상승과 차령 양극화가 고려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보험이란 완성차 제조사의 무상보증수리가 끝난 후에도 유상으로 수리기간을 연장해 주는 보험상품임.
- 셋째, Non-OEM·중고·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의 보험에서 수리비가 지급되는 보험 수리가 아니라면, 노후 차량 소유자가 신품·OEM부품을 고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보험 수리 시 중고·재제조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사용된 중고부품에 해당하는 신품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중고·재제조 부품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상기 인센티브의 실효성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음. **kiri**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대비 6.9%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함.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 첫째,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 인당 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높음.
 - 둘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전인함.
 - 셋째,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큼.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한방침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음.
 - 한방침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되어 있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한 바,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대비 6.9%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함.
 - 2015년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 1,978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차지하고, 한방진료비는 3,580억 원으로 23%를 차지함.
 -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 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보다 270억 원 더 많음.
-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제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는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¹⁾
 - 건강보험의 급여진료항목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됨.
 - 건강보험기준과²⁾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

1)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항목도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속함.

■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그 외의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따름.³⁾

-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으로 비용이 산정됨.
 - －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치료 재료 및 약제는 상한금액으로 보상함.
-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⁴⁾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 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비용을 산정함.

■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음.

- 한방첩약,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7호의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되어 비급여 대상임.
 - － 건강보험에서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세 가지 물리요법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한방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됨.⁵⁾
 - －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외된 주요 이유임.⁶⁾
- 온냉경락요법의 인정범위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에 차이가 있음.
 - － 자동차보험에서는 17일까지 2회 인정되는 데 반해, 건강보험에서는 외래에서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인정되고 있음.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8조.

4) 본고에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의미함.

5) 비급여 한방 진료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음. 예를 들어, 첩약 및 복합엑스산제 등의 경우 건강증진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쓰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첩약 조제 표준화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김동환·조수진·고정애(2015), 『한방 의료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정성희·이정택(2015), 「민영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KiRi Weekly』, 제364호, 보험연구원.

■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되어 있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방 관련 의약품과 한방물리요법은 실구입가 또는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인정함.

〈표 1〉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방 진료수가

(단위: %)

구분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건강보험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항	한방 투약 및 조제료	13010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13020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	
		92011	한방 관련 의약품-복합엑기스	실구입가	
		92012	한방관련 의약품-한방파스	실구입가	
	한방 시술 및 처치료	93011	약침술(1부위)	97.47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됨
		93012	약침술(2부위)	146.21점	
		93021	추나요법(1부위)	149.16점	
		93022	추나요법(2부위)	223.74점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	한방 시술 및 처치료	49020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제외)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자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2015. 12).

3.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실태



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함.

-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보다 증가율이 2.4%p 높았음(〈표 2〉 참조).
- 2015년 한방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로 이는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인 5.2%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2014년 19.0% → 2015년 23.0%), 건강보험의 경우 한방진료비 비중이 미세하게 하락함(2014년 5.4% → 2015년 5.2%).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2.7%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함.
 -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함.
 - 대인배상 I 진료비 가운데 2014년 한방진료비는 2013년에 비해 60.6% 증가한 반면, 양방치료비는 15.9% 증가함.⁷⁾
-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 비중이 하락(2014년 81.0% → 2015년 77.0%)한 반면, 한방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함(2014년 19.0% → 2015년 23.0%).

■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는 통원 중심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2015년부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통원진료비 비중(78.1%)이⁸⁾ 양방(21%)에 비해 현저히 높아, 한방진료비 급증은 한방 통원진료비의 급증을 의미함.
 - 2015년 통원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4.2%로 전년대비 18%(건강보험 5.4%) 증가함.
- 2015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비중(52.5%)이 양방(47.5%)을 추월한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반대로 한방진료비 비중이 미세하게 감소함(2014년 9.2% → 2015년 8.8%).

〈표 2〉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의 양 · 한방 진료비 세부사항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전체 진료비 (비중)	통원진료비 (비중)	전체 진료비 (비중)	통원진료비 (비중)	전체 진료비	통원 진료비
자동차 보험	양방	11,536 (81.0)	2,382 (52.8)	11,978 (77.0)	2,527 (47.5)	3.8	6.1
	한방	2,698 (19.0)	2,129 (47.2)	3,580 (23.0)	2,797 (52.5)	32.7	31.4
	전체	14,234 (100)	4,511 (100)	15,558 (100)	5,324 (100)	9.3	18.0
건강 보험	양방	397,546 (94.6)	208,497 (90.8)	426,010 (94.8)	220,791 (91.2)	7.2	5.9
	한방	22,724 (5.4)	21,196 (9.2)	23,210 (5.2)	21,330 (8.8)	2.1	0.6
	전체	420,270 (100)	229,694 (100)	449,220 (100)	242,121 (100)	6.9	5.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14), 진료비 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7) 전용식(2016. 8), 「합리적인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월간손해보험』.

8)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통원진료비 비중은 한방 전체 진료비(3,580억 원)대비 한방 통원진료비(2,797억 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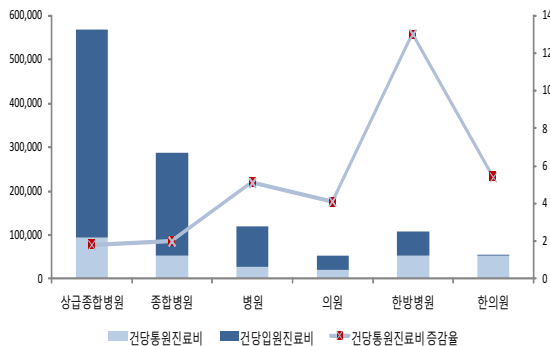
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특성

■ 첫째,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 인당 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높음.

- 2015년 건당 총진료비는 한방과 양방이 유사하지만, 건당 통원진료비는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의 1.9배, 한의원이 양방의원의 2.5배 더 높음.⁹⁾
 - 양방보다 한방진료비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는 통원진료비에서 두드러짐.
 - 2014년에 비해 양·한방 의료기관 간 가격격차가 미세하게 벌어짐.
- 한방 의료기관의 인당 통원진료비가 양방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한의원의 인당 통원진료비는 양방의원보다 4.2배 더 높고, 상급종합병원보다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방 의료기관에 비해 한방 의료기관의 통원 치료기간이 장기이며, 특히 한의원의 평균 통원일수가 가장 길게 나타남.

〈그림 1〉 2015년 자동차보험 의료기관별 건당 진료비

(단위: 일,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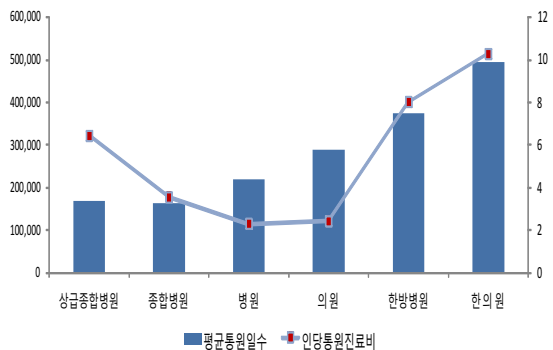


주: 좌측 축은 건당 진료비를, 우측 축은 건당 통원진료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14), 진료비 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그림 2〉 2015년 자동차보험 의료기관별 인당 통원진료비

(단위: 일, 원)



주: 좌측 축은 인당 통원진료비를, 우측 축은 평균 통원일수를 나타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14), 진료비 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둘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증가를 견인함.

- 2015년 자동차보험 건당 한방진료비는 건강보험보다 약 2배 더 높음.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건당(입원: 청구건별, 외래: 진료일수별) 진료비 기준임.

- 2015년 자동차보험 건당 한방진료비는 한방병원이 11만 원으로 양방병원에 비해 1.5배 더 높고, 한방의원이 양방의원에 비해 2.6배 더 높음.
-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한방 비급여 진료가 더 용이한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자동차보험 청구비용은 1,636억 원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6%를 차지함.
 - 한방첩약비가 973억 원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6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추나요법 20.5%, 약침 12.1%, 한방물리요법 7.6% 순이었으며, 한방 관련 의약품 비용은 1% 미만임.
 - 자동차보험 한방환자의 95.1%(2014년 기준)는 비급여 가운데 하나를 이용함.¹⁰⁾
- 특히, 행위종류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비용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고, 한방 의료기관별 청구가격의 편차가 큼.
 - 전년대비 한방물리요법 비용은 50.3%, 약침은 38%, 추나요법은 34.4%, 첩약은 30.3% 증가함.
 - 주요 물리요법의 행위종류별 진료수가 청구단가를 살펴보면, 근건이완수기요법(3천~6만 원), 경추견인(4천~5만 원), 도인운동요법(2천~6만 원)임.

■ 셋째, 한방의 주요 비급여 처치내역에 대해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큼.

- 다빈도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주요 비급여 처치의 1인당 평균 비용에 대해 상·하위 10% 그룹을 비교한 결과, 추나요법의 경우 33배 차이가 남.¹¹⁾
 - 첩약의 경우 약 9배, 추나요법의 경우 약 33배, 물리요법의 경우 약 16배, 약침술의 경우 약 17배로 나타남.

〈표 3〉 한방 비급여 항목 1인당 비용 상·하위 의료기관 비교(위탁 후, 다빈도 경상환자)

구분	첩약	추나요법	물리요법	약침술
전체 평균	93,494원	25,917원	12,514원	17,328원
하위 10% 평균	12,010원	2,908원	2,444원	2,566원
상위 10% 평균	109,214원	97,385원	38,915원	44,326원
상·하위 차이	9.09배	33.49배	15.92배	17.27배

자료: 이태진(2015).

10) 자동차보험 한방환자의 82.5%가 한방첩약을, 14.3%는 한방물리요법을, 39.1%는 약침술을, 57.8%는 추나요법을 이용함; 김동환·조수진·고정애(2015), 『한방 의료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 이태진(2015, 12),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월간 손해보험』.

4. 결론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의계의 마케팅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나이롱환자 단속에 따른 통원 치료 증가, 한방진료 접근성 증대, 그리고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주택가, 사무실 밀집지 등에 한방 의료기관이 급증함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통원·보존적 치료가 성행하고 있음.
 - 2012~2015년 기간 동안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은 양방 병의원이 5.3%, 한방 병의원이 18.3%에 이름.
 - 한방 비급여에 대한 환자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음.
 -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됨.
- 양방에 비해 한방의 높은 진료강도, 장기치료 경향, 한방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 경향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바,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함.
- 무엇보다도,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한방진료는 양방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으나 이에 대해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상병·증상별 투약 및 시술횟수 등)이 미흡하여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큼.
- 둘째,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수가기준 부재로 의료기관별 청구가격의 편차가 큼.
 - 다만,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수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가격통제를 의미하는 만큼, 가격산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수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운영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적정성 관련 심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함으로써 과잉·부당치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가능함.¹²⁾
-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탁 전에는 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별도의 진료기준 및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병·증상별 투약 및 시술횟수 등 산정기준이 없는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kiri**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증가는 보험소비자의 구매력과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소득과 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소득10분위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가구의 소득계층 및 가구 특성(연령 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보험가입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소득계층별로 가구의 보험가입 추이를 보면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가입이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소득계층별 보험가입률 변화 추이를 보면, 중산층 및 부유층과 비교해 빈곤층의 보험가입률 하락이 두드러짐.
 - 전체 납입보험료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부유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함.
- 가구 특성별로 보험 구매력 변화를 살펴보면, 중·고령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은 빈곤층 비중이 증가하고 부유층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55세 이상)은 타 연령에 비해 빈곤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 전통적으로 보험의 핵심 가입층은 아니지만 향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및 부부 가구의 빈곤층 비중이 낮아지고 중산층 비중이 높아짐.
- 소득불평등 심화는 보험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악화되고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위험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
- 보험소비 시장이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어, 각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함.
 - 중·고령 부유층 시장의 경우 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중산층 시장의 경우 보험가입여력이 취약해진 것에 대응하여 비교적 저렴한 상품 공급을 통해 보험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는 가구의 구매력과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양극화로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구매력이 약해질 경우 가구의 보험가입이 감소할 수 있음.
- 실제로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소비자설문조사¹⁾에 따르면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2008년 90.8%에서 2016년 81.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보험가입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험가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도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양극화에 따른 보험 구매력 변화는 연령과 가구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전체 인구와 가구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소득계층과 가구 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소비자 구매력과 보험가입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소득계층과 가구주 연령 및 가구 유형별로 보험가입(보험가입률, 납입보험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²⁾, 동 자료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을 포함하고 있음.

1) 보험소비자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에서 매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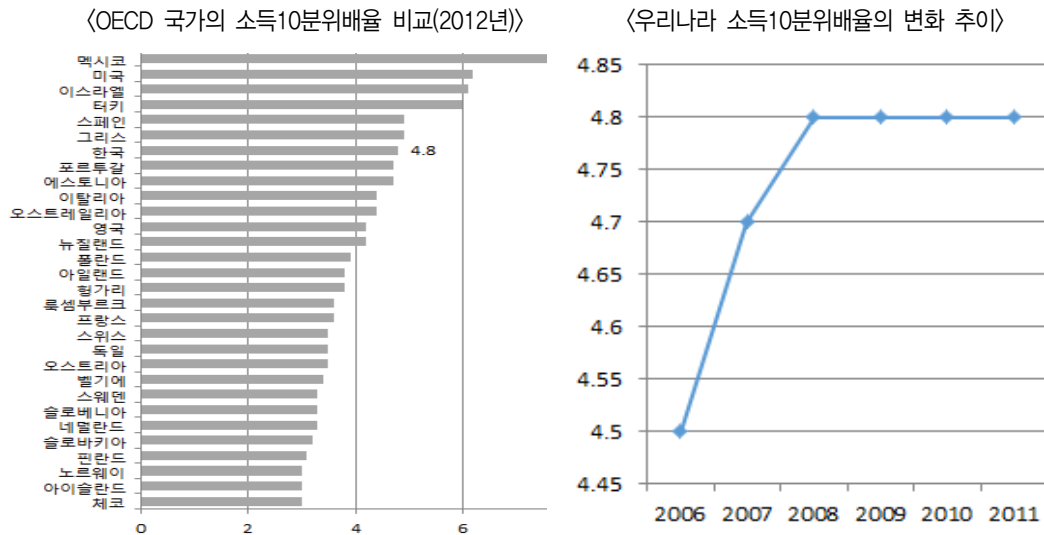
2) 한국노동패널은 4차 조사부터 가구의 보험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를 조사하고 있음.

2. 가계의 소득분포 변화



-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소득과 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소득10분위배율)³⁾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소득10분위배율 국제비교 및 변화 추이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 가구 특성에 따른 보험 구매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 및 가구 유형별로 소득분포 변화를 분석하였음.

- 세후 실질소득을 OECD 기준인 1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⁴⁾으로 환산한 후 중위소득의 50%와 150%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분류하였음.
-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경계는 1인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961만 원, 중산층과 부유층의 경계는 2,884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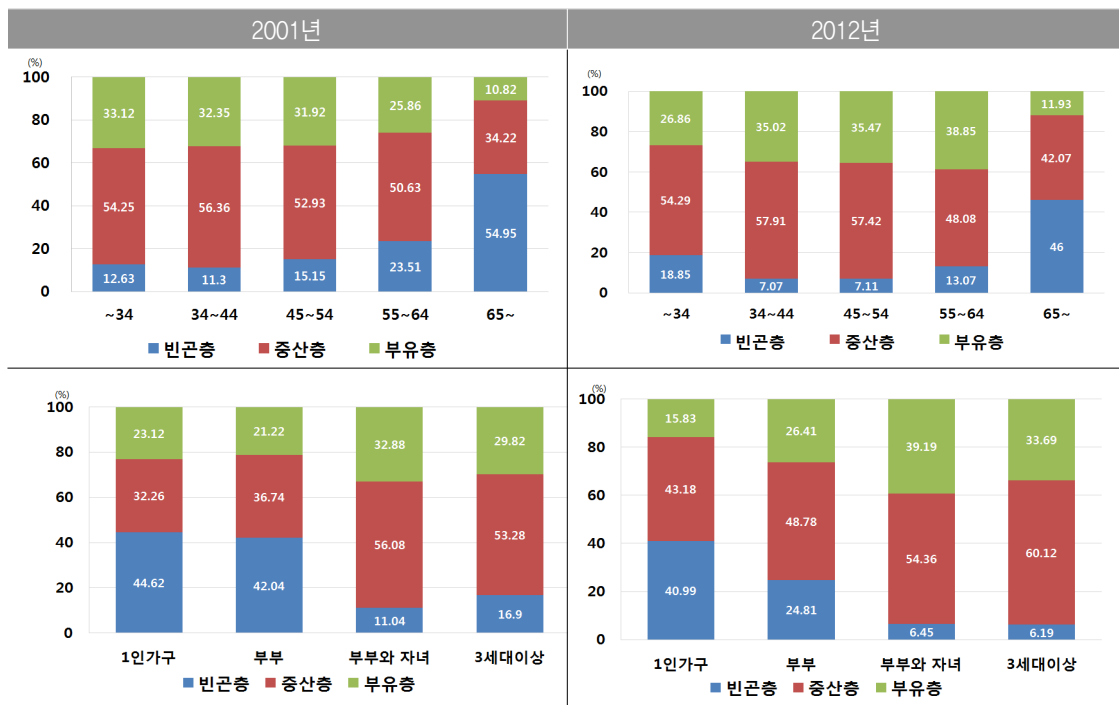
3) 소득10분위배율은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나눈 값임.

4) 균등화 소득은 서로 다른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들의 후생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표준화한 것임.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 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 가구의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는 젊은 층의 빈곤화와 중·고령층의 소득 개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그림 2〉 참조).

- 34세 이하 가구의 빈곤층 비중이 증가하고 부유층 비중이 감소하였음.
- 중·고령층의 소득계층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
 - 중년층인 55~64세 가구와 고령층인 65세 이상 가구에서 빈곤층이 대폭(약 10%p) 감소하였음.
 - 중년층의 경우 감소한 빈곤층 10%p가 부유층의 증가로, 고령층의 경우는 중산층의 증가로 이어졌음.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유형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출처: 오승연·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가구 유형별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면, 1인 및 부부 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대폭 증가해 이들 가구의 중산층화가 두드러짐.

-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층과 부유층이 감소한 반면, 중산층이 약 10%p 정도 증가하였음.
- 부부 가구의 경우 빈곤층이 약 18%p나 감소하였고, 이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증가로 이어짐.

3.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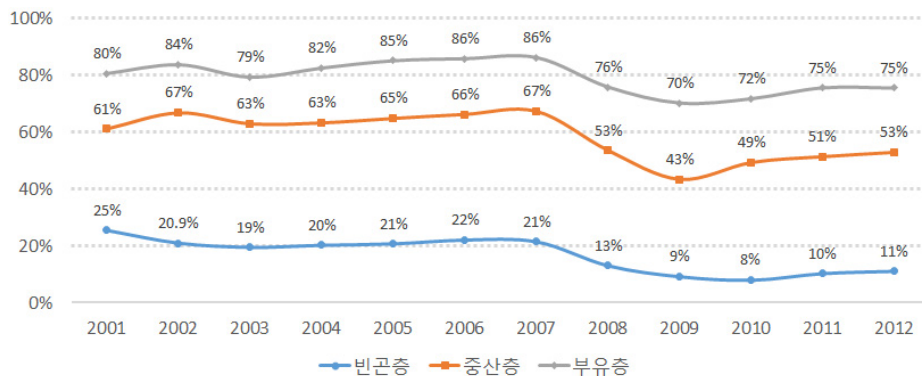


가.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 중·상위층과 비교해서 빈곤층의 보험가입률 감소가 두드러짐(〈그림 3〉 참조).

- 중·상위층의 보험가입률은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2009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 점차 회복하고 있음.
- 빈곤층의 경우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보험가입률은 2001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소득계층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출처: 오승연·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중·상위층의 보험가입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반면, 빈곤층의 보험가입은 현저히 감소하여 보험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 빈곤층의 가구 구성비는 증가(18.7%에서 21.7%)하였지만 전체 보험가입 가구가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빈곤층이 납입한 보험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5.3%에서 2.2%로)함.
-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이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소득계층별 납입보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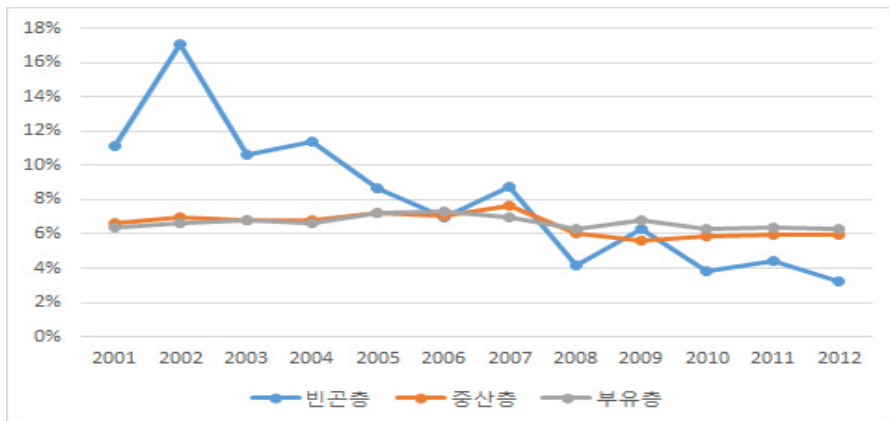
구분	가구 구성비		연평균 납입보험료(만 원)		전체 납입보험료 구성비	
	2001	2012	2001	2012	2001	2012
빈곤층	18.7%	21.7%	33.5	27.4	5.3%	2.2%
중산층	53.5%	51.3%	110.5	204.3	42.5%	44.1%
부유층	27.8%	27.0%	256.5	477.6	52.2%	53.7%
계	100%	100%	—	—	100%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 소득계층별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비중이 중·상위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은 급감하여 빈곤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빈곤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1.1%에서 3.2%로 급격히 감소함.
-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각각 6.6%, 6.4%에서 5.9%, 6.3%로 소폭 감소함.

〈그림 4〉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납입보험료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나. 가구 특성별 보험가입

■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보험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4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률이 증가하였음(〈표 2〉 참조).

- 전통적 가구 유형인 ‘부부+자녀’ 가구의 경우는 65세 이상에서 오히려 보험가입률이 감소함.

■ 가구의 납입보험료 역시 보험가입률과 마찬가지로 중년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료 증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든 가구 유형에서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납입보험료 증가율이 중년층(45~64세)에 비해 낮음.
- 노인가구에서는 특히 빈둥지 가구로 불리는 부부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388.9%),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음.

〈표 2〉 가구 특성별 보험가입 변화(2001년, 2012년)

(단위: %, 만 원)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44세	45~64세	65세~	~44세	45~64세	65세~	~44세	45~64세	65세~
보험가입률(%)	2001	54.3	24.9	4.6	64.6	47.4	9.0	81.2	63.4	33.2
	2012	42.6	37.4	3.7	59.5	56.0	17.8	76.5	69.0	23.9
전체 가구기준 연평균 보험료	2001	85	35	5	169	88	9	191	158	52
	2012	129	95	5	253	326	44	402	392	84
	증가율	51.8	171.4	0.0	49.7	270.5	388.9	110.5	148.1	61.5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가구 보험가입률의 하락은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구매력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납입보험료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부유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의 영향으로 보험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보험소비의 양극화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위험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가구 특성별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장년층의 소득계층 하락과 중·고령층 및 1인·부부 가구의 소득계층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보험의 핵심 가입층은 아니지만 향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령층 가구와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소비층이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affluent mature market)과 젊은 중산층 시장(young and middle class mass market)으로 양분화될 것임.

■ 양분화되고 있는 두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채널 전략이 필요함.

- 중·고령 부유층 시장의 경우 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의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함.
 - 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설계사 인력으로 이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젊은 중산층 시장의 경우 보험가입여력이 취약해진 것에 대응하여 비교적 저렴한 상품 공급을 통해 보험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저가형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저가 채널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ri**



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이용

임준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활용을 위해 동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공공데이터개방(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 ‘정부3.0’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개되고 있음.
 - 이제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주로 인터넷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험산업임.
- 국내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공공데이터는 의료 관련 데이터인데,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볼 때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 단계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서 활용이 어려웠음.
 - 상품개발의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의 허용 가능성은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었음.
- 최근 해외에서는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보보호 방식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정보보호규제에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임.
 - 새로운 접근법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규제의 목적을 두지 않고, 데이터 활용의 혜택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은 수용하면서 위험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위험관리 기반 규제 도입과 관련된 해외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해외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수요자인 산업계가 의견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함.

1. 검토 배경



■ 농경시대의 주요 자원은 토지이고, 산업화시대의 주요 자원이 철이었다면 정보화시대의 주요 자원은 데이터¹⁾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근 들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처럼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그들의 데이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내부에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넘어 기업 외부 데이터 활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
-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 보고(寶庫)의 대표적인 예로 IT기술에 기반을 둔 인터넷과 공공분야를 들 수 있음.

■ 공공분야의 경우 혁신적인 활용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공공데이터개방(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²⁾

-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09년 취임 당시 정부 데이터의 공개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data.gov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음.
 - 2009년 개설 당시 약 47개였던 데이터 집합(Data Set)이 2012년에는 172개 기관의 약 45만개로 증가함.
- 미국에 이어 영국, 유럽대륙, 호주, 브라질, 칠레, 케냐 등에서도 공공데이터개방 운동이 시작되었음.
 -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3.0’이라는 타이틀 아래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는 공공데이터개방 운동이 펼쳐지고 있음.

- 2013년 6월 정부3.0 비전 선포와 정부3.0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고, 2014년 7월 민·관 위원회인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음.³⁾

1) 알렉 로스(2016), 『알렉 로스의 미래산업 보고서』, 사회평론.

2) Viktor Mayer-Schönberger and Kenneth Cukier(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John Marray.

3) 행정자치부(2016), 『정부3.0 브로슈어』.

- 부동산, 교통, 날씨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사례도 존재함.
 - 길찾기 앱인 ‘김기사’, 전·월세 찾기 앱인 ‘직방’, 식당예약 앱인 ‘레드테이블’, 데이트코스 안내 앱인 ‘데이트 팝’ 등이 있음.

■ 이제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주로 인터넷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험산업임.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데이터의 잠재적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국내 현황



■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은 상품개발-상품판매-언더라이팅-고객관리-지급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1〉 참조), 각 단계별로 보험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들이 존재함.

- 상품판매 단계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평판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심사 단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들이 존재하는 근본적 원인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계약자, 설계사에 대해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임.⁴⁾
 - 예를 들어, 상품개발 단계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의 위험분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표 1〉 보험산업의 가치사슬별 위험근원과 위험유형

구분	상품개발	상품판매	언더라이팅	고객관리	지급심사
위험근원	보험회사-피보험자 간 비대칭정보 (위험분포)	보험회사-설계사 간 비대칭정보	보험회사-피보험자 간 비대칭정보 (개별위험)	보험회사-고객 간 비대칭정보	보험회사-고객 간 비대칭정보
위험유형	적자 상품개발	불완전판매에 의한 평판위기	고위험 고객의 가입	고객이탈	보험사기

4) 보험회사가 고객이나 설계사에 대해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고객이나 설계사의 특성이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고객(또는 설계사) 간에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가 존재한다고 함.

■ 보험회사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대칭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회사 차원과 산업 차원에서 데이터를 집적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음.

- 요율산정의 경우 보험개발원에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들 데이터를 보험회사들이 활용함.
- 또한, 그 동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집적하고 있던 보험계약 관련 데이터와 보험개발원에서 집적하고 있던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를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 또는 이관 예정인데, 이들 데이터는 중복보험 확인, 보험사기 방지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산업 내부에 데이터를 집적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였음.

-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보험회사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상은 의료 관련 공공데이터인데, 가치사슬 단계에서 볼 때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단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 단계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서 활용이 어려웠음.
- 상품개발의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의 위험분포를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은 높으나 활용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잘못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공공데이터 보유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임.

■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의 경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은 어렵지만, 의료 관련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할 때, 상품개발 시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은 현재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료 관련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보험산업, 연구계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3. 해외 동향



■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법(Privacy Laws)의 핵심적 원칙은 정보주체인 개인들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었음.

-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한다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이 실제적인 제도로 구현된 형태는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였음.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최근 들어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정보보호 접근법인 ‘통지와 동의’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⁵⁾

- 데이터라는 자원은 다른 자원과 달리 1차적 목적보다는 부차적 목적에서의 활용을 통해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기존 동의방식하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부차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집 당시 미래의 잠재적인 활용 목적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움.

■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정보보호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정보보호에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임.⁶⁾

- 위험관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규제가 기존의 규제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규제 목적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위험관리기법을 규제에 도입한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금융, 환경, 보건 등의 분야가 있음.⁷⁾

■ 정보보호 분야에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프라이버시 피해(Privacy Harms)에 대한 평가체계의 결여임.

- 정보보호 규제의 역사는 거의 50년이 되어가지만, 프라이버시 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음.
-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 정보보호체계가 ‘통지와 동의’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동 방식

5) Viktor Mayer-Schönberger and Kenneth Cukier(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John Marray.

6)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2016), “Protecting Privacy in a World of Big Data”, Discussion Draft.

7) OECD(2010),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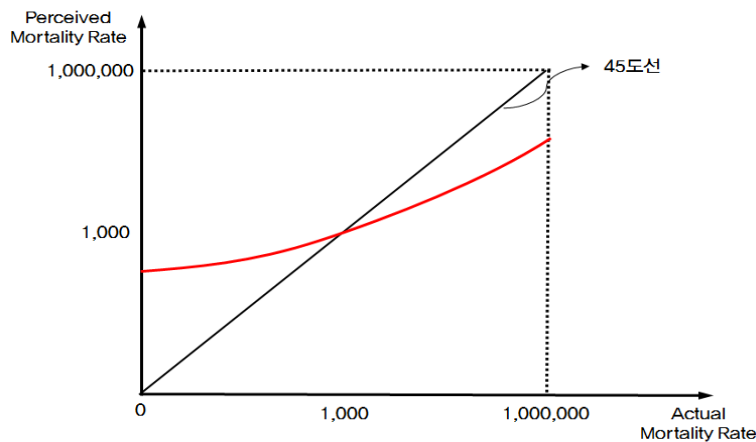
을 준수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피해와 동일시해 온 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 환경 분야의 경우 위험관리 기반 규제의 도입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평가를 포함한 위험의 객관적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압도할 경우, 정보활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보보호 편향의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보호의 경우는 아니지만,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인식을 비교한 한 연구 결과⁸⁾에 의하면,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그림 1〉 참조).
 -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예로는 암이나 심장질환 등이 해당되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예로는 토네이도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해당됨.
-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보보호에 적용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때,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됨.

〈그림 1〉 객관적 사망률과 주관적 사망률 간의 관계



자료: Viscusi, W. et al.(200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

8) Fischhoff, B. et al.(1981), *Acceptable Ris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scusi, W. et al.(200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에서 재인용.

4. 시사점



■ 민간의 데이터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를 포함한 국내 민간기업들에게 있어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경쟁력 제고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위험관리 기반 규제 도입과 관련된 해외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라고 여겨짐.

–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갖추어지면 공공데이터 활용의 허용과 불허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및 논의는 연구계, 산업계,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여겨짐.

● 미국의 경우 뉴욕대의 Governance Lab이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산업계의 의견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penData500.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음.⁹⁾ [kiri](http://www.kiri.or.kr)

9) OECD(2015), *Data-Driven Innovation: Big Data for Growth and Well-Being*.



미 대선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
 - 트럼프의 경제정책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민 일자리를 되찾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미국을 빠르게 재건하는 것임.
 - 주요 공약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 실행, 금융규제 완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등이 있음.
- 향후 공약 이행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감세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트럼프 정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사업이 위축되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따라 수출주도형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보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미국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해외진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금리역마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금리 변동성 확대 및 달러강세의 반전 가능성 등도 내재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장위험(금리, 주가, 환율 등) 관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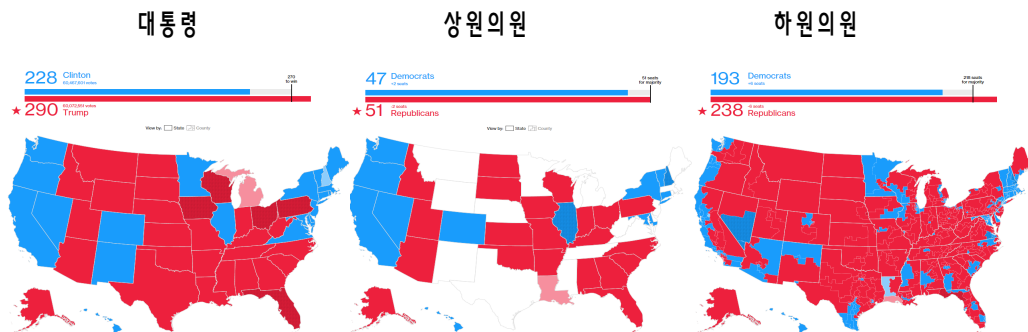
■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됨(그림 1) 참조).

● 트럼프는 초접전 경합 주 대부분을 승리하고,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 주인 러스트벨트¹⁾(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도 승리함.

■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²⁾에서도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둠.

● 공화당은 상원 총 100석 중 51석, 하원 총 435석 중 234석을 확보

〈그림 1〉 2016년 11월 8일 미국 선거 결과



자료: Bloomberg.

1) 러스트벨트(rust belt)는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불황을 맞은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을 의미함.
2)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과 연방 상원의원(임기: 6년) 34명(전체 1/3)을 뽑는 선거를 동시에 진행함.

2. 주요 정책결과



■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있음.

- 향후 10년간 2,5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3.5% 성장(잠재적으로 4% 성장률 도달)을 목표로 함.³⁾

■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은 확장적 재정정책, 금융규제 완화 및 연준(Fed) 통제 강화,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등으로 특징화할 수 있음.

-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 시행
 -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1조 달러), 국방비(5,000억 달러)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미래형 에너지 및 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축소
 - 개인 및 법인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전 소득군에 대해 세율 인하
-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연준 통제 강화
 -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⁴⁾ 폐지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회계감사원에 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단,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 불명확⁵⁾)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및 필요 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을 시사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철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한미 FTA 등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
 -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사용 등을 통한 대중 무역 개혁

■ 트럼프의 정책 공약은 공약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마찰과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보임.

3) www.donaldjtrump.com 참조.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으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5) 현 앨런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동시에 저금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보이지 않음.

- 트럼프의 정책 공약은 주로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상당한 재정적자를 유발하여 큰 폭의 정부부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
- 트럼프의 공약은 공화당의 기존 정책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기대라는 점에서 기존 공화당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기존 공화당 정책은 자유무역과 국제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데 반해, 트럼프는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주장함.

〈표 1〉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구분	주요 내용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경제정책 목표	· 경제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 - 연평균 3.5% 성장 촉진(잠재적으로 4% 성장률 도달)
재정정책	· 인프라 투자 및 국방비 지출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 국방비에 5,000억 달러 지출 · 감세정책 시행 - 소득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현행 7단계) - 최고 세율을 33%(현행 39.6%)로 인하 - 상속세, 증여세 등 폐지 - 법인세: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를 15%로 인하 -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10% 추가 세금 부과
통화정책	· 연준(Fed) 통제 강화 - 회계감사원에 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감사 권한 부여 - 현 연준 의장(제닛 옐런) 교체 주장
금융정책	· 금융규제 완화 -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폐기 - 대형은행 분할 반대
무역정책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 기존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및 필요 시 재협상 -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사용 등을 통한 대중 무역 개혁
복지 및 의료정책	·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폐지 및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 Account) 도입 · 해외 제약업체 진입장벽 제거
에너지 및 환경정책	· 기존 에너지 이용 촉진

	- 화석연료 산업 부양, 석유·가스 개발 확대 · 환경규제 완화 - 미국 환경보호청 예산 감축, 파리기후변화협약 무효화
이민정책	· 불법 이민자 입국 제한 및 취업비자 엄격한 관리 - 멕시코 국경에 장벽설치 -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외교 및 안보정책	· 미국 고립주의(우선주의)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 - 미국 이외 지역의 안보 문제 개입 최소화 -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자료: www.donaldjtrump.com 및 트럼프의 정책 공약 관련 발언 취합.

3. 금융시장 반응 및 전망



가. 금융시장 반응

■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안전자산 선호현상(flight to quality)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하락,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 달러의 선진통화 대비 약세⁶⁾ 및 신흥통화 대비 강세, 신흥국 CDS 프리미엄⁷⁾ 상승을 보임.

-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신흥국 주식 및 통화 등)을 기피하고 무위험 안전자산(선진국 국채 및 통화 등)을 선호하는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일어남.
-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국채금리는 만기에 상관없이 소폭 하락하였음.
-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대폭 하락하였고, 엔화 및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음.
-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CDS 프리미엄도 동반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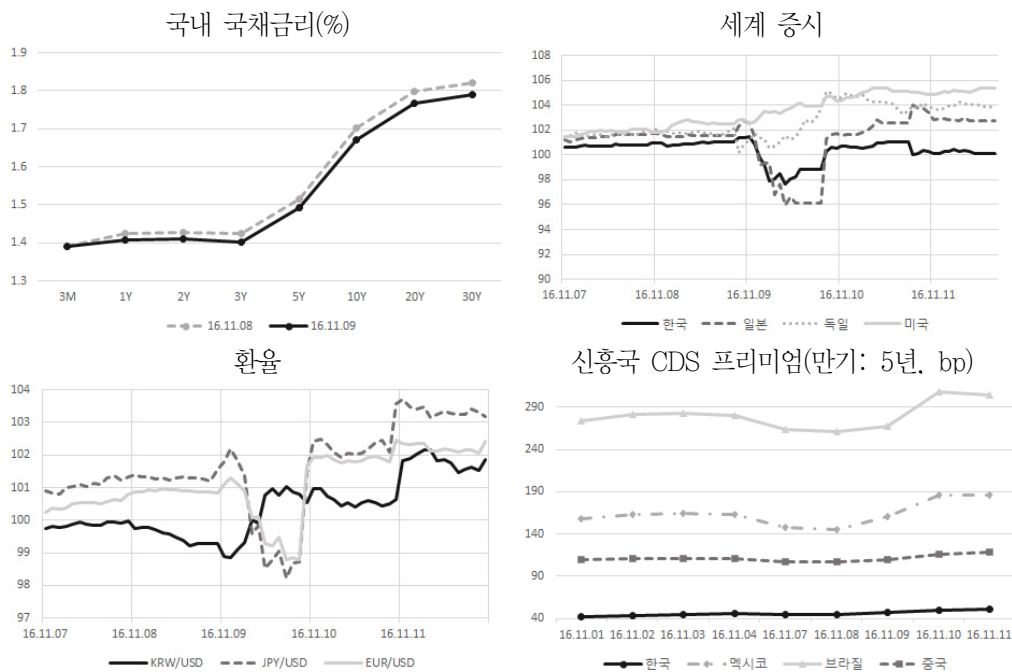
6) 달러화, 엔화, 유로화 모두 국제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엔화 및 유로화 자금조달시장이 달러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안전자산 선호에 의한 미국 국채금리 하락 가능성이 반영되어 달러화가 선진통화 대비 약세를 보임.

7)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가 달러로 발행한 채권의 부도 발생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동 지표가 높을수록 국가 부도확률이 높음을 시사함.

■ 하지만 트럼프의 예상보다 온화한 당선 연설과 재정책대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로 미국 증시 및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하였고, 미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음.

- 미 대선 다음날 미국 증시는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이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다우존스 지수 1.4%)
- 또한 미국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10년 금리 21bp)
- 이후 한국 등 트럼프 당선에 단기적인 영향을 받았던 국가들의 금융시장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음.

〈그림 2〉 트럼프 당선 전후 금융시장 반응



주: 1) 현지시간 기준.

2) 주가 및 환율의 경우, 2016년 11월 4일 종가를 기준(100)으로 함.

자료: 연합인포맥스.

나. 향후 전망

■ 향후 트럼프 경제 공약의 구체화 및 실행 수준에 따라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공약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만큼 향후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구성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역할 조정 등을 주시하면서 공약의 구체화 및 실행 수준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는 감세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입장이 불명확하고, 미국 통화정책은 독립적이라 경기, 물가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 금리 상승압력 증가, 보호무역 강화 등은 달러화 강세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 미 대선 이전의 달러화 강세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금리인상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와 미국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4.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 향후 트럼프 정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인 면 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주도형인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보험구매력은 약화될 것임.

-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 강세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이차역마진 극복을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공약의 실현과정에서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및 추세 반전 가능성도 있기에 대응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필요

- 향후 트럼프 정부의 공약 구체화 및 시행 수준을 주시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관리,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장위험(금리, 주가, 환율 등)관리를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음.

가. 자산운용

■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강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점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실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

-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에 대한 견해가 강한 경우 해외투자시점을 현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우려되면 해외투자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함.
-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런시 오버레이(Currency overlay)⁸⁾ 전략을 활용할 필요
 - 현재 해외채권은 완전헤징을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관행

■ 미국 인프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 기회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인프라 구축은 미국 건설사가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나. 보험상품 수요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변액보험 수요를, 보호무역 정책에 의한 무역 감소는 해상보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8) 커런시 오버레이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시 환노출을 관리하여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최적화함으로써 외환에 의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전략을 말함.

-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신규 판매가 줄어들고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
- 또한, DC형 퇴직연금 중 실적배당형 펀드 및 개인퇴직계좌(IRP)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부각되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해운산업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해상보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음.

다. 수입보험료

■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둔화로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입보험료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보험연구원은 저금리 및 저성장 장기화 조짐과 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수입보험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보험연구원은 2015년 5.5%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016년 3.2%, 2017년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kiri](#)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소비자의 개별 기호에 맞춘 상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산업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체제로 전환됨.
- 보험산업에서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별로 특화된 보험상품 출시가 전망됨.
 - 다양한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의 등장과 IOT를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짐.
 - 최근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가입자 세분화 및 가입대상 확대, 신기술 활용,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보험 상품 개발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의 경우 개별 계약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중복가입이 최소화되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추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가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여러 상품을 구매하던 것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상품 보장 범위와 가격을 통한 경쟁 대신 헬스케어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로 경쟁하게 될 것임.
- 계약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계약자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함.
-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음.

1. 검토 배경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Industry 4.0¹⁾이라고도 표현함.
-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위한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개별 요구에 대응하여 소규모 생산도 가능한 생산체계 도입임.

■ 산업화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형화된 상품을 대량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소비자 중심의 제품 생산체제로 전환됨.

- 기존의 생산체계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4차 산업혁명에서는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해짐.

■ 보험산업에서도 빅데이터²⁾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등장으로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로 전환되고 있어, 이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수많은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의 등장과 IOT를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짐.
- 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이 전망됨.

1)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으로써 인구감소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도전해 오는 신흥국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정부의 전략을 말함; 네이버 지식백과.

2) 본고에서 논하는 빅데이터는 비정형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빅데이터도 포함함.

2. 4차 산업혁명과 보험산업의 진화



가.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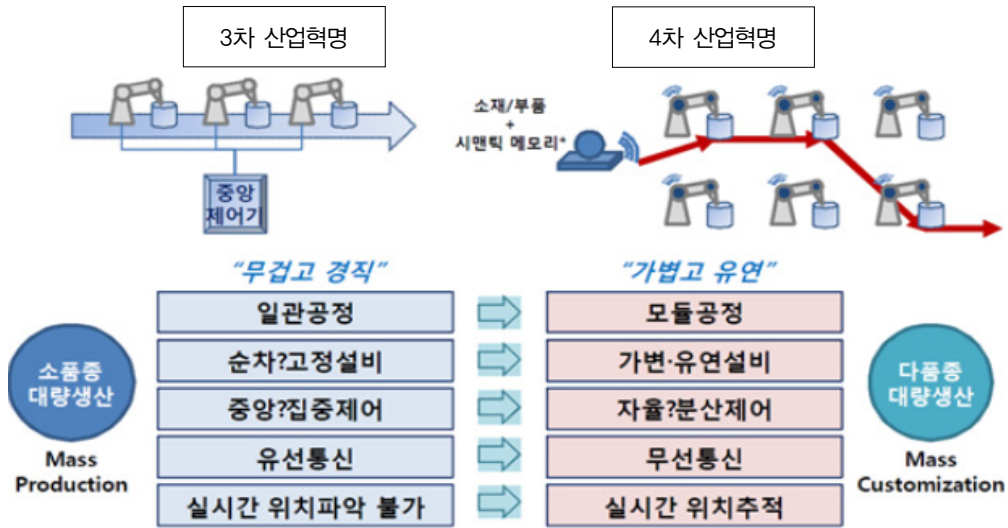
■ 세계는 지금까지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제품의 대량생산체계를 갖 추게 되었음.

-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8세기 증기기관 발명과 기계식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시작됨.
 - 농업과 수공업 경제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경제로 전환됨.
-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고 분업과 자동화 생산이 확산되면서 시작됨.
 -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대량생산됨.
- 3차 산업혁명은 70년대부터 자동화 대량생산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짐.
 -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시작됨.

■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대 량 맞춤 생산이 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진화임.

-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기술, IOT, 클라우드 컴 퓨팅을 적용하여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는 것임(〈그림 1〉 참조).
 - 모듈단위 생산체제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 주문에 따라 생산라인 변경이 가능
- 3차 산업혁명 생산라인에서는 작업명령이 프로그램화되어 가공설비에 사전 입력되고, 설비는 입력 된 명령에 따라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
 - 표준화된 제품들을 최단 기간에 대량생산할 경우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원 하든지 제품 제작의 주도권은 제조업자가 보유

〈그림 1〉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자료: 포스코 경영연구소.

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진화

■ 보험산업은 초창기에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감독당국의 규제하에서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 개발이 변천되어 왔음.

- ~ 1970년대: 업계 공통요율을 사용하여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 업계 전체 보험상품은 획일화되었으며,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량판매(Mass Marketing)전략을 구사
 - 정형화된 상품판매로 개별 계약자의 니즈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 존재
- 1980 ~ 1990년대: 업계 공통요율을 사용하는 공동상품과 함께 회사별 상품 개발 시작
 - 회사별로 보험상품이 차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동일 상품 대량판매 전략 유지
- 2000 ~ 최근: 보험요율이 자율화되어 회사별로 독자 상품 개발 시작
 - 보험회사는 자사위험률로 독자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상품 및 가격을 차별화하지만, 대량판매 전략은 유지
 - 계약자의 건강상태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해 주는 우량체·표준하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3. 최근 상품 개발의 변화



■ 최근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가입자 세분화 및 가입대상 확대, 신기술 활용,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보험 상품 개발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

- 유병자 보험상품 개발로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량체 보험을 세분화하여 계약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고 함.
- 빅데이터 및 IOT를 상품개발에 활용하여 위험을 측정하려고 함.
- 고객의 건강관리에 따라 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함.

가. 보험가입자 세분화 및 범위 확대

■ 과거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유병자들을 위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가입거절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을 완화함.
- 당뇨병 또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웠던 고연령층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짐.
 - 65세 이상 고연령의 50% 이상이 당뇨병 또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³⁾

■ 계약자의 개별 위험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우량체 보험을 개발함.

- 과거에는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혈압만이 평가기준이었음.
- 지금은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평가기준에 추가함.

나. 신기술 활용

■ 국내 보험회사들은 기존 경험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계약자 속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어 상품개발에 반영하고 있음.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I』, pp. 52~55.

- 보유계약 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어린이가 탑승한 계약자의 사고율이 낮음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함.
- 보험회사의 경험자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률을 개발함.

■ 보험회사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함.

- IOT의 한 방편으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Usage-Based Insurance)⁴⁾이 개발되었음.
- 계약자별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상품도 개발함.

다.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 개발

■ 보험회사는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정기 건강검진에서 일정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개발됨.
 - 일정 수준 이상 도보 시 선물 지급 또는 보험료 할인
 -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유지 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과 별도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서비스, 전담 헬스플래너(간호사) 방문상담서비스, 2차 견해 및 치료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함.
-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서비스 전문회사 또는 IT기업과 함께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4) 자동차에 장착된 이동통신이 가능한 정보단말기(텔레매틱스)를 통해 주행거리, 주행일, 주행장소,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등 운전자성향 정보를 취합하여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임; 김진익(2015), 「미국의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 『Kiri Weekly』, 제327호, 보험연구원.

4. 상품 개발 향후 전망



■ 최근 상품 개발의 주요 변화는 IOT 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계약자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별 상품(Order Made) 개발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됨.

- 유병자 보험 개발 및 우량채 보험 세분화는 계약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것이므로 계약자별 보험상품의 전단계임.
- 빅데이터 및 IOT 신기술은 계약자 속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자별 위험 측정이 가능함.
-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자별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헬스케어 상품 개발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의 개념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보험 상품에 추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임.

-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하여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계약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임.
- 헬스케어서비스로 인하여 사고발생률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헬스케어 상품 개발은 보험가입자에게 기본적인 의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에서 4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종합 헬스케어서비스 상품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에서는 보험상품과 별도로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
 - 현재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임.
- 2단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건강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
 - 일부 보험회사들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도보거리 측정과 같은 초보적인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함.
 - 도보거리 또는 건강유지 관련 조건을 만족하면 영업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줌.
 - 영업보험료 중 사업비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계약자가 건강관리 유지로 인한 위험변화를 위험률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3단계에서는 건강관리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할인보다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만 일정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계약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함.
- 예를 들어, 주기적 시점에서 계약자가 건강관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함.
- 건강관리 유지 조건에 대한 보너스 급부는 계약자가 건강유지관리 및 적극적인 질병 예방에 소비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줌.
- 4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약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합 헬스케어서비스 상품을 개발

5.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처럼 개별 계약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계약자는 최소한의 보험상품만 가입하게 되어 중복가입이 최소화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가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여러 상품을 구매하던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임.
- 보험회사들은 상품보장 범위와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신 헬스케어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로 경쟁하게 될 것임.
- 계약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소비자 보호는 표준화된 보험상품과 판매행위 공정성 측면에서 소비자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예를 들어, 한 계약자의 특별한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 계약자에게 이를 적용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해 왔음.

-
- 향후 개발될 보험상품은 계약자 중심의 상품이 되어 보장하는 위험과 보험요율이 계약자별로 차이가 생길 것이므로, 개별 보험계약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금융당국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장착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음.
 - － 의료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현재 부재하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헬스케어서비스를 병원과 제휴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과 함께 「의료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kiri](#)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임태준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요약

-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재정상태 악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
 - 2016년 2분기 누적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6조 원으로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6년 2분기에 1.4%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2010년 2분기 대비 23.6% 상승한 수치임.
 -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
- 하지만,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2분기의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증가하였을 것임.
- 따라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불황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계약자의 보험해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가계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
 - 둘째,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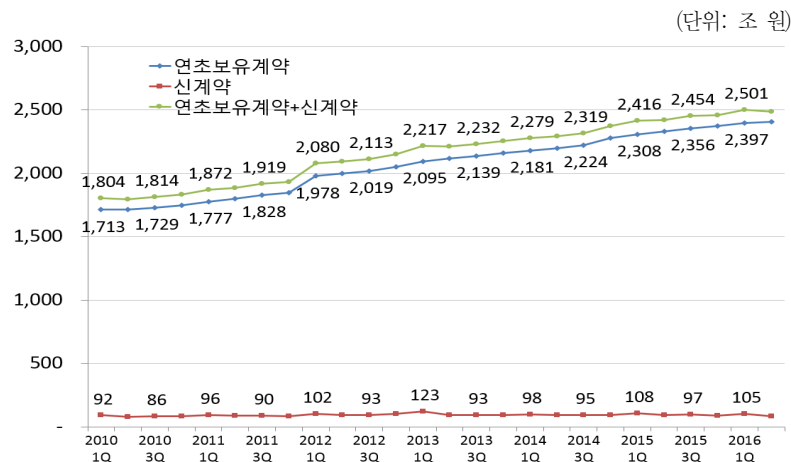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2016년 2분기 누적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은 10.6조 원으로 관측됨.¹⁾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6,243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15년 20.2조 원을 경신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산업의 총 보유계약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²⁾

〈그림 1〉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연도별 추이(일반계정)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 하지만 최근의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거시경제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본고에서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금액은 일반계정 기준임.

2) 임태준(2015. 12. 28),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제365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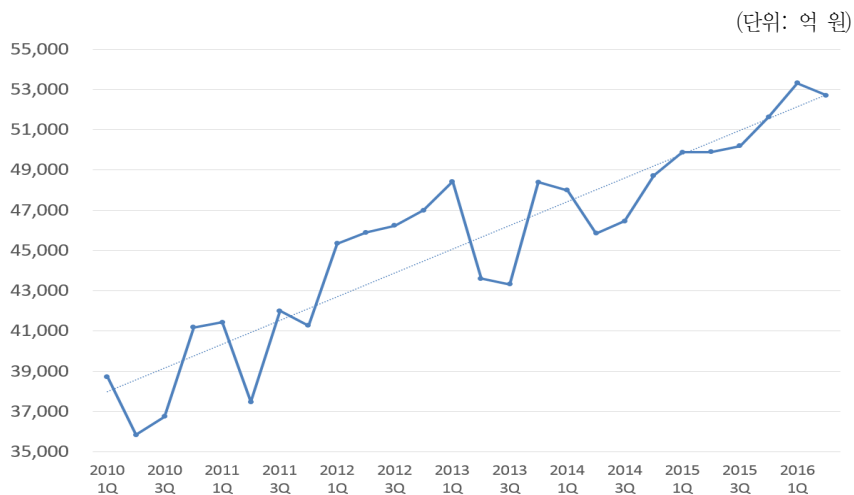
2.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2010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2분기에는 5.3조 원을 기록함(그림 2) 참조).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한 금액으로,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1.2%임.
-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2016년 해약환급금은 2000년 이후 최고치(2015년 20.2조 원)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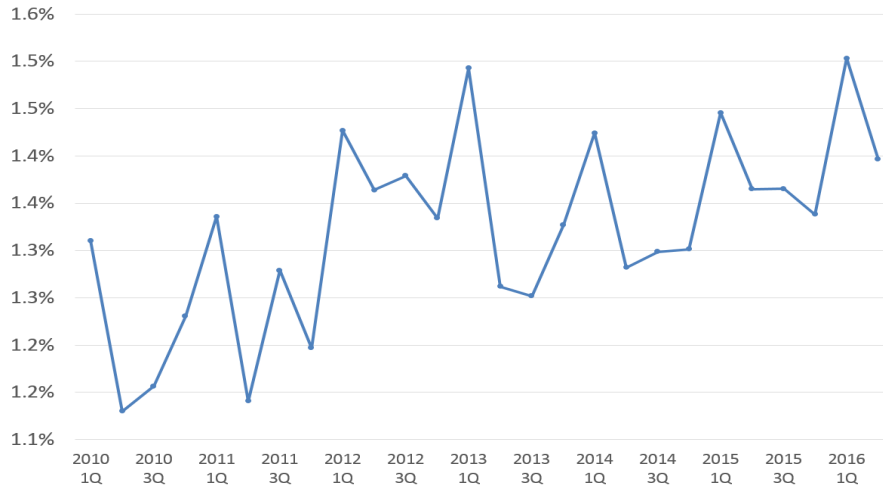
■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도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에 근거하고 있음(그림 3) 참조.³⁾

- 2010년 2분기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1.1%에 머물렀으나, 2016년 2분기에는 2010년 2분기 대비 23.6% 상승한 1.4%를 기록함.
 -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분기별 평균상승률은 0.3%임.

3) 본고에서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뜻함(명목가격 기준).

-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

〈그림 3〉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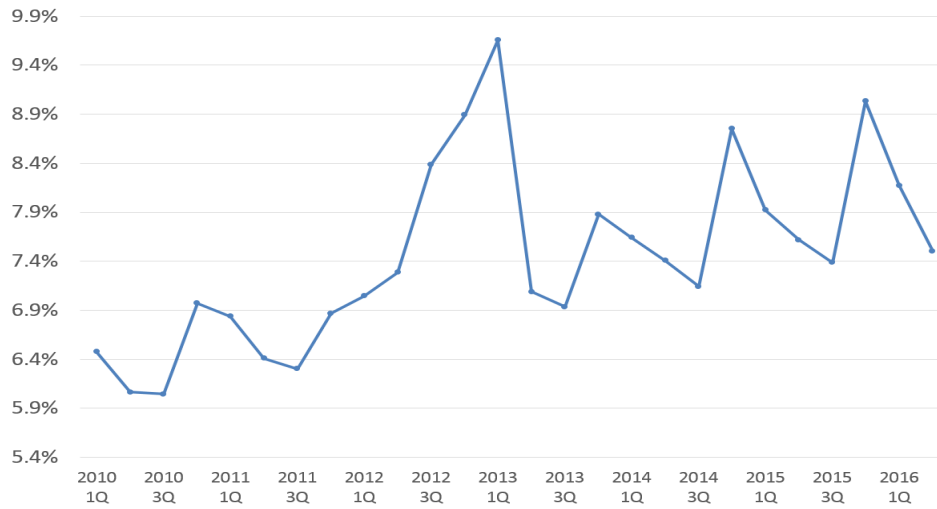
- 한편,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조).

- 2016년 2분기의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하였음(2010년 2분기 비율은 6.1%).⁴⁾
 -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9%임.

-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험료 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함.

4) 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보험침투도라 정의하고 있음.

〈그림 4〉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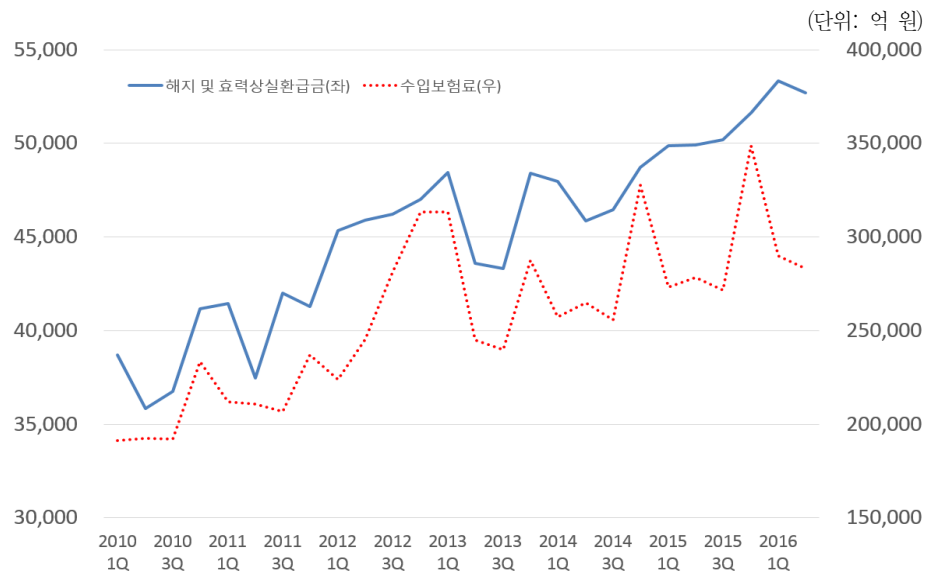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 한편, 2010년 이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 간의 상관계수는 0.8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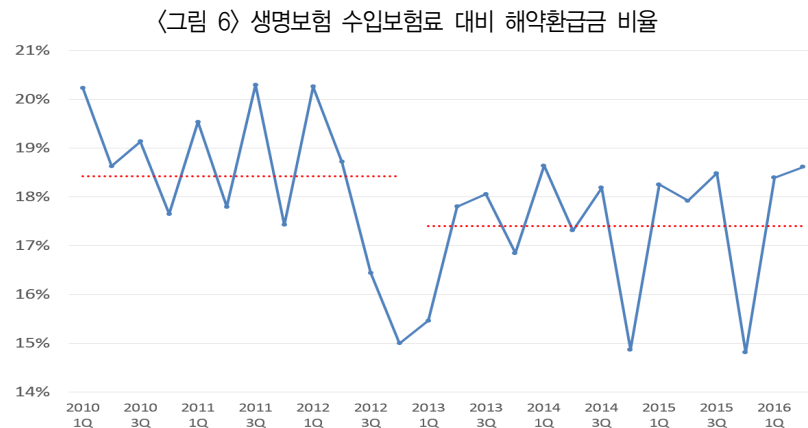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 비교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6〉 참조).

-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였을 것이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에서 증가세가 관측되었을 것임.
- 하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

■ 따라서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보험계약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2010년 이래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해약환급금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

■ 이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뿐만 아니라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가계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
- 둘째,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⁵⁾
 - 중·고령 부유층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구매 유인이 큰 반면, 젊은 중산층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해 보험구매력이 감소하며 계약해지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 [KiRi](#)

5) 오승연(2016. 10. 31),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KiRi 리포트』, 제365호, 보험연구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국내 장기금리 상승 및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함.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가 다소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방증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완만한 장기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실질적 건전성을 개선시키나,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음.
 - 부채원가법의 현행 RBC비율은 하락하지만, 실질 부채듀레이션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 때문에 부채시가 평가기준의 건전성은 개선되며, 이차역마진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됨.
 - 단, 저축성보험 수요 감소 및 해약 증가로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음.
-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건전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보험 수요 급감 및 해약 증가는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출 및 부동산, 회사채 등 위험자산의 부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금리가 급등할 경우 현행 RBC비율이 빠르게 악화되어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하여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충격이 클 것이며, 적기시정조치(RBC비율 100% 미만)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RBC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들은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상승세 지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이 필요함.

1.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12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

-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기준금리는 0.50%~0.75%로 인상되었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12월 13일 2.47%에서 2.57%로 0.1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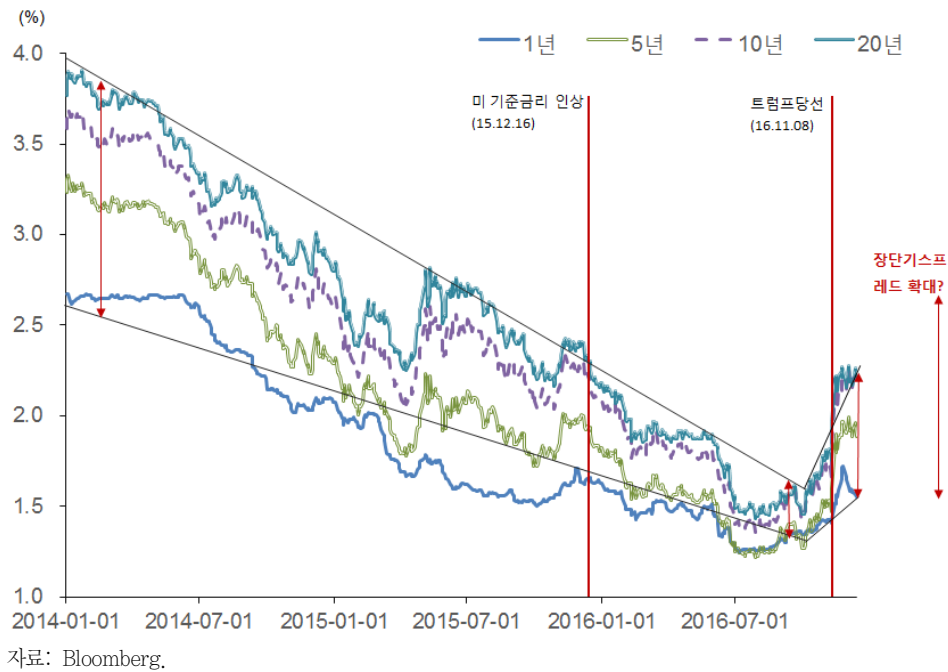
■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한 지난 10월 이후 국내 금리는 반등과 동시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양상임.

-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함.
 -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6년 10월 4일 1.46%에서 12월 15일에는 2.20%로 74bp 상승한 반면, 동기간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32%에서 1.57%로 25bp 상승함.
-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6년 7월 2.66%에서 10월 2.89%로 상승하였고 2016년 12월 중순 3.5% 수준까지 상승함.

■ 당분간 미국 장기금리 상승 영향으로 국내 장기금리 상승 및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가 다소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방증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단, 향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임.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화 약세,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됨.
 - 2016년 7월 원/달러 환율은 1,141.7원에서 12월 15일 1,182.2원으로 상승함.
 - 원화가치 약세로 수입물가상승률은 2016년 7월 -7.1%에서 10월에는 -0.6%로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0.7%에서 11월 1.3%로 상승함.

〈그림 1〉 국내 국채 수익률 추이



2.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완전한 장기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실질적 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금리확정형¹⁾부채 비중이 높은 보험산업은 금리 상승에 의해 자산운용이익률이 부채부리이율에 비해 높게 상승함에 따라 이차역마진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됨.
- 현행 제도상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은 하락하나, 2021년 시행 예정인 부채시가평가제도 기준으로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됨.
 - 이는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질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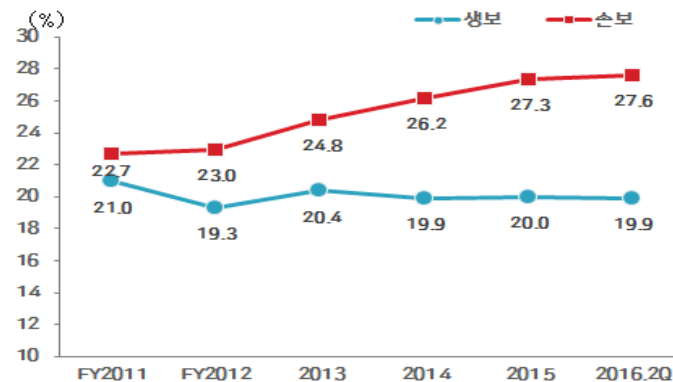
1) 금리확정형(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 포함) 부채 비중(2016. 3): 생보 59%, 손보 57%.

-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 성장성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금리 조정의 후행성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 약화 및 해약이 증가함.
 - 단, 보장성보험은 가격 하락에 의한 일부 수요 증가가 가능하나 보험산업은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아 그 효과가 제한적임.

■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건전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²⁾

-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정도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면, 보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침.
- 중산층의 보험수요 급감 및 해약 증가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 장래이익이 높은 계약 중심으로 해약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
- 대출 및 부동산, 회사채 등 위험자산의 부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그림 2〉 운용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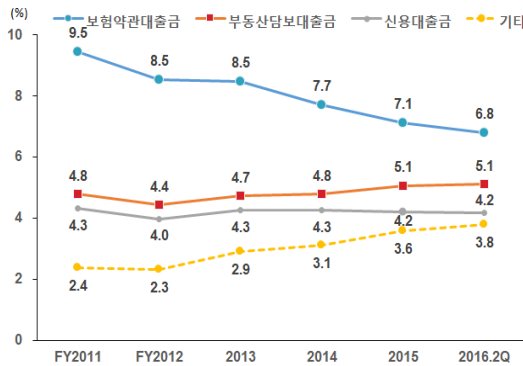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산업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위기 감내 여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점도 우려됨.

- 무위험의 약관대출 비중이 줄고, 부동산담보대출 및 대체투자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대출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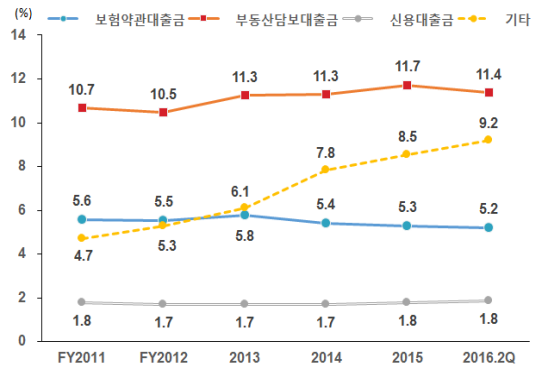
2)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은 [부록] 참조.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각 대출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각 대출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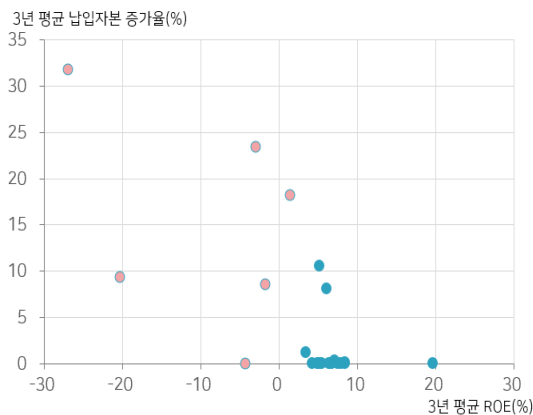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리 급등 시 현행 RBC비율이 빠르게 악화되어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충격이 클 것이며, 적기시정조치(RBC비율 100% 미만)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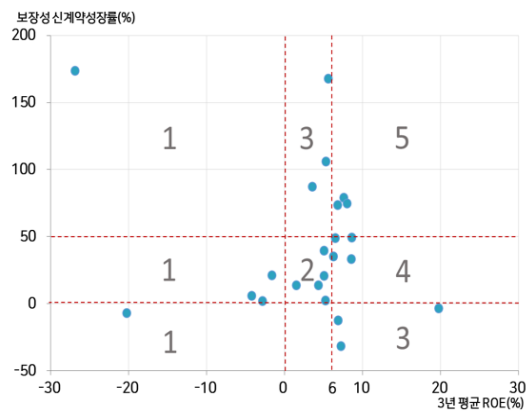
- 일부 회사는 3년 평균 ROE가 적자 상태이며, 기존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함.
-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회사는 내부자본 확충 여력뿐만 아니라, 외부자본 확충 여력이 낮음.

〈그림 5〉 생명보험회사 ROE와 유상증자



주: 1) 2013~2015년, 교보라이프플래닛과 IBK연금보험은 제외함.
2) 숫자가 낮을수록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각 보험회사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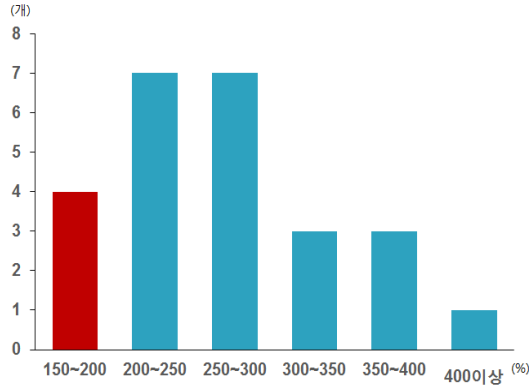
〈그림 6〉 생명보험회사 자본확충 여력



주: 1) 2013~2015년, 교보라이프플래닛과 IBK연금보험은 제외함.
2) 숫자가 낮을수록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각 보험회사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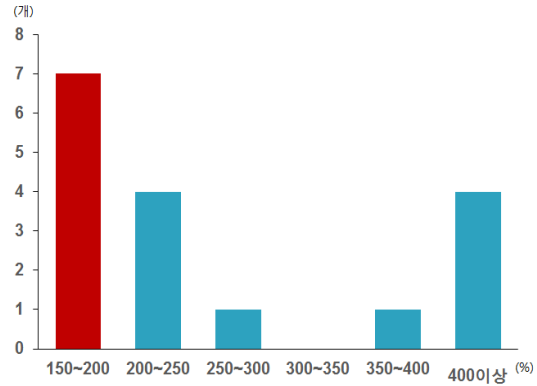
● 특히, RBC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들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생명보험회사 RBC비율 분포



주: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8〉 손해보험회사 RBC비율 분포



주: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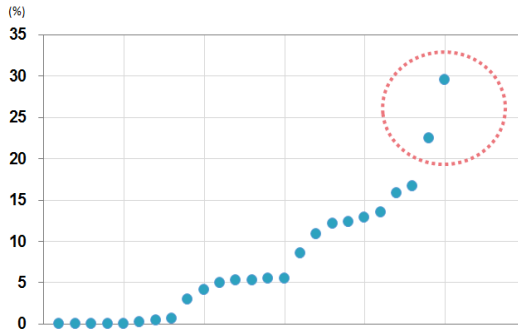
3. 환율 상승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그동안 저금리 대응전략으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가 급증하였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환율 상승 및 변동성 확대로 환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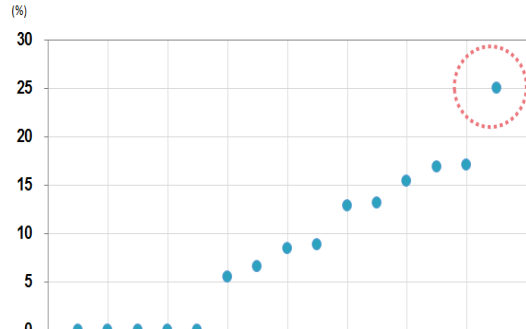
- 2013년 이후 해외투자가 급증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해외자산이 운용자산의 30%에 육박함.
- 과거 해외투자는 Korean Paper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 회사채 및 부동산 투자가 급증함.
-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환리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됨.

〈그림 9〉 회사별 외화유가증권 비중(생명보험)



주: 2016년 3월 말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0〉 회사별 외화유가증권 비중(손해보험)



주: 2016년 3월 말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회사는 해외채권의 대부분을 헤지(Hedge)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리스크는 높지 않은 상황임.

● 다만, 환리스크 외에 해외 부동산리스크,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 등의 해외투자리스크 노출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17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³⁾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장기금리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3) 국제금융센터(2016. 12. 13), “미 금리인상,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칠 전망”.

■ 그러나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큰 폭의 금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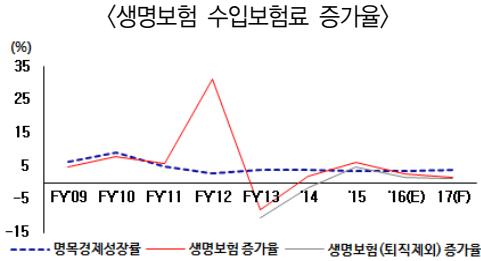
- 국내 소비·투자 위축 지속에 의한 국내경제의 저성장이 금리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3/4분기 분기별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를 기록하였는데 2011년 1/4분기 이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1%를 넘지 못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금리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압력과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여 추세적인 상승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실질경제성장률 상승 등 실물요인이라기 보다는 가격변수 조정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임.
 - 원화가치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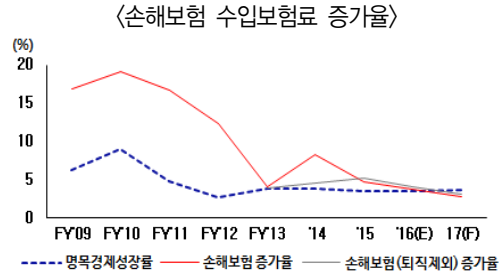
- 금리 급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
 - 특히, RBC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지양하고, 자본확충을 충분히 실행해야 함.
- 2021년 도입이 예정된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충실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 [kiri](#)

[부록]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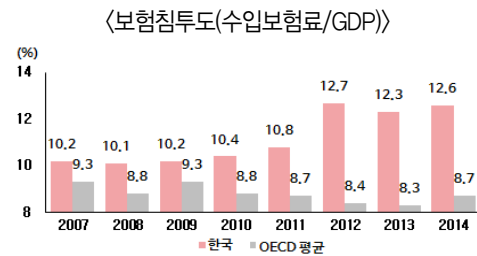
■ 명목경제성장률 이하로 성장세 둔화 예상되며, 시장은 포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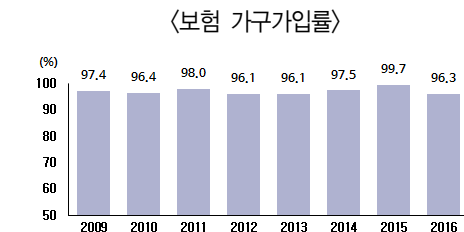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자료: 보험연구원,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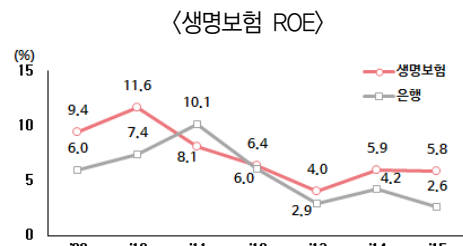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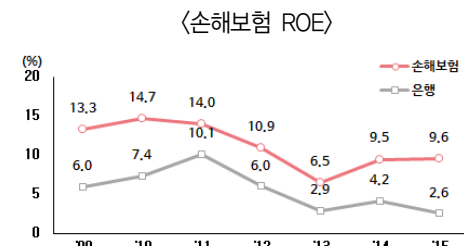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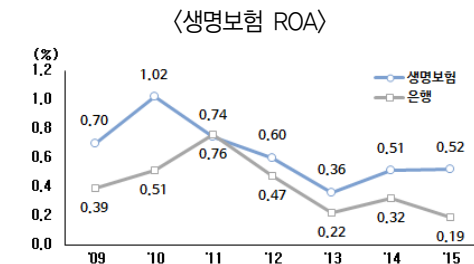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둔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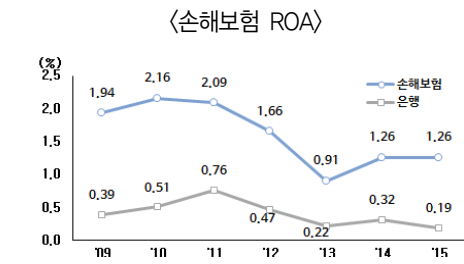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 동향

송윤아 연구위원, 권오경 연구원, 마지혜 연구원

요약

- 최근 헤지펀드, 투자은행, 연기금 등의 투자자본이 재보험시장에 유입되어 재보험담보 공급이 늘어난 반면, 2011년 이후 4년 연속 대재해로 인한 보험가입 손해액이 감소하여 재보험담보 수요는 감소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2011년 일본·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이후, 지난 4년 동안 대재해로 인한 보험가입 손해액이 감소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 재보험시장에 담보력 공급이 원활해지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남.
 - 첫째, 재보험요율이 하락하고 대재해 이후에도 재보험요율 인상폭이 줄어들어 재보험요율이 대체로 안정적임.
 - 둘째, 재보험사 간 경쟁 심화 및 요율 인하로 재보험 수익이 줄어들자 재보험사 간 M&A가 증가함.
 - 셋째, 재보험사의 원보험 영업 비중이 증가함.
- 재보험요율이 세계 재보험 담보력 시장에서의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받고 출재사(원보험사) 입장에서 재보험요율이 위험전가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는 세계 재보험시장 변화에 상응한 재보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재보험 담보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요율 인하 및 수익 악화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원보험사는 요율뿐만 아니라 재보험사 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보험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비록 최근 4년 동안 대재해 손해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례 없는 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보험사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고려한 출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과거 재보험시장은 전통적 재보험 자본¹⁾의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경성시장과 연성시장을 오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 발생이 필연적임.²⁾

- 재보험거래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재보험사와 자본시장 간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비용 문제, 그리고 규제·회계·세제와 같은 마찰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재보험사의 적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함.
 - 재보험 거래에 수반된 높은 대리인비용과 마찰비용 때문에 자본시장 참여자는 재보험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음.
- 이에 대재해 이후 재보험 수요에 비해 재보험사의 담보력(capacity)이 부족하여 인수기준이 엄격하고 요율이 높아지는 등 재보험시장이 경성화(hard market)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런데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Andrew 이후에는 언더라이팅 사이클 진폭이 축소되어 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재보험요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재보험요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세계 재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원보험사의 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 재보험은 국경 간 거래로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보험요율은 세계 재보험 담보력 시장에서의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받음.
 -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13개)의 출재보험료는 2015년 기준 6조 3,031억 원에 이름.³⁾
- 또한, 출재사(원보험사) 입장에서 재보험료가 위험전가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는 세계 재보험시장의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본고에서 '전통적 재보험 자본'이란 재보험사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대재해채권, 담보재보험, 사이드카 등을 통해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대체자본'과 구분하여 사용됨.

2) 재보험사의 담보력이 충분하여 인수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요율이 낮아지는 등 출재사(재보험 구매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을 연성시장(soft market)이라 하며, 재보험시장이 경성화와 연성화를 반복하는 것을 언더라이팅 사이클이라 함.

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세계 재보험시장 환경 변화



가. 자본 유입 증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수요가 증가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여 왔음(〈그림 1〉 참조).
-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투자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함께 잠재적인 수익률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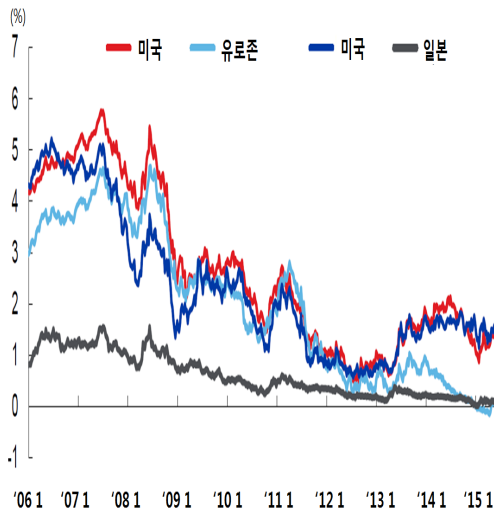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헤지펀드, 투자은행, 연기금 등의 투자자본이 대재해채권, 담보재보험, 사이드카 등 보험연계 증권을 통해 세계 재보험시장에 유입되고 있음.

-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대재해채권(Cat Bond)의 투자자로 참여함.
- 또한, 투자자들은 재보험 가입금액과 재보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 없이도 재보험영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담보재보험(Collateralized reinsurance)이라 함.
- 사모펀드, 헤지펀드, 재보험사 등은 사이드카(Side car)라는 비영구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사이드카는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재보험사에 투자하거나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투자수단임.
 - 대재해채권은 장기자본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이드카는 경성시장에서 1~3년 동안 사용되는 단기 긴급자본의 성격을 가짐.
- 전술한 대체투자 방식은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위험과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임.

■ 보험연계증권을 통해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대체자본은 2015년 3/4분기 기준 690억 달러로, 전체 재보험 자본의 12%를 차지하며,⁴⁾ 전통적 재보험 자본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음(〈그림 2〉 참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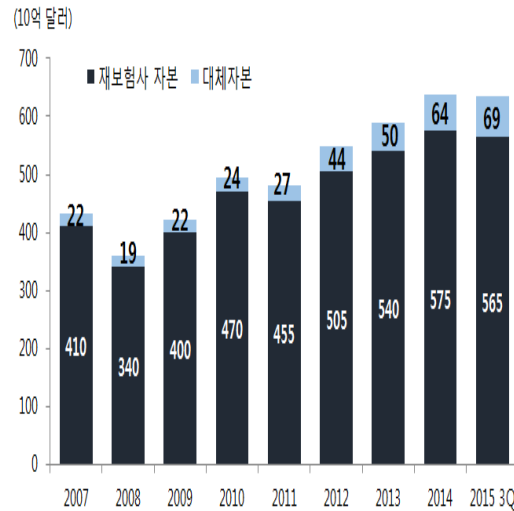
4) ‘전체 재보험 자본’이란 재보험사의 자본금과 대체자본의 합을 의미함.

〈그림 1〉 지역별 5년 국채 수익률



자료: Aon Bonfield(2016), “Reinsurance Market Outlook”.

〈그림 2〉 세계 재보험시장 자본



주: 대체자본은 대재해채권, 담보재보험, 사이드카 등을 통해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자본으로 재보험사의 자본과 구분됨.
자료: Aon Bonfield(2016), “Reinsurance Market Outlook”.

나. 대재해 손해액 감소

■ 2011년 일본·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이후 지난 4년 동안 대재해로 인한 보험가입 손해액이 감소하고 있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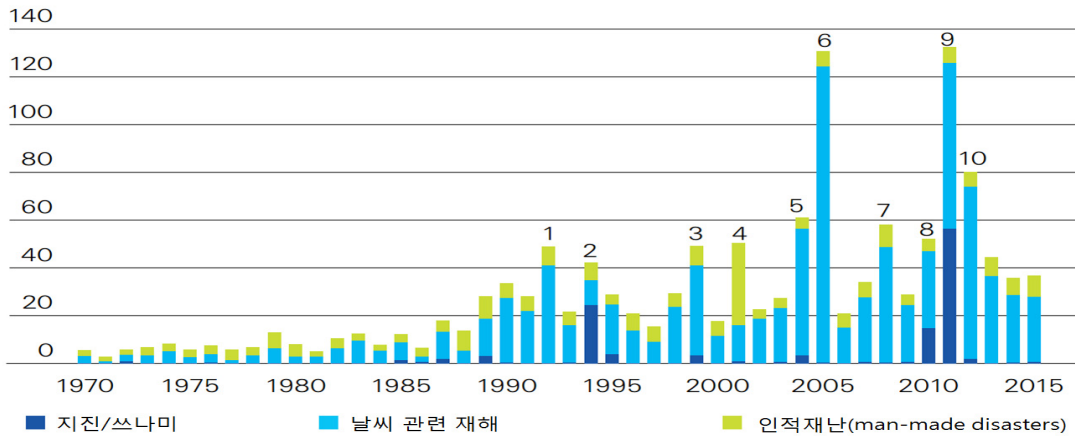
- 대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280억 달러와 230억 달러로, 이는 지난 10년 평균 지급보험금(5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⁶⁾
- 1992년 허리케인 Andrew는 전례 없는 지급보험금(170억 달러)을 초래함으로써 약 12개의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처하였으며, 이후에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위협하는 대재해가 빈발함.
 - 1992년 허리케인 Andrew 이후, 1994년 Northbridge 지진, 1999년 Lothar 겨울 폭풍, 2001년 9/11 테러, 2004년 허리케인 Ivan·Charley·Frances, 2005년 허리케인 Katrina·Rita·Wilma, 2008년 허리케인 Ike·Gustav, 2010년 칠레·뉴질랜드 지진, 2011년 일본·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2012년 허리케인 Sandy 등이 발생함.

5) Aon Bonfield(2016), “Reinsurance Market Outlook”.

6) IAIS(2016), “2015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그림 3〉 대재해 보험가입 손해액(Insured Catastrophe Losses)(1970~2015년)

(단위: 10억 달러, 2015년 물가기준)



주: 1. 1992년 허리케인 Andrew, 2. 1994년 Northridge 지진, 3. 1999년 Lothar 겨울 폭풍, 4. 2001년 9/11 테러, 5. 2004년 허리케인 Ivan · Charley · Frances, 6. 2005년 허리케인 Katrina · Rita · Wilma, 7. 2008년 허리케인 Ike · Gustav, 8. 2010년 칠레 · 뉴질랜드 지진, 9. 2011년 일본 · 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10. 2012년 허리케인 Sandy.

자료: Swiss Re(2016),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5: Asia Suffers Substantial Losses".

3. 세계 재보험시장 영향



가. 재보험요율 안정

■ 대체자본의 유입 및 축적은 대재해 이후 재보험 담보력과 재보험요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시장이 극도로 경성화되는 것을 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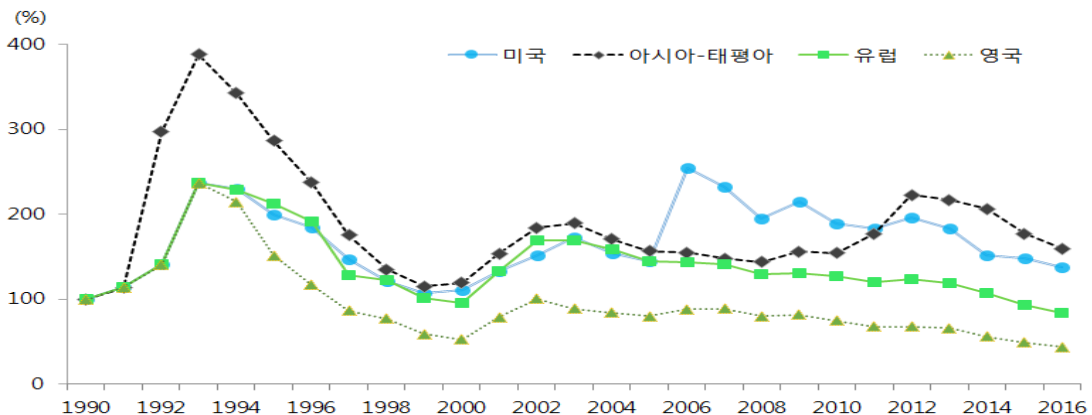
- 과거 재보험시장은 전통적 재보험 자본의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경성시장과 연성시장을 오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 발생이 필연적임.
- 1994년 Hanover Re가 처음 대재해채권을 발행한 이후 대체자본이 전통적 재보험 자본을 대체 또는 보완함.
 - 대재해 이후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자본의 형태를 보면 허리케인 Andrew의 경우 대재해채권이 나 사이드카를 통한 자본유입이 없었던 반면, 9/11테러의 경우 신규자본의 4%, 허리케인 KRW의 경우 신규자본의 20%가 대체자본으로 구성됨.⁷⁾

● 대체자본의 유입 및 축적은 대재해 이후 효율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

- 2011년 일본과 뉴질랜드의 지진, 그리고 태국의 홍수로 인한 손해액이 1,300억 달러에 이르지 만, 이듬해인 2012년 지역별 재보험요율은 전년대비 미국이 7.0%, 아시아-태평양이 25.7%, 유럽이 2.5% 상승하는 데 그침(〈그림 4〉 참조).
- 반면, 1992년 허리케인 Andrew로 인한 손해액은 5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듬해인 1993년 지역별 재보험요율은 전년대비 미국이 68.2%, 아시아-태평양이 30.7%, 유럽이 68.5%, 영국이 68.3% 상승하였음.

■ 대체자본 유입에 더해, 지난 4년 동안 대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감소는 2012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재보험요율 하락을 초래함(〈그림 4〉 참조).

〈그림 4〉 지역별 대재해 Rate-On-Line Index(1990=100 기준)



주: Rate-On-Line Index는 재보험계약의 최대가능지급액 대비 재보험료의 비율로 재보험 가격을 의미함.

자료: Guy Carpenter(2015), "Chart: Regional Property Catastrophe ROL Index, 1990 To 2015", <http://www.gccapitalideas.com/2015/01/08/chart-regional-property-catastrophe-rol-index-1990-to-2015/>.

나. M&A 증가

■ 재보험영업환경과 투자환경이 모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보험사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 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할 유인을 가진.

7) 송윤아·전성주(2013),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보험동향』, 2013년 봄호, 보험연구원 참조.

- 재보험사는 대체자본의 대량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높은 재보험영업마진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투자수익도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투자환경이 좋을 때 재보험사는 보험영업 손실을 투자수익으로 상당부분 보전하였으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투자수익으로 보험영업 손실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M&A를 통한 비용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경감의 유인이 커짐.
- 재보험사는 M&A를 통해 보유위험을 지역적으로 또는 위험종류별로 다각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보유위험 대형화로 고정비용을 분산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⁸⁾
 - 재보험사는 M&A를 통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고정생산비와 유통경비, 판매관리 등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음.

■ 2006년 이후 세계 재보험요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재보험사 간 M&A 건수가 증가함(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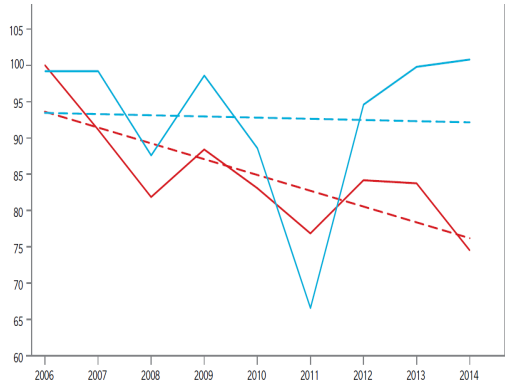
- 재보험요율이 낮아질수록 재보험사의 합산비율이 높아져 재보험영업수익은 낮아짐(그림 5) 참조).
- 출재사가 우위에 있는 연성시장에서는 재보험사의 요율 및 마진이 낮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M&A를 통해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유위험의 다각화를 추구할 유인이 있음.⁹⁾
 - 반면, 재보험사가 우위에 있는 경성시장에서는 재보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재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요율 및 마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M&A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함.
- 최근 성사된 재보험사 M&A는 시장지배력 확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지역적 확대와 규모 및 범위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표 1) 참조).
 - 세계 재보험시장은 2007년 보유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가 50%를 점유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2000년대 이후 집중도에 큰 변화가 없음.¹⁰⁾

8) Biener, C., Eling, M., Jia, R.(2016), "The Structure of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An Analysis of Efficiency, Scale, and Scope", *University of St. Gallen, School of Finance Research Paper*, No. 2016/3.

9) Guy Carpenter(2015), "The Reinsurance Landscape".

10) 보유보험료 기준 상위 3개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90년 중반까지 30% 미만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40~50% 수준에 이름; Outreville, J. F.(2012), 『Theory and Practice of Insuran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그림 5〉 재보험사 합산비율과 Rate-On-Line
Index(2006=100)



주: 좌측 축과 빨간 선은 세계 대재해 Rate-On-Line Index, 우측 축과 파란 선은 재보험사 합산비율임.
자료: Guy Carpenter(2015), "The Reinsurance Landscape".

〈그림 6〉 재보험사 M&A 건수와 대재해 Rate-On-Line
Index(2006=100)



주: 좌측 축과 파란 선은 재보험사 M&A 건수, 우측 축과 빨간 선은 세계 대재해 Rate-On-Line Index를 나타냄.
자료: Guy Carpenter(2015), "The Reinsurance Landscape".

〈표 1〉 최근 재보험사 M&A 사례

공표일	인수주체		인수대상		가격 (백만 달러)
	재보험사	소재지	재보험사	소재지	
2014.07	Validus	버뮤다	Western World Insurance	미국	690
2014.08	Allied World	버뮤다	Hong Kong operation of RSA	홍콩	215
2014.11	RenRe	버뮤다	Platinum Underwriters	버뮤다	1,900
2015.01	XL Group	아일랜드	Catlin Group Limited	버뮤다	4,100
2015.02	Fairfax	캐나다	Brit	영국	1,880
2015.03	Endurance	버뮤다	Montpelier Re	버뮤다	1,830
2015.05	Fosun International Ltd	중국	Ironshore	버뮤다	2,304
2015.07	ACE	스위스	Chubb	미국	28,300
2015.07	CM International Holding PTE Ltd	중국	Sirius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 Ltd	버뮤다	2,235
2015.08	EXOR	이탈리아	PartnerRe	버뮤다	6,900

자료: A.M. Best(2015), "It Is Not Your Father's Reinsurance Market Anymore – The New Reality", *Best's Special Report*.

다. 재보험사의 원수보험 영업 증가

■ 재보험사들은 손해율과 요율 측면에서 재보험보다 더 안정적인 원보험 영업의 비중을 확대함.

- 버뮤다시장과 유럽 상위 4개 재보험사의 총영업보험료 중 원보험료 비중이 2004년 32%에서 2014년 40%로 8%p 증가함.¹¹⁾

- 재보험은 위험의 최종 인수단계로 원보험에 비해 손해를 변동성이 더 크고, 요율이 시장 담보력에 즉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보험에 비해 요율 변동성이 더 큼.
- 따라서 대체자본 유입과 대재해로 인한 발생손해액 감소에 의해 재보험 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향후 재보험사의 원보험 영업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

4. 결론



- 재보험요율이 세계 재보험 담보력 시장에서의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받고 출재사(원보험사) 입장에서 재보험요율이 위험전가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는 세계 재보험시장의 변화에 상응한 재보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재보험 담보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요율 인하 및 수익 악화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원보험사는 요율뿐만 아니라 재보험사의 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보험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비록 최근 4년 동안 대재해 손해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례 없는 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보험사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고려한 출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2017년도에는 3차례 금리가 인상될 것임을 시사함.¹²⁾
 -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재보험시장에 유입되었던 자본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향후 재보험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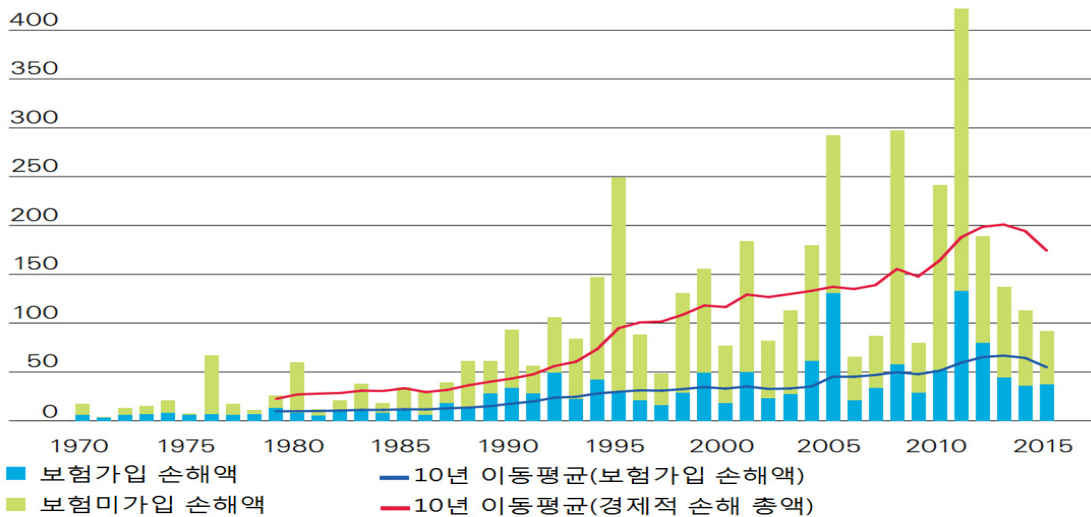
11) A.M. Best(2015), "It Is Not Your Father's Reinsurance Market Anymore - The New Reality", *Best's Special Report*.

12) Transcript of Chair Yellen's Press Conference December 14, 2016,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161214.pdf>.

- 2012년 이후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총액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지만, 1979~2015년 기간 동안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총액의 과거 10년 평균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7> 참조).
 - 지난 35년 동안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총액은 10.4% 증가하였고, 이 중 보험가입 손해액은 10% 증가하였음.
- 더욱이, 대재해로 인한 손실위험을 보험가입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짐에 따라 향후 재보험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음.
 - 1979~2015년 기간 동안 대재해로 인한 보험미가입 손해액(uninsured loss)의 비중이 보험가입 손해액(insured loss)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며, 보험미가입 손해액이 보험가입 손해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kiri](#)

<그림 7> 보험가입 vs. 보험미가입 손해액(Insured vs. Uninsured Losses)(1970~2015년)

(단위: 10억 달러, 2015년 가격 기준)



자료: Swiss Re(2016),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5: Asia Suffers Substantial Losses".

kiqi 리포트 포커스 모음집 2016

발행일 | 2017년 2월

발행인 | 한 기 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